

연구총서 19-B-01

#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김민영·한민경·박희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머리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진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지난 2009년 개편과 함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실시된 제6차 정례조사입니다. 동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실태와 범죄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를, 공식수사기관이 아닌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제 403001호)로 지정되었으나 이후에도 몇 차례의 전면적 개선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사의 전체적 체계는 2013년 개편된 제3차 조사를 기점으로 안정화되어 2015년 제4차 조사, 2017년 제5차 조사, 그리고 금년 2019년 제6차 조사가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체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제5차 조사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경험을, 이번 제6차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 수선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조사는 2009년에 조사된 보이스피싱 경험과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시점의 보이스피싱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범죄현상의 시대적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학술적·정책적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쉽지 않은 본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성실히 연구를 진행해 준 공동연구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극 도움을 준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및 표본과,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등 관계자 여러분과 실사를 담당한 한국궐립연구소 연구진 및 조사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자문해주신 학계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김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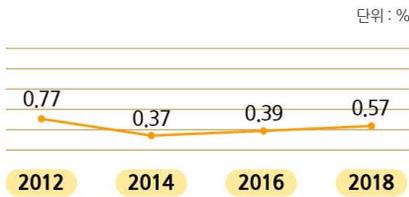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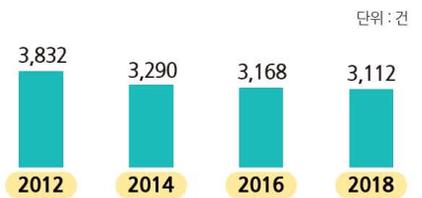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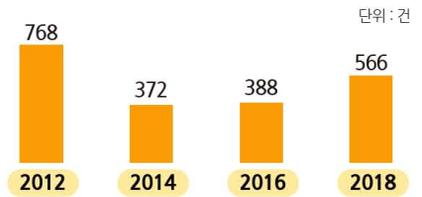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상생활에서 겪은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범죄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 ① 조사기간: 2019년 5월-7월
- ② 조사규모: 전국 6,704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③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범죄 피해율



###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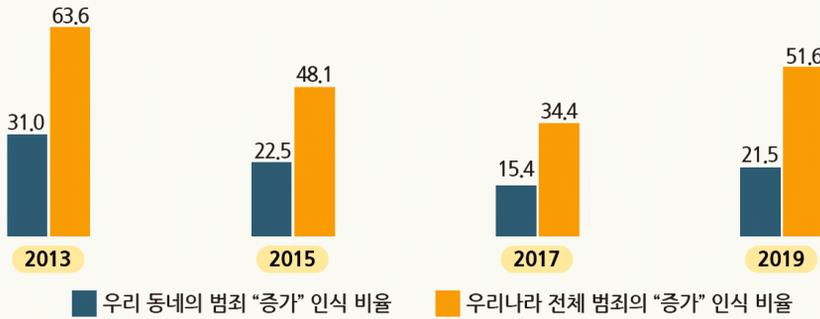


### 보이스피싱 수법



## 우리나라와 동네에 대한 범죄발생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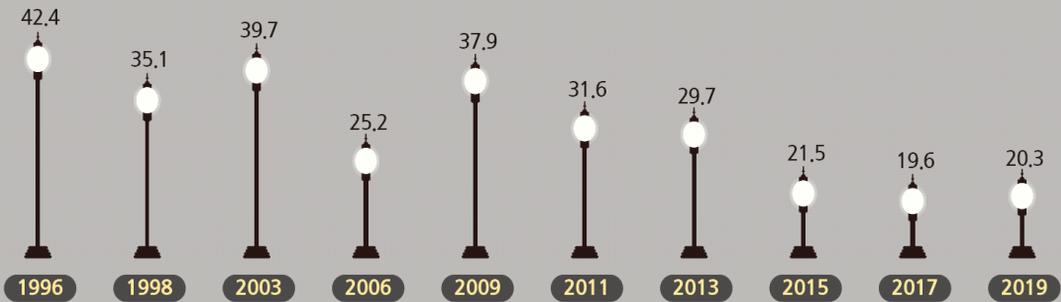
단위 : %



\* 주: 작년 한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약간 증가할 것' 혹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밤길 범죄피해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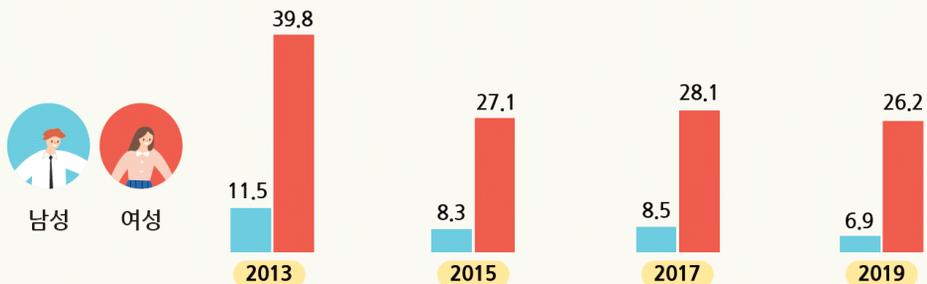
단위 : %



\* 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나 자신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

단위 : %



\* 주: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김민영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의의 ..... 1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15

## 제2장 박희정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 17

제1절 조사개요 ..... 19

1. 연혁 ..... 19

2. 추진체계 ..... 23

3. 추진일정 ..... 26

4. 결과 제공 ..... 28

제2절 조사설계 ..... 36

1. 조사내용 ..... 36

2. 조사방법 ..... 62

3. 표본설계 ..... 62

4. 가중치 부여 및 추정 ..... 69

제3절 조사 실시 ..... 73

1. 조사 홍보 ..... 73

2. 조사용품 ..... 76

3.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 ..... 82  
4. 조사 실사 ..... 87

### 제3장 박희정·한민경

#### 표본의 대표성과 범죄피해 유형의 판별 ..... 99

제1절 조사 응답률 · 박희정 ..... 101  
1. 가구방문 결과 ..... 101  
2. 응답률 ..... 102  
제2절 표본의 대표성 및 특성 · 박희정 ..... 106  
1. 표본 대표성 ..... 106  
2. 가구 특성 ..... 110  
3. 가구원 특성 ..... 116  
제3절 범죄피해 유형 및 추출방식 · 한민경 ..... 119  
1. 범죄피해 유형 분류 체계 ..... 119  
2. 공표 범죄피해 유형 ..... 124

### 제4장 한민경

#### 전국 범죄피해 실태: 시계열 비교 ..... 127

제1절 개인 대상 범죄피해 실태 ..... 129  
1.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 130  
2.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 131  
3. 피해자별 피해횟수 ..... 135  
제2절 가구 대상 범죄피해 발생 ..... 137  
1.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 137  
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 138  
3. 범죄피해 가구별 피해횟수 ..... 140

제3절 보이스피싱 경험 ..... 142

1. 특별주제 선정 취지 및 문항의 구성 ..... 142
2. 보이스피싱 경험 실태 ..... 143
3.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 150
4. 보이스피싱 피해 ..... 155

제4절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 157

1.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157
2.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159

## 제5장 한민경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163

제1절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 165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점 ..... 165
2.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 167

제2절 폭력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 169

1. 폭력범죄피해 내용 ..... 169
2. 폭력범죄피해 결과 ..... 177

제3절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 185

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 185
2.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 186
3.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188

제4절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 190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 190
2.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 191
3.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 191
4.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 192

## 제6장 한민경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195

제1절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	197
1. 재산범죄피해 발생시점 .....	197
2.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	199
제2절 재산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	200
1. 재산범죄피해 내용 .....	200
2. 재산범죄피해 결과 .....	210
제3절 주요결과 및 논의 .....	217
1.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	217
2.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	217
3.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	218

## 제7장 한민경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219

제1절 범죄피해 신고 .....	221
1. 신고 여부 및 이유 .....	221
2. 신고 및 미신고 이유 .....	223
제2절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	229
1. 경찰 조치 상황 .....	229
2. 경찰의 정보 제공 .....	230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32
4. 범인 검거 여부 .....	234
제3절 주요결과 및 논의 .....	235
1.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	236
2.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	236
3.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	237

4.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 238

**제8장** 김민영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 241**

제1절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 ..... 244

1.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46
2.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47
3.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48

제2절 가구의 특성과 범죄피해 ..... 250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0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52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53

제3절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255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5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60

제4절 개인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범죄피해 ..... 261

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 262
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 264

제5절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 266

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 266
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 267
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 269

제6절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 270

1. 2019년 조사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 270
2.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 272

## 제9장 김민영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 275

제1절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	278
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	278
2. 범죄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79
제2절 범죄두려움 및 영향요인 .....	284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별 응답 .....	284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87
제3절 범죄예방활동 및 영향요인 .....	294
1.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	294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95
제4절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	300
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 .....	300
2.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	301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연도별 비교 .....	306
제5절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	309
1. 2019년도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	310
2.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	313

## 제10장 김민영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제언 ..... 315

제1절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	317
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 개요 .....	317
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주요 활용 내용 .....	318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의견 검토 .....	321
제2절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324

참고문헌 ..... 331

Abstract ..... 345

부 록 ..... 357

[부록 1]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영문) ..... 357

[부록 2]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영문) ..... 372

[부록 3]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가구대표용)  
..... 389

[부록 4]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가구대표용)  
..... 405

[부록 5]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422

## 표 차례

[표 2-1-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전) .....	20
[표 2-1-2]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후) .....	22
[표 2-1-3] 추진체계 기관별 담당업무 .....	25
[표 2-1-4] 연구 수행 절차 .....	27
[표 2-2-1] 기초조사표 문항 구조의 변화 .....	38
[표 2-2-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1) .....	39
[표 2-2-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2) .....	42
[표 2-2-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3) .....	43
[표 2-2-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특별주제) .....	50
[표 2-2-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사건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 .....	54
[표 2-2-7] 조사모집단 분포 .....	63
[표 2-2-8] 시도별 조사구 분포 .....	64
[표 2-2-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가구대상 범죄 피해율과 상대표준오차 .....	65
[표 2-2-10] 목표 상대표준오차와 필요한 표본크기 .....	66
[표 2-2-11] 모집단과 표본의 조사구 분포 .....	67
[표 2-2-12] 표본추출 분류 기준 .....	68
[표 2-3-1] 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결과 .....	74
[표 2-3-2] 지역별 조사원 투입인원 및 유사 조사 경력자 .....	83
[표 2-3-3] 역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투입인원 .....	84
[표 2-3-4] 지역별 조사원 교육일 및 교육장소 .....	85
[표 2-3-5] 조사원 교육내용 및 교육 담당자 .....	86
[표 2-3-6] 조사원 현장점검회의 및 간담회 .....	87
[표 2-3-7] 가구 및 가구원 접촉결과 입력코드 .....	89
[표 2-3-8] 연구진의 지역별 실사 참여 .....	90
[표 2-3-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실사지도의 주요 내용 .....	90
[표 2-3-10] 조사구 대체 현황 .....	93
[표 2-3-11] 주간 지역별 실사 진행 결과(가구 수 기준) .....	94
[표 2-3-12] 조사표의 내검 절차 .....	95

[표 2-3-13] 주요 내검규칙 .....	96
[표 3-1-1] 원표본 가구 방문결과 .....	102
[표 3-1-2] 전체 접촉가구 방문결과 .....	102
[표 3-1-3] 조사 응답률 및 거절률 .....	103
[표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	106
[표 3-2-2] 표본과 모집단의 인구 분포 .....	108
[표 3-2-3]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	110
[표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가구가중치 적용) .....	112
[표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가중치 적용) .....	114
[표 3-2-6]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	117
[표 3-2-7]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	117
[표 3-2-8]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	118
[표 3-2-9]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	119
[표 3-3-1]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	121
[표 3-3-2]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	123
[표 3-3-3] 개인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	124
[표 3-3-4]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	125
[표 4-1-1] 연도별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	130
[표 4-1-2] 연도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	131
[표 4-1-3]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	134
[표 4-1-4]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	135
[표 4-1-5] 범죄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	136
[표 4-1-6] 범죄 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	137
[표 4-2-1] 연도별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	138
[표 4-2-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139
[표 4-2-3]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분포 .....	141
[표 4-2-4] 범죄 유형별 피해가구당 피해횟수 분포 .....	141
[표 4-3-1]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	144
[표 4-3-2]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	145
[표 4-3-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 .....	147
[표 4-3-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계속) .....	148
[표 4-3-5]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빈도 .....	149
[표 4-3-6] 보이스피싱 수법 .....	151
[표 4-3-7] 보이스피싱 경로매체 .....	153

[표 4-3-8] 사칭 금융기관 유형 .....	154
[표 4-3-9]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	155
[표 4-3-10]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	156
[표 4-3-11]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횟수 .....	156
[표 4-3-1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	157
[표 5-1-1]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	166
[표 5-1-2]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각 .....	166
[표 5-1-3]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	167
[표 5-1-4]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 거주자에 따른 구분 .....	168
[표 5-1-5]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가: 주택유형에 따른 구분 .....	169
[표 5-2-1] 폭력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70
[표 5-2-2] 폭력범죄피해 중 신체적 공격 여부 .....	172
[표 5-2-3]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	172
[표 5-2-4]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 .....	173
[표 5-2-5] 폭력범죄피해 당시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	174
[표 5-2-6]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	174
[표 5-2-7]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같이 있던 사람 포함)의 자기보호 노력 여부 .....	175
[표 5-2-8]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방법 .....	176
[표 5-2-9]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에 따른 결과 평가 .....	177
[표 5-2-10]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여부 .....	177
[표 5-2-11]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 .....	178
[표 5-2-12]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179
[표 5-2-13]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179
[표 5-2-14]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	181
[표 5-2-15]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	184
[표 5-3-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	186
[표 5-3-2] 폭력범죄 가해자의 수 .....	186
[표 5-3-3] 폭력범죄 가해자의 성별 .....	187
[표 5-3-4] 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	188
[표 5-3-5]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	188
[표 5-3-6]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189
[표 5-3-7]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세분 .....	190
[표 6-1-1] 재산범죄피해 발생 계절 .....	198
[표 6-1-2]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 .....	199

[표 6-1-3]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	199
[표 6-1-4]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직장(영업장소) 여부 .....	200
[표 6-2-1]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02
[표 6-2-2] 사기 피해내용 .....	203
[표 6-2-3] 사기 피해수법 .....	204
[표 6-2-4] 평균 사기 피해액 .....	205
[표 6-2-5] 사기 피해액 회수 여부 .....	205
[표 6-2-6] 절도 피해물품 .....	206
[표 6-2-7] 평균 절도 피해액 .....	207
[표 6-2-8] 절도 피해물품 회수 여부 .....	207
[표 6-2-9] 손괴 피해물품 .....	208
[표 6-2-10] 평균 손괴 피해액 .....	208
[표 6-2-11] 손괴 피해 보험회사 신고여부 .....	209
[표 6-2-12] 손괴 피해배상 여부 .....	209
[표 6-2-13]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210
[표 6-2-14] 재산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211
[표 6-2-15]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	212
[표 6-2-16]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	215
[표 7-1-1] 범죄피해 신고 여부 .....	222
[표 7-1-2] 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	223
[표 7-1-3]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	226
[표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여부 .....	229
[표 7-2-2]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내용 .....	230
[표 7-2-3]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경찰의 정보 제공여부 .....	231
[표 7-2-4]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 관련 경찰이 제공한 정보 이해 정도 .....	232
[표 7-2-5]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	233
[표 7-2-6] 범죄피해 신고 이후 범인 검거여부 .....	235
[표 8-1-1]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	245
[표 8-1-2]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46
[표 8-1-3]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48
[표 8-1-4]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49
[표 8-2-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0
[표 8-2-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52
[표 8-2-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54

[표 8-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6
[표 8-3-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	257
[표 8-3-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	259
[표 8-3-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60
[표 8-4-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	263
[표 8-4-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	265
[표 8-5-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	267
[표 8-5-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	269
[표 8-5-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	270
[표 9-1-1] 작년(2018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	279
[표 9-1-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	279
[표 9-1-3]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	281
[표 9-1-4]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	282
[표 9-1-5]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	283
[표 9-2-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에 대한 응답 .....	284
[표 9-2-2]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	285
[표 9-2-3] 범죄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	286
[표 9-2-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8
[표 9-2-5]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90
[표 9-2-6] 가구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92
[표 9-2-7]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 관계 .....	293
[표 9-3-1]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	294
[표 9-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	296
[표 9-3-3]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	297
[표 9-3-4] 가구특성과 범죄예방활동 .....	299
[표 9-4-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조사연도별 비교 .....	301
[표 9-4-2]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	303
[표 9-4-3]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	305
[표 9-4-4]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	306
[표 9-4-5]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조사연도별 비교 .....	309
[표 10-1-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수집 기준 .....	318
[표 10-1-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	319
[표 10-1-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	320



## 그림 차례

[그림 2-1-1] 추진체계 .....	23
[그림 2-1-2] 결과 제공(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보고서) .....	28
[그림 2-1-3]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CCJS) .....	29
[그림 2-1-4]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 CCJS-통계DB) .....	30
[그림 2-1-5] 결과 제공 (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표) .....	31
[그림 2-1-6] 결과 제공(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설명자료) .....	32
[그림 2-1-7] 통계청 국가지표 서비스 .....	33
[그림 2-1-8] 결과 제공(K-indicator) .....	33
[그림 2-1-9] 결과 제공(MDIS) .....	34
[그림 2-1-10] 결과 제공(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35
[그림 2-2-1] 조사표 종류 .....	36
[그림 2-2-2] 조사표 작성 프로세스 .....	37
[그림 2-2-3] 기초조사표 변경 (H. 가구 구성) .....	44
[그림 2-2-4] 기초조사표 변경(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	45
[그림 2-2-5] 기초조사표 변경 (혼인상태) .....	45
[그림 2-2-6] 기초조사표 변경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소지 여부) .....	46
[그림 2-2-7] 기초조사표 변경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	46
[그림 2-2-8] 기초조사표 변경(주택소유 유형) .....	47
[그림 2-2-9] 기초조사표 변경 (교육정도) .....	48
[그림 2-2-10] 기초조사표 변경 (VI. 조사원 확인사항) .....	49
[그림 2-2-11]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① .....	51
[그림 2-2-12]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② .....	52
[그림 2-2-13]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③ .....	53
[그림 2-2-14] 사건조사표 변경(1, 8-2, 10번 문항) .....	57
[그림 2-2-15] 사건조사표 변경(14, 17-4, 24-8번 문항) .....	59
[그림 2-2-16] 사건조사표 변경(25번 문항) .....	60
[그림 2-2-17] 조사표 표지 변경(인사말씀) .....	61
[그림 2-3-1] 조사 홍보(조사 안내문) .....	73

[그림 2-3-2] 조사 홍보(홈페이지 공지) .....	75
[그림 2-3-3] 조사 홍보(버스 광고) .....	76
[그림 2-3-4] 조사지침서 .....	77
[그림 2-3-5] 가구컨택 현황표 .....	78
[그림 2-3-6] 조사원증 .....	78
[그림 2-3-7] 조사 협조요청 공문 .....	79
[그림 2-3-8] 답례품 및 수령 확인서 .....	80
[그림 2-3-9] 조사표 작성요령서 .....	81
[그림 2-3-10] 리플렛 .....	81
[그림 2-3-11] 비밀보호용 봉투 .....	81
[그림 2-3-12] 코드표 .....	82
[그림 3-1-1] 시도별 원표본 가구의 조사 응답률 .....	104
[그림 3-1-2] 조사성공 가구의 방문횟수 .....	105
[그림 3-1-3]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 시간대 .....	105
[그림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	107
[그림 3-2-2]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 .....	109
[그림 3-2-3] 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	110
[그림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	111
[그림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가구원 규모(가구가중치 적용) .....	112
[그림 3-2-6] 도시규모별 가구의 거주기간(가구가중치 적용) .....	113
[그림 3-2-7]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	115
[그림 3-2-8]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	116
[그림 4-1-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	132
[그림 4-1-2]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2012~2018) .....	133
[그림 4-2-1] 10만 가구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	140
[그림 5-2-1]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	182
[그림 5-2-2]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	185
[그림 6-2-1]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	214
[그림 6-2-2]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	216
[그림 7-1-1]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	224
[그림 7-1-2]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	224
[그림 7-1-3] 폭력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	228
[그림 7-1-4] 재산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	228
[그림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평균값) .....	234

[그림 8-5-1] 가구 방범수준의 조사연도별 비교 .....	268
[그림 9-1-1] 작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	278
[그림 9-4-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 .....	301
[그림 9-4-2] '밤에 길'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가중치 미적용) .....	302
[그림 9-4-3] '밤에 길' 및 '밤에 집'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	303
[그림 9-4-4]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	304
[그림 9-4-5]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1) .....	307
[그림 9-4-6]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2) .....	308
[그림 9-4-7]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	308

## 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난폭 및 보복운전 피해→보이스피싱 경험)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가구원)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거주기간,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등),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특별주제(보이스피싱 경험)
  - 사건조사표: (2018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와 처리현황

###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

##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조사구):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추출(조사구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19.5.30.~2019.7.21.
- 조사완료: 6,704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c.re.kr](http://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http://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주요 분석 결과

### □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난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피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보고의 증가]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 □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주로 (연령대) 40~50대,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고, (직업) 사무종사자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전업주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소위 '기관사칭형'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 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 대상 집단 선별·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고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의 경우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

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재산범죄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다만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다.

-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 [지역사회 수준의 취약성 요인]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가구 수준의 취약성 요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가구 특성은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구 특성 중,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산범죄피해와 가구특성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중 대인절도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 중 사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사기범죄피해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인절도범죄피해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 외출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과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 응답사례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하루 혹은 거의 매일 밤10시 이후에 귀가(늦은 귀가)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2-3일 혹은 거의 매일 만취 귀가하는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먼저,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였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감소하고 있고 (단 사회적 무질서만이 2017년 2.13점에서 2019년 2.17점으로 소폭 증가), 경찰의 범죄통제력이 증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는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낮추는 긍정적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 수준에서는 조사된 8개의 방법수단 중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가구별 평균 4개의 방법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서는 특별한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 [범죄발생인식]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증가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범죄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은 각 문항별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문항(19.8%)에 대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12.6%)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서는 본인 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이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서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주거침입 > 사기 > 폭행 > 성폭력 > 절도 > 강도 > 괴롭힘 > 손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범죄예방활동] 2017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다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①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재산 및 폭력)

범죄피해율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발생인식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②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의 상반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발생인식은 2013년-2015년-2017년 동안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금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한 반면, 범죄두려움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 흐름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두 결과에 대해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③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연도별로 특이한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밤에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발전방향

####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 분석

-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조사자료(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한정, 다만 방법론적 의의를 논의한 연구는 포함)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학술논문 78건, 연구보고서 3건, 학술대회자료 38건, 학위논문 15건을 수집하였고, 해외에서는 해외학술논문 7건, 해외학위논문은 2건을 수집하였다.
- [주요 활용 내용] 수집된 자료의 종속변수 혹은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주로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유무,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 등)와 범죄피해 두려움(일반적 두려움,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외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 방법론적 개선방안, 일상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의견 검토] 대부분의 연구에서 향후 정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의 추가, 범죄피해 사례수의 부족, 패널 구축을 통한 종단분석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획 및 설계 관련하여, 특히 현재 가구 내 만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대상 조사에서 조사대상 연령 상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 제5차 조사에서와 유사하게 상습범죄피해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제5차 조사에 이어 올해도 공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사표의 일부 문항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료의 수집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종이 설문 이외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조사과정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 패널방식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이는 예산과 인력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료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시대변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공개 확대를 통한 학술·정책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서론

김민영

## 제1절 | 연구의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가시적인 피해정도가 낮은 것이거나, 형사사법절차를 기피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죄피해, 개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하는 범죄피해”에서 경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심영희, 1990: 279), 사건과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공식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고자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조사의 배경은 1990년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로서, 이를 기반으로 1991년 ‘서울 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1994년에는 전국을 범위로 한 ‘전국범죄피해에 관한 조사’가 제1차 조사로 시작되었고 이후 3년을 주기로 실시되었다. 기존 조사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9년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개편후 제1차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sup>1)</sup> 몇 차례의 개선작업이 지속되었다.<sup>2)</sup>

구체적으로 2011년 수행된 개편후 제2차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조사표의 구성을 간소화(4종에서 3종으로)하고 사건조사표의 포켓방식 질문제시방법 사용 등을 통해 전체 조사표의 분량을 줄여 조사 부담을 줄였다(김지선·홍영오, 2011:

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 개편과정과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김은경 외(2009)의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2) 아래 개편과정의 내용은 최수형 외(2017)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보고서의 제1장을 참고하여 재구성 및 추가하였다.

38-39). 2013년 수행된 개편후 제3차 '2012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범죄피해 선별 질문체계를 보완하는 등 기초 및 사건조사표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범죄유형 분류체계를 수정하고 범죄유형 판별조건식을 재구성하였다(김은경 외, 2013: 41-43, 104-108). 이러한 개편 과정으로 인하여 2009년 전면개편 이전 자료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11년의 조사자료 역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의 전체적 체제가 안정화된 2013년 개편후 제3차 조사를 기점으로, 2015년 제4차 조사, 2017년 제5차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가 구축되고 있다. 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사내용과 방식이 수정되어 이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어렵다면,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조사의 시계열적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최수형, 2015: 12). 이에 제4차 조사에서는 범죄피해 선별 문항에 설명문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판별식을 일부 수정하여 괴롭힘 등 새롭게 조사된 범죄피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최수형 외, 2015: 17-84). 제5차 조사에서는 기초조사표에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자기통제' 변인을, 사건조사표에 범죄피해 이후 범죄예방활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조사원 확인사항에 '일반 피해 수'를 기입하여 최종 사건조사표수를 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최수형 외, 2017: 32-46).

올해 수행된 개편후 제6차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안정적 자료 구축을 위하여 기존 제3차 조사의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기초조사표에서 가구구성 관련 문항(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혼인상태, 장애인 여부)을 인구주택총조사와 응답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사건조사표 일부 문항에서 지시문 추가 및 문항보완 등 응답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특별주제로 '보이스피싱'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제1차 정례조사에서 특별주제로 조사된 '피싱과 신용도용'을 고려하여 진행된 주제이다. 지난 제5차 정례조사에서는 조사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특별주제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조사하였으며(최수형 외, 2015: 18), 이번 제6차 정례조사에서도 그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경험을 조사하였다. 다만 조사부담을 고려하

여 특별주제 조사내용은 조사표의 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혁을 배경으로, 올해 보고서에서는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이 경험한 범죄피해를 조사하여 주요 범죄피해율을 제시하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신고 등의 사후 대응,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제2절 |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과정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수행과정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 본 조사의 진행을 확인하고 변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다음번 정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9년도 조사결과가 모집단의 주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검토하고, 가중치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적용된 범죄피해판별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금년 조사의 범죄피해율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경험한 개인 대상 폭력 및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피싱 경험을 다루었으며, 이는 2009년도 조사에서도 특별주제(피싱과 신용도용)로 조사되었기에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폭력범죄 발생실태와 재산범죄 발생실태를 사건을 기준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범죄피해를 경험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비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와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후 경찰의 신고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금년에 조사된 개인 대상의 폭력 및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해와 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관계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추가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향후 범죄발생 인식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식 및 활동과 개인 수준, 가구 수준,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발생 인식,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만 제8장 제1절~4절과 제9장 제1절~제3절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고려한 설문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제8장 도입부분에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집·검토하여, 어떠한 조사내용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확인하였다. 정책과정에서의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승인통계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와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김성근 외,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학술적 활용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박 희 정

## 제2장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 제1절 | 조사개요

#### 1. 연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0년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와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는 2년 주기의 정례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정례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비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사업체 등의 피해대상별 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1991년에 처음으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4년에 최초로 전국단위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이후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오다, 2009년에 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가 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되면서, 통계청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조사에 대한 협조도를 높이고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 승인통계 명과 조사명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는데, 변경 후에 응답자들의 거부감과 초기 거절률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과제의 연속성과 직관적인 전달력,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명은 그대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되면서 조사의 여러 측면이 변화하였다. 국

가승인통계가 되기 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단위의 조사였고, 조사대상자의 나이도 14세 이상, 15세 이상, 만 16세 이상 등으로 변동이 있었다.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4세 이상으로 확정하였고,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조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모든 조사에서는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주제 관련하여서는,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 조사(「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에서는 ‘피싱 및 신용도용’을, 2017년 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는 ‘난폭/보복 운전피해’를 특별주제로 선정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하였다. 2019년 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는데, ‘피싱 및 신용도용’을 조사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범죄피해가 줄지 않고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실사조사기관 관련하여서는,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통계청에서, 2015년 조사부터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조사업체가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이전 · 이후의 대략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표 2-1-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전)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1년 (1991년)	- 지난 5년 동안과 1990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6세 이상(서울) - 조사방법: 전화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1.2.6.~2.11. - 조사완료: 2,000 가구(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이 씨 닐슨(주) 한국지사
2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1994년 (1995년)	- 1993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4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4.4.1.~4.15. - 조사완료: 2,029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1997년 (1997년)	- 1996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7.5.1.~5.7. (서울/경기는 6.20일 까지 추가 조사) - 조사원료: 2,04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1999년 (1999년)	- 1998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9.5.1.~5.10. - 조사원료: 2,10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학생 중에서 조사원 선발)
5	세계범죄 피해조사 : 한국편	2000년 (2000년)	- UNICRI 주관, UN 제공 조사표 사용/ 지난 5년 동안과 1999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만 16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0.6.28.~7.21. - 조사원료: 2,043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리서치플러스연구소
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V)	2003년 (2003년)	- 2002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3.2.17.~3.7. - 조사원료: 2,048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리서치뱅크, 조사협조대학
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V)	2006년 (2006년)	- 2005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6.3.27.~4.7. - 조사원료: 2,05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RI조사원풀/조사협조대학 학생 중 조사원 선발)

자료: 심영희 외(1991)의 제2장 참고; 최인섭·박순진(1993); 최인섭·기광도(1997); 박순진·최영신(1999); 장준오(2000); 최인섭 외(2003); 김지선 외(2006) 각각 제1장 참고

[표 2-1-2]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후)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2009년 (2009년)	*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2009.7.22.) * 국가승인통계번호 획득(2009.8.12.) - 200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피싱 및 신용도용)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09.9.14.~9.23.(보완조사: 9.30~10.30) - 조사원료: 4,710가구, 10,671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조사대행과
2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0	2011년 (2011년)	- 2010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1.4.26.~5.13. - 조사원료: 7,550가구, 16,5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표본과, 조사대행과)
3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2	2013년 (2014년)	*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국가승인통계명과 조사명 변경 * 가구주에서 가구대표 응답자로 용어 변경 - 2012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3.5.29.~6.12. - 조사원료: 6,300가구, 13,31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표본과, 조사대행과)
4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4	2015년 (2015년)	- 2014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5.5.29.~7.17. (메르스로 인한 연장) - 조사원료: 6,960가구, 14,97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밀워드 브라운미디어리서치
5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6	2017년 (2017년)	- 2016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난폭/보복 운전피해)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7.5.1.~6.16. - 조사원료: 6,100가구, 13,2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칸타 퍼블릭
6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8	2019년 (2019년)	- 201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보이스피싱)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9.5.30.~7.21. - 조사원료: 6,704 가구, 13,13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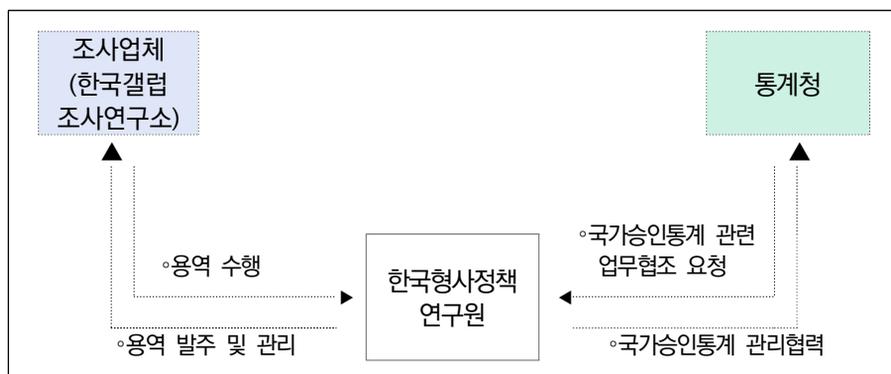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09) 3/4장 참고; 김지선·홍영오(2011); 김은경 외(2009); 최수형 외(2015); 최수형·조영오(2017) 각 2장 참고

## 2. 추진체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총괄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청과 협조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조사업체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그림 2-1-2) 참고).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조사수행업체를 선정하였다. 통계청에 통계작성 컨설팅을 신청하여 단계별 컨설팅을 받았으며,<sup>3)</sup>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식 등을 결정하였다. 인지면접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확정하였고, 조사지침서를 본 조사에 맞게 개편하였다. 통계청에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는 지역별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였고, 일부 조사 실사에는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원과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원들이 조사 시에 겪었던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자료로 정리하였다. 조사완료 후에 조사수행업체가 제출한 결과 데이터를 검수하고, 최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고서 및 데이터 등의 결과 제공방안을 결정하였다.

▶▶▶ [그림 2-1-1] 추진체계



3)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의 컨설팅(통계작성 컨설팅 제도)은 제1차~제3차 조사에 대한 통계대행과의 조사대행 이후, 제4차~제6차 조사에 대해 이루어졌다(최수형·조영오, 2017: 262). 금년에는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에 관해 지원을 받아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공표, 서비스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통계청이 관리한다.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계작성기관에 요청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이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승인통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 입찰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본 조사의 조사업체로 한구갤럽조사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조사업체는 가장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의 결정사항을 기반으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지면접조사와 조사용품 준비, 조사 홍보를 담당하였다. 지역별 조사원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조사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와의 현장점검회의, 조사원 간담회의 사전준비도 담당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코딩과 내검을 실시하였고, 최종 결과 데이터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제출하였다.

통계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신청한 국가승인통계의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작성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였다.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 통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본 과제에 대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그밖에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비롯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표 2-1-3] 추진체계 기관별 담당업무

기관	담당업무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수행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계획 수립</li> <li>- 조사용역 발주 및 용역수행 관리</li> <li>-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li> <li>- 표본설계방식 결정</li> <li>- 인지면접조사 실시</li> <li>-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 의뢰</li> <li>-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개편</li> <li>-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li> <li>- 지역별 조사원 교육</li> <li>- 조사 실사 참여</li> <li>-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점검회의 개최</li> <li>- 조사원 간담회 개최</li> <li>-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법 결정</li> <li>- 최종 데이터 검수 및 데이터 분석</li> <li>- 보고서 작성 및 발간</li> <li>- 보고서 및 조사결과 제출, 웹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 제공</li> <li>- 2020년 추진계획 수립</li> </ul> </li> <li>• 통계작성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신청</li> <li>- 회의 추진 및 컨설팅 결과 반영</li> </ul> </li> <li>• 국가승인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li> </ul> </li> </ul>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용역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설계 실시</li> <li>- 인지면접조사 사전준비</li> <li>- 조사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li> <li>- 지역별 조사원 교육</li> <li>- 조사업무 총괄</li> <li>-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점검회의, 조사원 간담회 사전준비</li> <li>- 데이터 코딩 및 내검</li> <li>- 최종 결과 데이터 제출</li> </ul> </li> </ul>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li> <li>• 통계작성 변경 승인</li> <li>• 통계작성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통계 선정 및 컨설팅 제공</li> </ul> </li> <li>• 국가승인통계관련 업무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li> </ul> </li> </ul>

### 3. 추진일정

1월에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발주 예정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 입찰을 추진하였다. 표본설계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도 2월부터 시작하였다. 조사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조사표 개편을 위한 인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에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한 검증과정 후에는 본조사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사지침서 개정을 비롯하여 조사용품 준비와 홍보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활용가능 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5월에 결과를 받은 이후, 통계작성 변경 승인 역시 5월에 완료하였다. 이후 지역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일부 지역별 실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조사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원과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통계청 통계대행과 통계작성 컨설팅팀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중치 부여와 추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통계표 개편을 위한 연구진 회의도 계속해 나갔다. 1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에 조사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통계청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2월에 통계작성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3월에 대상 통계로 선정되어, 단계별로 컨설팅을 받으며 추진하였다. 2019년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하는 해로, 3월에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12월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였다.

조사의 결과물 관련하여,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결과를 통계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나라통계시스템과 MDIS 관련 부서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파일을 제출하고, KOSIS와 국제기구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원 과제수행 일정으로는, 2월에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12월에는

▶▶ [표 2-1-4] 연구 수행 절차

월	주요 추진내용	국가승인통계 관리	연구원 과제수행
1월	연구계획 수립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신청	
2월	발주예정 영역 원가계산 의뢰 전문가 자문회의(2회)	통계작성 컨설팅 신청 국가승인통계관리 교육	수정 연구 계획서 제출
3월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1회)	KOSIS 통계DB관리시스템 이용자 정기교육 통계조정과, 조사시스템관리과와 업무추진 회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제출	착수보고서 제출 착수보고회 개최
4월	전문가 자문회의(2회) 조사업체와 영역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조사표 인지면접조사 조사업체 영역 착수보고회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 조사시스템관리과와 업무추진회의 나라통계시스템 조사통계 사용자교육 통계대행과와 통계작성 컨설팅 회의	
5월	예비조사 조사표 확정 및 조사원 교육 예비조사 실시 조사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승인 본조사 조사표확정/지역별 조사원교육 본조사 실시		
6월	지역별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 참여 지역별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점검	통계대행과 통계작성 컨설팅 회의 2회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중간보고서 제출
7월	연구진 일부 지역 조사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2회) 데이터 코딩 및 내검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중간보고회 개최
8월	데이터 코딩 및 내검 조사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1회)		
9월	최종 데이터 검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2회)		
10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020 년	조사업체 산출물 최종 점검, 영역 종료 2020년 추진계획 수립(대내외 조사결과 제출 및 학술대회 개최)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제출  결과 제공: 통계청 KOSIS, 나라통계시스템, MDIS, 국제기구 자료 제공	최종수정 보고서제출 교정 및 보고서발간 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학술대회개최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29)를 참고하여 수정

최종수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 2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전문(PDF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함 관련 파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포털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4. 결과 제공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웹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고서는 조사년도 12월에 책자로 발간되고, 보고서 전문 PDF 파일은 조사년도 다음해 2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index.jsp#none)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보고서는 2017년 12월에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8년 2월에 PDF 파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PDF 파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그림 2-1-2] 결과 제공(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보고서)

제목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저자	최수영, 최영오
포지		등록일	2018-02-09
비표표기	010	분류기호	17-48-04
항목	PDF	발간일	2017년 12월
	국문오락 100	판매가격	15,000원
		언어	한국어
		판매처	한해
		면수	535
		조회수	1646
		다운로드	859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0276&paramPage=1)

## 나. 범죄통계포털 CCJS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를 서비스하고 있다. 범죄와 형사사법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CCJ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http://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 [그림 2-1-3]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CCJS)

자료: 범죄통계포털 CCJ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 1) 통계DB

CCJS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를 통계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메뉴는 크게 기초통계표 분석과 상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는 영문 통계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국·영문 조사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4]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 CCJS-통계DB)



자료: 범죄통계포털 CCJ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www.crimestats.or.kr/portal/stat/victimEasyStatPage.do)

## 2) 마이크로데이터

CCJS의 '마이크로데이터' 메뉴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과제의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 웹페이지

CCJS의 '범죄동향' 메뉴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스'에서는 인포그래픽 정보로, '범죄피해 동향'에서는 다양한 차트와 테이블로 서비스하고 있다.

## 다.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는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sup>4)</sup>,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도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 1) 통계표

현재 KOSIS(kosis.kr/index/index.do)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 총 38개의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림 2-1-5] 결과 제공 (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표)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2) 통계설명자료

KOSIS(<http://meta.narastat.kr/>)에서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와 조사표를 비롯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http://kosis.kr/serviceInfo/kosisIntroduce.do>)[검색일: 2019.10.26.]

▶▶ [그림 2-1-6] 결과 제공(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설명자료)

The screenshot shows the KOSIS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통계설명자료' (Statistical Explanation Data), '통계별설명자료조회' (Search by Statistical Category), '조사표조회' (Search by Questionnaire), '응여조회' (Search by Response), '승인통계현황' (Approved Statistical Status), and '도움말' (Help).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통계설명자료조회' section with buttons for '설명자료조회', '항목시계열조회', and '설명자료비교'. A '내러받기 및 인쇄' (Download and Print) button is also presen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criteria section with three steps: 1. 주제구분 (Topic Category), 2. 기관선택 (Agency Selection), and 3. 통계선택 (Statistical Selection). The selected criteria are: 주제: '주제를 선택하세요.', 기관: '기관분류를 선택하세요.', and 통계: '국민생활안전진설조사'. The search results show a list of items, with the first one selected: '통계명: 국민생활안전진설조사',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 (☎ 02-3460-5160)', and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_국민생활안전진설조사2019.pdf'. A 'Download' button is available for this item.

Below the search results, there is a '2016' filter and a '통계개요' (Statistical Summary) section. This section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 (☎ 02-3460-5160)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위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통계(활용)분야- 실태	통계(활용)분야- 실태	사회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범위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준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조사대상 지역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On the right side of the '통계개요' section, there is a '관련자료보기' (View Related Data) menu with options: '통계개요', '표본설계', '통계추경·주제 및 분석', and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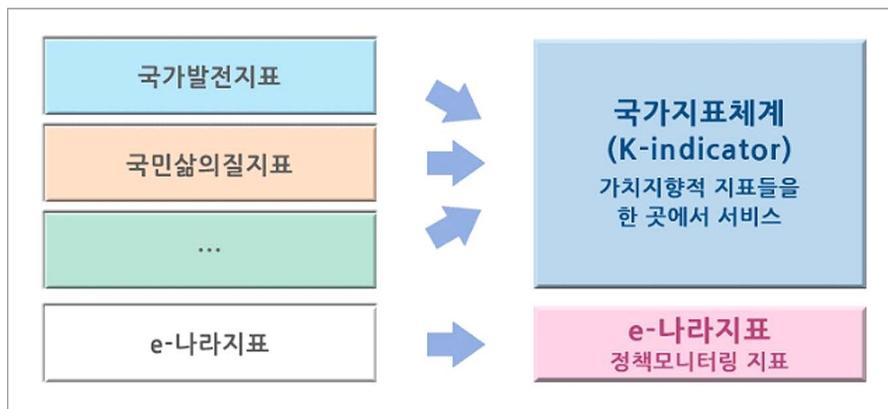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 [검색일: 2019.10.26.]

## 라.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통계청의 국가지표 서비스는 가치지향적 지표를 모아 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지표체계(K-indicator)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지표체계(K-indicator)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및 여러 영역에 대한 국가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삶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5)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검색일: 2019.10.26.]

» [그림 2-1-7] 통계청 국가지표 서비스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검색일: 2019.10.26.]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에서는 ‘범죄와 사법정의’의 ‘범죄피해’ 지표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인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피해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8] 결과 제공(K-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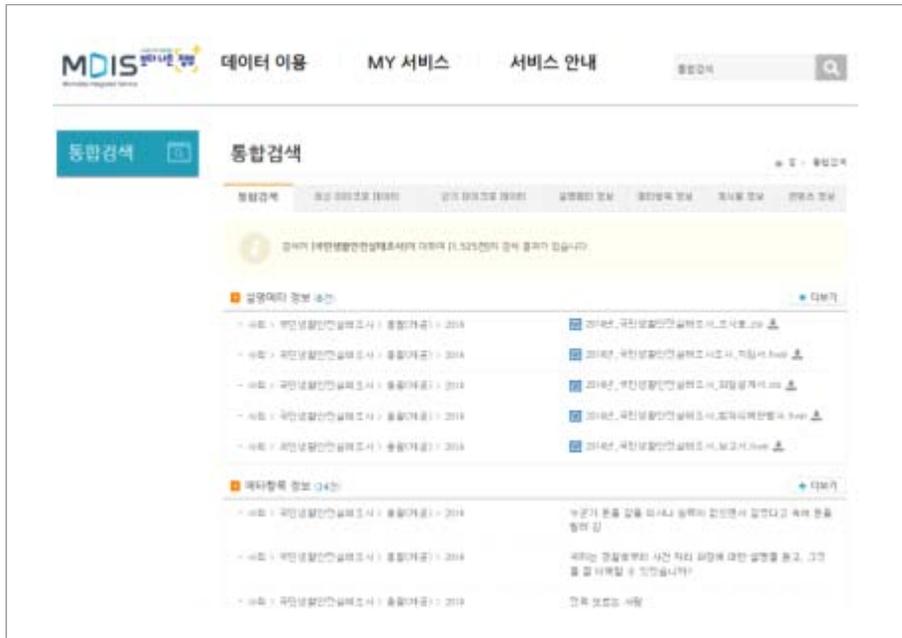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4>)[검색일: 2019.10.26.]

마. MDIS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구축, 다양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sup>6)</sup>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고서가 발간되면, 결과 데이터와 조사표 등을 통계청에 제출한다. 통계청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MDI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9] 결과 제공(MDIS)



자료: MDI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UI\\_POR\\_P1001](h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UI_POR_P1001)

6)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UI\\_POR\\_P1001](h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UI_POR_P1001) [검색일: 2019.10.26.]

## 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sup>7)</sup>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는 KOSSDA 홈페이지(<https://kossda.snu.ac.kr/>)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 » [그림 2-1-10] 결과 제공(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KOSSDA search results page. The search query is '전국범죄피해조사'. The results are filtered to show 2,423 items. The page lists several search results, including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by 김은경,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by 최수형, and '전국범죄피해조사, 2008' by 김은경. Each result includes a download button labeled '데이터 다운로드'.

자료: KOSSDA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s://kossda.snu.ac.kr/simple-search?query=%EC%A0%84%EA%B5%AD%EB%B2%94%EC%A3%84%ED%94%BC%ED%95%B4%EC%A1%B0%EC%82%AC>)

7) KOSSDA 홈페이지(<https://kossda.snu.ac.kr/component/about>)[검색일: 2019.10.26.]

## 제2절 | 조사설계

### 1. 조사내용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서 시계열적인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표를 현재에 맞게,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으나, 조사표 개편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사표는 만 14세 이상인 모든 응답자가 작성하는 기초조사표와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만이 작성하는 사건조사표(파란색)로 구분된다.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초록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가구대표 응답자는 가구8)의 생활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반드시 가구주이거나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김은경 외, 201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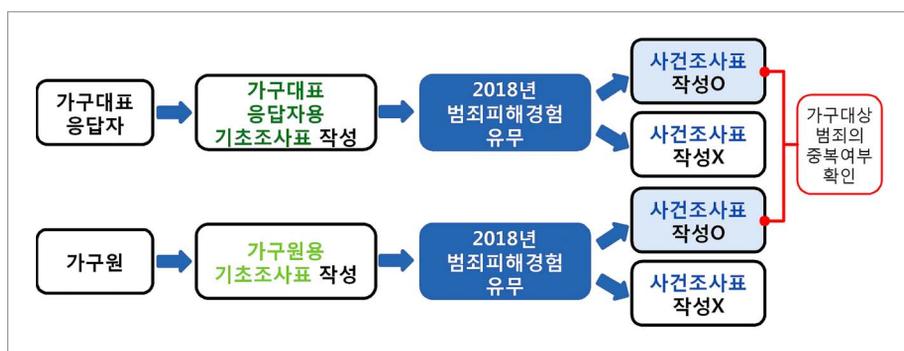
▶▶ [그림 2-2-1] 조사표 종류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용	가구원용	
<p>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정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용]</p> <p>조사 항목</p> <p>본문 질문: 1. 가구원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구성)을 설명하십시오. (가정구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이상 가구)</p> <p>2.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3.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KIC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Gallup</p>	<p>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정조사표: 가구원용]</p> <p>조사 항목</p> <p>본문 질문: 1. 가구원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구성)을 설명하십시오. (가정구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이상 가구)</p> <p>2.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3.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KIC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Gallup</p>	<p>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p> <p>조사 항목</p> <p>본문 질문: 1. 가구원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구성)을 설명하십시오. (가정구성: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이상 가구)</p> <p>2.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3.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원 수를 설명하십시오.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p> <p>KIC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Gallup</p>

8)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나 혈연이나 혼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통계청, 2014: 7)

조사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이 먼저 각각의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 기초조사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초조사표에서 2018년에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만 추가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한다. 기초조사표는 한 명당 한 부씩 작성하며, 사건조사표는 상습피해인 경우를 제외하고(상습피해는 1부 작성), 범죄피해를 경험한 수만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 » [그림 2-2-2] 조사표 작성 프로세스



자료: 최수형 외(2015: 18) [그림 2-1] 참고

## 가. 기초조사표

기초조사표는 기본 문항과 특별주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문항은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문항이고, 특별주제 문항은 해당 조사년도의 특별주제에 맞게 추가된 문항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특별주제는 보이스포싱으로 관련 문항은 총2페이지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의 문항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 졸업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사하고,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되었다.

▶▶ [표 2-2-1] 기초조사표 문항 구조의 변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H. 가구 구성		×	H. 가구 구성		×		
I. 동네와 이웃 환경		○	I. 동네와 이웃 환경		○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		
	11. 늦은 귀가 빈도	○		11. 늦은 귀가 빈도	○		
	12. 만취 귀가 빈도	○		12. 만취 귀가 빈도	○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		
	14. 일상생활 만족도	○		14. 일상생활 만족도	○		
	15. 일상생활	○		15. 일상생활	○		
	16. 범죄예방 활동	○		16. 범죄예방 활동	○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
		18. 이사 경험 및 횟수		×		18. 이사 경험 및 횟수	×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
		19-1. 영업을 알리는 상호 혹은 간판		×		19-1. 영업을 알리는 상호나 간판	×
20. 주택소유 유형		×	20. 주택소유 유형	×			
21. 교육정도		○	21. 교육정도	○			
			21-1. 상세 교육정도	○			
22. 월평균 가구소득	×	22. 월평균 가구소득	×				
IV.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IV.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V. 난폭/보복은 전 경험 관련		○	V. 보이스피싱 경험		○		
VI. 조사원 확인사항	점검 항목	○	VI. 조사원 확인사항	점검 항목	○		
	2.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 수준	×		2.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 수준	×		
	3. 주택의 유형	×		3. 주택의 유형	×		

1) 기본 문항 및 변경 사항 검토

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는 크게 [H. 가구 구성], [I. 동네와 이웃 환경],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III. 배경 문항], [IV.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V. 보이스피싱 경험], [VI. 조사원 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조사표에는 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에 있는 [H. 가구 구성]의 전체 문항,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의 집이 비어있는 시간, [III. 배경 문항]에서 교육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 [VI. 조사원 확인사항]에서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수준, 주택의 유형 문항 등이 빠져 있다. 가구원 개인이 아닌 가구에 대한 질문은 가구대표 응답자만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사문항별로 응답기준 시점이 상이하기에, 아래 표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표 2-2-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1)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현재	H. 가구 구성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에 대해 작성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종사상 지위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소지 여부
			출신 국가(외국인만 응답) 사유 코드(조사원 작성)
2018년 연말	I. 동네와 이웃 환경	1. 동네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1) 쓰레기 무단투기, 지저분
			2) 어둡고 후미진 곳
			3) 방치된 차나 빈 건물
			4) 기초 질서 미준수자
			5) 불량 청소년 무리
			6)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
		2.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	1) 이웃 간 친밀도
			2) 동네 이야기
			3) 이웃 돕기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2018년 과 비교하여 현재 현재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4) 동네 행사와 모임 참여		
			5) 괴롭힘 당하는 아이 보호		
			6) 범죄사건 신고		
			7) 범죄예방 순찰활동 참여		
			3.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	1) 순찰활동	
				2) 신속한 출동	
				3) 범인 검거	
		2018년 과 비교하여 현재		4. 범죄발생 증감에 대한 예상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5. 일반적 두려움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1) 나 자신			
		2) 배우자(애인)			
		3) 자녀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1) 몰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 것에 대한 두려움			
		2)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3) 구타(폭행) 당하여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			
		4) 속임을 당해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5)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6)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7) 집에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			
		8)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괴롭힐 것에 대한 두려움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1) 범죄피해 가능성			
		2) 폭행 방어능력			
		3) 범죄피해 결과의 심각성 및 지속성			
2018년 한 해 동안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1) 신체 피해		
			2) 재산 피해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11. 늦은 귀가 빈도			
		12. 만취 귀가 빈도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14. 일상생활 만족도	
		15. 일상생활	1) 외출시 고급스런 옷차림
			2) 유명 브랜드 사용
			3) 범죄관련 프로그램 시청
			4) 범죄관련 대화
			5) 위험한 일 시도
			6) 포기 성향
			7) 쉽게 화를 내는 정도
			8) 몸으로 하는 일 선호
			9) 현재 일에 대한 관심
			10) 남에 대한 동정심
		16. 범죄예방 활동	1) 야간 문단속
			2) 호신도구 소지
			3) 야간 동행
			4) 위험지역 피함
			5) 야간 외부활동 자제
			6) 야간 혼자 택시탑승 자제
			7) 동네 자율방범활동 참여
			8) 집을 비울 때 이웃에게 도움 요청
현재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 이사 경험 여부 및 횟수	

▶▶▶ [표 2-2-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2)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현재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19-1. 영업을 알리는 상호나 간판	
		20. 주택소유 유형		
		21. 교육정도		
			21-1. 상세 교육정도	
2018년 한 해 동안	IV.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22. 월평균 가구소득		
		23.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피해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4.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또는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5. 주거침입을 당했거나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6.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쓰게 한 피해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7. 예시 장소에서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8. 예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9. 예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30. 예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그걸 뺏힌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018년 한 해 동안	V. 보이스 피싱 경험	31.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수신 여부
31-2.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구 기관				
31-3.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청 이유				
31-4.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32.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수신 빈도			
	33.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경로			
	34.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험 여부 및 횟수			
	35.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35-1. 재산상 손해 미발생 이유			

▶▶ [표 2-2-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3)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 (level2)	문항(level3)						
현재	VI. 조사원 확인사항	1. 점검 항목	23번 숙임관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4번 물건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5번 침입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6번 손상관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7번 장소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8번 방법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9번 지인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30번 성추행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총 피해 경험 수 (미수 포함)						
			총 사건조사표 수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수준	1) 특수 잠금장치						
			2) 방법창(쇠창살)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 구멍						
			4) 출입카드 사용						
			5) 도난 경보시스템						
			6) 경비원						
			7) CCTV 등의 감시카메라						
			8) 외부 조명						
			9) 유흥업소 밀집지역						
			10)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						
			11) 공단지역(공장 밀집지역)						
			12) 대규모 재래시장						
		3. 주택의 유형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 규모	층수	형태		
				그 외	지상/ (반)지하/ 옥상(옥탑)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표를 변경하였다.

[H. 가구 구성]은 가구대표 응답자만 작성하는 부분으로, 조사시점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 관련 항목을 조사함에 있어 본 조사에서는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라는 문구를 넣고, 보기 번호를 추가하여 조사표 작성 전에 하단의 보기 항목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 [그림 2-2-3] 기초조사표 변경 (H. 가구 구성)

H 현재 귀객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1]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보기2]	증사상 지위 [보기3]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 소지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외국인만 응답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 불응하다 사유 코드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1	① 가구대표 응답자 본인		(양 / 음) 년 월						
2			(양 / 음) 년 월						
3			(양 / 음) 년 월						
4			(양 / 음) 년 월						
5			(양 / 음) 년 월						
6			(양 / 음) 년 월						
7			(양 / 음) 년 월						
8			(양 / 음) 년 월						

[보기1]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2] 직업	[보기3] 증사상 지위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① 임금근로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② 사무종사자	② 자영업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⑦ 손자녀(중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조부모		⑤ 기술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기타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⑩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의 보기 항목은 인구총조사 조사문항을 검토하여 보다 간명하게 수정하였다(통계청, 2018: 20).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증손자녀, 증손자녀의 배우자를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로 통합하였고,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통합하였다.

▶▶ [그림 2-2-4] 기초조사표 변경(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⑦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⑧ 조부모	
⑪ 조부모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⑩ 기타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본 조사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였다(통계청, 2014). 그렇기에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조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혼인상태]의 보기 항목을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즉,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 있음에 동거를, 사별이나 이혼에 별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응답자들이 혼란 없이 보다 명확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2-5] 기초조사표 변경 (혼인상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미혼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② 현재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		③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는 가구원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카드(9)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개인이 판단하는 장애인 여부와 법률상 장애인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 조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가지고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sup>10)</sup>

▶▶ [그림 2-2-6] 기초조사표 변경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소지 여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장애인만 응답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소지여부
<u>장애인 복지카드</u>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Ⅲ.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의 11번과 12번 문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고 있는 빈도(한 달 평균 며칠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보기 항목 중 기존의 '거의 매일'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었다(일주일에 '6일~7일', '5일~7일', '4일~7일' 등). 이에 다른 보기 항목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4~7일'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다.

▶▶ [그림 2-2-7] 기초조사표 변경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11</div>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11</div>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 ② 일주일에 2~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 발급함. 복지포(www.bokjiro.go.kr) 웹사이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검색일: 2019.10.9.]

10)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주관적 장애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장애여부를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다(오봉욱, 2016; 2018; 오봉욱·양승돈,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b>12</b>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p> <p>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p>	⇒	<p><b>12</b>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p> <p>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p>

Ⅲ. 배경 문항의 20번 문항 [주택소유 유형]의 보기 항목 역시 인구총조사의 문항을 고려하여(통계청, 2018: 18)<sup>11)</sup> 다음과 같이 그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그림 2-2-8] 기초조사표 변경(주택소유 유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b>20</b>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p> <p>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p>	⇒	<p><b>20</b>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p> <p>① 자기 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부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관사, 사택 등)</p>

Ⅲ. 배경 문항의 21번 문항 [교육정도]에서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에 대해 질문하고, 재학, 졸업, 중퇴 등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금년도 조사표에서는 상세 교육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도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11) 다만 인구총조사에서는 “집의 점유형태”를 질문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기존 문항에서 “집의 소유 형태”를 질문하고 있어 질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림 2-2-9] 기초조사표 변경 (교육정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p>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p> <p>ⓐ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p>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21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p> <p>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2, 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p>	<p>21-1</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p>

[VI. 조사원 확인사항]에서는 [1. 점검 항목]의 [3.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④ 사건조사표 수=일반피해 수 + 상습피해 수]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조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3. 주택의 유형]에서는 문항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 (반)지하, 옥상(옥탑)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 [그림 2-2-10] 기초조사표 변경 (VI. 조사원 확인사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3. 주택의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기타(오피스텔 등) (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 ___동 2) 층수: ___층 중 ___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3. 주택의 유형	
① <u>아파트</u>  ② <u>오피스텔</u>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 ___동 2) 층수: ___층 중 ___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③ 단독주택 ④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⑥ 기타 ( )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옥상(옥탑)

2) 특별주제 문항의 변경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다. 2013년 조사 이후 조사체계와 내용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제5차 조사에서도 ‘난폭 운전/보복운전’을 특별주제로 조사하였으며, 금년 조사 역시 지난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기에 특별주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8년 한국의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의 특별주제가 ‘피싱 및 신용도용’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주제를 다시 한 번 조사함으로써 피싱과 같은 신종금융사기범죄가 시작 되는 초창기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의 피싱범죄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다양한 예방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인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국민이 보이 스피싱 범죄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표 2-2-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특별주제)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2018년 한 해 동안	V. 보이 스피싱 경험	31. 보이 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수신 여부	31-1. 수법
			31-2.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구 기관
			31-3.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청 이유
			31-4. 보이 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32. 보이 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수신 빈도	
		33. 보이 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경로	
		34.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험 여부 및 횟수	
35. 보이 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35-1. 재산상 손해 미발생 이유		

금년도 조사문항을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의 설문문항과 비교해보았다. 먼저, 2009년도 조사에서는 ‘보이스 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라고 하였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로 변경하였다. 응답자가 보이 스피싱 범죄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되는 모든 연락을 포함한 것이다. 수법도 변화하여 2009년도에는 전화국, 국세청, 우체국을 사칭한 경우가 보기의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은행 등의 금융기관 사칭, 채용관련 사칭, 수사감독기관 사칭 등을 우선 배치하였다.

▶▶ [그림 2-2-11]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①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보이스피싱 경험 ]
<p><b>문19</b> 작년(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p> <p>1. 있다 →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b>문19-1</b> 으로</p> <p>① 전화국 사칭(전화 요금 연체) ②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③ 우체국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도착) ④ 택배회사 사칭 ⑤ 신용카드회사 혹은 은행 사칭(신용카드 대금 연체) ⑥ 수사기관 사칭 ⑦ 가족을 사칭한 송금요구 문자메세지 ⑧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 거짓위험을 알림 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특별행사 경품 당첨 ⑩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⑪ 기타(구체적으로: )</p> <p>2. 피싱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b>문19-1</b> 으로</p> <p>3. 없다 → <b>문20</b> 으로</p> <p><b>문19-1</b> 피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약 ___회</p> <p><b>문19-2</b> 피싱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1. 자택전화 2. 직장·영업장 전화 3. 휴대폰 4. 이메일 5. 메신저 6. 기타(구체적으로: )</p>	<p><b>31</b>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 응답 후 <b>31-1</b> 번으로</p> <p><b>31-1</b>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 응답 후 <b>31-2</b> 번으로</p> <p>②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③ 수사·감독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감원 등) ④ 가족 사칭 ⑤ 친구 사칭 ⑥ 국세청 사칭 (세금 환급금 지불) ⑦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 (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⑧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 (통신비 연체) ⑨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⑩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⑪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⑫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p> <p>→ 응답 후 <b>32</b> 번으로</p> <p>②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응답 후 <b>31-4</b> 번으로</p> <p>③ 없었다 → 조사종료</p>

▶▶ [그림 2-2-12]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②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보이스피싱 경험 ]
<p><b>문19-3</b> 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p> <p>1.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p> <p>2.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p> <p>3. 없다</p> <p><b>문19-4</b> 피싱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까?</p> <p>1.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만 원 → <b>문20</b> 으로</p> <p>2. 아니다</p> <p><b>문19-5</b>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p> <p>1.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사기 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p> <p>2.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p> <p>3.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p> <p>4. 현금 자동지급기에 부착된 홍보용 안내문을 읽고서</p> <p>5. 기타(구체적으로: )</p>	<p><b>31-2</b>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p> <p>①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②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 ③ 신용카드 회사      ④ 보험회사 ⑤ 증권회사              ⑥ 캐피탈 회사 ⑦ 기타 (구체적으로: )</p> <p><b>31-3</b> 연락한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p> <p>①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②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③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④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⑤ 기타 (구체적으로: )</p> <p>▶▶ 응답 후 <b>32</b> 번으로</p> <p><b>31-4</b>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p> <p>① 스팸차단으로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하여서 ②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 (국제전화 등) ③ 기타 (구체적으로: )</p> <p><b>32</b>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습니까?</p> <p>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④ 3개월에 한 번 정도 ⑤ 거의 없음</p>

▶▶ [그림 2-2-13]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③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 [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보이스피싱 경험 ]
<p><b>문20</b> 작년(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가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어떤 행위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b>문20-1</b> 으로</p> <p>①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하려함 ② 대금결제 또는 현금인출을 하거나 하려함 ③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 함 ④ 휴대폰 개설하거나 하려고 함 ⑤ 새로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 발급 ⑥ 인터넷 사이트 가입 ⑦ 기타 개인정보의 도용행위</p> <p>2. 없다 또는 모르겠다 → <b>문21</b> 으로</p>	<p><b>33</b>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자택전화 ② 직장·영업장전화 ③ 휴대폰 ④ 메신저(카카오톡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p> <p><b>34</b>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①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 ②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 ③ 없다</p>
<p><b>문20-1</b> 그렇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p>	<p><b>35</b>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①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만 원 → 조사종료</p>
<p><b>문20-2</b> 당신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1. 신용카드나 다른 계좌가 정지되어서 2. 계좌로부터 돈이 인출되거나 지불이 청구되어서 3. 미지급된 청구서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나 수금회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4.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5. 신용카드, 가계수표 등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6. 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7. 신용거래 혹은 대출이 거절되어서 8.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9. 개인정보유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10. 기타(구체적으로: )</p>	<p>② 아니다 → 응답 후 <b>35-1</b> 번으로</p> <p><b>35-1</b>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사기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 ②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 ③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④ 은행 창구 직원의 조언으로 ⑤ 지연인출제도로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서 ⑥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부착된 홍보용 안내문을 읽고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p>

나. 사건조사표

기초조사표에서 2018년에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사건조사표의 문항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 다만, 보기 항목과 지시문 등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표 2-2-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사건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현재 거주 집 여부		
	2. 발생월		
	3. 발생 시간대		
	4. 현재 시군구 여부		
	5. 발생장소	5-1. 발생장소 5-2. 구체적인 장소 5-3. 직장(영업장소) 여부	
II. 범행 수법	6. 집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미수 포함)	6-1. 가해자와의 동거 또는 허락 여부	
	7. 실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7-1. 들어온 방법 7-2. 가구원이 있었는지 여부 7-3. 구체적인 가구원	
	8. 가해자의 무기 소지 또는 사용 여부	8-1. 무기 종류 8-2. 가해자의 사전 준비 여부	
	9. 가해자의 신체적인 공격 (성폭력포함)		
	10. 구체적인 사건 내용		
	11. 가해자의 위협(협박) 방법		
	12. 구체적인 신체공격 내용	12-1. 폭행이나 성폭행 전 가해자의 위협 여부	
	III. 신체 피해	13. 신체적 피해 유형	
		14. 검사 또는 치료 장소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14-1. 병원 치료 여부
		14-2. 병원 입원 여부
		14-3. 의료비 총액
		14-4.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14-5. 가해자의 신체 피해(상해) 보상 내용
IV. 피해자의 대응	15. 응답자의 주취 여부	
	16.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16-1. 다른 사람이 상해나 위협 또는 강도를 당했는지 여부 및 피해인원
	17.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보호 노력 여부	17-1. 구체적인 행동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
		17-3.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7-4. 대응행동 시점		
17-5. 대응행동의 결과		
V. 재산 피해	18.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 피해	18-1. 사건 내용
		18-2. 사기 수법이나 수단
	19.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 맞았거나 빼앗겼는지 여부	19-1. 피해인지 시점
		19-2. 피해물품 종류
		19-3. 자전거나 차량의 직접 전달 여부
		19-4. 가해자의 직접 접촉 여부
		19-5. 구체적인 피해물품
		19-6. 피해금액
		19-7. 피해물품 혹은 금액의 회수
		19-8. 가구원 외에 재산 피해 여부 및 피해인원
	20. 손상(파손)된 물건 종류	20-1. 보험회사 신고 여부
		20-2. 수리비 또는 재구입 금액
		20-3. 피해배상 내용
20-4. 수리 또는 재구입 여부 및 소요기간		
VI. 정신적 피해	21. 사건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이나 고통	1) 우울감(무력감, 자신감 상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7) 자살 충동		
		8) 자살 시도		
		9) 그 외의 고통		
		21-1.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21-2. 상담 또는 진료 여부, 진료기간 및 비용		
		22. 사건전후 감정 변화	1) 방어 자신감	
			2) 자존감	
			3)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4)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5)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VII. 가해자의 특성	23. 가해자 특성 인지 여부	
23-1. 가해자 인지 경로				
23-2. 가해자 유형				
23-3. 가해자 인원				
23-4. 가해자 성별				
23-5. 가해자 연령대				
23-6. 가해자 주취 여부				
23-7. 가해자와의 관계	23-7-1. 관계 유형			23-7-2. 구체적인 관계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경찰 신고 여부			
		24-1. 경찰 신고 이유		
		24-2. 경찰의 조치 여부		
		24-3. 경찰의 조치 내용		
		24-4.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24-5. 경찰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24-6.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24-7. 가해자 검거 여부		
		24-8.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1) 경찰 활동으로 인한				
2) 검찰 활동으로 인한				
3) 법원관련 활동으로 인한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24-9. 경찰 미신고 이유
	25. 범죄피해 이후 범죄예방 활동 변화	1) 야간 문단속
		2) 호신도구 소지
		3) 야간 동행
		4) 위험지역 피함
		5) 야간 외부활동 자제
		6) 야간 혼자 택시탑승 자제
		7) 동네 자율방범활동 참여
		8) 집을 비울 때 이웃에게 도움 요청

비고: 문항(Level3, Level4)부분의 공란은 문항(Level2)의 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내용이 있다는 의미임

사건조사표의 1번 문항은 질문 내용을 간명하게 수정하였으며, 8-2번 문항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던 보기 항목을 모두 단순과거형으로 수정하였다. 10번 문항도 다음과 같이 보기 항목(②,③)을 과거형으로 수정하였다.

▶▶ [그림 2-2-14] 사건조사표 변경(1, 8-2, 10번 문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b>1</b>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p> <p>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p>	<p><b>1</b> 그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p> <p>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p>
<p><b>8-2</b>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p> <p>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p>	<p><b>8-2</b>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p> <p>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다 ③ 모르겠다</p>
<p><b>10</b>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b>10</b>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 손괴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9</span> 번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했음 ③ 심한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혔음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 손괴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9</span> 번으로

사건조사표 14번 문항에서는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검사 또는 치료한 장소가 어디 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보기 항목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와 [② 종합병원 · 병원 응급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음 14-1번 문항으로 이동하고, [③ 의료적 처리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 · 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을 선택한 응답자는 14-3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14-1번 문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14-2번 문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는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조사표 17-4번 문항에서는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보기 항목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을 삭제하였다. 17-3번 문항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먼저 질문하였다. 신체 피해(상해)를 입은 경우는 17-4번 문항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7-5번 문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7-4번 문항을 답하고 있는 사람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은 경우로, 보기 항목에 [신체 피해(상해) 없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조사표 24-8번 문항 응답을 마친 후에는 25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지시문을 넣었다. 먼저 24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질문하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24-9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24-8번 문항을 답한 사람은 24번 문항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답한 사람으로 24-9번 문항 미신고 이유를 답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 [그림 2-2-15] 사건조사표 변경(14, 17-4, 24-8번 문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b>14</b>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p>	<p><b>14</b>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 (구체적으로 : )</p> <p style="text-align: right;">→ 응답 후 <b>14-1</b> 번으로</p> <p style="text-align: right;">→ 응답 후 <b>14-3</b> 번으로</p>																								
<p><b>17-4</b>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p> <p>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p>	<p><b>17-4</b>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p> <p>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u>모르겠음</u></p>																								
<p><b>24-8</b>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문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있었다</th> <th style="text-align: center;">없었다</th> </tr> </thead> <tbody> <tr> <td>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body> </table>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p><b>24-8</b>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문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있었다</th> <th style="text-align: center;">없었다</th> </tr> </thead> <tbody> <tr> <td>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__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body> </table> <p>▶▶ 응답 후 <b>25</b> 번으로</p>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사건조사표 25번 상세 문항들을 기초조사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기초조사표 16번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사건조사표 25번 문항에서는 범죄피해 이후 응답자의 범죄예방 활동이 증가했는지를 묻고 있다. 기초조사표와 상이했던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그림 2-2-16] 사건조사표 변경(25번 문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스프레이, 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다닐 때에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편물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 기타 조사표의 변경

조사내용 외에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표의 일부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표지 다음 페이지에 넣어 응답자가 조사 문항에 답하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폐기 등에 동의한 이후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조사표 작성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표를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사례비(답례품) 수령 확인서를 만들지 않고, 조사표의 마지막 문항이 있는 페이지 하단에 확인서를 추가하였다. 조사표 작성 후에 응답자가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 국가승인통계 마크가 2018년 2월 21일에 변경되어 최신 마크로 변경하였고, 조사표표지에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조항) 및 32조(성실응답의무) 조항을 넣고 안내문구를 변경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표지의 가구 구성의 이미지를 변경하였고, 조사표표지의 인사말씀에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관련 법조항(「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과 조사기관의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 [그림 2-2-17] 조사표 표지 변경(인사말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p>○○○에서는 <b>한국형사정책연구원</b>과 함께 「<b>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b>」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p> <p><b>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b>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p> <p>♣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p>	<p>○○○은 국무총리실 산하 <b>한국형사정책연구원</b>과 함께 「<b>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b>」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b>범죄피해자보호법</b>」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u>응답해 주신 자료는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u></p> <p>⇒ <b>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b>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p> <p>☎ 담당자 ○○○ 차장 02-0000-0000 과장 02-0000-0000</p>

##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이전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종이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기입하였으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때, 응답자가 원활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조사표 작성요령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 3. 표본설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표본 규모를 산정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모집단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감옥, 군대, 요양원 등 집단 거주지의 거주자는 제외되며, 부대 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조사 모집단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 지역 조사구는 제외한다. 조사 모집단의 총 가구수는 19,673,875개이다<sup>12)</sup>. 14세 이상의 인구수는 45,215,424명이며,

12) 가구 자료: KOSIS 인구총조사(인구부문) > 총조사인구(2015년이후) > 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 > 전수기본표 > 인구, 가구 및 주택-읍면동(2015), 시군구(2016~) > 일반가구(2017년) <가구형태>

- 일반가구(가구구분 항목 ①~④,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가구구분 항목 ⑤)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

이 중 동부 거주자는 37,232,142명이고, 읍면부 거주자는 7,983,282명이다. 조사 모집단의 시도별, 동/읍면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2-2-7]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1	전국	16,142,761	37,232,142	3,531,114	7,983,282	19,673,875	45,215,424
2	서울	3,813,260	8,730,870	-	-	3,813,260	8,730,870
3	부산	1,354,401	3,059,707	-	-	1,354,401	3,059,707
4	대구	948,030	2,166,490	-	-	948,030	2,166,490
5	인천	1,080,285	2,561,491	-	-	1,080,285	2,561,491
6	광주	575,732	1,299,744	-	-	575,732	1,299,744
7	대전	597,736	1,333,081	-	-	597,736	1,333,081
8	울산	428,720	1,001,293	-	-	428,720	1,001,293
9	세종	60,851	128,868	43,474	95,087	104,325	223,955
10	경기도	3,806,189	9,171,045	796,761	1,966,551	4,602,950	11,137,596
11	강원도	372,104	810,704	248,625	542,906	620,729	1,353,610
12	충청북도	363,985	824,133	265,088	593,346	629,073	1,417,479
13	충청남도	373,688	830,010	461,298	1,060,837	834,986	1,890,847
14	전라북도	502,953	1,126,660	225,918	485,929	728,871	1,612,589
15	전라남도	306,906	677,051	426,851	905,847	733,757	1,582,898
16	경상북도	565,104	1,244,171	522,703	1,133,406	1,087,807	2,377,577
17	경상남도	819,777	1,870,906	473,221	1,044,272	1,292,998	2,915,178
18	제주도	173,040	395,918	67,175	155,101	240,215	551,019

비고: 7대 특광역시의 읍면부는 동부에 통합함

## 나. 표본추출틀

금년 조사에서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sup>13)</sup>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parmTabId=M\_01\_01&statId=1962001&themaId=A. 최종접속일: 2019.11.11.

13) 조사구는 전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지도상의 건물, 거처,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구역을 분할한 것. 조사구번호는 조사구번호는 4자리(예: 001-A)로 되어 있으며, 앞 3자리는 읍·면·동 내에서 분할된 조사구의 일련번호이며, 뒤 1자리는 해당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냄(통계청, 2018: 24).

및 가구원이다. 총 조사구 수는 341,309개이고, 이 중에서 동부는 조사구는 269,985개, 읍면부 조사구는 71,324개이다. 시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2-2-8] 시도별 조사구 분포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보통	아파트	계	계	계	
1	전국	132,272	137,713	269,985	71,324	341,309
2	서울	38,836	25,357	64,193	-	64,193
3	부산	11,220	11,989	23,209	-	23,209
4	대구	7,479	8,084	15,563	-	15,563
5	인천	8,699	9,224	17,923	-	17,923
6	광주	3,641	5,766	9,407	-	9,407
7	대전	4,518	4,959	9,477	-	9,477
8	울산	3,180	4,022	7,202	-	7,202
9	세종	22	1,128	1,150	788	1,938
10	경기도	27,941	34,228	62,169	13,375	75,544
11	강원도	2,791	3,510	6,301	6,126	12,427
12	충청북도	2,624	3,435	6,059	5,777	11,836
13	충청남도	2,624	3,707	6,331	8,726	15,057
14	전라북도	3,642	4,923	8,565	5,369	13,934
15	전라남도	2,098	3,264	5,362	8,623	13,985
16	경상북도	4,626	5,126	9,752	11,812	21,564
17	경상남도	6,230	7,792	14,022	9,581	23,603
18	제주도	2,101	1,199	3,300	1,147	4,447

비고: 7대 특광역시외의 읍면부는 동부에 통합함

### 다. 표본규모 산출

본 조사의 표본 크기의 결정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결과 중에서 가구대상 범죄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목표 상대표준오차(desired relativ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RSE(\hat{p}) &= \sqrt{\frac{Q}{nP} \cdot \frac{N-n}{N-1}} \\
 &= \sqrt{\frac{Q}{nP}}
 \end{aligned}$$

여기서 N과 n은 각각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를 나타내고, P는 범죄피해율 나타내며, Q=1-P이다.

위의 식에 적용하여 범죄유형별 피해율의 추정치와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2-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가구대상 범죄 피해율과 상대표준오차

(단위: 개, %)

구분	유형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피해 가구수	피해율	상대표준오차 (CV)
주거침입 관련 가구대상 범죄	전체	610	6,100	81	1.33%	11.04%
	주거침입강도	610	6,100	-	-	-
	주거침입절도	610	6,100	67	1.10%	12.15%
	주거침입손괴	610	6,100	8	0.13%	35.33%
	단순주거침입	610	6,100	7	0.11%	37.77%
기타 가구대상 범죄	전체	610	6,100	79	1.30%	11.18%
	자동차절도	610	6,100	8	0.13%	35.33%
	자동차손괴	610	6,100	69	1.13%	11.97%
	단순손괴	610	6,100	2	0.03%	70.70%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107) 참고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이 1.0%이하인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자동차절도, 단순손괴 등의 상대표준오차는 35%이상으로 상당히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침입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를 합한 피해 가구수가 160가구이므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가구대상 범죄의 피해율은 2.623%(=160/6100)이고, 상대표준오차는 7.8013%이다.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여 목표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다양한 표본규모를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n_{18} = n_{16} \cdot \left(\frac{RSE_{16}}{RSE_{18}}\right)^2$$

목표 상대표준오차에 따라 필요한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 [표 2-2-10] 목표 상대표준오차와 필요한 표본크기

(단위: 개, %)

목표 상대표준오차	필요 가구수	필요 조사구수	기대 피해 가구수
7.2	7,161	651	188
7.3	6,967	633	183
7.4	6,780	616	178
7.438	6,710	610	176
7.5	6,600	600	173
7.6	6,427	584	169
7.7	6,262	569	164
7.8	6,102	555	160
7.9	5,949	541	156
8.0	5,801	527	152
8.1	5,658	514	148
8.2	5,521	502	145
8.3	5,389	490	141
8.4	5,261	478	138

가구범죄 피해율은 2012년 2.43%, 2014년 3.25%, 2016년 2.6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107; 최수형 외, 2015: 86; 김은경 외, 2013: 196). 기대 피해 가구수를 최소한 170여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구당 조사하는 가구수를 기존 10가구에서 11가구로 확대하여, 총 6,710가구를 목표 조사 가구수로 결정하였다.

#### 라. 총화 및 표본 배분

본 조사의 목표 조사 가구수는 6,710개 가구로, 1개 조사구 당 11개 가구를 조사하여 총 610개 조사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본조사구는 층화변수인 17개 시/도와 동/읍면부에 층화단계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표본대표성과 조사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본 배분을 위한 층화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 적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나눠 총 27개 하위그룹으로 층화하였다.

- 610개 표본조사구의 할당은 1차 층화변수인 17개 특광역시도에 대해서는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하여 17개 시도별 조사구수의 불균등적인 분포 특성을 보정하여 조사 후 모수추정치의 정도차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17개 시도별 할당된 조사구의 동부/읍면부에 대한 배분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지역내에서는 자체가중설계의 특성을 갖게 하였다.
- 만일 17개 특광역시/도와 동부/읍면부의 27개 층을 1차 층화변수로 간주하고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법으로 27개 층에 할당하였다면, 동부와 읍면부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지역에 상대적으로 과대배분이 되어 특광역시와 도지역간의 추출률 차이가 크게 되어, 특광역시에서 표본가중치가 크게 되므로 모수추정의 정도(precision)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 17개 자치광역단체별과 세종특별자치시와 도지역내의 동부/읍면부별 모집단의 조사구 분포와 표본할당 결과는 다음 표에 정리 요약하였다.

▶▶▶ [표 2-2-11] 모집단과 표본의 조사구 분포

(단위: 개)

구분	추출률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1	전국	269,985	71,324	341,309	483	127	610
2	서울	64,193	-	64,193	71	-	71
3	부산	23,209	-	23,209	43	-	43
4	대구	15,563	-	15,563	36	-	36
5	인천	17,923	-	17,923	38	-	38
6	광주	9,407	-	9,407	28	-	28

구분		추출률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7	대전	9,477	-	9,477	28	-	28
8	울산	7,202	-	7,202	24	-	24
9	세종	1,150	788	1,938	7	5	12
10	경기도	62,169	13,375	75,544	65	14	79
11	강원도	6,301	6,126	12,427	17	12	29
12	충청북도	6,059	5,777	11,836	17	12	29
13	충청남도	6,331	8,726	15,057	15	18	33
14	전라북도	8,565	5,369	13,934	21	10	31
15	전라남도	5,362	8,623	13,985	13	18	31
16	경상북도	9,752	11,812	21,564	20	18	38
17	경상남도	14,022	9,581	23,603	27	15	42
18	제주도	3,300	1,147	4,447	13	5	18

마. 표본 추출

표본조사구 추출은 27개 층별 모집단 조사구수와 할당된 조사구수를 기반으로 각 층별로 표본조사구를 아래 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 [표 2-2-12] 표본추출 분류 기준

1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 주택유형(해당 유형이 구성비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독일반                      ② 단독다가구                      ③ 아파트(60㎡이하)</li> <li>④ 아파트(85㎡이하)              ⑤ 아파트(135㎡이하)              ⑥ 아파트(135㎡초과)</li> <li>⑦ 연립다세대                      ⑧ 기타주택</li> </ul> </li> </ul>
2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세 이상 인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33미만                      ② P33~P66미만                      ③ P66이상</li> </ul> </li> </ul>
3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정도(대졸 구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50미만                      ② P50이상</li> </ul> </li> </ul>
4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구번호</li> </ul>

비고: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제공 기준이 변경되어, 1차분류 아파트 규모의 경우 '기존 59㎡이하, 86㎡이하, 129㎡이하, 129㎡초과'에서 '60㎡이하, 85㎡이하, 135㎡이하, 135㎡초과'로 변경하였음

지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표본가구의 추출은 추출된 조사구 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일정 간격으로 11가구를 계통 추출하였다.

$$\text{추출간격 } k = \frac{\text{조사구 내 가구수}}{11}$$

랜덤번호  $r$  (조사시작 가구)

표본가구  $r, r+k, r+2k, \dots, r+10k$

#### 4. 가중치 부여 및 추정<sup>14)</sup>

##### 가. 가중치 부여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다.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모집단을 추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확률추출법을 통한 표본조사에 쓰이는 가중치의 계산은 설계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등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는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는 확률(표본추출률)과 실제 조사진행시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답하는 확률(응답률)로 인해 애초의 설계와는 달라지는 편향(bias)을 줄이고, 조사된 표본에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56).

설계 가중치는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 내 가구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text{설계가중치}(w_{hi}^0) = \frac{S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S_h}{n_h \times m_{hi}}$$

14) 해당 부분은 조사체계가 안정화된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기존 연구보고서(최수형·조영오, 2016: 56-59)을 기준으로 일부 사항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 $h = 1, 2, \dots, 17$ )

$i$  : 표본 조사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

$S_h$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 (설계당시 가구수)

$M_{hi}$  :  $h$ 지역,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전체 가구수

$n_h$  :  $h$ 지역 내 표본 조사구 수

$m_{hi}$  :  $h$ 지역,  $i$ 번째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m_{hi} = m_h = 11$ )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응답률의 역수로 무응답을 보정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벤치마킹(benchmarking) 가중치 보정의 목적은 표본조사의 추정결과가 알고 있는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보정하는 것이다.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방법에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와 레이킹-비(raking Ratio)가 있다. 사후층화는 층(cell)별 총계 추정치가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보정하는 것으로, 추정식 형태가 층화추출 추정식 형태이다. 레이킹-비는 Rim weight 보정이라고 하며, 주변(marginal) 총계가 일치하도록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김영원, 2011: 75; 최수형·조영오, 2017: 57 재인용).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의 분포 특성과 모집단의 분포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승수로 표본조사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보정으로는 모집단 분포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벤치마킹 모집단 가구 및 인구의 분포에 따라 사후층화 조정한 것이며, 설계가중값과 사후층화 조정단계까지 결합하여 계산한 가중값이 최종가중값이다.

본 조사에서는 층 가중법을 사용하였다. 즉, 본 조사는 시도별(17) x 성별(2) x 연령대별(7) 구성에 따라 층화한 교차 셀을 구성하고 모집단에서의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각 층별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의 가구의 시도별 가구수(가구 가중치)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 자료(가구원 가중치)이다.

최종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w_{hij}^0) \times \text{사후층화가중치}(w_{h,g}) = \text{설계가중치}(w_{hij}^0) \times \frac{X_{h,g}}{\widehat{X}_{h,g}}$$

$X$ : 벤치마킹 추정치

$\widehat{X}$ : 표본에서 조사된 가구의 총가중값

$g$ : 벤치마킹시 고려할 그룹

## 나. 추정방식

본 조사의 주요 추정 대상은 모평균과 모비율로,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석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 산식이다.

$$\bar{y}_G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I[hij \in G]}$$

- $h = 1, 2, \dots, H$  : 지역층 ( $H = 16$ )
- $i = 1, 2, \dots, n_h$  : 조사구 ( $n_h$ 는  $h$ 지역 내 조사구수)
- $j = 1, 2, \dots, m_{hi}$  : 대상가구 ( $m_{hi}$ 는  $h$ 지역 내 총가구 수)
- $w_{hij}$  =  $h$ 지역의  $i$  조사구 내  $j$ 번째 가중치
- $y_{hij}$  =  $h$ 지역의  $i$  조사구 내  $j$ 번째 관심변수의 관측값
- $I(hij) = \begin{cases} 1 & i [hij \in G] \\ 0 & otherwise \end{cases}$

한편,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분석추정 방식인 테일러급수(Taylor series)의 형식을 적용한 근사식을 사용한 계산방법이며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다.

$$\widehat{Var}(\bar{y}_G) = \frac{\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w_{hiG}(\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bar{y}_{hsG} - \bar{y}_G)]^2}{(\sum_{h=1}^H \sum_{i=1}^{n_h} w_{hiG})^2}$$

- $W_{hiG} = \sum_j^{m_{hi}} w_{hij} I[hij \in G]$

그리고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는 다음과 같다.

-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 $\widehat{RSE}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오차의 한계 = 1.96 x  $\sqrt{var(\bar{y})}$

## 제3절 |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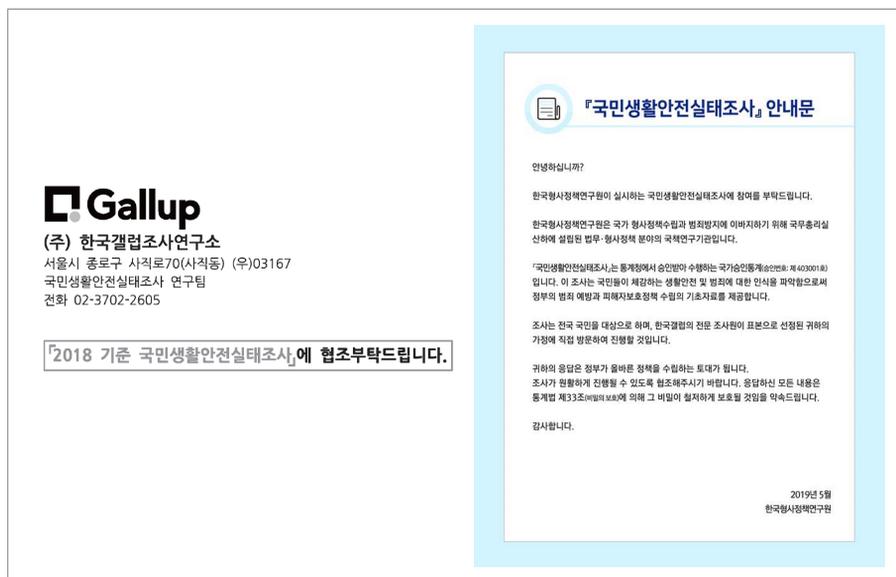
### 1. 조사 홍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조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는 조사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또한, 서울의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광고를 게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조사의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조사 안내문 발송

조사 시작 전, 원표본 가구인 6,710개 가구에 우편으로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조사 안내문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 [그림 2-3-1] 조사 홍보(조사 안내문)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는 아래 [표 2-3-1]과 같다. 대부분의 가구에는 발송이 완료되었으며(6,276개 가구, 93.5%), 반송함에 넣어져 있거나, 주소오류,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실사현장에 대한 방문 및 실사 이후 조사원간담회에서,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원들은 응답자의 조사신뢰도를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표 2-3-1] 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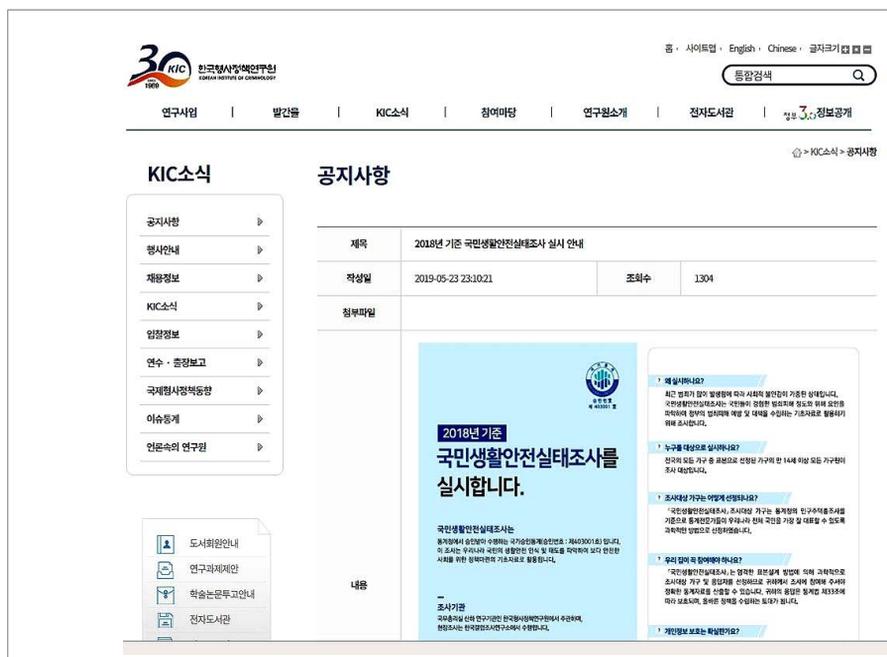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가구수(비율)	
발송완료	6,276	(93.5%)
반송함	179	(2.7%)
주소오류	158	(2.4%)
이사감	51	(0.8%)
미거주	46	(0.7%)
계	6,710	(100.0%)

#### 나. 홈페이지 공지

조사 시작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23일부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궤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3-2] 조사 홍보(홈페이지 공지)



#### 다. 버스 광고

서울의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대에 한 달간(2019.5.20~2019.6.19) 외부 광고를 게재하여 수도권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를 부착한 버스는 간선 402번과 간선 602번 버스 각 1대씩이며 버스의 대략적인 운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 간선 402 노선: 장기공영차고지↔광화문  
(가든파이크-수서역-양재역-강남역-신사역-남대문-시청앞-세종문화회관)
- 간선 602 노선: 양천공영차고지↔시청  
(목동역-등촌역-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오거리-이대역-서대문역-광화문)

버스 외부광고는 반복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개인차량 이용자와 도보자까지 광고를 볼 수 있으며, 매체 접촉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림 2-3-3] 조사 홍보(버스 광고)



## 2. 조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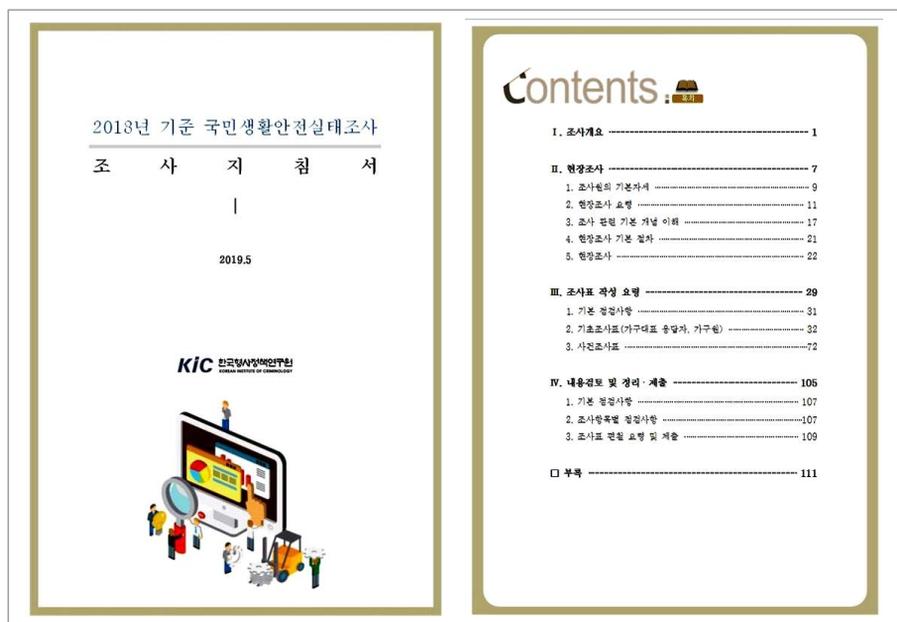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에 필요한 조사용품을 준비하였다. 조사용품은 조사원들이 실사 진행시 사용하는 조사도구로서, 조사원 교육 시에 그 목적과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본적인 조사용품에는 조사지침서, 조사구 요도, 가구컨택 현황표, 조사원증, 조사협조요청 공문, 답례품, 조사표 작성요령서, 리플렛, 비밀보호용 봉투, 코드표 등이 있다.

### 가. 조사지침서

조사원들이 본 조사의 목적과 실사과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를 제작하여 교육하였다(부록5의 지침서 참고).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개편하였다. 조사지침서는 조사원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로, 조사 시에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다.

» [그림 2-3-4] 조사지침서



### 나. 조사구 요도 및 가구컨택 현황표

조사원들은 통계청의 상세지도인 조사구 요도<sup>15)</sup>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요도'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휴대폰으로 명부상의 상세 주소를 검색하여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조사원들은 가구컨택 현황표에서 본표본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후에는 현황표에서 방문결과를 기입하여 기록을 남긴다.

15) 조사구 요도: 조사원이 담당해야 할 구역을 일정한 규격에 주요 지형지물과 명칭, 건물번호와 거처번호, 조사구 경계 등을 표시한 조사구 단위의 지도를 말함(「인구주택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8.12,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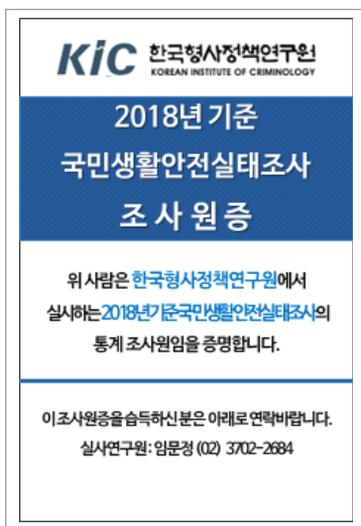
» [그림 2-3-5] 가구컨택 현황표

© 2019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가구 컨택 현황표															
1. 방문 대상		2. 연차		3. 지방자치단체		4. 시도 코드		5. 조사 방법		6. 기타					
조사대상		연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방문방법		기타					
NO.	가 ID	조사구 일련번호 (가구번호)	조사구 구분	보조 구분	가 ID 연차 번호	가 ID 시도 번호	시도	시군구	방문유형	방식	도포유형	컨택일련 번호	관동구태양상	종	호수
00001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1	서울								
00002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2	서울								
00003	11080780181	1	본조사구	본류분	002	003	서울								
00004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4	서울								
00005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5	서울								
00006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6	서울								
00007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7	서울								
00008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8	서울								
00009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9	서울								
00010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10	서울								
00011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5	011	서울								
00012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6	012	서울								
00013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7	013	서울								
00014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7	014	서울								
00015	11080780181	1	본조사구	본류분	008	015	서울								

다. 조사원증

가구방문조사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방문조사의 초기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발생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구방문조사의 경우 조사기관과 조사원

» [그림 2-3-6] 조사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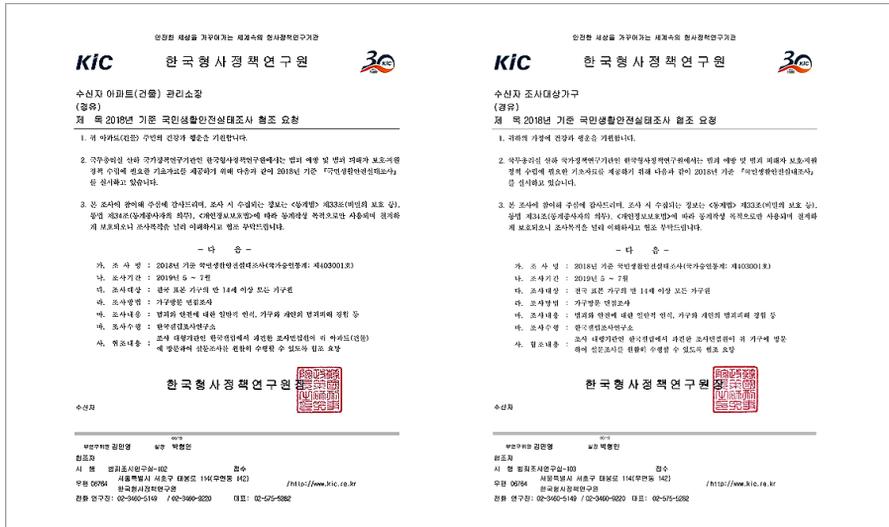
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뿐 아니라 이동시에도 조사원들이 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하였다. 조사원들을 경계하는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원증의 디자인은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였고, 조사수행기관인 한국궤립조사연구소의 직인을 넣음으로써 궤립 소속의 조사원임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 라. 조사 협조요청 공문

조사대상 가구용과 아파트 관리소장용 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준비하여, 조사원이 필요시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통해 조사기관과 조사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문의 연락처로 조사에 대해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담당 연구진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 [그림 2-3-기] 조사 협조요청 공문



### 마. 답례품

보통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답례품으로는 해피머니상품권과 농협상품권 오천원 권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례품은 가볍고 소지가 편하여 조사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답례품에 대한 수령 확인서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조사표에 넣어 조사표 작성 후에 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조사표를 작성한 1인당 상품권 1장씩 지급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부수만큼 추가로 1장씩 더 지급하였다. 상품권 추가 지급으로 인해 범죄피해 건수가 과대추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만큼 상품권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초조사표를 작성한 후에 전달하였다. 기초조사표에서 체크한 문항에 대해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그림 2-3-8] 답례품 및 수령 확인서



바. 리플렛 외의 조사도구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추후에 제출하기 원할 때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표와 조사표 작성요령서, 리플렛, 비밀보호용 봉투 등을 전달하고 오도록 하였다. 조사표 작성요령서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자료이며, 기초조사표용과 사건조사표용이 있다. 리플렛은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문의처가 담긴 자료이다. 작성한 조사표는 비밀 보호용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그림 2-3-9] 조사표 작성요령서

<p>◆ <b>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표 작성 요령: 기초조사표</b></p> <p>○ 본 조사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일으키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p> <p>○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기초조사표에는 중태와 미중태 및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항과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23번~25번까지의 문항은 <b>질문(2018년판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문항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의 항목 예시내용을 읽고 비슷한 피해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b></p> <p>✓ 23번~25번까지 응답해주시는 각각의 피해경험은 피해발생 장소나 시간, 범행수법 등이 달라야 합니다. 즉, 앞 문항에서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은 이후 문항의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는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피해경험을 응답해야 합니다.</p> <p>✓ 23번~25번까지 23번~25번까지의 피해경험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b>피해의 경험</b>을 포함 포함합니다.</p> <p>✓ 26번 문항에서 외출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나 가정용책, 스마트폰과 같이 특정 사물 또는 사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복적 성격 중립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역시 포함됩니다.</p> <p>○ 기초조사표 응답이 끝나시면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조사표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p> <p>✓ 26번~28번까지의 문항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이 비밀보호용 봉투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p> <p>◆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b>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표 작성 요령: 사건조사표</b></p> <p>가. 사건조사표(청색)는 2018년 한해 동안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만 경험한 범죄피해사건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나. 사건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입니다.</p> <p>다.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사건조사표의 수 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p> <p>라. 사건조사표는 특정 범죄에 관한 설문문항을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의 제시문에 따라 모든 문항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단, 설문지의 제시문에 따라 속임(사기) 피해인 경우는 <b>1번</b> 문항부터 응답합니다.</p> <p>마. 사건조사표의 '기초조사표 질문 항목' 항목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것으로 응답자는 문항 <b>1</b>번부터 응답 시작합니다.</p> <p>◆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p>
--	--

▶▶▶ [그림 2-3-10] 리플렛

▶▶▶ [그림 2-3-11] 비밀보호용 봉투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비밀보호용 봉투**

◎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심하세요!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 코드표

조사원은 다음의 코드표 내용에 따라 가구 접촉 결과, 가구원 접촉 결과, 가구원의 출신 국가의 코드를 기입하였다.

▶▶▶ [그림 2-3-12] 코드표

코드표 - 2019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가구 접촉 결과

구분	코드	내용
조사 진행	1	부분 조사
	2	유지
	3	재방문 약속
	4	일시 부재
조사 완료	5	조사 성공
	6	응답 불응
조사 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7	정기 부재
	8	응답 관련
조사 대상 가구 없음	9	빈집
	10	기타

※ 가구원 접촉 결과(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 3페이지 사유 코드)

구분	코드	내용
조사 완료	1	해당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사건 있는 경우)를 모두 완료
대리 응답	2	언어 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을 대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 등이 조사에 대리 응답함 (※ 높은 귀가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은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응답 불응	3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을 4회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4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조사기간 동안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를 못 함
응답 관련	5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조사 대상 아님	9	만 14세 미만 가구원

※ 가구원 출신 국가

구분	코드 및 내용			
아시아	01. 중국	02. 한국계중국인	03. 일본	04. 우즈베키스탄
	05. 몽골	06. 베트남	07. 필리핀	08. 타이(태국)
	0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18. 미국	19. 캐나다		
	유럽권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기타	23. 기타(력을 갖: )		

3.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경우에도 실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본 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 자체를 거절할 확률이 높고,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조사원의 역할과 영향이 큰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가. 조사원 선발 및 투입

본 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다. 조사원을 선발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가승인통계 조사 경험이 3회 이상이면서, 범죄나 안전 관련 주제의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최종 191명의 조사원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조사원 중에는 바로 이전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수행했던 조사원이 99명으로 51.8% 정도가 되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은 182명으로 95.3%에 달했다. 범죄피해실태 조사의 경우 조사 자체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성향이 강하여, 조사원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자는 본 조사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표 2-3-2] 지역별 조사원 투입인원 및 유사 조사 경력자

(단위: 개, 명(%))

구분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원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8 투입인원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6 경력자	성폭력 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경력자
1 서울/경기/인천	188 (30.8)	2,068 (30.8)	55 (28.8)	29 (29.3)	53 (29.1)
2 부산/울산/경남	109 (17.9)	1,199 (17.9)	36 (18.8)	21 (21.2)	35 (19.2)
3 대구/경북	74 (12.1)	814 (12.1)	25 (13.1)	11 (11.1)	24 (13.2)
4 대전/충남/충북/세종	102 (16.7)	1,122 (16.7)	30 (15.7)	21 (21.2)	28 (15.4)
5 광주/전남/전북	90 (14.8)	990 (14.8)	30 (15.7)	14 (14.1)	28 (15.4)
6 강원	29 (4.8)	319 (4.8)	8 (4.2)	1 (2.0)	7 (3.8)
7 제주	18 (3.0)	198 (3.0)	7 (3.7)	2 (1.0)	7 (3.8)
계	610 (100.0)	6,710 (100.0)	191 (100.0)	99 (100.0)	182 (100.0)

비고: 성폭력 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경력자: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자

가구방문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원의 동선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구 단위로 조사원에게 배분하였다.

조사원은 조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한 조사협조 요청 경험이 많은 조사원을 우선 배치하였다. 단독주택 지역은 해당 조사구의 지리를 숙지하는 조사원을 위주로 배치하였는데, 해당 조사구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조사구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조사원을 배치하였다. 조사구 특성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한 조사원을 우선 배치하였다.

지역별 조사구수에 따른 조사원과 조사관리자의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3주간 조사원 1명이 약 33개의 가구, 3개의 조사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1명의 조사원과 14명의 조사관리자가 투입되었다.

▶▶ [표 2-3-3] 역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투입인원

(단위: 개, 명(%))

구분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원			조사관리자 (슈퍼바이저)
			실제 투입인원	필요인원	예비인원	
1 서울/경기/인천	188 (30.8)	2,068 (30.8)	55 (28.8)	50 (28.9)	5 (27.8)	4 (28.6)
2 부산/울산/경남	109 (17.9)	1,199 (17.9)	36 (18.8)	33 (19.1)	3 (16.7)	2 (14.3)
3 대구/경북	74 (12.1)	814 (12.1)	25 (13.1)	23 (13.3)	2 (11.1)	2 (14.3)
4 대전/충남/충북/세종	102 (16.7)	1,122 (16.7)	30 (15.7)	27 (15.6)	3 (16.7)	2 (14.3)
5 광주/전남/전북	90 (14.8)	990 (14.8)	30 (15.7)	27 (15.6)	3 (16.7)	2 (14.3)
6 강원	29 (4.8)	319 (4.8)	8 (4.2)	7 (4.0)	1 (5.6)	1 (7.1)
7 제주	18 (3.0)	198 (3.0)	7 (3.7)	6 (3.5)	1 (5.6)	1 (7.1)
계	610 (100.0)	6710 (100.0)	191 (100.0)	173 (100.0)	18 (100.0)	14 (100.0)

## 나. 조사원 교육

조사원들이 원활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의 업무 숙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 지역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강원 등 총 7개 지역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한국궐림조사연구소의 지사 혹은 지역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구수와 조사원수가 가장 많고,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서울 지역부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2일씩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표 2-3-4] 지역별 조사원 교육일 및 교육장소

구분	조사원 담당지역	교육일		교육장소
		1차 교육	2차 교육	
1	서울/경기/인천	5월 29일(수)	5월 30일(목)	한국궐림 조사연구소
2	부산/울산/경남	5월 31일(금)	6월 3일(월)	
3	대전/충남/ 충북/세종	6월 3일(월)	6월 4일(화)	
4	대구/경북	6월 4일(화)	6월 5일(수)	
5	광주/전남/전북	6월 5일(수)	6월 7일(금)	
6	제주	6월 7일(금)	6월 10일(월)	
7	강원	6월 10일(월)	6월 11일(화)	

1차 교육은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목적과 개요, 현장조사 방법 및 파라데이터 작성방법,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 FAQ,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2차 교육에서는 이전 조사의 질의응답 사례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명부 및 파라데이터 작성과 조사표 작성을 직접 실습을 통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 [표 2-3-5] 조사원 교육내용 및 교육 담당자

구분	교육내용		교육 담당자
1차 교육	- 조사의 목적 및 개요	조사지침서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 현장조사 방법 및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기초조사표)		
	-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사건조사표)		
	- FAQ		
	- 질의응답		
2차 교육	- 이전 조사 질의응답 사례 교육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관리자 (슈퍼바이저)
	- 명부 및 파라데이터 작성 실습		
	- 조사표 작성 실습		
	- 질의응답		

#### 다. 조사원 간담회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관리자(슈퍼바이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조사기간 중에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 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었다. 현장점검회의는 통계청 통계작성 컨설팅팀과 함께 진행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하여 조치하였고, 다음 조사부터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자료로 작성하여 다음 조사에서 반영을 고려할 계획이다.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원 대상으로 사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7개 지역별 총 9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금번에 본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지역별로 편차를 가진 부분들도 있었다. 현장점검회의와 간담회 결과는 향후 조사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표 2-3-6] 조사원 현장점검회의 및 간담회

구분	구분	개최일	개최장소	
1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점검회의	6월 20일(목)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2	조사원 간담회	8월 19일(월)		서울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4. 조사 실시

### 가. 자료 수집

#### 1) 실사 관리체계

본 조사는 단기간 내에 전국의 표본 가구와 가구원을 방문해야 하는 대규모 조사로서, 조사대상자들의 문의사항과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실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7개 지역별 지사의 실장이 담당 지역별 조사원과 조사진행을 1차적으로 관리하고, 서울 본사의 실사 총괄팀장이 전국의 조사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도 긴밀한 협력 및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사안에 대해 빠르게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실사 진행 및 관리

본 조사는 작년 한 해(2018년) 동안 당한 범죄피해 경험을 알아보는 조사로, 기억 회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사 및 분석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하였다. 전문조사업체가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사하였고,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2015년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이전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최신 자료인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이 해당 조사구 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인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여러 번 방문 요일과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표를 남겨두고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이 경우, 같은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비밀보호용 봉투를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요령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추후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선별질문과 조사원 확인사항 등을 점검 및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진행시 접촉하는 모든 대상가구(원 표본 및 대체표본 가구)에 대한 접촉 과정에 대한 정보(접촉 결과, 방문 횟수, 방문일자, 방문시간 등)를 아래 코드를 활용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과정자료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을 조사하는 조사원을 위해 구축된 별도 앱을 통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경우는 가구명부에 기입한 이후 앱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 [표 2-3-7] 가구 및 가구원 접촉결과 입력코드

구분		코드	
가구 접촉 결과	조사 진행	1	부분 조사
		2	유치
		3	재방문 약속
		4	일시 부재
	조사 완료	5	조사 성공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6	응답 불응
		7	장기 부재
		8	응답 곤란
	조사대상 가구 없음	9	빈집
		10	기타
가구원 접촉 결과	조사 완료	1	
	대리 응답	2	
	응답 불응	3	
	일시 부재	4	
	응답 곤란	5	
	조사대상 아님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은 일부 지역 실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 [표 2-3-8] 연구진의 지역별 실사 참여

구분	조사일	조사지역		조사자
1	2019. 6. 14(금)	서울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㉔, 조사원 A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㉔, 조사원 B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㉖, 조사원 C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㉖, 조사원 C
2	2019. 6. 14(금)	경기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㉚, 조사원 D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㉚, 조사원 D
3	2019. 6. 17(월)	경남	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㉜, 조사원 E
4	2019. 6. 19(수)	강원	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㉔, 조사원 F
5	2019. 6. 20(목)	대구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㉚, 조사원 G
6	2019. 6. 25(화)	대전	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㉔, 조사원 H
7	2019. 7. 1(월)	전북	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㉔, 조사원 I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별 실사책임자(슈퍼바이저)와 면접원이 조사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였으며, 제6차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원 지침서를 기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금년도 조사의 실사과정에서는 아래 표의 사항이 주로 질의되어 답변을 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 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표 2-3-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실시지도의 주요 내용

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 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산하 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형사정책연구원 명의의 공문과 연구원 소개 리플렛을 적극 활용</li> </ul>
2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표본가구 중 사전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가구 &amp; 예비표본 가구는 안내문 수령 가구에 비해 덜 협조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후 조사에서 옥외 광고, 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사전 홍보 확대 고려</li> </ul>
3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우리 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조사는 통계청이 통계 작성 및 공표를 승인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이기 때문에 통계청으로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보된 가구명부를 제공받음</li> <li>과학적인 방식으로 가구를 추출하여 해당 가구를 접촉한 것일 뿐,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함</li> </ul>

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4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명부에 있는 주소가 불완전하여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가구가 2개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거처)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접촉 시도함</li> </ul>
5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조사구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지역으로 예비조사구를 지정해줄 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구는 연구자/실사 관리자/조사원 편익에 따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음</li> <li>전체 조사구 리스트 상에서 본조사구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인접조사구를 예비조사구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본조사구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된 예비조사구에서 조사해야 함</li> <li>만일 지정된 예비조사구에서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시도, 동일 동/읍면부내에 위치한 조사구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li> </ul>
6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표본 가구를 최대 4회까지 접촉한 후에 예비표본 가구로 이동하면 실사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응답 증가에 따른 표본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표본 가구 성공률이 무엇보다 중요함</li> <li>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표본 가구는 방문 요일 및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4회까지 방문해야 함</li> </ul>
7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 조사구 내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가 11가구 미만일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 조사구 내에서 11개 가구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li> <li>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최소 9가구는 조사해야 함 (9가구 미만 시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된 표본 전수 무효 처리)</li> </ul>
8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미참여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음</li> <li>전체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통계 생산에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고 설명</li> </ul>
9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의 지리적 경계에 대해 궁금해 함 (기초조사표 17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li> </ul>
10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교육 수준 문항(기초조사표 21번)에서 응답을 망설이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가 어떻게 응답했다는 식으로 부호화(coding)되어 데이터로 생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응답 내용은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솔직한 응답 유도</li> </ul>

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1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았지만 당시 통화 또는 문자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표 문31-2), 문31-3)에 보기 '모르겠다' 추가 검토</li> </ul>
12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확인사항 1 점검항목 (기초조사표 13페이지)에서 범죄 피해 경험은 있는데 사건조사표 작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만큼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사건조사표 수"는 어떻게 기입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하지 않은 경우 0건으로 입력</li> <li>• 작성은 했는데 작성해야 하는 수 만큼 안 쓴 경우는 실제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만 기입</li> </ul>
13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경험이 범죄 피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표 및 지침서에 제시된 구체 사례 이외의 사건일 경우 일단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범죄 성립 여부 사후 판단)</li> </ul>
14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확인사항 3. 주택의 유형(기초조사표 14페이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인 경우 단지 규모 건물 층수 확인이 쉽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관리실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기입</li> </ul>
15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에는 응답을 했는데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는 응답자 확인 및 응답 내용 검증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안내</li> <li>• 강력 거절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li> </ul>
16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부ID만 알면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를 알 수 있는데, 조사표마다 해당 정보를 일일이 기입해야 해서 번거로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조사 시 삭제 고려</li> </ul>
17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조사표에서 일부 문항(문10, 문11, 문12, 문13)이 보기 구성에서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MECE :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원칙에 위배됨</li> <li>• 응답자가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 많아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보기 안 읽고 기타 체크 후 피해 내용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의 종류가 많다 보니 부득이 일부 설문 선택 보기가 많고, 텍스트의 양도 많아짐</li> <li>• 제대로 읽고 충분히 생각한 뒤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li> </ul>
18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조사표 문5)에서 사건 발생 장소에 '우리 집'을 응답했는데 문6)에서 사건이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는지 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 관련 정보를 단일 조사표로 수집해야 하는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li> <li>• 추후 조사표 수정 검토</li> </ul>
19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조사표 문10)에서 도난/절도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문19)에서 도둑맞거나 빼앗긴 물건이 있는지 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 관련 정보를 단일 조사표로 수집해야 하는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li> <li>• 추후 조사표 수정 검토</li> </ul>
20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조사표 문14)에서 사건 발생 후 치료한 병원의 유형을 물은 뒤, 문14-1)에서 병원 방문 여부를 물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문14)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다'는 보기를 추가하거나 문항 순서 변경 검토</li> </ul>
21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조사표 문19-2)에서 피해 물품이 무엇인지 응답을 했는데, 문19-5)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함</li> <li>• 문19-2)에서 4개 이상 응답할 수 있는데 문19-5) 응답 란은 3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문19-5) 삭제 검토</li> </ul>

## 3) 조사구 대체

본 조사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추출된 조사구가 행정구역 변경과 재개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조사진행시에 집단 거주 조사구의 주민 민원이나 관리사무소 차원의 접근 거부 등 사유로 조사구가 대체될 수 있다.

전체 조사구 중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대체된 조사구는 총 49개였다. 구체적인 대체 사유는 관리사무소/주민단체에서 조사를 거부한 강력거절이 37건, 재건축(개발/공터)이 6건, 그 밖에 상가, 공장지역이나 상주 가구가 없는 경우가 6건이었다.

▶▶▶ [표 2-3-10] 조사구 대체 현황

no	시도	1차 대체 진행		no	2차 대체 진행		no	3차 대체 진행	
		조사구	분류		조사구	분류		조사구	분류
1	서울	○○○○○5A	강력거절	34	○○○○○7A	강력거절			
2	서울	○○○○○8A	강력거절						
3	서울	○○○○○4A	강력거절						
4	서울	○○○○○0A	강력거절						
5	부산	○○○○○4A	강력거절						
6	부산	○○○○○6A	재개발						
7	부산	○○○○○01	비주거						
8	대구	○○○○○1A	강력거절	35	○○○○○7A	강력거절			
9	대구	○○○○○8A	강력거절	36	○○○○○5A	강력거절			
10	대구	○○○○○2A	재개발						
11	대구	○○○○○1A	강력거절	37	○○○○○2A	강력거절			
12	대구	○○○○○5A	강력거절	38	○○○○○7A	강력거절			
13	대구	○○○○○91	재개발	39	○○○○○91	비주거			
14	광주	○○○○○3A	강력거절	40	○○○○○2A	강력거절			
15	광주	○○○○○7A	강력거절						
16	대전	○○○○○4A	강력거절						
17	대전	○○○○○61	강력거절						
18	울산	○○○○○81	비주거						
19	경기	○○○○○7A	강력거절	41	○○○○○2A	강력거절			
20	강원	○○○○○1A	강력거절						

no	시도	1차 대체 진행		no	2차 대체 진행		no	3차 대체 진행	
		조사구	분류		조사구	분류		조사구	분류
21	강원	○○○○○3A	강력거절	42	○○○○○3A	강력거절	49	○○○○○6A	강력거절
22	강원	○○○○○91	재개발						
23	강원	○○○○○6A	재개발						
24	충북	○○○○○2A	강력거절	43	○○○○○7A	강력거절			
25	전북	○○○○○7A	강력거절	44	○○○○○8A	강력거절			
26	전북	○○○○○0A	강력거절	45	○○○○○3A	강력거절			
27	전북	○○○○○1A	강력거절						
28	전북	○○○○○11	강력거절	46	○○○○○81	재개발			
29	전남	○○○○○4A	강력거절						
30	전남	○○○○○6A	강력거절	47	○○○○○5A	강력거절			
31	경북	○○○○○21	강력거절	48	○○○○○71	비주거			
32	제주	○○○○○41	비주거						
33	제주	○○○○○91	비주거						

4) 실사 결과

조사 시작 이전인 5월 넷째 주에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협조 요청 우편을 미리 발송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5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7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6,704개 가구가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시점별 실사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3-11] 주간 지역별 실사 진행 결과(가구 수 기준)

지역	6월			7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서울/인천/경기	81	530	1,038	1,518	1,894	2,065
부산/울산/경남	56	335	588	1,064	1,139	1,196
대구/경북	14	118	376	554	799	814
대전/충청/세종	21	177	494	747	1,026	1,122
광주/전라	13	104	388	594	721	990
강원	-	42	106	152	213	319
제주	6	32	84	121	197	198
합계	191	1,338	3,074	4,750	5,989	6,704
누적진행률(%)	2.8%	20.0%	45.9%	70.9%	89.3%	100%

## 나. 조사결과의 검증과 분석

### 1) 조사결과의 검증 및 입력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한 내부검증작업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3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 내검은 조사구별로 정리된 조사표를 전체 7개 지역의 실사담당자(슈퍼바이저)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차 내검은 서울 본사에서 전체 조사표를 취합한 이후,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의 30%인 2,011개 가구를 각 실사 사무소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증방법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받은 전문검증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표 내용과 실제 응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차 내검 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의 심각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표 2-3-12] 조사표의 내검 절차

구분	주요 내검 내용
1차 내검 : 지역 실사감독자	① 조사대상자가 부적격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를 폐기하고, 재조사를 진행한다. ② 무응답 항목이 많은 조사표의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 ③ 방문횟수, 접촉 가구수, 최종 방문코드 등의 가구방문 기록표 내용을 확인한다.
2차 내검 : 서울 본사에서 전화로 내검	① 가구 방문 여부 ② 조사 참여 확인 ③ 가구원 수 ④ 답례품 수령 여부 ⑤ 범죄피해 여부
3차 내검 : 서울본사의 전문에디팅팀	① 설문 문항 간 로직 확인 ② 사건조사표 해당 조사표 확인 ③ 무응답 문항에 보완 조사(전화조사) 실시 ④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설문지 분류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81-82)

마지막으로 3차 내검은 서울본사의 총 8명의 에디팅팀에서 담당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조사표 재검토, 지역 실사담당자의 재확인, 응답자 재확인 등의 방식을 통해 수정하였다. 특히 해당 단계에서는 주요 내검규칙을 활용하여 응답내용을 검토하였는데, 기본적인 내검규칙은 이전 조사와 동일하나, 특별주제로 추가된 보이스피싱 문항과 관련한 내검규칙이 추가되었다. 기본 내검규칙은 가구명부 48개, 기초조사표

107개, 사건조사표 153개로 정하였으며, 그 중 주요 내검규칙은 아래와 같다.

▶▶▶ [표 2-3-13] 주요 내검규칙

구분	내용
가구 명부	• 결혼 오류 : 부부의 혼인상태가 다른 경우 등
	• 나이차 오류 : 부부의 나이차가 큰 경우 등
	• 성별 오류 : 부부가 동성인 경우 등
	• 14세 미만 검토 : 14세 미만이 직업을 갖는 경우 등
	• 직업 오류 : 18세 미만이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등
	• 학력 오류 : 연령과 학력 간 관계점검
기초 조사표	• 이사 오류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내 이사하는 등
	• 아파트의 단지 규모, 총 층수, 층수, 형태 누락
	• 10대이거나 미혼인데 자녀 범죄피해 두려움 응답
	• 가구 모두가 임금근로자. 학생인데 집을 안 비움
	• 피해횟수 오류 :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응답이 다름
	• 상습피해 오류 : 상습피해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 보이스피싱 수신 오류: 수신 경험 '있다'인데, 범행수법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사건 조사표	• 다중선택에서 '없음'과 '있음' 에 같이 응답
	• 차량 도난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재물 손상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도난 또는 도난미수 불일치 : 상동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불일치 : 상동
	• 가해자 인지 불일치 : 상동
	• 가구침입 불일치 : 상동
	• 접촉범죄 불일치 : 상동
	• 피해사실 인지 불일치 : 상동
	• 도난과 손괴의 금액이 동일
	• 가구침입이면서 차량·자전거 도난
	• 사기이면서 손괴
	• 사기사건이 아닌 범죄의 가해자가 개인이 아님
	•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관계에서는 안다고 응답
	• 이사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일수 불일치 : 시간손실 일수가 치료일수보다 적음
	• 금액불일치 : 피해금액을 모르면서 되찾았다고 응답
	• 점핑 오류 : 응답과 미응답이 지시문 조건과 안 맞음
	• 있다고 응답하고 구체적 수치는 미응답

구분	내용
	• 필수문항 미응답 : 사건발생일시, 의료비, 가해자명수
	• 중고생이 피해를 입은 장소가 본인 직장
	•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의 오류
	• 사건해결을 하면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차량도난 금액이 백만 원 미만인 경우
	•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가해자를 모름
	• 신체 위협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 신체공격 시도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83)의 <표 2-25>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조사자료의 입력은 “서베이크래프트(IBM)”을 활용하여 입력하였으며, 사전에 내검 규칙을 포함한 응답내용의 로직을 설정하여, 조사자료의 입력과정에서도 응답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틀에서 전체 조사표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자료 입력 이후 조사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 2) 최종 데이터 생산 및 분석

앞서 설명한 내검과 조사자료 입력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 조사문항을 기준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응답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범죄피해판별식을 기준으로 범죄피해유형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확정한다. 그리고 해당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준으로 벤치마킹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구(원) 원가중치와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였다.<sup>16)</sup>

본 연구는 조사체계와 방식이 안정화된 2013년도 이후의 전국범죄피해조사-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자료를 통합하여 SPSS Statistics 26 및 STATA 14, 16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보고서부터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모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장(제3장)에서는 벤치마킹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조사 만 14세 이상 가구 및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후 제4장부터는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 통계적 분석이 진행되기에 모집단의 특성은 반영하나 전체 표본의 크기는 올해 조사된 표본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조정된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표본의 대표성과 범죄피해 유형의 판별

박희정 · 한민경

## 제3장

# 표본의 대표성과 범죄피해 유형의 판별

### 제1절 | 조사 응답률

#### 1. 가구방문 결과

본 조사에서는 원표본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표본 대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였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사전 리플렛을 발송하였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조사 성공 전까지는 4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목표 표본인 6,710개 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선정하고 방문하였다. 방문한 결과, 응답 불응, 응답 곤란 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본을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원표본은 6,710개 가구이고, 표본 대체 등으로 접촉한 총 가구수는 18,023개이다.

최초에 추출된 원표본 6,710개 가구를 방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적격 가구<sup>17)</sup>인 224개를 제외한 적격 가구의 수는 총 6,486개로 96.7%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가 3,798개로 56.6%였고, 조사에 불응한 가구가 2,233개로 33.3%였다. 4회를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장기 부재 가구는 204개로 3.0%, 장애나 고령, 언어적인 문제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251개로 3.7%였다.

17) 부적격 가구: 가구원이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조사대상자가 없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상가나 기숙사 등의 집단시설로 조사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빈집 등이 포함됨

▶▶▶ [표 3-1-1] 원표본 가구 방문결과

(단위: 개( %))

구분		가구수
적격	조사 성공	3,798 (56.6)
	응답 불응	2,233 (33.3)
	장기 부재	204 (3.0)
	응답 곤란	251 (3.7)
	소계	6,486 (96.7)
부적격(빈집 등)		224 (3.3)
계		6,710 (100.0)

최종 조사가 완료된 6,704개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 과정에서 접촉한 전체 가구수는 총 18,023개였다. 이 중 부적격 가구인 366개 가구를 제외한 적격 가구의 수는 17,657개로 98.0%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가 6,704개로 32.7%였고, 조사에 불응한 가구가 6,575로 36.5%였다. 4회를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장기 부재 가구는 3,265개로 18.1%, 장애나 고령, 언어적인 문제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1,113개로 6.2%였다.

▶▶▶ [표 3-1-2] 전체 접촉가구 방문결과

(단위: 개( %))

유형		가구 수
적격	조사 성공	6,704 (32.7)
	응답 불응	6,575 (36.5)
	장기 부재	3,265 (18.1)
	응답 곤란	1,113 (6.2)
	소계	17,657 (98.0)
부적격(빈집 등)		366 (2.0)
계		18,023 (100.0)

## 2. 응답률

본 조사의 응답률과 거절률, 접촉률을 살펴보았다.

접촉률은 적격 가구 중 장기 부재로 인해 접촉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실제 가구

접촉 비율을 나타낸다. 원표본 가구를 살펴보면, 6,486개 가구 중 6,282개 가구와 접촉하여 96.9%를 기록하였다. 응답률은 조사대상 적격 가구인 6,486개 가구 중 3,798개 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거절한 가구는 2,233개 가구로, 거절률은 34.4%였다.

접촉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17,657개 가구 중 14,392개 가구와 실제 접촉하여 접촉률이 81.5%를 기록하였다. 조사대상 적격 가구인 17,657개 가구 중 6,704개 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응답률은 38.0%였다. 조사를 거절한 가구는 6,575개 가구로, 거절률은 37.2%였다.

#### ▶▶ [표 3-1-3] 조사 응답률 및 거절률

(단위: 개, %)

구분	총 가구수	적격 가구수	응답률	거절률	접촉률
원표본 가구	6,710	6,486	58.6	34.4	96.9
전체 접촉가구	18,023	17,657	38.0	37.2	81.5

1) 응답률=(조사 성공) / (적격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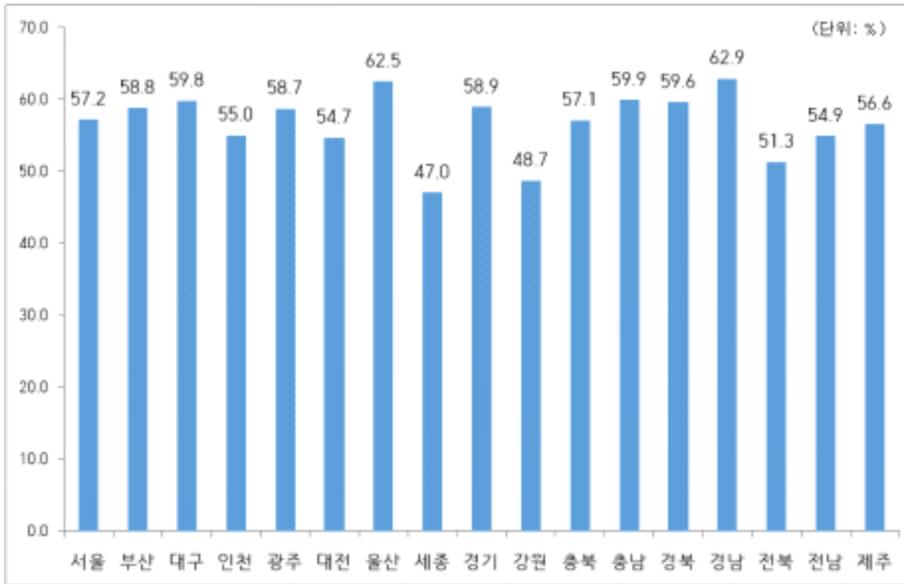
2) 거절률=(응답 불응) / (적격 가구)

3) 접촉률=(조사 성공+응답 불응+응답 곤란) / (적격 가구)

#### 가. 시도별 원표본 가구의 응답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기준의 원표본 가구 응답률은 58.6%였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응답률이 6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이 62.5%, 충남이 59.9%, 대구가 59.8%, 경북이 59.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이 47.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밖에 응답률이 55%가 안 되는 지역으로는 강원이 48.7%, 전북이 51.3%, 대전이 54.7%, 전남이 54.9%를 나타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장기 부재 가구수가 많아 응답률이 더욱 낮게 나왔다.

▶▶ [그림 3-1-1] 시도별 원표본 가구의 조사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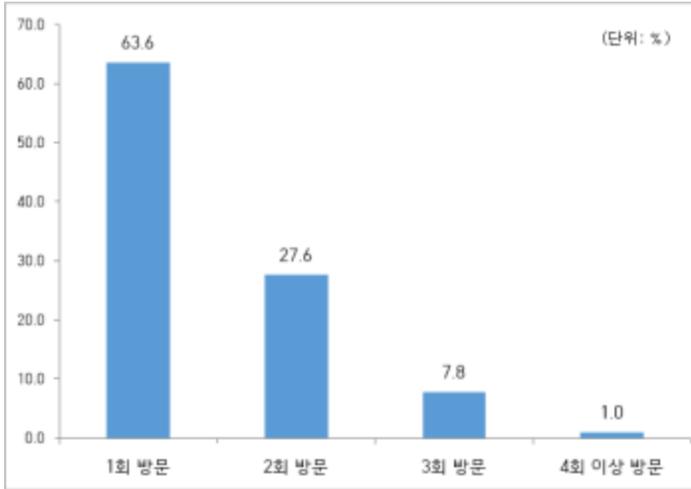


나.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횟수별 응답률

본 조사는 응답률을 제고하고,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성공 전 4회까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일시를 다르게 하여 재방문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구를 대체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진행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1회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가 63.6%로 가장 많았다. 2회 방문한 가구는 27.6%, 3회 방문한 가구는 7.8%, 4회 이상 방문한 가구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위해 4회까지 방문하기로 하였지만,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8회까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된 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는 1.5회였지만,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까지 고려한다면 평균 가구 방문 횟수는 훨씬 큰 수치가 나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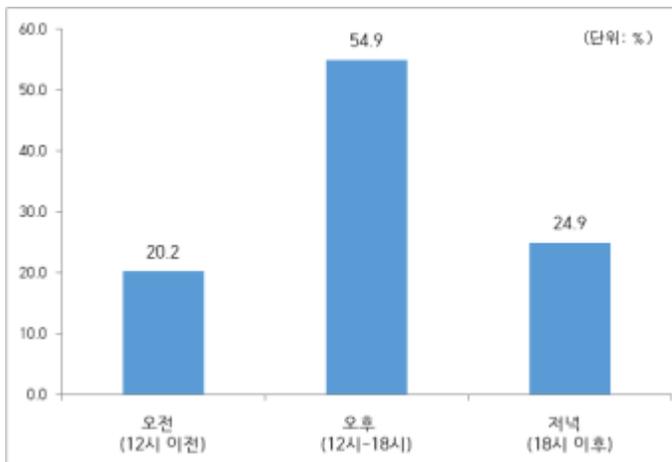
▶▶ [그림 3-1-2] 조사성공 가구의 방문횟수



#### 라.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조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일과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방문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시간대는 오후 12시~18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8시 이후 저녁 시간이 24.9%였고, 오전 12시 이전이 20.2%였다.

▶▶ [그림 3-1-3]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 시간대



## 제2절 | 표본의 대표성 및 특성

### 1. 표본 대표성

#### 가. 가구 분포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앞서 설명한대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구를 추출하고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하였다. 모집단 값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값을 적용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벤치마킹 모집단 분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이다.

표본과 모집단과의 지역별 가구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된 가구수는 경기도가 전체의 1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1.6%, 부산광역시 7.1%, 경상남도 6.9%, 인천광역시 6.2%, 경상북도 6.2%, 대구광역시 5.9%, 충청남도 5.4%, 전라북도 5.1% 등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가구수 또한 경기도가 2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 19.4%, 부산광역시 6.7%, 경상남도 6.5%, 인천광역시 5.5%, 경상북도 5.4%, 대구광역시 4.7%, 충청남도 4.3%, 전라남도 3.6% 등의 순이었다.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7개 광역시도별 모집단 분포를 고려한 가구가중치를 적용하면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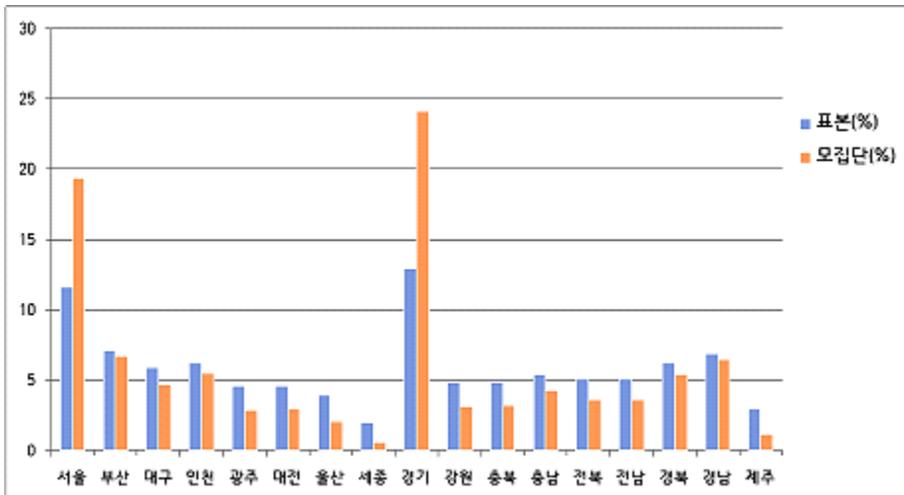
▶▶ [표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단위: 개( %))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서울	779	11.6	3,981,741	19.4	19.4
2	부산	473	7.1	1,378,164	6.7	6.7
3	대구	396	5.9	968,265	4.7	4.7
4	인천	418	6.2	1,122,041	5.5	5.5
5	광주	308	4.6	586,263	2.9	2.9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6	대전	308	4.6	608,260	3.0	3.0
7	울산	263	3.9	439,930	2.1	2.1
8	세종	132	2.0	120,629	0.6	0.6
9	경기도	868	12.9	4,934,208	24.1	24.1
10	강원도	319	4.8	634,847	3.1	3.1
11	충청북도	319	4.8	656,101	3.2	3.2
12	충청남도	363	5.4	877,628	4.3	4.3
13	전라북도	341	5.1	743,341	3.6	3.6
14	전라남도	341	5.1	747,681	3.6	3.6
15	경상북도	418	6.2	1,113,008	5.4	5.4
16	경상남도	460	6.9	1,331,278	6.5	6.5
17	제주도	198	3.0	256,158	1.2	1.2
	계	6,704	100.0	20,499,543	100.0	100.0

▶▶ [그림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 나. 인구 분포

표본과 모집단과의 인구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된 가구원수는 경기도가 1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2.0%,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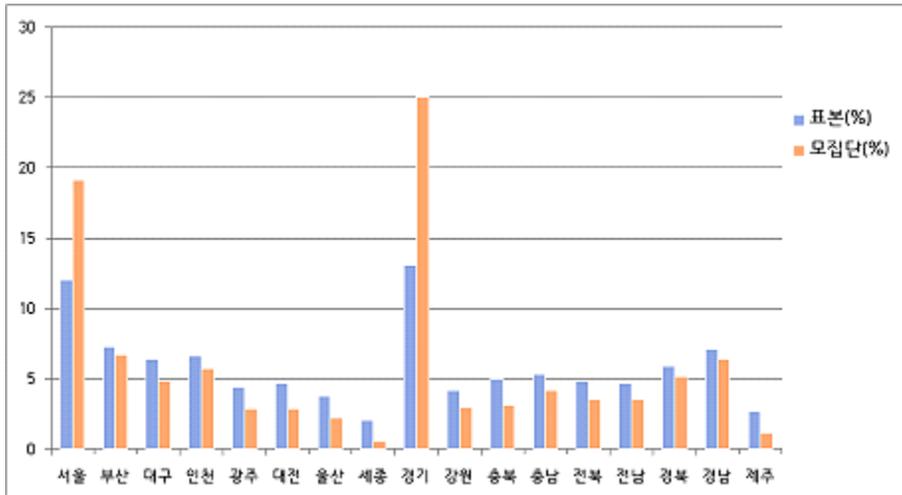
시 7.3%, 경상남도 7.1%, 인천광역시 6.6%, 대구광역시 6.4% 등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인구수 또한 경기도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9.1%, 부산광역시 6.7%, 경상남도 6.4%, 인천광역시 5.7%, 경상북도 5.2% 등의 순이었다. 가구와 마찬가지로,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3-2-2] 표본과 모집단의 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	
	가구원수	비율	인구수	비율		
지역	서울	1,572	12.0	8,707,052	19.1	19.1
	부산	957	7.3	3,047,037	6.7	6.7
	대구	838	6.4	2,165,637	4.8	4.8
	인천	869	6.6	2,579,314	5.7	5.7
	광주	578	4.4	1,299,119	2.9	2.9
	대전	623	4.7	1,326,897	2.9	2.9
	울산	493	3.8	998,251	2.2	2.2
	세종	276	2.1	252,833	0.6	0.6
	경기도	1,721	13.1	11,397,802	25.0	25.0
	강원도	550	4.2	1,357,701	3.0	3.0
	충청북도	658	5.0	1,431,272	3.1	3.1
	충청남도	693	5.3	1,913,467	4.2	4.2
	전라북도	626	4.8	1,611,760	3.5	3.5
	전라남도	616	4.7	1,587,055	3.5	3.5
	경상북도	778	5.9	2,381,175	5.2	5.2
	경상남도	932	7.1	2,929,513	6.4	6.4
	제주도	356	2.7	567,241	1.2	1.2
성별	남자	6,085	46.3	22,752,634	49.9	49.9
	여자	7,051	53.7	22,800,492	50.1	50.1
연령대	10대(만14-19세)	622	4.7	3,239,388	7.1	7.1
	20대	1,496	11.4	7,004,966	15.4	15.4
	30대	2,030	15.5	7,446,677	16.3	16.3
	40대	2,385	18.2	8,408,883	18.5	18.5
	50대	2,722	20.7	8,515,725	18.7	18.7
	60대	1,953	14.9	5,854,493	12.9	12.9
	70세 이상	1,928	14.7	5,082,994	11.2	11.2
계	13,136	100.0	45,553,126	100.0	100.0	

▶▶ [그림 3-2-2]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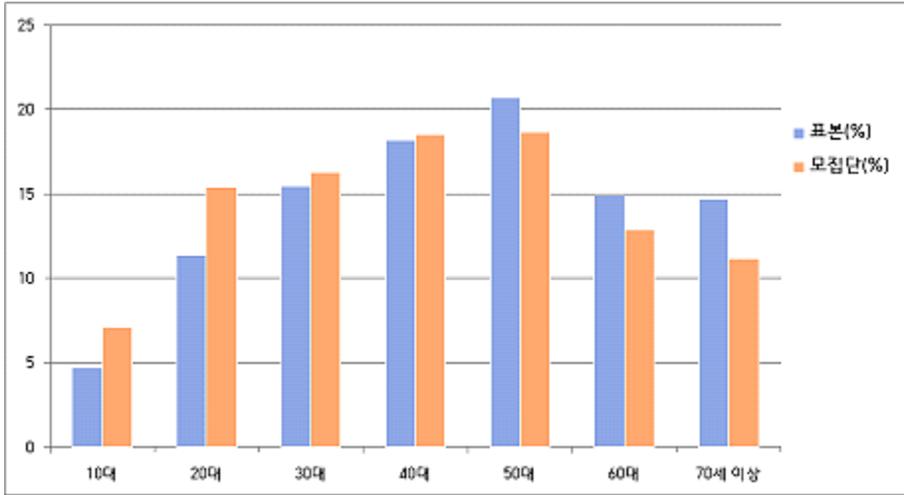


두 번째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본과 모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된 표본에서는 남자가 46.3%, 여자가 53.7%인 반면, 모집단에서는 남자가 49.9%, 여자가 50.1%로, 표본의 성별 격차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3-2-3). 조사된 가구원은 50대가 전체의 2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18.2%, 30대가 15.5%, 60대가 14.9%, 70세 이상이 14.7%, 20대가 11.4%, 10대가 4.7%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인구수 분포에서도 50대가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18.5%, 30대 16.3%, 20대가 15.4%, 60대가 12.9%, 70세 이상이 11.2%, 10대가 7.1%의 순이었다.

30대~50대는 모집단과 비슷한 비중으로 조사되었고, 60대 이상은 모집단 보다 약간 많이, 10대와 20대는 다소 적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3] 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 2. 가구 특성

### 가. 가구의 거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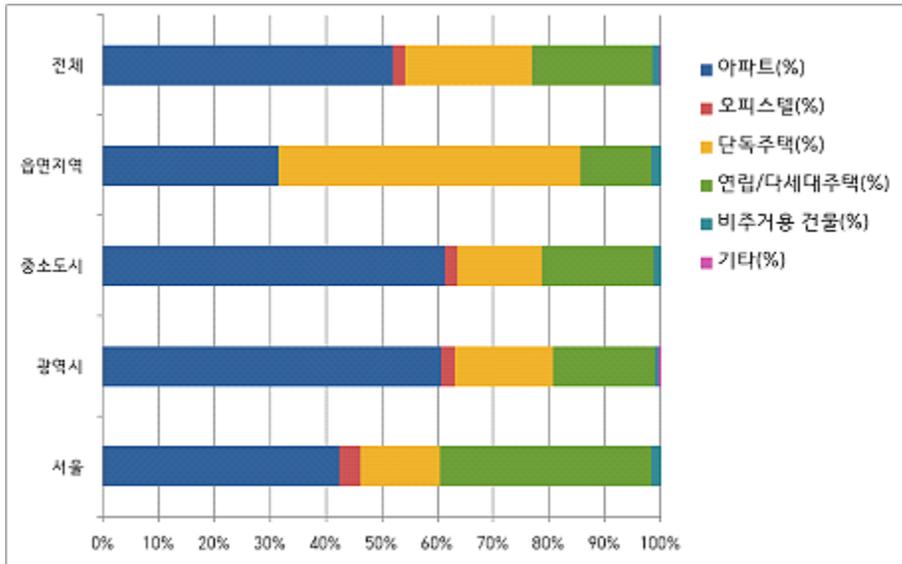
가구의 주택유형은 절반 이상인 52.0%가 아파트였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2.8%, 연립/다세대주택이 21.8%의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도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54.2%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이 38.0%로 가장 컸다.

▶▶▶ [표 3-2-3]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주택 유형	아파트	42.3	60.7	61.4	31.4	52.0
	오피스텔	3.8	2.5	2.2	0.0	2.2
	단독주택	14.3	17.6	15.1	54.2	22.8
	연립/다세대주택	38.0	18.2	20.2	12.7	21.8
	비주거용 건물	1.6	0.8	1.2	1.7	1.3
	기타	0.0	0.3	0.0	0.0	0.1
계	100.0 (19.4)	100.0 (24.9)	100.0 (37.2)	100.0 (18.5)	100.0 (100.0)	

▶▶ [그림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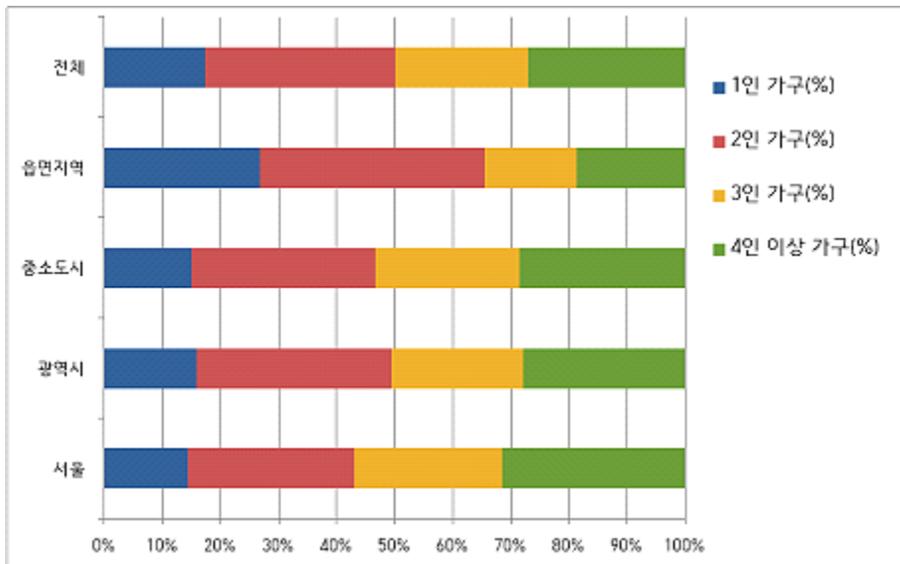
도시규모별로 가구의 가구원 규모와 거주기간,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횟수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2인 가구'가 3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인 이상 가구'가 27.1%, '3인 가구'가 22.8%, '1인 가구'가 17.3%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서울은 14.3%, 광역시는 15.8%, 중소도시는 15.0%, 읍면지역은 26.8%, 전체적으로는 17.3%였다.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는 서울이 43.0%, 광역시가 49.5%, 중소도시가 46.7%, 읍면지역이 65.4%, 전체적으로는 50.2%였다.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57.0%, 광역시가 50.5%, 중소도시가 53.3%, 읍면지역이 34.6%, 전체적으로는 49.9%였다. 요약해보면, 읍면지역은 '1인 가구'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컸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작았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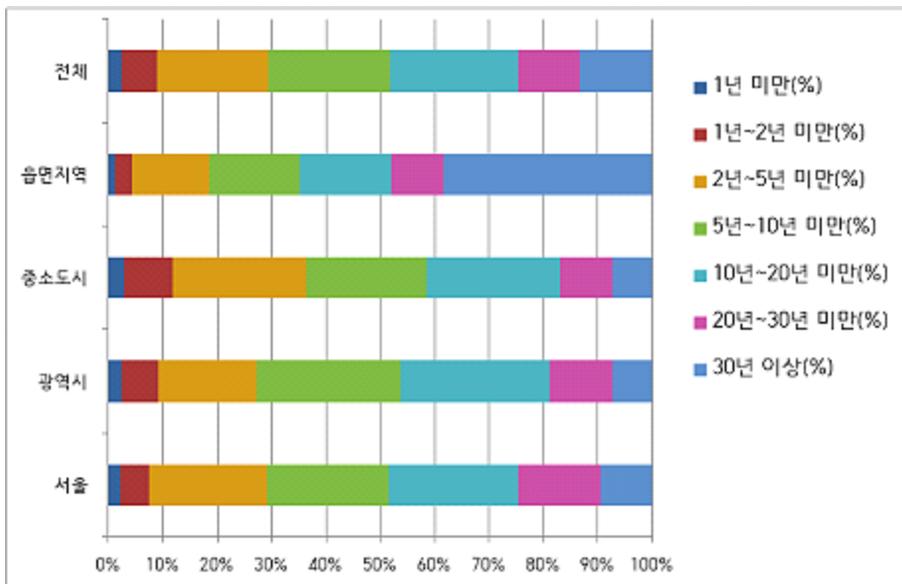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구원규모	1인 가구	14.3	15.8	15.0	26.8	17.3
	2인 가구	28.7	33.7	31.7	38.6	32.9
	3인 가구	25.6	22.6	24.9	16.0	22.8
	4인 이상 가구	31.4	27.9	28.4	18.6	27.1
거주 기간	1년 미만	2.2	2.3	2.9	1.2	2.3
	1년~2년 미만	5.2	6.9	8.8	3.2	6.6
	2년~5년 미만	21.7	18.1	24.6	14.1	20.5
	5년~10년 미만	22.3	26.3	22.2	16.7	22.2
	10년~20년 미만	24.0	27.5	24.4	16.9	23.7
	20년~30년 미만	15.0	11.6	9.8	9.6	11.2
	30년 이상	9.5	7.3	7.2	38.3	13.4
최근 5년 이사 횟수	없음	69.5	72.9	64.3	80.4	70.4
	1회	28.1	23.7	30.1	17.4	25.8
	2회	1.9	2.8	5.0	1.6	3.2
	3회 이상	0.4	0.6	0.6	0.6	0.6

▶▶▶ [그림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가구원 규모(가구가중치 적용)



두 번째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 있는 가구가 23.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2%, '2년 이상 5년 미만'이 20.5% 순으로 많았다.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가구는 13.4%,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가구는 '11.2%',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가구는 6.6%, '1년 미만'인 가구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주택유형과 가구원 규모에서와 같이 읍면지역만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5년 미만'의 단기 거주 가구 비중이 서울은 29.1%, 광역시는 27.3%, 중소도시는 36.3%였으나, 읍면지역은 18.5%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48.5%, 광역시가 46.4%, 중소도시가 41.4%였으나, 읍면지역은 64.8%에 달했다. 즉,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림 3-2-6] 도시규모별 가구의 거주기간(가구가중치 적용)



세 번째로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횟수를 살펴보면, 이사 경험이 없다는 가구가 전체의 70.4%로 가장 많았고, 이사를 한 번 했다는 가구가 25.8%, 2번 했다는 가구가 3.2%, 3번 이상 했다는 가구가 0.6%였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다른 가구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만 상이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적이 없다는 비중이 서울은 69.5%, 광역시는 72.9%, 중소도시는 64.3%인 반면, 읍면지역은 80.4%에 달했다. 1회 이상 이사를 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30.4%, 광역시가 27.1%, 중소도시가 35.7%였으나, 읍면지역은 19.6%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읍면지역의 가구 특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고, 1인 가구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컸다. 또한, 장기 거주 가구가 많았으며, 최근 이사 경험이 없는 가구가 많았다.

### 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2-5).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1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17.5%,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16.2%, '500만 원~600만 원 미만'이 12.9% 등의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서울은 전체의 71.3%였으며, 광역시는 62.6%, 중소도시는 65.6%였으나, 읍면지역은 39.5%에 그쳤다. 반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14.9%, 광역시가 21.9%, 중소도시가 18.4%였으나, 읍면지역은 41.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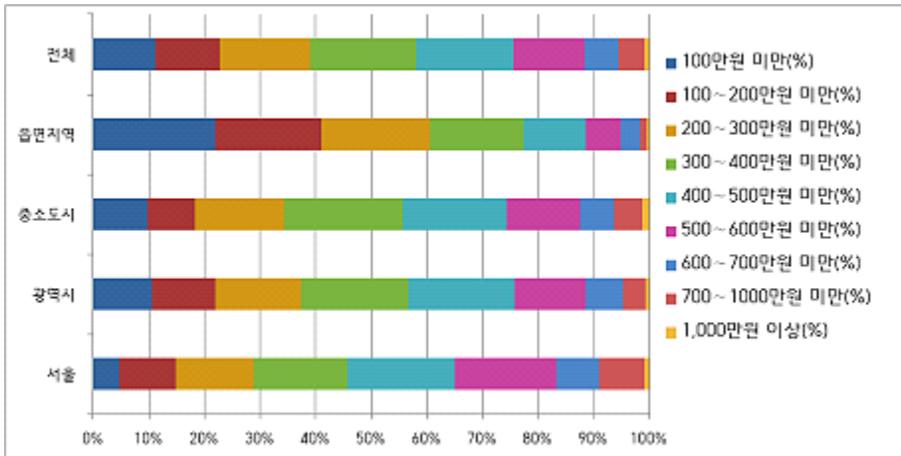
▶▶▶ [표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7	10.5	9.7	21.9	11.2
	100~200만 원 미만	10.2	11.4	8.6	19.2	11.6
	200~300만 원 미만	13.9	15.6	16.1	19.4	16.2
	300~400만 원 미만	16.9	19.2	21.3	17.0	19.1
	400~500만 원 미만	19.3	19.1	18.6	11.0	17.5
	500~600만 원 미만	18.3	12.8	13.3	6.4	12.9
	600~700만 원 미만	7.9	6.7	6.0	3.4	6.1
	700~1000만 원 미만	8.0	4.1	5.2	1.3	4.7
1,000만 원 이상	0.9	0.7	1.2	0.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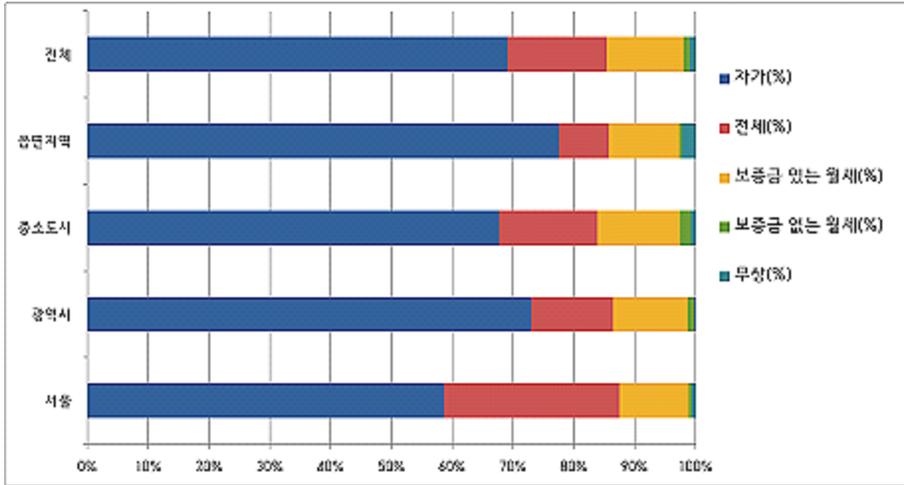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주택 소유	자가	58.6	73.1	67.6	77.5	69.0
	전세(월세 없음)	28.9	13.3	16.2	8.2	16.4
	보증금 있는 월세	11.3	12.4	13.6	11.5	12.5
	보증금 없는 월세	0.5	0.9	1.7	0.6	1.1
	무상(관세, 사택 등)	0.7	0.4	0.9	2.2	1.0
영업 여부	영업(거주겸용)	1.2	2.3	2.3	5.4	2.6
	비영업	98.8	97.7	97.7	94.6	97.4

▶▶ [그림 3-2-7]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주택소유 형태를 살펴보면([그림 3-2-8]), 자가 69.0%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16.4%, 보증금 있는 월세가 12.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자가의 비중이 58.6%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작았고, 전세의 비중은 28.9%로 가장 컸다.

▶▶ [그림 3-2-8]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또한, 거주하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읍면지역이 5.4%로 높았다.

### 3. 가구원 특성

#### 가.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연령대, 혼인상태,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외국인 여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9.0%인 반면, 여성은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남자의 경우 전체의 29.2%가 미혼이고, 4.5%가 사별 혹은 이혼이었으나, 여성은 21.7%가 미혼이고, 15.1%가 사별 혹은 이혼인 상태였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1%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외국인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였다.

▶▶ [표 3-2-6]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연령	10대(만14-19세)	7.4	6.8	7.1
	20대	16.4	14.3	15.4
	30대	17.0	15.7	16.3
	40대	18.8	18.1	18.5
	50대	18.7	18.6	18.7
	60대	12.5	13.2	12.9
	70세 이상	9.0	13.3	11.2
혼인상태	미혼	29.2	21.7	25.5
	현재 배우자 있음	66.3	63.2	64.7
	사별/이혼	4.5	15.1	9.8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있음	2.2	2.0	2.1
	없음	97.8	98.0	97.9
외국인여부	외국인	0.4	0.3	0.3
	내국인	99.6	99.7	99.7
계		49.9	50.1	100.0

도시규모에 따른 가구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가구원 비중은 서울이 58.9%, 광역시가 57.2%, 중소도시가 61.6%였으나, 읍면지역은 45.8%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서울이 23.4%, 광역시가 23.5%, 중소도시가 19.6%였으나, 읍면지역은 35.5%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 [표 3-2-7]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성별	남자	48.5	49.7	50.8	50.0	49.9
	여자	51.5	50.3	49.2	50.0	50.1
연령대	10대(만14-19세)	6.2	7.3	7.3	7.5	7.1
	20대	17.1	15.7	15.6	12.4	15.4
	30대	17.7	15.8	18.1	11.5	16.3
	40대	17.9	18.4	20.6	14.4	18.5
	50대	17.7	19.3	18.7	18.8	18.7
	60대	13.1	13.2	10.8	16.8	12.9
	70세 이상	10.3	10.3	8.8	18.7	11.2

나. 가구원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원의 직업유형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가 21.4%, 전업주부가 18.8%, 학생이 11.6%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사무종사자와 기능원의 비중이 각각 26.7%, 13.5%였으나, 여자는 16.1%, 2.1%에 그쳤다. 반면, 여자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36.5%에 달했으나, 남자는 1.0%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와 학생, 무직 등이 39.1%, 자영업자가 1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5.2%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가 29.8%, 2년 혹은 3년제 대학교가 16.5%로 그 다음을 이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비중이 남자는 0.9%, 여자는 3.3%, 4년제 대학교가 남자는 35.2%, 여자는 24.4%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표 3-2-8]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직업유형	관리자/전문가	4.1	1.9	3.0
	사무종사자	26.7	16.1	21.4
	서비스/판매종사자	21.3	22.8	22.0
	농림어업종사자	4.0	3.2	3.6
	기능원	13.5	2.1	7.8
	단순노무종사자	3.9	2.0	3.0
	직업군인	0.3	0.0	0.2
	전업주부	1.0	36.5	18.8
	학생	13.1	10.1	11.6
종사상 지위	무직/기타	12.0	5.3	8.6
	임금근로자	53.9	33.9	43.9
	자영업자	18.9	9.8	14.3
	무급가족종사자	1.0	4.4	2.7
	해당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26.2	51.9	39.1
교육수준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0.9	3.3	2.1
	초등학교	4.1	10.6	7.4
	중학교	7.4	8.2	7.8
	고등학교	34.0	36.3	35.2
	대학교(2, 3년제)	16.8	16.3	16.5
	대학교(4년제 이상)	35.2	24.4	29.8
대학원 이상	1.7	1.0	1.3	

비고: 1. 교육수준은 졸업·재학·수료·휴학·중퇴를 포함한 수치임  
 2.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인정함

읍면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이 18.0%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히 컸다. 반면, 사무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은 기능원의 비중이 5.2%로, 광역시의 9.4%, 중소도시의 8.0%, 읍면지역의 8.0%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9]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직업 유형	관리자/전문가	2.6	3.1	3.7	1.7	3.0
	사무종사자	27.2	20.6	22.2	14.1	21.4
	서비스/판매종사자	25.0	22.7	22.2	17.4	22.0
	농림어업종사자	0.1	0.6	0.9	18.0	3.6
	기능원	5.2	9.4	8.0	8.0	7.8
	단순노무종사자	3.0	2.6	2.8	3.8	3.0
	직업군인	0.1	0.1	0.1	0.4	0.2
	전업주부	18.4	20.1	19.4	16.0	18.8
	학생	10.8	11.6	12.9	9.6	11.6
	무직/기타	7.6	9.2	7.8	11.0	8.6

## 제3절 | 범죄피해 유형 및 추출방식

### 1. 범죄피해 유형 분류 체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전면 개편 이래 사건조사표 작성을 통해 파악된 범죄 피해사건의 발생장소와 침입방법,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피해 유형을 결정해 왔다. 범죄피해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입력이 완료된 데이터에서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사건내용에 대한 항목을 조합, 피해자(가구)와 피해사건을 구분하여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피해유형은 크게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로 구분되며 폭력범죄피해에는 ① 강도 ② 폭행 ③ 성폭력

④ 괴롭힘이, 재산범죄피해에는 ⑤ 사기 ⑥ 절도 ⑦ 손괴 ⑧ 기타가 포함된다.

[표 3-3-1]은 범죄피해 유형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조건식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폭력범죄피해 중 ① 강도피해는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한 위협 또는 협박이 있고 탈취피해가 있거나 그럴 만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폭행피해는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한 위협 또는 협박으로, 실제로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뻔했으며 별도의 탈취 피해는 없었던 경우이다. ③ 성폭력피해는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실제로 강간(미수)이나 강간 이외의 성폭력으로 신체적 피해경험이 있었거나 무력으로 인한 성적 접촉 피해경험이나 공격, 위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접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때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피해는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괴롭힘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④ 괴롭힘은 공격이나 위협은 없었지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구두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 또는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듣(엿보기), 감시 등을 당한 피해, 혹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헐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범죄는 사기, 절도, 손괴를 포함한 것으로, ⑤ 사기는 속임에 따른 금전적·재산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 ⑥ 절도는 공격이나 위협은 없는 가운데 소유 물건을 몰래 절취당하는 피해를 경험한 경우이며, ⑦ 손괴 역시 공격이나 위협은 없고 탈취 피해는 없으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피해만 있는 경우로, 미수는 제외한다. 이 외에 단순주거 침입이 기타 재산범죄로 분류된다.

▶▶▶ [표 3-3-1]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폭행여부 [문9]	사건내용 [문10]	협박시도 내용 [문11]	신체공격 내용 [문12]	신체피해 여부 [문13]	속임피해 여 부 [문18-1]	탈취피해 여부 [문19]
폭력 범죄	① 강도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② 폭행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③ 성폭력	신체공격				강간		
		신체공격				강간미수		
		위협/협박			강간위협			
		신체공격				강간이외 성폭력		
		위협/협박			성폭력 위협			
		위협/협박			성적접촉			
④ 괴롭힘	공격/위협 없음	욕설						
	공격/위협 없음	음란/혐오						
	공격/위협 없음	스토킹						
	공격/위협 없음	비방/헛소문						
재산 범죄	⑤ 사기						속임피해 내용	
	⑥ 절도	공격/위협 없음	몰래 가져감					있었음
		공격/위협 없음	훔치려 했거나 위협					그럴 뻔함
	⑦ 손괴	공격/위협 없음	파괴손상					없었음

한편,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은 [표 3-3-2]와 같다. 가구 대상 범죄피해는 주거침입이 수반된 범죄(주거침입 관련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기타 가구 대상 범죄)의 둘로 나뉜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는 사람이 침식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발생한 범죄로 ㉠ 주거침입강도, ㉡ 주거침입절도, ㉢ 단순주거손괴, ㉣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고, 기타 가구 대상 피해에는 ㉤ 자동차(부품)절도와 ㉦ 자동차(부품)손괴, ㉧ 단순손괴 등이 해당된다.

주거침입 관련 피해에서 ㉠ 주거침입강도는 주거 등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승인없이 출입한 가운데 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 또는 협박이 있고 재물을 절취당한 피해가 있거나 그럴 만한 경우를 가리킨다. ㉡ 주거침입절도는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 또는 협박 등은 없는 가운데 침입(승인되지 않은 출입)하여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 단순주거손괴는 승인하지 않은 출입과 함께 손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미수에 그친 피해경험은 제외하며, ㉣ 단순주거침입은 승인하지 않은 출입이 있었으나 별도의 탈취피해 및 손상 피해가 없는 경우이다.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 중 ㉤ 자동차(부품)절도는 차량 또는 자동차 부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그럴 만한 경험, ㉦ 자동차(부품)손괴는 차량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제 손상 피해가 있었던 경험을 가리키며, ㉧ 단순손괴는 탈취 피해경험은 없으면서 자동차(부품) 이외의 손상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 [표 3-3-2]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피해 당한 지역 [문4]	피해 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승인 출입 여부 [문6-1]	폭행 여부 [문9]	사건 내용 [문10]	협박 시도 내용 [문11]	신체 공격 내용 [문12]	탈취 피해 여부 [문19]	피해 물품 [문19-2]	손상 여부 [문20]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강도			아니오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 피해 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아니오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 피해 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주거 침입 절도			아니오		절취/ 주거 침입 (시도)			있음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제외 물품	
				아니오		절취/ 주거 침입 (시도)			그럴 뻔함		
	주거 침입 손괴			아니오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단순 주거 침입			아니오		주거 침입 (시도)			없음		없음	
기타 가구 대상	자동차 (부품) 절도					몰래 가져감			있음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절취/ 자동차 침입 (시도)			그럴 뻔함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손괴					파괴 손상			없음		차량 및 부품
						자동차 침입 (시도)			없음		차량 및 부품
	단순 손괴		집 아님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모름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예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 2. 공표 범죄피해 유형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피해 유형이 결합(형법상 경합범)되어 나타난 경우에 대해 범죄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피해 유형을 결정해 왔다(최수형 외, 2015: 85, 김은경 외, 2013: 108; 김지선 외, 2011: 103; 김은경 외, 2009: 111). 이는 한 사건을 두 개 이상의 피해 유형으로 중복 집계할 경우 범죄피해 발생 정도가 과대추정(overestimation)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도 이러한 피해 유형 결정방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강도·폭행·성폭력과 같은 폭력범죄는 사기·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비해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한 사건에서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로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다만, 올해 조사에서는 한 사건에서 복수의 피해 유형이 결합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범죄피해 유형별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를 밝혀 공표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주요 항목인 피해유형별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count sample size/cell size)가 5건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 표시로 나타냄으로써(Reliability flag recommendations)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sup>18)</sup>

▶▶▶ [표 3-3-3] 개인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원수 (명)	피해 가구원수 (명)	피해발생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오차 (%)
폭력 범죄 피해	계	610	13,136	66	0.50	12.3
	강도	610	13,136	14	0.11	26.7
	폭행	610	13,136	21	0.16	21.8
	성폭력	610	13,136	17	0.13	24.2
	괴롭힘	610	13,136	15	0.11	25.8

18) 상대표준오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수치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조사 특성별로 상이한 가운데, 2016년 기준 조사의 경우 상대표준오차 25% 미만을 공표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전미범죄피해조사(NCVS)의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30%를 초과하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가 10건 이하인 경우를 조사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Shook-Sa, Couzens, & Berzofsky, 2011: 26), 올해 보고서는 '상대표준오차 30% 미만' 및 '유효 표본 사례 수 5건 이상'을 공표 기준으로 삼았다.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원수 (명)	피해 가구원수 (명)	피해발생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오차 (%)
재산 범죄 피해	계	610	13,136	380	2.89	5.1
	절도	610	13,136	184	1.40	7.3
	사기	610	13,136	121	0.92	9.0
	손괴	610	13,136	59	0.45	13.0
	기타	610	13,136	18	0.14	23.6

비고: 피해 가구원 수는 해당 범죄피해를 1건 이상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표 3-3-3]<sup>19)</sup>에서와 같이 개인 대상 범죄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 내지 유효 표본 사례수 5건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조사에서는 폭력범죄 중 강도·성폭력·괴롭힘과 기타 재산범죄가 상대표준오차 측면에서 공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데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개인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보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표가 어려운 범죄피해 유형이 없었다.

한편,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에서는 주거침입절도, 단순주거침입과 자동차(부품)손괴만이 공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 대상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유형과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만으로 구분하여 후술할 것이다.

#### ▶▶ [표 3-3-4]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 수 (명)	피해 가구 수 (명)	피해발생 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 오차 (%)
주거 침입 관련	전체	610	6,704	92	1.37	10.4
	주거침입강도(!)	610	6,704	3	0.04	57.7
	주거침입절도	610	6,704	66	0.98	12.3
	주거침입손괴(!)	610	6,704	5	0.07	44.7
	단순주거침입	610	6,704	18	0.27	23.5

19) [표 3-3-3]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원수의 계는 66명이나, 세부 피해유형이 다른 경우가 중복 포함되어 있어 세부 유형별 합계는 67명이다. 같은 이유로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원수의 계는 380명이나, 세부 피해유형이 다른 경우가 중복 포함되어 있어 세부 유형별 합계는 382명이다.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 수 (명)	피해 가구 수 (명)	피해발생 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 오차 (%)
기타 가구 대상	전체	610	6,704	61	0.91	12.8
	자동차(부품)절도(!)	610	6,704	8	0.12	35.3
	자동차(부품)손괴	610	6,704	49	0.73	14.2
	단순손괴(!)	610	6,704	4	0.06	49.9

비고: 1. 피해 가구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수를 의미함  
 2. (!)는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가 5건 미만인 경우임

## 제 4 장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전국 범죄피해 실태: 시계열 비교

한 민 경

## 제4장

# 전국 범죄피해 실태: 시계열 비교

이 장은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한 해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측정되는 범죄피해는 크게 피해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대상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해로 나뉜다. 개인 대상 범죄피해는 다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둘로 나뉘며,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이, 재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손괴, 기타(단순주거침입)가 포함된다. 그리고 가구 대상 범죄피해는 주거침입이 수반된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로 구분된다. 제1절 및 제2절에서는 각각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한다.<sup>20)</sup> 제3절은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포싱 경험 정도를 다룬다.

### 제1절 | 개인 대상 범죄피해 실태

이 절에서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원수와 별도로 사건수를 고려하는 것은 한 명의 범죄피해자가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중복)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결과에 반영하기

20) 2013년에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부터 이전 조사에서와 동일하게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내 가구를 추출하는 표본추출 방식을 유지해 옴에 따라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이 장의 제1절 및 제2절에서 범죄피해 정도가 비교될 연도는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 4개 연도이다.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피해자수는 범죄피해 유형과 무관하게 1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유형별 범죄피해자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 1.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62명 가운데 한 해 동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으로 추정되었다.<sup>21)</sup>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율 역시 2016년 3.46%에서 상승한 3.63%로 나타났다.

▶▶▶ [표 4-1-1] 연도별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1,709,632	1,524,293	1,617,001	1,653,877
	범죄피해자율(추정)	(%)	(3.98)	(3.46)	(3.46)	(3.63)
폭력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295,121	144,374	169,109	245,873
	범죄피해자율(추정)	(%)	(0.69)	(0.33)	(0.36)	(0.54)
재산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1,476,663	1,360,697	1,451,045	1,408,004
	범죄피해자율(추정)	(%)	(3.44)	(3.09)	(3.11)	(3.09)

- 비고: 1. 전체범죄의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기초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포함)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3. 범죄피해자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4. 범죄피해자율(추정)=범죄피해자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21) 이 장 제1절의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구원 원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사후층화)하기 위해 각 조사연도에 활용한 만14세 이상 추정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2년 42,936,210명, 2014년 44,039,786명, 2016년 46,702,347명, 2018년 45,553,126명. 이 중 2012년, 2014년, 2016년의 추정인구수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장애인구추계'에 따른 것인데, 이 조사의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방식이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년 발표되고 있어 2018년의 추정인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2018년 11월 1일 기준) 집계결과를 따랐다(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9년 8월 29일자: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115&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115&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9년 10월 4일 최종 접속). 이 조사의 모집단이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인 만큼, 정확한 모수 추정을 위해서는 종래의 장애인구추계보다는 모집단에 대한 최근 자료(2018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중치 산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범죄피해자수의 범죄피해자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폭력범죄 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2년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에 폭력범죄피해자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2.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62명이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만14세 이상 인구 대비 범죄피해율은 3.68%로 2016년(3.56%)보다 높아졌으며, 2012년 이래 감소 추세이던 범죄피해율 추이는 2018년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 [표 4-1-2] 연도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975,155	1,648,170	1,660,589	1,675,662
	범죄피해율(추정)	(%)	(4.60)	(3.74)	(3.56)	(3.68)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4,600	3,743	3,556	3,678
폭력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29,819	163,696	181,115	257,954
	범죄피해율(추정)	(%)	(0.77)	(0.37)	(0.39)	(0.5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768	372	388	566
재산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645,336	1,449,005	1,479,474	1,417,708
	범죄피해율(추정)	(%)	(3.83)	(3.29)	(3.17)	(3.11)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3,832	3,290	3,168	3,112

비고: 1. 전체범죄의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은 기초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포함)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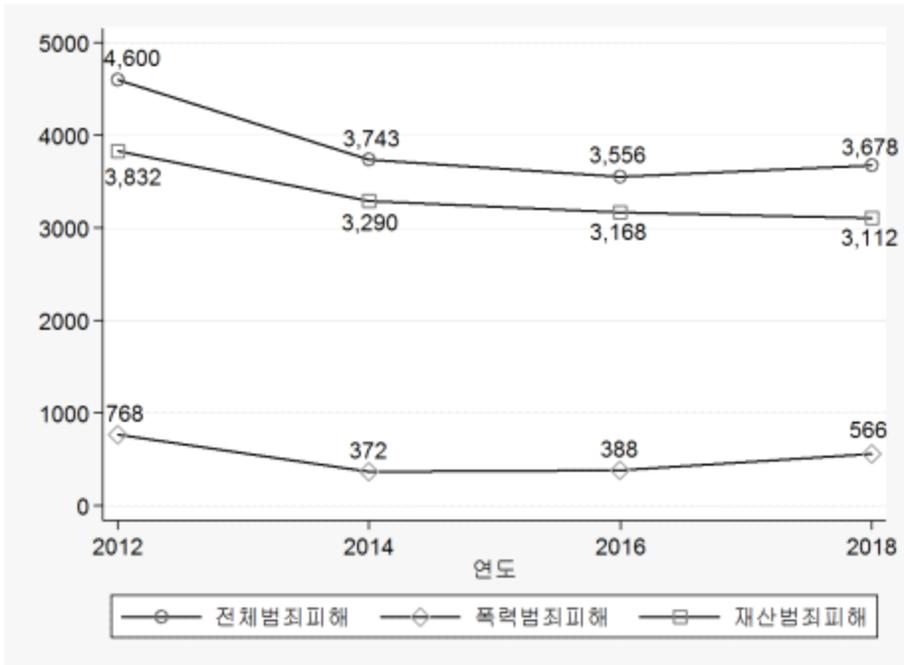
3.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표 4-1-2]에서와 같이 범죄피해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폭력범죄는 257,954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66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건수는 1,417,708건으로, 2016년보다 감소하여 2018년에 증가 추세로 전환된 폭력범죄피해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4-1-1]은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중심으로 연도별 범죄피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4,600건,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이전 조사연도보다 소폭 증가한 3,678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피해건수 역시 2018년 3,112건으로 추정되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768건, 2014년 372건, 2016년 388건, 2018년 566건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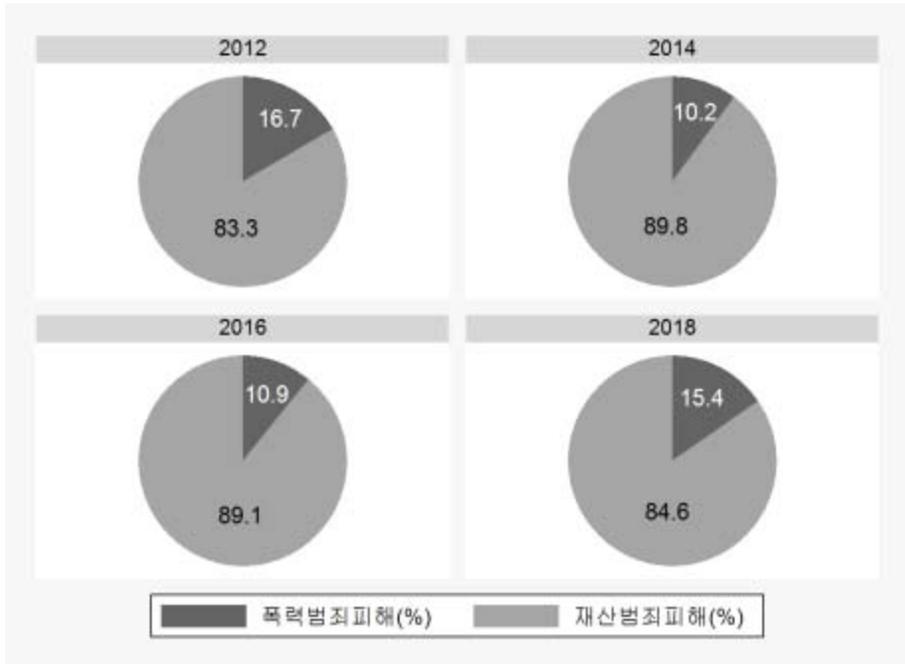
» [그림 4-1-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그림 4-1-2]는 전체범죄피해건수 중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범죄피해건수 중 폭력범죄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2%, 2016년 10.9%, 2018년 15.4%로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산범죄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9.8%, 2016년 89.1%, 2018년 84.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그림 4-1-2]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2012~2018)



범죄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4-1-3] 및 [표 4-1-4]에서는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이,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손괴, 기타(단순주거침입)가 포함된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기타 재산범죄는 유효한 표본사례수(cell size)가 적고 상대 표준오차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sup>22)</sup>

22) 2016년의 경우 폭력범죄 유형 중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폭력범죄피해 보고가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피해 유형이 공표 기준을 충족하였다.

▶▶▶ [표 4-1-3]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강도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8,221	26,700	30,568	56,933
	범죄피해율(추정)	(%)	(0.07)	(0.06)	(0.07)	(0.12)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66	61	66	125
폭행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21,256	68,248	75,051	73,222
	범죄피해율(추정)	(%)	(0.52)	(0.15)	(0.16)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515	155	161	161
성폭력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74,482	56,890	35,489	73,196
	범죄피해율(추정)	(%)	(0.17)	(0.13)	(0.08)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174	129	76	161
괴롭힘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5,860	11,857	40,007	54,603
	범죄피해율(추정)	(%)	(0.01)	(0.03)	(0.09)	(0.12)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14	27	86	120

비고: 1.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2.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의 경우 일부 연도의 수치가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4-1-3]을 보면 폭력범죄 중 폭행을 제외한 모든 피해유형에서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강도의 범죄피해율은 0.12%, 폭행의 범죄피해율은 0.16%, 성폭력의 범죄피해율은 0.16%, 괴롭힘의 범죄피해율은 0.12%로, 이전 연도에 비해 폭력범죄 세부 유형별 범죄피해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도는 2016년 66건에서 2018년 125건으로, 성폭력은 2016년 76건에서 2018년 161건으로, 괴롭힘은 2016년 86건에서 2018년 12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폭행은 2016년과 2018년 공히 161건에서 변화가 없었다. 절대적인 표본 사례수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 증가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표 4-1-4]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사기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49,068	411,078	538,181	460,838
	범죄피해율(추정)	(%)	(0.81)	(0.93)	(1.15)	(1.01)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813	933	1,152	1,012
절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872,302	706,163	672,332	715,624
	범죄피해율(추정)	(%)	(2.03)	(1.60)	(1.44)	(1.5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2,032	1,604	1,440	1,571
손괴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12,216	293,051	244,637	168,178
	범죄피해율(추정)	(%)	(0.73)	(0.67)	(0.52)	(0.3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727	665	524	369
기타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11,750	38,714	24,323	73,069
	범죄피해율(추정)	(%)	(0.26)	(0.09)	(0.05)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260	88	52	160

비고: 1.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2.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는 일부 연도의 수치가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4-1-4]는 재산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정리한 것이다. 2018년 사기의 범죄피해율은 1.01%, 절도의 범죄피해율은 1.57%, 손괴의 범죄피해율은 0.37%, 기타 재산범죄피해율은 0.16%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기 범죄피해율은 2018년에 감소한 데 반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절도와 기타 재산범죄피해율은 각각 2016년 1.44%와 0.05%에서 2018년 1.57%와 0.16%로 반등하였다.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재산범죄 유형은 손괴로,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 727건에서 2018년 36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피해자별 피해횟수

[표 4-1-5]는 피해자 1명 당 피해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이래 전체 피해자 가운데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8년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1,635,743명(98.90%)으로 나타났으며, 2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14,482명(0.88%),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3,652명(0.22%)이었다.<sup>23)</sup>

▶▶▶ [표 4-1-5] 범죄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건 피해자	명	1,514,198	1,436,844	1,579,386	1,635,743
	%	(88.57)	(94.26)	(97.67)	(98.90)
2건 중복피해자	명	143,164	60,384	33,863	14,482
	%	(8.37)	(3.96)	(2.09)	(0.88)
3건 중복피해자	명	38,474	21,574	1,532	3,652
	%	(2.25)	(1.42)	(0.09)	(0.22)
4건 중복피해자	명	9,772	1,621	2,220	-
	%	(0.57)	(0.11)	(0.14)	-
5건 이상 중복피해자	명	4,024	3,871	-	-
	%	(0.24)	(0.25)	-	-
계	명	1,709,632	1,524,293	1,617,001	1,653,877
	%	(100.00)	(100.00)	(100.00)	(100.00)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1명 당 피해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중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폭력범죄의 경우 2건 이상 중복피해자의 비율은 2012년 28.19%, 2014년 16.65%, 2016년 8.96%, 2018년 1.8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처럼 감소폭이 크지는 않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중복피해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은 유사하여, 2건 이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율은 2012년 11.81%, 2014년 5.85%, 2016년 1.76%, 2018년 0.9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재산범죄에 비해 폭력범죄에서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전체 조사연도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된다.

23) 유효한 표본 사례 가운데 2016년에는 5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2018년에는 4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 [표 4-1-6] 범죄 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1건 피해자	명	211,936	1,302,262	120,335	1,281,040	153,951	1,425,435	241,328	1,394,415
	%	(71.81)	(88.19)	(83.35)	(94.15)	(91.04)	(98.24)	(98.15)	(99.03)
2건 중복피해자	명	55,360	126,974	16,381	56,381	13,626	21,858	4,545	9,938
	%	(18.76)	(8.60)	(11.35)	(4.14)	(8.06)	(1.51)	(1.85)	(0.71)
3건 중복피해자	명	20,286	33,631	3,788	17,786	1,532	1,532	-	3,652
	%	(6.87)	(2.28)	(2.62)	(1.31)	(0.91)	(0.11)	-	(0.26)
4건 중복피해자	명	3,515	9,772	-	1,621	-	2,220	-	-
	%	(1.19)	(0.66)	-	(0.12)	-	(0.15)	-	-
5건 이상 중복피해자	명	4,024	4,024	3,871	3,871	-	-	-	-
	%	(1.36)	(0.27)	(2.68)	(0.28)	-	-	-	-
계	명	295,121	1,476,663	144,374	1,360,697	169,109	1,451,045	245,873	1,408,005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제2절 | 가구 대상 범죄피해 발생

이 절에서는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주거침입이 수반된 범죄피해(주거침입 관련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피해(기타 가구 대상 범죄)의 둘로 나누어 살펴본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에는 사람이 침식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발생한 범죄로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단순주거손괴, 단순주거침입 등이, 기타 가구 대상 범죄에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부품)손괴, 단순손괴 등이 해당된다.

### 1.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2018년 전체 가구 20,482,334가구 중 2018년 한 해 동안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수는 430,327가구로 추정되었다.<sup>24)</sup>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 대비 범죄피해가구 비율은 2018년 2.10%로, 2012년 2.68%, 2014년 2.31%, 2016

년 1.99%로 감소하던 범죄피해가구 비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였다. 가구 대상 범죄 유형별로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구 수는 2018년 305,123가구(1.49%)로 2016년 221,320가구(1.15%)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는 2018년 125,204가구(0.61%)로 2016년 160,989가구(0.84%)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4-2-1] 연도별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484,646	431,604	382,309	430,327
가구 대상	피해가구 비율(추정)	%	(2.68)	(2.31)	(1.99)	(2.10)
주거침입 관련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300,726	243,377	221,320	305,123
	피해가구 비율(추정)	%	(1.66)	(1.30)	(1.15)	(1.49)
기타 가구 대상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183,920	190,396	160,989	125,204
	피해가구 비율(추정)	%	(1.02)	(1.01)	(0.84)	(0.61)

비고: 1. 피해가구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수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임  
 2. 피해가구 비율(추정)=피해가구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가구수)\*100

## 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2018년 전체 가구 20,482,334가구 중 한 해 동안 가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피해 건수는 총 439,784건으로 추정되었다.<sup>25)</sup> [표 4-2-2]에서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주거침입 관련 피해는 312,686건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2년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자동

24) 이 장 제2절의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구 원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사후층화)하기 위해 활용한 각 연도의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8,077,981가구, 2014년 18,705,004가구, 2016년 19,187,307가구, 2018년 20,482,334가구. 가구원 원가중치 적용에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 2014년, 2016년의 추정가구수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것이나, 2018년의 추정가구수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2018년 11월 1일 기준) 집계결과를 따랐으며, 총가구수(20,499,543가구)에서 집단가구를 제외하고 일반가구(19,979,188가구) 및 외국인가구(503,146가구)만을 고려하였다. 이 장에서의 전체 가구는 곧 일반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합산한 20,482,334가구를 가리킨다. 한편, 이전 연도의 경우 실가구수(가구대표 외 가구원이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가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가 추정되어 이를 보정하였다.

25) 실가구수를 고려하여 2012년·2014년·2016년의 범죄피해가구수를 다시 추정함에 따라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도 재추정되었다.

차(부품)절도·자동차(부품)손괴 등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는 127,097건으로 추정되어 2016년 160,989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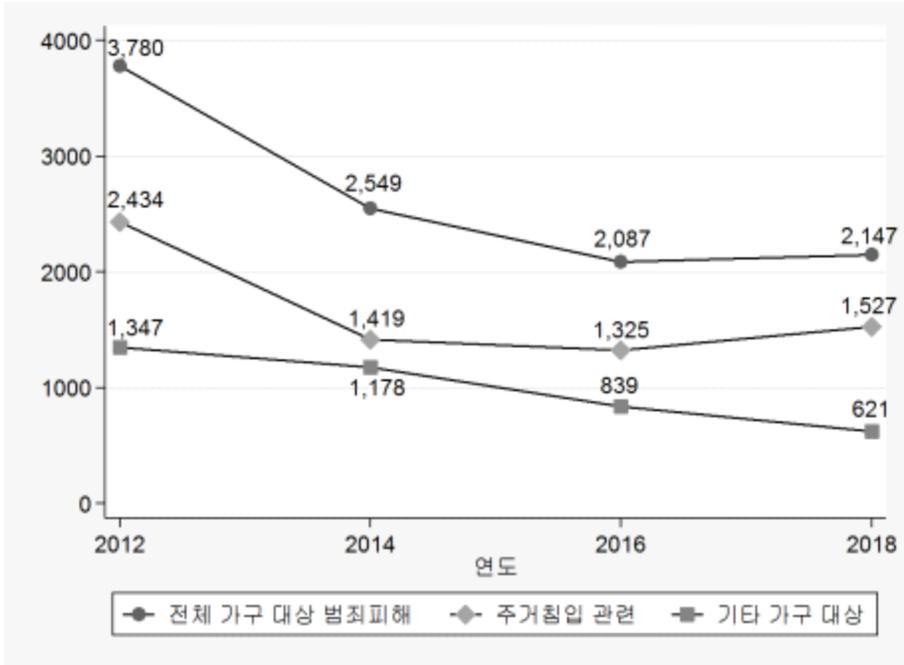
▶▶ [표 4-2-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683,500	476,836	400,449	439,784
	범죄피해율(추정)	(%)	(3.78)	(2.55)	(2.09)	(2.15)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3,780	2,549	2,087	2,147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440,021	256,562	239,460	312,686
	범죄피해율(추정)	(%)	(2.43)	(1.37)	(1.25)	(1.53)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2,434	1,419	1,325	1,527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43,479	220,274	160,989	127,097
	범죄피해율(추정)	(%)	(1.35)	(1.18)	(0.84)	(0.62)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1,347	1,178	839	621

비고: 1. 범죄피해건수는 가구에서 경험한 범죄피해의 수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임  
 2. 가구 대상 범죄피해율(추정)=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가구수)\*100

[그림 4-2-1]은 10만 가구당 피해건수를 중심으로 연도별 가구 대상 범죄피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10만 가구당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3,780건, 2014년 2,549건, 2016년 2,087건으로 점차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이전 조사연도보다 소폭 증가한 2,14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의 증가는 주거침입 관련 피해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바 크다. 2012년 2,434건, 2014년 1,419건, 2016년 1,32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주거침입 관련 피해건수는 2018년 다소 증가한 1,527건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기타 가구 대상 피해건수는 2012년 1,347건, 2014년 1,178건, 2016년 839건, 2018년 621건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그림 4-2-1] 10만 가구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 3. 범죄피해 가구별 피해횟수

[표 4-2-3]은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3]을 통해 2012년 이래 전체 피해가구 가운데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피해가구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90.03%, 2건 이상의 중복피해가 있는 가구는 9.97%였던 것에 비해, 2018년의 경우 전체 피해가구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97.80%로 나타났으며, 2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2.20%로 나타났다.<sup>26)</sup> 가구수로 살펴보면, 2018년에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420,870가구,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9,457가구로 추정된다.

26) 유효한 표본 사례 가운데 2016년에는 4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구를, 2018년에는 3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 제3절 | 보이스피싱 경험

이 절에서는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를 다룬다.

#### 1. 특별주제 선정 취지 및 문항의 구성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문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특별주제를 두어 변화하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해 왔다.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는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이란 특별주제로 한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당시 ‘신종’ 금융범죄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은 2008년 조사 이후 어느덧 전국적으로 수시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상’적인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 전(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얼마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sup>27)</sup>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다. 2008년 조사 시점과는 달리 현재 조사 체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재산범죄피해, 그 중에서도 사기범죄피해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주제에서는 재산 내지 금전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얼마나 자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 및 보기의 문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 변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고려하여 보기를 추가하거나 재배열하였다.<sup>28)</sup> 아울러 2008년 조사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외에 개인정보 도용 내지 유출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으나 금년 조사에서는 특별주제로 인한 응답 부담을

27) 이 장의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수 추정 및 2018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가구원 원가중치를 적용하여 2008년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가중치 적용 차이로 인해 2009년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와 이 장 제3절의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8) 경기남지방경찰청 수사과의 자문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및 발생빈도를 보기 구성 및 배열에 반영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및 발생빈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경기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가운데 심층적인 설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조사표상 질문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이 이루어진 통신매체 가운데 주로 피싱과 연관되는 '이메일'을 삭제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반영하여 '메신저'<sup>29)</sup>를 추가하였다. 보이스피싱 관련 설문문항은 2019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 후 최종 확정되었다.

## 2. 보이스피싱 경험 실태

### 가.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2008년과의 비교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sup>30)</sup>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 45,553,162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5,088,883명(11.17%)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 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9) 2009년 조사 당시 메신저를 통한 피싱은 새롭게 등장한 수법으로 주목을 받았으나(김은경 등, 2009: 165), 2019년 현재에는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30) 2008년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 응답자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의심되는'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관련 경험이 있다면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문구 변경사항은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노출 경험을 비교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곧 보이스피싱 피해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와 그러한 연락을 받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해당 연락을 받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등으로 이어진 경우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 [표 4-3-1]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구분			연도		
			2008	2018	
			계	계	
노출 경험 있음 (추정)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명	24,628,883	3,220,119	
		(%)	(63.73)	(7.07)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명	3,068,445	5,088,883	
		(%)	(7.94)	(11.17)	
	소계		명	27,697,328	8,309,002
			(%)	(71.67)	(18.24)
노출 경험 없음(추정)		명	10,949,892	37,244,125	
		(%)	(28.33)	(81.76)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는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94%에서 2018년 11.17%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대다수가 구체적인 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연락을 차단 내지 중단할 수 있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제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화라고 판단하고 바로 끊었다는 응답이 40.00%로 나타났다. 별도로 스팸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이거나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어 있는 등 전화번호가 의심되어 바로 끊었다는 응답은 71.55%였다. 그 외에 말투가 어눌해서,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상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녹음된 목소리여서 등의 이유로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 [표 4-3-2]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해서	명	2,035,328
	(%)	(40.00)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국제전화 등)	명	3,641,136
	(%)	(71.55)
기타(말투가 어눌해서, 카톡 프로필이 없어서 등)	명	130,890
	(%)	(2.57)

####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표 4-3-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성별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4%,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6%로 나타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에 있어 2008년과 2018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러 연령대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8년에 일부 연령대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보다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08년에는 40대(25.70%, 7,117,242명), 2018년에는 50대(21.01%, 1,744,856명)였다. 2008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97%(1,931,445명)였으나, 2018년에는 4.56%로 소폭 감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7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46%(2,066,991명)에서 2018년 5.70%(473,63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 중 40~50대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미혼인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하기 보다 짧게라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읽어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게 된 비율이 높았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무학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잠깐이라도 받거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읽어보아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99%에서 2018년 13.19%로 크게 감소하였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그리고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76%에서 24.44%로, 12.37%에서 23.80%로, 13.99%에서 19.75%로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을 직업군별로 나누었을 때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전업주부의 세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9%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2008년의 경우 직업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국민이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일정 학력 이상을 가진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보다 집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인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8년의 경우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78%였으나, 2018년에는 24.66%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4명 중 3명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소득 상승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2018년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 [표 4-3-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

구분		연도						
		2008			2018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성별	남	명	11,442,173	1,529,064	12,971,237	1,468,076	2,456,726	3,924,802
		(%)	(46.46)	(49.83)	(46.83)	(45.59)	(48.28)	(47.24)
	여	명	13,186,766	1,539,381	14,726,147	1,752,043	2,632,157	4,384,200
		(%)	(53.54)	(50.17)	(53.17)	(54.41)	(51.72)	(52.76)
연령대	10대	명	1,677,070	254,375	1,931,445	78,982	296,884	375,866
		(%)	(6.81)	(8.29)	(6.97)	(2.45)	(5.83)	(4.56)
	20대	명	3,567,104	453,706	4,020,810	486,642	879,693	1,366,335
		(%)	(14.48)	(14.79)	(14.52)	(15.11)	(17.29)	(16.45)
	30대	명	5,063,300	661,359	5,724,659	565,350	980,867	1,546,217
		(%)	(20.56)	(21.55)	(20.67)	(17.56)	(19.27)	(18.62)
	40대	명	6,486,766	630,476	7,117,242	723,907	964,129	1,688,036
		(%)	(26.34)	(20.55)	(25.70)	(22.48)	(18.95)	(20.33)
	50대	명	3,664,083	367,208	4,031,291	771,217	973,639	1,744,856
		(%)	(14.88)	(11.97)	(14.55)	(23.95)	(19.13)	(21.01)
60대	명	2,479,387	325,503	2,804,890	442,271	666,783	1,109,054	
	(%)	(10.07)	(10.61)	(10.13)	(13.89)	(13.10)	(13.36)	
70대 이상	명	1,691,173	375,818	2,066,991	146,750	326,886	473,636	
	(%)	(6.87)	(12.25)	(7.46)	(4.56)	(6.42)	(5.70)	
혼인 상태	미혼	명	6,009,470	857,643	6,867,113	655,489	1,299,738	1,955,227
		(%)	(24.40)	(27.95)	(24.79)	(20.36)	(25.54)	(23.53)
	기혼 (동거 포함)	명	16,452,681	1,857,606	18,310,287	2,294,847	3,461,037	5,755,884
사별/이혼/ 별거	명	2,166,733	353,196	2,519,929	269,782	328,107	597,889	
	(%)	(8.80)	(11.51)	(9.10)	(8.38)	(6.45)	(7.20)	
교육 정도	무학	명	885,671	212,348	1,098,019	63,277	33,231	96,508
		(%)	(3.60)	(6.92)	(3.96)	(1.96)	(0.65)	(1.16)
	초등학교 졸업	명	2,713,167	428,108	3,141,275	112,354	218,637	330,991
		(%)	(11.02)	(13.95)	(11.34)	(3.47)	(4.29)	(3.98)
	중학교 졸업	명	3,380,335	412,527	3,792,862	222,304	451,008	673,312
		(%)	(13.73)	(13.44)	(13.69)	(6.88)	(8.86)	(8.09)
	고등학교 졸업	명	9,711,884	1,089,660	10,801,544	1,315,748	1,966,968	3,282,716
(%)		(39.43)	(35.51)	(39.00)	(40.69)	(38.62)	(39.43)	
대학교 졸업	명	7,333,414	847,531	8,180,945	1,437,891	2,323,798	3,761,689	
	(%)	(29.78)	(27.62)	(29.54)	(44.47)	(45.63)	(45.18)	
대학원 졸업	명	604,413	78,270	682,683	81,853	99,171	181,024	
	(%)	(2.45)	(2.55)	(2.46)	(2.53)	(1.95)	(2.17)	
소계		명	24,628,883	3,068,445	27,697,328	3,220,119	5,088,883	8,309,002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비고: 교육정도의 경우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함(재학, 수료, 휴학, 중퇴인 경우 최종 졸업 학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졸업으로 간주함)

▶▶▶ [표 4-3-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계속)

구분		연도					
		2008			2018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직업	관리자, 전문가	명 2,197,530 (%) (8.92)	276,158 (9.00)	2,473,688 (6.40)	166,355 (5.14)	197,590 (3.88)	363,945 (4.37)
	사무종사자	명 3,382,234 (%) (13.73)	389,499 (12.69)	3,771,733 (9.76)	814,304 (25.18)	1,220,928 (23.97)	2,035,232 (24.44)
	서비스·판매 종사자	명 4,342,053 (%) (17.63)	437,999 (14.27)	4,780,052 (12.37)	891,555 (27.57)	1,089,802 (21.40)	1,981,357 (23.80)
	농림어업 종사자	명 1,461,930 (%) (5.94)	204,726 (6.67)	1,666,656 (4.31)	63,220 (1.96)	99,445 (1.95)	162,665 (1.95)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명 1,724,297 (%) (7.00)	219,735 (7.16)	1,944,032 (5.03)	234,471 (7.25)	414,371 (8.14)	648,842 (7.79)
	단순 노무 종사자	명 1,295,197 (%) (5.26)	153,617 (5.01)	1,448,814 (3.75)	93,738 (2.90)	138,023 (2.71)	231,761 (2.78)
	직업군인	명 53,460 (%) (0.22)	20,384 (0.66)	73,844 (0.19)	3,392 (0.10)	13,847 (0.27)	17,239 (0.21)
	전업주부	명 4,911,601 (%) (19.94)	496,622 (16.18)	5,408,223 (13.99)	631,164 (19.52)	1,013,439 (19.90)	1,644,603 (19.75)
	학생	명 2,730,066 (%) (11.08)	464,985 (15.15)	3,195,051 (8.27)	172,159 (5.32)	554,936 (10.90)	727,095 (8.73)
	무직/기타 (공약포함)	명 2,530,517 (%) (10.27)	404,719 (13.19)	2,935,236 (7.59)	163,071 (5.04)	350,434 (6.88)	513,505 (6.17)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명 3,216,406 (%) (13.06)	519,632 (16.93)	3,736,038 (9.67)	146,846 (4.54)	190,415 (3.7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명 4,420,418 (%) (17.95)	496,086 (16.17)	4,916,504 (12.72)	305,820 (9.46)	365,409 (7.17)	671,229 (8.0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명 6,357,410 (%) (25.81)	749,601 (24.43)	7,107,011 (18.39)	432,835 (13.39)	612,100 (12.02)	1,044,935 (12.5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명 7,408,798 (%) (30.08)	966,794 (31.51)	8,375,592 (21.67)	1,162,237 (35.94)	2,219,871 (43.59)	3,382,108 (40.6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명 2,886,537 (%) (11.72)	303,947 (9.91)	3,190,484 (8.26)	1,122,571 (34.72)	1,646,852 (32.34)	2,769,423 (33.26)
1,000만 원 이상		명 339,314 (%) (1.38)	32,385 (1.06)	371,699 (0.96)	63,121 (1.95)	58,166 (1.14)	121,287 (1.46)
소계		명 24,628,883 (%) (100.00)	3,068,445 (100.00)	27,697,328 (100.00)	3,220,119 (100.00)	5,088,883 (100.00)	8,309,002 (100.00)

비고: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한 구간 조정을 위하여 2008년에는 '소득 없음' 및 '100만 원 미만'을 '100만 원 미만'으로, 2018년에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으로,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함

## 다.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빈도

[표 4-3-5]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 [표 4-3-5]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빈도

구분		연도	
		2008 계	2018 계
거의 매일	명	287,881	66,688
	(%)	(1.04)	(0.80)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명	1,890,584	391,768
	(%)	(6.83)	(4.71)
한 달에 한 번 정도	명	4,981,572	1,403,942
	(%)	(17.99)	(16.90)
3개월에 한 번 정도	명	9,100,972	2,913,523
	(%)	(32.86)	(35.06)
거의 없음	명	11,436,319	3,533,081
	(%)	(41.29)	(42.52)

비고: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범주 없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횟수를 숫자로 기입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음. 2018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횟수가 1~3회는 '거의 없음', 4~9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10~19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0~49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회 이상은 '거의 매일'로 재코딩함.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시로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기보다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치밀하게 접근하기 위한 범죄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 3.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 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유형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에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가 취한 구체적인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중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36.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적지 않았으나(25.55%), 당시에는 통신비가 연체되었다며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더 잦았다(32.74%). 그러나 월 이용요금 약정 등으로 통신비 지불방식이 크게 달라진 2018년에는 통신비 연체를 구실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전체의 4.2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통신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줄어들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를 드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우편물 혹은 택배가 도착하였으니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84%에서 2018년 18.37%로 증가하였다. 2008년 조사 당시에는 통신비 연체와 더불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이 개최한 특별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되었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응답이 많았다(10.21%). 금번 조사에서는 경품당첨을 이유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역시 사회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없었던 보이스피싱 수법 중 2018년에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는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과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한 수법을 꼽을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자세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5.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관련 신원확인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니 금융정보 내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수법은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2.21%로 파악되었다. 특히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최근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

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젊은 연령층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의 사기범죄임을 실감케 한다.

▶▶▶ [표 4-3-6] 보이스피싱 수법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명	7,075,711	1,166,195
	(%)	(25.55)	(36.08)
수사·감독기관 사칭(경찰, 검찰, 금감원 등)	명	2,346,137	938,960
	(%)	(8.47)	(29.05)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명	2,724,892	593,536
	(%)	(9.84)	(18.37)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명	4,964,857	309,252
	(%)	(17.93)	(9.57)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명	-	183,541
	(%)		(5.68)
가족	명	215,309	158,636
	(%)	(0.78)	(4.91)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통신비 연체)	명	9,068,733	135,670
	(%)	(32.74)	(4.20)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명	450,013	131,231
	(%)	(1.62)	(4.06)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명	-	71,292
	(%)		(2.21)
친구	명	-	66,592
	(%)		(2.06)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명	127,351	22,893
	(%)	(0.46)	(0.71)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의 특별행사 경품당첨	명	2,828,311	-
	(%)	(10.21)	
기타	명	324,045	60,845
	(%)	(1.17)	(1.88)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가운데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한 경우의 비중은 2008년 8.47%에서 2018년 29.05%로 크게 높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소위 ‘기관사칭형’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중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금 환급금이 지불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비중은 2008년 17.93%에서 2018년 9.57%로 감소하여,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한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 나. 보이스피싱 경로매체

[표 4-3-기]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전화, 문자, 메신저 메시지 중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된 통신매체는 2008년에는 자택전화(69.33%)였던 데 반해, 2018년에는 휴대폰(92.29%)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통신매체 중 유선전화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매체 중 자택전화의 비중 또한 4.03%로 크게 낮아졌으며, 역시 유선전화인 직장·영업장전화의 비중도 2008년 10.11%에서 2018년 1.53%로 낮아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받은 경우는 6.34%, SNS 등 기타 응답은 0.11%로 파악되었는데, 메신저 및 SNS도 많은 경우 휴대폰에서 확인되고 해당 계정은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2018년 현재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경로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표 4-3-7] 보이스피싱 경로매체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자택전화	명	19,202,341	334,608
	(%)	(69.33)	(4.03)
직장·영업장전화	명	2,801,320	127,344
	(%)	(10.11)	(1.53)
휴대폰	명	14,573,724	7,668,233
	(%)	(52.62)	(92.29)
메신저(카카오톡 등)	명	422,207	526,643
	(%)	(1.52)	(6.34)
기타(인터넷전화, SNS 등)	명	3,334	8,812
	(%)	(0.01)	(0.11)

#### 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표 4-3-8]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이 61.36%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을 사칭하였다는 응답은 29.71%였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신용카드 회사(7.46%), 캐피탈 회사(5.59%), 보험 회사(2.21%) 등과 같은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통장개설, 입출금 등을 위한 지점(점포)가 곳곳에 개설되어 있어 인지도 및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명이 여신전문 금융기관명에 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확인된다. 제1·2금융권 외에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는 기타 응답의견도 있었다.

▶▶▶ [표 4-3-8] 사칭 금융기관 유형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명	715,535
	(%)	(61.36)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	명	346,516
	(%)	(29.71)
신용카드 회사	명	86,972
	(%)	(7.46)
캐피탈 회사	명	65,214
	(%)	(5.59)
보험회사	명	25,769
	(%)	(2.21)
기타(국민연금공단 등)	명	55,490
	(%)	(4.76)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경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을 저금리 내지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즉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 하는 것이 필요하니 안내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수법이 전체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중 41.8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으니 계좌 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수법(35.87%)이 많았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안내하는 계좌로 연체대금을 이체하라는 요구가 15.95%, 신용도 등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7.00%였다. 그 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하기 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거나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었다. 대환대출, 안전계좌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금융권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평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3-9]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명	488,330
	(%)	(41.87)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명	418,351
	(%)	(35.87)
신용카드 대금 연체	명	186,021
	(%)	(15.95)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명	81,685
	(%)	(7.00)
기타(연금 수령 수수료 입금, 보험상품 안내 등)	명	145,693
	(%)	(12.49)

#### 4.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실제 송금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 피해는 2008년 0.20%, 2018년 1.13%로 나타났다. 송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8년 1.14%, 2018년 0.9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대적인 인원규모는 적으나 송금에 따른 재산상 내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2008년 이래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상 집단 선별, 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통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실제 송금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인다. 한편, 2018년에 송금 피해에 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2008년과는 달리 2018년에는 이미 다른 경로로 유출된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것처럼 접근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많았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 [표 4-3-10]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송금한 적 있음	명	55,597	94,223
	(%)	(0.20)	(1.13)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음	명	315,243	77,008
	(%)	(1.14)	(0.93)
없음	명	27,326,488	8,140,470
	(%)	(98.66)	(97.97)
소계	명	27,697,328	8,309,002
	(%)	(100.00)	(100.00)

[표 4-3-11]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송금 피해와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몇 회 있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반복적인 송금 및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0.06%는 3회 이상의 송금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 [표 4-3-11]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횟수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송금한 적 있음	1회	명	39,927	88,963
		(%)	(0.14)	(1.07)
	2회	명	3,981	-
		(%)	(0.01)	
	3회 이상	명	11,690	5,261
		(%)	(0.04)	(0.06)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음	1회	명	245,782	77,008
		(%)	(0.89)	(0.93)
	2회	명	46,302	-
		(%)	(0.17)	
	3회 이상	명	23,158	-
		(%)	(0.08)	

이어 [표 4-3-12]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겪는 비율은 2008년보다 2018년에 소폭 높아졌다. 또한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최소, 최대, 평균 재산피해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4-3-1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재산피해 있음	명	64,836	94,304
	(%)	(0.17)	(0.21)
	최대 피해액(만 원)	1,000	2,000
	최소 피해액(만 원)	1	10
	평균 피해액(만 원)	303	381
재산피해 없음	명	27,632,492	8,214,697
	(%)	(99.83)	(99.79)

## 제4절 |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 1.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가.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난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피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건수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나.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보고의 증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폭력범죄 유형 중 이전 연도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유효 표본사례수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 증가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범죄피해의 세부 유형별 수치 역시 공표 기준을 충족하였다.

2014년 조사 이래 폭력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최근 공식 통계상 나타나는 폭력범죄 발생 감소 추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 범죄피해의 내밀한 특성상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식통계상의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가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 실태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괴롭힘의 경우에는 수년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현행법상 괴롭힘은 경범죄처벌법상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개편 때부터 괴롭힘 역시 피해실태를 장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범죄유형이라는 인식 하에 폭력범죄 유형으로 고려해 왔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가.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 지난 10년 전(2008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얼마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는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94%에서 2018년 11.17%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대다수가 구체적인 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연락을 차단 내지 중단할 수 있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제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을 살펴보면 특정 집단에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008년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주로 (연령대) 40~50대,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고, (직업) 사무종사자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전업주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경로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대상자를 선별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고 해석된다.

#### 나.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접근수법에 있어서도 고도로 지능화된 양상을 보인다. 2008년의 경우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중 통신비가 연체되었다며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를 사칭하는 ‘일상생활 밀접형’ 수법이 가장 빈번하였으나(32.74%), 2018년에는 통신비 연체를 구실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전체의 4.20%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36.08%)가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경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로는 대환대출을 위한 수수료 선입금을 빙자한 수법이 41.87%, 안전계좌로의 이체 안내를 빙자한 수법이 35.87%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가운데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한 경우의 비중은 2008년 8.47%에서 2018년 29.05%로 크게 높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소위 ‘기관사칭형’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중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 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

대상 집단 선별·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고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이 장의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

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겪는 비율은 2008년보다 2018년에 소폭 높아졌다는 분석결과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 당사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기관의 이름이 10년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최신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스스로 연락을 끊게 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주효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였다. 기관의 명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관의 활동이 어떠한 측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금융상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전문용어 사용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혼동될 소지가 없도록 금융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는 자정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한 민 경

## 제5장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이 장은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등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폭력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변화 및 보호행동 증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사건조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31)</sup>

### 제1절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점

폭력범죄피해는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일자를 봄(3~5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월~2월)의 사계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봄에 발생한 비율이 33.93%로 가장 높았고, 가을(29.72%), 겨울(18.66%), 여름(17.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발생 추이에 있어 조사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31)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음'(count asis) 옵션을 취하였다.

▶▶▶ [표 5-1-1]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봄(3월~5월)	(%)	17.19	30.21	19.99	33.93	12.559
여름(6월~8월)	(%)	29.25	30.63	24.00	17.69	
가을(9월~11월)	(%)	29.43	24.69	38.80	29.72	
겨울(12월~2월)	(%)	24.13	14.48	17.21	18.66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2]는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기준으로 폭력범죄피해 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는 저녁 및 밤(18~24시) 시간대에 54.2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절반가량이 저녁 및 밤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경향은 2012년 이래 크게 변화가 없다. 다른 연도에 비해 2018년에는 밤에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를 모른다는 응답이 11.0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심야 및 새벽(0시~6시) 시간대에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12년 12.37%, 2014년 10.79%, 2016년 9.69%에 이어 2018년 5.89%로 나타나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표 5-1-2]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각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아침 및 오전(06시~12시)	(%)	12.27	0.70	-	4.41	45.762***
한낮 및 오후(12시~18시)	(%)	19.39	31.26	29.49	23.05	
저녁 및 밤(18시~24시)	(%)	50.15	54.88	47.05	54.28	
심야 및 새벽(0시~6시)	(%)	12.37	10.79	9.69	5.89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1.74	-	8.67	1.33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3.14	2.36	-	11.04	
낮인지 밤인지 모름	(%)	0.93	-	5.11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01

## 2.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한 해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 26.46%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 밀집 상업지로, 2018년의 경우 19.86%의 폭력범죄피해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3]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집	(%)	18.02	33.47	19.94	9.04	45.968***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	27.16	24.81	26.69	26.46	
학교	(%)	4.41	5.96	9.65	4.59	
주차장	(%)	5.96	3.16	9.83	17.16	
인구 밀집 상업지	(%)	17.55	16.51	17.36	19.86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5.26	2.62	6.56	14.70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	20.73	6.41	8.71	8.19	
그 외의 장소	(%)	0.91	7.06	1.2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p < 0.001$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9.83%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구 밀집 상업지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촉발되어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예년에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중 33.47%가 집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9.04%의 폭력범죄피해만이 집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는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을 거주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우리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94.1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84.17%, 2014년 78.50%, 2016년 52.46%로 점차 감소하는 한편, '가해자의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3.18%, 2014년 13.55%, 2016년 25.04%로 점차 증가해 온 시계열 추이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표 5-1-4]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 거주자에 따른 구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우리 집	(%)	84.17	78.50	52.46	94.17	6.372
가해자의 집	(%)	3.18	13.55	25.04	-	
다른 사람의 집	(%)	12.65	7.95	22.50	5.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이어 [표 5-1-5]는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이나 그 인접한 도로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2016년 이전에는 주택이나 그 인접한 도로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응답 비율(44.66%)이 가장 높았던 데 비하여, 2018년 한 해 주택이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에서 발생한 비율이 65.78%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마을 주변'에서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5.84%였다.

▶▶ [표 5-1-5]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가: 주택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아파트 단지 주변	(%)	39.52	27.68	44.66	28.38	12.782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	27.62	22.41	34.12	65.78	
단독주택 마을 주변	(%)	32.86	49.91	21.22	5.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5

## 제2절 | 폭력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 1. 폭력범죄피해 내용

####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5-2-1]은 폭력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sup>32)</sup> 폭력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7.85%, 2014년 57.77%, 2016년 59.60%, 2018년 66.99%로 남성에 비해 크게 높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폭력범죄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51%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2.85%, 40대가 18.76%, 50대가 17.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20대~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5.5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10대 및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5.24%와 10.08%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5.56%와 3.76%로 감소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미혼인 경우는 39.49%, 배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는 48.36%, 사별이나 이혼인 경우(별거 포함)는 12.15%로 나타났다.

32)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이전 조사에서와 달리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항 구성을 변경, 교육기관(받지 않았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2, 3년제)/대학교(4년제 이상)/대학원 이상)과 교육단계(졸업/재학/수료/휴학/중퇴)로 나누어 교육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 구성 변경에 따라 폭력범죄피해자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시계열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한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68%에서 2018년 12.1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 [표 5-2-1] 폭력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성별	남	(%)	42.15	42.23	40.40	33.01	1.804
	여	(%)	57.85	57.77	59.60	66.99	
연령대	10대	(%)	14.49	21.76	15.24	5.56	33.162*
	20대	(%)	24.40	38.53	12.96	22.85	
	30대	(%)	17.18	10.53	17.71	26.51	
	40대	(%)	23.67	11.84	15.41	18.76	
	50대	(%)	13.90	5.86	17.43	17.40	
	60대	(%)	4.11	7.88	11.18	5.16	
	70대 이상	(%)	2.26	3.61	10.08	3.76	
혼인 상태	미혼	(%)	42.74	61.26	42.90	39.49	10.875+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	51.59	29.89	43.72	48.36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	5.68	8.84	13.38	12.15	
직업	관리자·전문가	(%)	15.57	1.00	7.84	1.34	64.001***
	사무종사자	(%)	15.70	26.56	19.18	17.91	
	서비스·판매 종사자	(%)	10.04	19.31	17.31	41.64	
	농림어업 종사자	(%)	1.39	5.24	2.88	1.51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2.73	3.21	4.97	2.72	
	단순 노무 종사자	(%)	2.11	-	3.95	2.12	
	전업주부	(%)	16.18	6.38	9.54	13.66	
	학생	(%)	23.18	36.21	17.28	13.17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13.09	2.10	17.06	5.9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16.38	6.22	15.12	4.54	54.78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14.87	23.04	18.94	3.35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6.34	22.17	10.12	19.5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21.86	22.00	19.77	19.43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19.03	9.31	9.78	16.09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	9.42	10.32	23.79	34.79	
	1,000만 원 이상	(%)	2.09	6.94	2.47	2.21	

\*\*\*p<0.001, \*p<0.05, +p<0.1

폭력범죄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4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17.91%), 학생(13.17%), 전업주부(1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중에서도 농림어업 종사자,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폭력범죄피해자 중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래 점차 높아졌으며, 사무종사자 및 학생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 폭력범죄피해자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1.64%로 크게 높아진 것은 성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보고가 증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폭력범죄피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또한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었다.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2%, 2014년 10.32%, 2016년 23.79%, 2018년 34.79%로 점차 높아졌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18년의 경우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가운데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적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로 낮은 편이다.

#### 나. 가해 방식

[표 5-2-2]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16.46%가 신체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40.84%는 신체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폭행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신체 공격이나 위협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11.80%, 2014년 29.68%, 2016년 39.21%, 2018년 42.70%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격이나 위협·협박 없이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폭력범죄피해 중 신체적 공격 유무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2-2] 폭력범죄피해 중 신체적 공격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신체 공격을 했다	(%)	26.73	32.75	40.80	16.46	38.810***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61.47	37.57	19.99	40.84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11.80	29.68	39.21	42.7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01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에 이어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5-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비율은 2014년 6.73%, 2016년 7.29%, 2018년 12.08%로, 2014년 이래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비율도 2018년의 경우 20.34%로 나타나, 폭력범죄피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정확히 인지 또는 회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반증한다.<sup>33)</sup>

▶▶▶ [표 5-2-3]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흉기 소지(!)	(%)	21.76	6.73	7.29	12.08	16.844***
미소지	(%)	64.80	80.16	87.68	67.59	
모르겠다	(%)	13.44	13.11	5.03	20.3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비고: (!)는 2014년과 2016년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p<0.001

#### 다. 피해자의 상황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을 경우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33) 사건조사표상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는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는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흉기 소지와 미소지로 양분하고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생략한 가운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는 협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 5-2-4]는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34)</sup> 2018년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응답은 31.47%로, 2012년 16.02%, 2014년 18.28%, 2016년 21.28%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중 음주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1.68%로,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응답 비율보다 음주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2배가량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 [표 5-2-4]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음주	(%)	16.02	18.28	21.28	31.47	7.494
비음주	(%)	71.41	74.99	76.44	61.68	
모르겠다	(%)	12.57	6.72	2.29	6.8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만14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5-2-5]에 제시되어 있다.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로, 2016년 44.48%보다는 낮으나, 2018년의 경우에도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66.21%)이 더 높다는 점은 이전 조사시기에서와 동일하다.

34)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조사표상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는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의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음주와 비음주로 양분하고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생략한 가운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5-2-5] 폭력범죄피해 당시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32.87	47.45	44.48	32.40	7.690
없었다	(%)	67.13	49.19	55.52	66.21	
모르겠다	(%)	-	3.36	-	1.39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비고: 가해자와 피해자, 만14세 미만 제외

통상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표 5-2-6]은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에 제3자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시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1.14%, 2014년 45.05%, 2016년 61.94%, 2018년 55.08%로, 전반적으로 동반피해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 [표 5-2-6]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18.86	54.95	38.06	44.92	7.168+
없었다	(%)	81.14	45.05	61.94	55.08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1

폭력범죄피해 당시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폭력에 맞서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표 5-2-7]은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조사를 제외하면,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기보호 노력을 하였다는 응답 비중보다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표 5-2-7]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같이 있던 사람 포함)의 자기보호 노력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예	(%)	46.45	45.80	74.71	41.57	9.517*
아니오	(%)	53.55	54.20	25.29	58.4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5

#### 라.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응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sup>35)</sup> [표 5-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7.37%, 2014년 38.60%, 2016년 52.05%, 2018년 45.79%). 2018년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다음으로는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16.73%,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하였다는 비율이 9.46%, '숨거나(숨기거나) 회피'하였다는 비율이 8.5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탈출이나

35) 2016년 보고서에서는 피해자 대응방법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계를 100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응답사례 전체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표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후 복수응답가능 문항에 대한 표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도망을 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 [표 5-2-8]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방법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10.41	10.21	29.01	-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	37.37	38.60	52.05	45.79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1.92	30.60	32.94	9.46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	5.96	-	11.62	-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14.16	9.14	37.32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	17.16	-	48.52	16.73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22.61	10.78	18.67	8.53
그 외의 행동	(%)	13.78	5.39	-	-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레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5-2-9]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이다. 2012년 이래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2012년 47.05%, 2014년 56.24%, 2016년 82.27%, 2018년 61.80%), 피해자가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의 경우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각각 3.34%, 8.0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다는, 피해자 대응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평가는 3.26%에 그쳤으며,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커졌다'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5-2-9]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에 따른 결과 평가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	47.05	56.24	82.27	61.80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	13.90	6.77	31.40	3.34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9.76	4.81	30.00	8.02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손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	3.47	-	-	-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	1.54	-	8.19	-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	9.68	6.35	10.48	3.26
모르겠음	(%)	18.19	21.94	8.12	7.20
그 외의 영향(!)	(%)	6.75	-	-	-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 폭력범죄피해 결과

### 가. 신체적 피해

물리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폭력범죄의 특성상 폭력범죄피해자는 많은 경우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 5-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2년 31.04%, 2014년 64.15%, 2016년 78.33%, 2018년 63.8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8.96%, 2014년 35.85%, 2016년 21.67%, 2018년 36.17%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 [표 5-2-10]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예	(%)	31.04	64.15	78.33	63.83	39.081*
아니오	(%)	68.96	35.85	21.67	36.1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5

[표 5-2-11]은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의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은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2012년 20.93%, 2014년 51.10%, 2016년 67.30%, 2018년 27.36%). 다만,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가 5건 미만으로 적어 시계열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

▶▶▶ [표 5-2-11]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강간(미수(!))	(%)	-	-	-	1.46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	1.60	4.74	-	4.18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	6.72	4.35	-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4.72	3.05	4.83	4.45
기절함(의식 불명)(!)	(%)	1.60	-	-	1.25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	20.93	51.10	67.30	27.36
그 외의 피해(!)	(%)	9.26	4.24	-	-

비고: 1. 신체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신체 피해별로 수치를 산출함에 있어 구체적인 신체 피해를 응답하지 않은 일부 사례에 대해 별도의 무응답 처리를 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체 피해별 백분율의 합계는 100보다 작음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나. 정신적 피해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두려움, 불안 등 정서적인 무형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표 5-2-12]는 폭력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 [표 5-2-12]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	41.73	63.66	62.32	77.03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	22.77	33.65	32.74	32.12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	61.32	70.06	59.57	66.7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	38.87	34.48	47.09	44.47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	20.23	14.20	37.87	30.90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2.10	8.69	15.49	3.39
자살 충동(!)	(%)	2.08	3.03	-	-
자살 시도(!)	(%)	1.45	-	2.16	-
그 외의 고통(!)	(%)	10.93	-	4.34	-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레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등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2018년의 경우 [표 5-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폭력범죄피해자 중 17.26%가 결석·병가 또는 휴가·영업중지 등 적게는 하루, 많게는 2주에 이르는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13]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13.11	10.66	23.58	17.26	4.151
없었다	(%)	86.89	89.34	76.42	82.7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다. 감정변화

폭력범죄피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사건을 경험한 후 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으며, 그 변화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양상을 띤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는 만큼,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피해자의 감정 변화가 크다. [표 5-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4.25%(매우 낮아졌다: 8.98%, 낮아진 편이다: 45.27%)로 나타났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 역시 폭력범죄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공유하는 감정 변화였다. 시계열에 따라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가운데, 변화없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울러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69.00%가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다고 응답(매우 낮아졌다: 22.91%, 낮아진 편이다: 46.09%), 폭력범죄피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폭력범죄피해 전후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이 크게 낮아지는 피해자의 감정 변화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보다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감정의 변화 폭이 적은 편이다. 2018년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61.07%로 나타난 가운데,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28.78%, 매우 낮아졌다: 2.12%, 낮아진 편이다: 26.66%)을 크게 상회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에 있어서도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낮아진 편이다: 33.18%)보다 변화없다(59.08%)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폭력범죄피해 이후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는 비율도 2018년 각각 10.14%와 7.74%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일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가 경찰 등 사법기관과 사법제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법기관, 그 중에서도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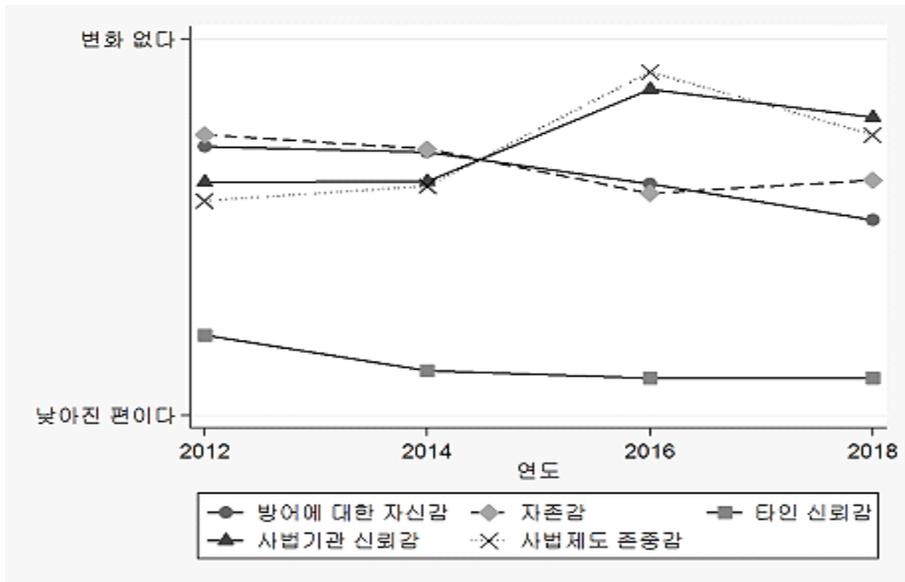
▶▶▶ [표 5-2-14]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매우 낮아졌다	(%)	8.81	5.78	4.32	8.98	10.486
	낮아진 편이다	(%)	29.46	35.54	39.46	45.27	
	변화없다	(%)	45.68	41.67	46.57	31.94	
	높아진 편이다	(%)	13.67	17.00	9.65	12.55	
	매우 높아졌다	(%)	2.39	-	-	1.26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매우 낮아졌다	(%)	6.10	4.58	-	2.38	23.210*
	낮아진 편이다	(%)	26.25	29.95	45.83	49.66	
	변화없다	(%)	57.55	55.57	49.35	36.64	
	높아진 편이다	(%)	7.19	9.90	4.82	5.70	
	매우 높아졌다	(%)	2.90	-	-	5.6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21.08	21.63	18.81	22.91	6.775
	낮아진 편이다	(%)	42.77	44.92	54.62	46.09	
	변화없다	(%)	30.88	33.45	24.41	29.14	
	높아진 편이다	(%)	4.36	-	2.16	1.86	
	매우 높아졌다	(%)	0.91	-	-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12.54	5.91	2.47	2.12	18.970+
	낮아진 편이다	(%)	27.02	30.46	19.22	26.66	
	변화없다	(%)	50.09	59.24	69.67	61.07	
	높아진 편이다	(%)	6.67	4.39	6.48	10.14	
	매우 높아졌다	(%)	3.68	-	2.1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매우 낮아졌다	(%)	13.78	9.40	-	-	27.303**
	낮아진 편이다	(%)	26.79	24.73	18.07	33.18	
	변화없다	(%)	51.35	61.48	74.84	59.08	
	높아진 편이다	(%)	4.79	4.39	4.93	7.74	
	매우 높아졌다	(%)	3.29	-	2.1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lt;0.01, \*p&lt;0.05, +p&lt;0.1

[그림 5-2-1]은 폭력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감정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낮아졌다, 5: 매우 높아졌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5-2-14]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은 조사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감정 중 폭력범죄피해를 기화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은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 역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은 폭력범죄피해 이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값 역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그림 5-2-1]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 라. 보호행동 변화

폭력범죄로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감정에 급격한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계기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행동의 변화가 나타

날 수 있다. [표 5-2-15]는 폭력범죄피해 전과 비교하였을 때 폭력범죄피해 이후 특히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36)</sup> 조사문항에서 측정한 8가지 행동 측면에서 폭력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이후 전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8가지 행동 측면 중에서도 폭력범죄피해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웃 등 공동체를 활용하기보다는 범죄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개인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2.17%에서 2018년 40.04%로 높아졌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5.72%에서 2018년 24.42%로 상승하였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문항과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16년 0.85%에서 2018년 11.07%, 2016년 0.89%에서 2018년 11.12%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문항에 대해 2016년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14.71%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비율은 2018년의 경우 각각 2.52%와 0.0%에 그쳐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도움 요청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은 기초조사표상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다. 이 문항은 2016년에 최초로 사건조사표에 추가됨에 따라 이 장에서는 2016년 기준 조사 결과와 2018년 기준 조사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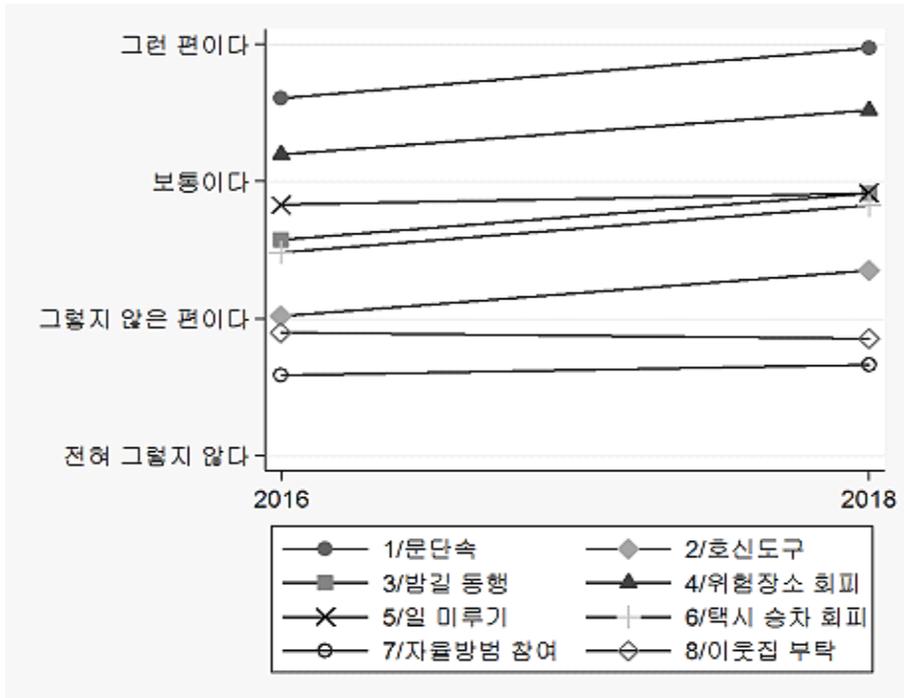
▶▶▶ [표 5-2-15]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 <sup>2</sup>
	2016	(%)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016	(%)	3.83	14.72	20.37	38.91	22.17	4.711
	2018	(%)	3.07	9.97	13.60	33.32	40.04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2016	(%)	37.01	38.40	10.44	14.14	-	11.856*
	2018	(%)	38.60	30.84	2.16	13.69	14.71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2016	(%)	14.51	35.32	28.89	20.43	0.85	6.286
	2018	(%)	13.22	30.11	19.95	25.66	11.07	
4)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2016	(%)	9.63	15.97	24.95	43.74	5.72	11.700*
	2018	(%)	6.53	21.35	9.94	37.77	24.42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2016	(%)	4.22	36.14	34.20	23.11	2.32	2.247
	2018	(%)	7.63	31.99	27.14	27.59	5.65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2016	(%)	17.96	35.03	28.50	17.61	0.89	5.601
	2018	(%)	16.06	25.46	29.09	18.27	11.12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	(%)	57.89	28.86	9.68	3.57	-	6.724
	2018	(%)	47.06	45.41	4.13	0.88	2.52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	2016	(%)	42.63	33.34	16.65	6.12	1.26	1.694
	2018	(%)	45.32	28.54	21.44	4.69	-	

\*p<0.05

[그림 5-2-2]는 폭력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자신이 취한 보호행동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2016년도와 2018년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2-15]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범죄피해 경험이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웃에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행동과 같이 지역사회 내지 공동체에 기반한 보호행동을 취하는 비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범죄피해 경험 이후 평균적으로 가장 강화되는 활동은 문단속이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가지 않기, 급한 일이라도 밤에 외출하여야 한다면 미루기, 밤길에 누군가와 동행하기, 밤에 혼자 택시타지 않기 등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소극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평균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5-2-2]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 제3절 |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 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표 5-3-1]은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예컨대, 가해자의 수는 몇 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의 경우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0%였으며, 22.0%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인지 정도는 2014년 97.64%, 2016년 92.15%에 이어 2018년 78.0%로 나타나, 2014년 이래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5-3-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예	(%)	90.01	97.64	92.15	78.00	13.529**
아니오	(%)	9.99	2.36	7.85	22.0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1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5-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 가해자는 1명이었다는 비율이 69.91%로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 가해자가 단독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이전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2012년 75.90%, 2014년 67.31%, 2016년 78.24%). 한편, 2명 이상 복수의 가해자, 그 중에서도 2명의 가해자가 폭력범죄를 가한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8.84%, 2014년 13.75%, 2016년 15.29%, 2018년 22.25%).

▶▶▶ [표 5-3-2] 폭력범죄 가해자의 수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1명	(%)	75.90	67.31	78.24	69.91	9.618
2명	(%)	8.84	13.75	15.29	22.25	
3명 이상(!)	(%)	15.25	18.93	6.46	7.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5-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남성이었던 비율은 2018년 95.28%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비율은 2018년 1.88%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해자가 2명 이상으로, 남녀 모두 있었던 경우는

2~3%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2012년 3.82%, 2014년 3.84%, 2016년 2.55%, 2018년 2.83%).

▶▶▶ [표 5-3-3] 폭력범죄 가해자의 성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남	(%)	85.30	87.64	79.73	95.28	7.806
여	(%)	10.89	8.52	17.72	1.88	
남녀 모두	(%)	3.82	3.84	2.55	2.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3-4]는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37)</sup> 다른 연도에 비해 2018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연령대가 40대인 경우는 23.75%, 50대인 경우는 28.05%, 60대 이상인 경우는 17.59%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르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가 40대 이상인 비중은 69.39%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해자의 연령대가 50대인 비율은 2012년 19.36%, 2014년 21.37%, 2016년 21.38%, 2018년 28.05%로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18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가 10대 중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37)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령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복수인 상황을 상정하여 사건 조사표상 가해자의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생략한 가운데 응답결과를 합산한 값을 100으로 간주하여 보기별 응답 사례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포함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5-3-5]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 [표 5-3-4] 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0대 중반(I)	(%)	2.33	4.18	6.41	-
10대 후반	(%)	8.02	18.96	6.78	8.60
20대	(%)	15.27	11.12	15.43	8.40
30대	(%)	22.77	13.00	20.06	13.50
40대	(%)	22.75	12.04	10.89	23.75
50대	(%)	19.36	21.37	21.38	28.05
60대 이상	(%)	8.97	6.54	7.95	17.59
모르겠다	(%)	7.01	12.79	8.22	5.80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I)는 유효 표본사레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5-3-5]는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42.61%, 2014년 35.05%, 2016년 43.39%, 2018년 39.92%로 나타나, 가해자의 음주상태에 대한 응답 비율상 연도별로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 [표 5-3-5]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그렇다	(%)	42.61	35.05	43.39	39.92	2.443
아니다	(%)	42.82	44.90	42.11	38.25	
모르겠다	(%)	14.57	20.05	14.50	21.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3.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 5-3-6]은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6년을 제외하고,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는 응답의 비율을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었다는 비율은 61.5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는 비율은 38.01%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친인척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보다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 [표 5-3-6]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친인척(1)	(%)	2.78	3.93	1.37	0.4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	31.94	41.13	52.12	38.01
전혀 모르는 사람	(%)	65.27	54.95	43.63	61.59
무응답/결측	(%)	-	-	2.88	-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1)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3-7]과 같다. 2018년에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가 29.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인 경우가 19.72%, 얼굴만 아는 사람인 경우가 18.8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 중 가해자가 직장 동료(37.71%), 친구(28.26%), 잘 아는 이웃(26.34%)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가 적어 연도별로 비교함에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2018년에 가해자가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상사-부하, 또는 동료관계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 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 [표 5-3-7]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세분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친구(!)	(%)	5.11	9.01	28.26	2.16
애인(전 애인 포함)(!)	(%)	12.18	-	3.57	-
학교 선후배(!)	(%)	2.68	38.31	19.83	14.48
직장 동료(!)	(%)	9.18	3.53	37.71	19.72
직장 상사(!)	(%)	11.75	7.41	3.70	29.85
거래하던 사람(!)	(%)	6.64	-	1.19	-
잘 아는 이웃(!)	(%)	14.22	32.63	26.34	2.67
얼굴만 아는 사람	(%)	24.05	24.47	17.40	18.87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폭력범죄피해자 중 가해자와의 관계를 응답하지 않은 일부 사례에 대해 별도의 무응답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수를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함. 이에 따라 세부 유형별 백분율의 합계는 100보다 작을 수 있음.  
 3.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제4절 |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되는 가운데,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9.83%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구 밀집 상업지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촉발되어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예년에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중 33.47%가 집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9.04%의 폭력범죄피해만이 집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폭력범죄피해는 집 또는 주택이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주차장과 같이 집에서 확장된 공간,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과 같이 업무 내지 근로장소에서도 폭력범죄피해가 확인되는 등, 그 발생 장소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통상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만14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결과는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시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1.14%, 2014년 45.05%, 2016년 61.94%, 2018년 55.08%로, 전반적으로 동반피해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 3.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폭력범죄피해 당시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폭력에 맞서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조사를 제외하면,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기보호 노력을 하였다는 응답 비중보다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7.37%, 2014년 38.60%, 2016년 52.05%, 2018년 45.79%). 다음으로는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16.73%,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하였다는 비율이 9.46%, ‘숨거나(숨기거나) 회피’하였다는 비율이 8.5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대응이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012년 47.05%, 2014년 56.24%, 2016년 82.27%, 2018년 61.80%),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018년의 경우 각각 3.34%, 8.02%로 나타났다.

#### 4.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두려움, 불안 등 정서적인 무형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가 아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신적·심리적인 외상(trauma)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력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한 민 경

## 제6장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이 장은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사기, 절도, 손괴 등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그리고 재산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변화 및 보호행동 증가 여부를 다룬다. 앞 장에서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를 살펴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계열에 따라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38)</sup>

### 제1절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 1. 재산범죄피해 발생시점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피해 발생시점을 봄(3~5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월~2월)의 사계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는 봄과 겨울보다는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봄과 겨울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21.04%와 17.12%였으나, 여름과 가을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36.64%와 25.20%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발생 차이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8)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음'(count asis) 옵션을 취해 산출하였다.

▶▶ [표 6-1-1] 재산범죄피해 발생 계절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봄(3월~5월)	(%)	22.60	21.06	23.08	21.04	19.086*
여름(6월~8월)	(%)	34.54	32.26	29.60	36.64	
가을(9월~11월)	(%)	24.17	34.99	32.90	25.20	
겨울(12월~2월)	(%)	18.69	11.69	14.42	17.1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lt;0.05

[표 6-1-2]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기준으로 재산범죄피해 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피해 여부 및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나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일정 시각이 경과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년 조사에서도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20.41%로 높게 나타났다.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재산범죄의 지능화·고도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밤(저녁 및 밤,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포함)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이 28.94%인데 비해, 낮(한낮 및 오후,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포함)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40.04%로 나타나는 등 밤보다 낮에 범죄피해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심야 및 새벽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12년 15.64%, 2014년 6.97%, 2016년 8.66%, 2018년 5.68%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6-1-2]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아침 및 오전(06시~12시)	(%)	8.86	6.33	7.21	4.93	68.640***
한낮 및 오후(12시~18시)	(%)	23.21	22.48	22.24	26.80	
저녁 및 밤(18시~24시)	(%)	16.10	25.40	19.93	11.09	
심야 및 새벽(00시~06시)	(%)	15.64	6.97	8.66	5.68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8.26	11.14	10.11	13.24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16.01	18.23	12.44	17.85	
낮인지 밤인지 모름	(%)	11.91	9.44	19.42	20.4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lt;0.001

## 2.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발생한 재산범죄피해 중 42.43%가 집에서 발생하였다(표 6-1-3) 참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로, 2018년의 경우 19.09%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1-3]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집	(%)	38.20	32.00	35.10	42.43	35.048*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	23.80	26.67	23.23	19.09	
학교	(%)	7.54	4.30	3.95	5.92	
주차장	(%)	14.20	15.63	15.14	12.55	
인구 밀집 상업지	(%)	7.34	9.62	14.31	12.52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2.33	0.94	2.56	1.2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	5.47	9.69	4.24	5.10	
그 외의 장소	(%)	1.13	1.14	1.45	1.1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lt;0.05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특기할 부분은 주차장에서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이 2012년 14.20%, 2014년 15.63%, 2016년 15.14%, 2018년 12.55%로 10%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승용차 등 차량 역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한 형태로, 차량 내 물품 절취·차량 외부 손괴 등 차량의 가치를 해하는 재산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1-4]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의 직장 또는 영업장소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직장 또는 영업장소였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5.37%, 2014년 6.57%, 2016년 7.08%, 2018년 7.53%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시계열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

▶▶▶ [표 6-1-4]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직장(영업장소)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예	(%)	5.37	6.57	7.08	7.53	1.457
아니오	(%)	94.63	93.43	92.92	92.4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제2절 | 재산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 1. 재산범죄피해 내용

####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6-2-1]은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시계열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재산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 상회하고 있으나, 폭력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자 중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58.44%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지다가 3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재산범죄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높아진 데 비해,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한층 낮아져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시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재산범죄피해자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가 매년 60% 이상으로, 2018년의 경우에는 61.38%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 중 혼인상태가 미혼,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폭력범죄피해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30.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23.69%), 전업주부(14.22%), 학생(1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자 중에는 직업군인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산범죄피해자 중에서는 직업군인이 일부 확인되었다(2018년의 경우 0.27%). 직업이 관리자·전문가의 경우에는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2.79%에서 2018년 1.8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또한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층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산범죄피해자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38%에서 2018년 32.71%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54%에서 2018년 6.47%로 감소하였다.

▶▶ [표 6-2-1]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성별	남	(%)	48.96	40.56	40.87	41.56	9.676*
	여	(%)	51.04	59.44	59.13	58.44	
연령대	10대	(%)	8.40	3.61	3.31	4.46	66.201***
	20대	(%)	12.34	15.29	8.25	18.54	
	30대	(%)	26.68	18.96	21.25	21.23	
	40대	(%)	20.47	23.36	20.12	18.82	
	50대	(%)	18.87	22.59	27.64	17.18	
	60대	(%)	9.00	9.11	11.44	12.13	
	70대 이상	(%)	4.25	7.08	7.98	7.64	
혼인 상태	미혼	(%)	26.63	21.97	19.58	27.58	12.002+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	62.82	64.71	69.08	61.38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	10.55	13.32	11.35	11.04	
직업	관리자·전문가	(%)	12.79	3.46	2.98	1.84	125.935***
	사무종사자	(%)	14.00	21.94	17.56	23.69	
	서비스·판매 종사자	(%)	17.40	23.04	25.56	30.19	
	농림어업 종사자	(%)	3.08	4.89	3.34	3.81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9.34	7.48	9.99	5.68	
	단순 노무 종사자	(%)	3.57	3.02	4.26	2.85	
	직업군인	(%)	0.21	0.17	-	0.27	
	전업주부	(%)	19.55	21.32	22.74	14.22	
	학생	(%)	12.94	8.96	7.47	11.04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7.10	5.70	6.10	6.39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14.54	7.57	6.81	6.47	180.76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18.64	11.86	10.55	5.4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22.74	16.85	13.10	12.0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21.56	23.86	20.10	20.9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	9.13	19.91	19.56	22.40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	11.86	17.87	26.74	32.05	
	1,000만 원 이상	(%)	1.52	2.08	3.14	0.66	

\*\*\*p<0.001, \*p<0.05, +p<0.1

## 나. 유형별 재산범죄피해 내용

아래에서는 재산범죄피해를 사기, 절도, 손괴 등 유형에 따라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39)</sup>

### 1) 사기 피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한 범죄를 일컫는 사기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수법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6-2-2]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피해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표 6-2-2] 사기 피해내용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	(%)	20.79	17.07	9.18	13.66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하도록 유도(!)	(%)	2.50	2.55	0.96	1.08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32.67	41.02	58.05	46.5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6.76	10.40	16.75	14.03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2.29	5.18	7.93	9.6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6.93	11.31	2.38	5.7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2.24	3.05	4.10	3.77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	26.42	9.42	0.65	7.58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39)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47조),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29조), 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66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분석결과는 법정형이 중한 순서에 따라 사기, 절도, 손괴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는, 기존의 신뢰 내지 유대관계에 기반한 사기 피해가 시기와 관계없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사기 피해 중 4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기 피해내용이 14.03%,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피해내용이 13.66%로 나타났다. 이 중 우체국 등 기관이나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 13.66%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6-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속이는 ‘그럴듯한 말씀씨’는 사기 피해수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거나, 공짜 할인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는 2018년 21.60%로 나타났다. 우체국 등 기관이나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인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는 앞서 [표 6-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 [표 6-2-3] 사기 피해수법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방송, 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	1.03	1.53	-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1.13	0.64	2.54	2.31
전화(허위)광고(!)	(%)	9.25	4.45	1.57	4.87
보이스피싱	(%)	18.89	13.43	8.89	11.99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6.34	4.73	4.42	3.57
인터넷 쇼핑몰	(%)	9.10	18.81	21.08	21.60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7.20	2.39	0.86	-
그럴듯한 말씀씨	(%)	49.14	55.61	63.16	54.82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3.99	-	2.87	3.34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2.96	0.92	1.37	4.25
그 외의 수단(!)	(%)	5.47	3.66	-	2.82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6-2-4]는 평균 사기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소 및 최대 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최대 사기 피해액은 6천만원, 평균 피해액은 46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 6-2-4] 평균 사기 피해액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10,223	3,707	4,726	4,648
최소 피해액	(천원)	3	5	10	10
최대 피해액	(천원)	30,000	40,000	50,000	60,000

적지 않은 피해액수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편, 2018년에 피해액을 모두 되찾았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표 6-2-5] 사기 피해액 회수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모두 되찾았다	(%)	3.71	1.43	1.62	6.11	24.304**
일부 되찾았다	(%)	5.09	5.34	15.04	3.79	
전혀 되찾지 못했다	(%)	91.20	93.23	83.34	89.63	
무응답/결측	(%)	-	-	-	0.48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1

## 2) 절도 피해

[표 6-2-6]은 절취의 대상이 된 피해물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27.41%)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갑·핸드백·가방(21.81%), 현금수표·상품권 등(21.80%), 휴대전화·노트북 등의 개인 휴대 물품(12.25%)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이는 물품 구입 등 경제활동 시 현금 사용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표 6-2-6] 절도 피해물품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	19.11	20.52	26.15	27.41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0.46	2.18	1.77	1.28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33.92	31.59	31.67	21.80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7.84	6.87	6.03	7.42
지갑, 핸드백, 가방	(%)	11.90	18.93	21.65	21.81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12.49	14.95	11.98	12.25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	4.52	3.02	2.07	1.85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1.15	1.28	0.47	0.16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12.08	12.45	3.77	8.25
그 외의 피해	(%)	4.41	3.15	4.73	11.84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1%, 2014년 20.52%, 2016년 26.15%, 2018년 27.4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당 가격이 백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등장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되파는 수법 등으로 인해 절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을 절도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보인다.

지갑·핸드백·가방 역시 2012년 이래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온 항목이다. 여기에는 명품 등 고가의 지갑·핸드백·가방을 절취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지갑·핸드백·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노리고 절취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 자전거나 지갑·핸드백·가방과 같이 절도 피해물품 중에서도 나르고 현금화(환매) 하기 쉽고 가벼운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이동수단임에도 추적 가능성이 높은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나 TV 등 대형

가전이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및 초고가 물품에 대한 절도피해보다는 소형 및 중고가 물품에 대한 절도피해가 빈번한 경향은 평균 절도 피해액에 대한 [표 6-2-7]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의 경우 평균 피해액은 46만 2천원, 최소 피해액은 1천원, 최대 피해액은 8백만원으로, 2012년 이래 평균 피해액뿐만 아니라 최소 및 최대 피해액에서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 [표 6-2-7] 평균 절도 피해액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884	1,011	655	462
최소 피해액	(천원)	7	5	4	1
최대 피해액	(천원)	30,000	10,000	20,000	8,000

피해액으로 산정된 절도 피해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도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절도 피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 나 회복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표 6-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이에 비해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6-2-8] 절도 피해물품 회수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모두 되찾았다	(%)	1.90	2.78	1.89	1.37	11.090
일부 되찾았다	(%)	3.20	1.55	1.82	1.10	
전혀 되찾지 못했다	(%)	84.52	89.90	90.66	92.39	
무응답/결측	(%)	10.38	5.77	5.63	5.1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3) 손상 및 파손(손괴) 피해

[표 6-2-9]은 2018년 한 해 동안 가진 물건이 손상 또는 파손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물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40)</sup> 차량 및 부품이 손괴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의 창문·자물쇠·출입문이 손괴되었다는 응답이 14.49%였다. 차량(부품 포함)과 창문·자물쇠 등 주택 방범 및 시건장치를 제외하면 응답에서 손괴된 물품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6-2-9] 손괴 피해물품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차량(및 부품)	(%)	85.44	88.04	89.07	81.03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	12.04	5.20	7.82	14.49
그 외의 물건(!)	(%)	2.52	6.76	3.11	4.48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절도 피해와 비교하였을 때 손괴 피해규모는 전반적으로 최대 피해액은 낮으나 최소 피해액은 높은 수준이다. [표 6-2-10]은 손괴된 물품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을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 평균 손괴 피해액은 49만 2천원, 최소 손괴 피해액은 3만원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대 손괴 피해액도 5백만원으로, 2016년의 3백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 [표 6-2-10] 평균 손괴 피해액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424	324	317	492
최소 피해액	(천원)	10	5	10	30
최대 피해액	(천원)	7,500	3,000	3,000	5,000

40) 사건조사표상 손상 또는 파손된 물건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 중 차량(및 부품)/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을 제외한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의류/그 외의 물건에 대한 유효 표본사례수가 적어 이를 '그 외의 물건' 항목으로 합산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절도 피해와는 달리 손괴 피해는 그 피해 물품이 차량(부품 포함)인 경우가 많아 자동차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손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 6-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 손괴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 피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47.56%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괴 피해에 대한 보험회사 신고 정도는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표 6-2-11] 손괴 피해 보험회사 신고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예	(%)	12.38	29.88	13.13	47.56	23.254***
아니오	(%)	87.62	70.12	86.87	52.4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p < 0.001$

[표 6-2-12]는 손상 또는 파손으로 물품의 효용을 해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피해를 전부 배상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2.63%, 2014년 9.03%, 2016년 9.14%, 2018년 13.66%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9.54%, 2014년 77.24%, 2016년 74.82%, 2018년 45.00%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가해자에게 손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8.19%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표 6-2-12] 손괴 피해배상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전부 받았다	(%)	2.63	9.03	9.14	13.66	52.727***
일부 받았다	(%)	1.48	0.59	-	1.70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	1.47	4.79	8.19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2.21	-	
요구하지 않았다	(%)	69.54	77.24	74.82	45.00	
무응답/결측	(%)	26.36	11.67	9.04	31.4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p < 0.001$

## 2. 재산범죄피해 결과

### 가. 정신적 피해

비록 폭력범죄피해에서와 같은 직접적·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사기·절도·손괴 범죄피해 경험으로 인해 재산범죄피해자는 폭력범죄피해에 못지않은 무형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표 6-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 경험으로 인해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울함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39.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두려움(24.53%), 불면증·악몽·환청·두통(17.59%), 고립감(12.75%)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 이후 고립감보다는 두려움, 불면증·악몽·환청·두통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차이가 없다.

▶▶ [표 6-2-13]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	29.34	41.14	40.36	39.14
고립감(외로움, 간헐 느낌)	(%)	10.77	18.09	13.65	12.75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	32.39	31.30	24.59	24.5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	17.34	24.17	19.29	17.59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	11.36	13.98	13.53	11.4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1.18	2.21	2.55	1.30
자살 충동(!)	(%)	1.61	0.81	1.31	0.25
자살 시도(!)	(%)	0.35	1.00	0.63	-
그 외의 고통	(%)	15.06	3.44	1.62	1.57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6-2-14]는 정신적 후유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재산범죄피해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등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재산범죄피해자 중 3.56%가 결석·병가 또는 휴가·영업중지 등 적게는 하루, 많게는 2주에 이르는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6-2-14] 재산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7.06	2.70	3.67	3.56	13.381**
없었다	(%)	92.94	97.30	96.33	96.4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1

#### 나. 감정 변화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후 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와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재산범죄 피해 경험 전과 비교하였을 때 경험 이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24.58%(매우 낮아졌다: 3.52%, 낮아진 편이다: 21.06%)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에 있어서도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21.47%(매우 낮아졌다: 2.59%, 낮아진 편이다: 18.88%)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된 재산범죄피해 경험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중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은 폭력범죄피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특히, 재산범죄피해 유형 중에서도 사기를 경험한 피해자가 많고,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럴 듯한 말솜씨로 값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간 수법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는 일견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재산범죄피해 이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감정이 변화하였던 것과는 달리, 재산범죄피해자들은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와 법에 대한 존중감에 있어 변화없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각각 79.34%와 81.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의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17.72%(매우 낮아졌다: 3.71%, 낮아진 편이다: 14.0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17.13%(매우 낮아졌다: 1.99%, 낮아진 편이다: 15.14%)로, 2012년의 35.75% 및 32.44%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범죄피해자들은 비록 범죄피해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 등 사법기관과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지않은 것은 보여준다.

▶▶▶ [표 6-2-15]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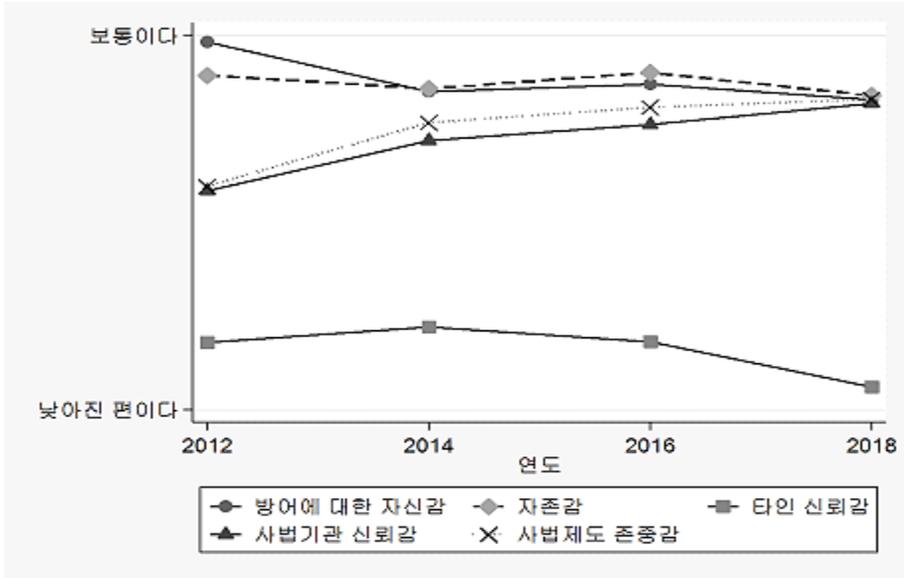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매우 낮아졌다	(%)	3.53	2.77	1.55	3.52	33.374***
	낮아진 편이다	(%)	12.20	19.53	18.78	21.06	
	변화없다	(%)	68.89	68.48	71.17	65.40	
	높아진 편이다	(%)	13.21	8.35	8.08	9.16	
	매우 높아졌다	(%)	2.16	0.86	0.42	0.8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매우 낮아졌다	(%)	3.04	2.19	1.77	2.59	19.836+
	낮아진 편이다	(%)	12.10	15.29	13.19	18.88	
	변화없다	(%)	78.15	77.04	78.23	71.31	
	높아진 편이다	(%)	5.86	5.47	6.82	6.40	
	매우 높아졌다	(%)	0.84	-	-	0.8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18.85	15.72	14.84	17.53	33.275***
	낮아진 편이다	(%)	46.21	49.15	54.05	59.68	
	변화없다	(%)	33.31	32.34	29.23	22.14	
	높아진 편이다	(%)	1.32	2.79	1.88	0.52	
	매우 높아졌다	(%)	0.31	-	-	0.1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8.82	3.69	3.39	3.71	60.066***
	낮아진 편이다 (%)	26.93	25.09	21.19	14.01	
	변화없다 (%)	61.85	67.02	71.20	79.34	
	높아진 편이다 (%)	1.72	4.00	4.23	2.64	
	매우 높아졌다 (%)	0.68	0.21	-	0.3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매우 낮아졌다 (%)	9.92	2.42	2.13	1.99	74.508***
	낮아진 편이다 (%)	22.52	21.51	18.71	15.14	
	변화없다 (%)	65.70	73.07	75.48	81.17	
	높아진 편이다 (%)	1.69	3.00	3.69	1.39	
	매우 높아졌다 (%)	0.18	-	-	0.3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01, +p<0.1

[그림 6-2-1]은 재산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감정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낮아졌다, 5: 매우 높아졌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6-2-15]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은 조사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감정 중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는 소폭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시계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가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타인에 대한 신뢰감은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점에서 시사하듯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과 다른 감정에 대한 평균값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 [그림 6-2-1]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 다. 보호행동 변화

[표 6-2-16]은 재산범죄피해 전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범죄피해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41)</sup>

재산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 전반적으로 연도 간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2016년과 2018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16.85%에서 2018년 12.40%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15.82%에서 20.19%로 증가하였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웃 등 공동체를 활용하기보다는 범죄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41)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은 기초조사표상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다. 이 문항은 2016년에 최초로 사건조사표에 추가됨에 따라 이 장에서는 2016년 기준 조사 결과와 2018년 기준 조사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나타나고 있어,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9.10%에서 2018년 8.62%로 약간 감소하였다. 폭력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재산범죄피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저하시키며, 이는 곧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에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가벼운 부탁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구체적인 양상으로도 확인된다.

폭력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범죄피해 후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1.56%로 낮은 편이었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 및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32.83% 및 12.4%로 폭력범죄피해(62.19% 및 33.24%, 5장 참조)에 비해 낮았다.

▶▶▶ [표 6-2-16]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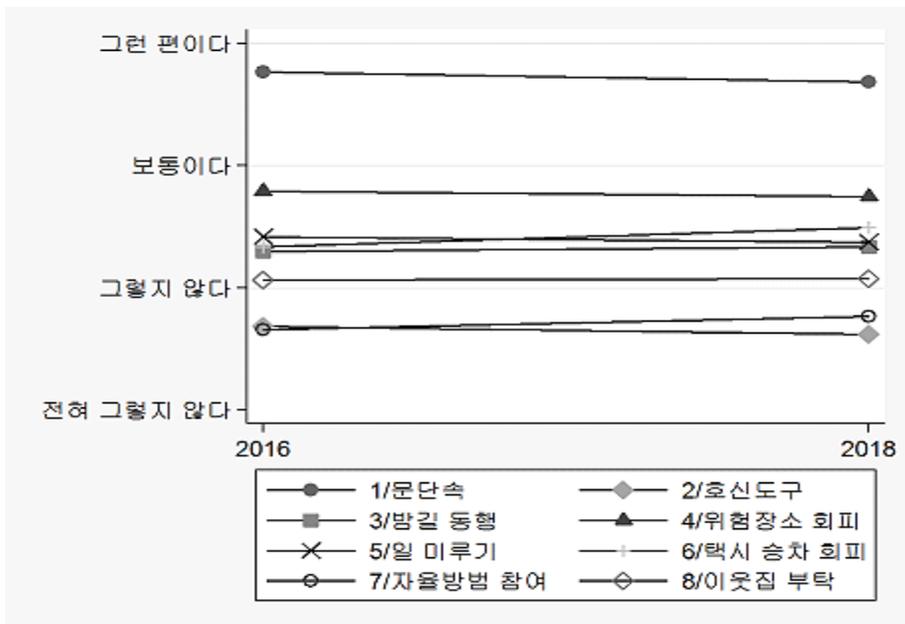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2016 (%)	2018 (%)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016 (%)	2.72	10.12	19.60	43.20	24.36	3.422	
	2018 (%)	3.23	13.98	17.42	41.70	23.67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2016 (%)	52.10	31.80	12.53	2.70	0.88	4.046	
	2018 (%)	52.96	33.65	11.81	1.42	0.16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2016 (%)	21.79	41.09	24.78	10.19	2.15	2.150	
	2018 (%)	18.50	44.54	23.77	11.36	1.82		
4)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2016 (%)	15.97	29.17	20.71	28.44	5.72	1.064	
	2018 (%)	17.81	29.29	20.07	26.26	6.57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2016 (%)	18.32	39.98	24.85	15.38	1.47	16.070**	
	2018 (%)	21.91	34.78	30.91	8.92	3.48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2016 (%)	22.31	39.63	22.23	14.19	1.63	9.943*	
	2018 (%)	21.44	32.22	26.15	15.89	4.30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 (%)	48.97	37.91	11.70	1.17	0.25	4.593	
	2018 (%)	43.48	39.42	14.50	2.42	0.19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	2016 (%)	30.87	42.02	18.02	8.05	1.05	8.401+	
	2018 (%)	34.79	33.52	23.07	6.96	1.66		

\*\*p<0.01, \*p<0.05, +p<0.1

[그림 6-2-2]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자신이 취한 보호행동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2016년도와 2018년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6-2-16]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의 보호행동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으며, 2016년과 2018년의 평균값 차이는 크지 않다. 범죄피해 이후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문단속)하는 행동이 증가한 것은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지 않다’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지 않다’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폭력범죄피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경험으로 인해 이웃 등 공동체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그림 6-2-2]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 제3절 | 주요결과 및 논의

#### 1.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재산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일정 시각이 경과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 여부 및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나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폭력범죄피해와 차이를 보인다. 금년 조사에서도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20.41%로 높게 나타났다.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재산범죄의 지능화·고도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2.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사기범죄피해액을 회수하였거나 절도 피해물품을 되찾는 등 재산범죄피해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절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절도 피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나 회복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다만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 피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47.56%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보험회사 신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재산범죄피해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손괴범죄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9.54%, 2014년 77.24%, 2016년 74.82%, 2018년 45.00%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 3.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절취의 대상이 된 피해물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높은 휴대성과 환매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1%, 2014년 20.52%, 2016년 26.15%, 2018년 27.4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등장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되파는 수법 등으로 인해 절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을 절도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보인다.

지갑·핸드백·가방 역시 2012년 이래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온 항목이다. 여기에는 명품 등 고가의 지갑·핸드백·가방을 절취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뿐만 아니라 지갑·핸드백·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노리고 절취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 자전거나 지갑·핸드백·가방과 같이 절도 피해물품 중에서도 나르고 현금화(환매) 하기 쉽고 가벼운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이동수단임에도 추적 가능성이 높은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나 TV 등 대형 가전이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이는 물품 구입 등 경제활동 시 현금 사용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한 민 경

## 제7장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이 장은 폭력범죄피해 및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우리나라 만 14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신고 후 처리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지를 다룬다. 사건조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sup>42)</sup>

### 제1절 | 범죄피해 신고

#### 1. 신고 여부 및 이유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7-1-1]과 같다. 먼저 2018년 폭력범죄피해 신고 여부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답하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다. 폭행, 괴롭힘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유형의 경우 2018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이 시계열 범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조사에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 보고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범죄피해

42)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음'(count asis) 옵션을 취해 산출하였다.

자율 및 범죄피해율 분석)를 상기할 때, 피해자들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 범죄피해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 21.71%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폭력범죄피해 신고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니 자신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2012년 피해자의 36.92%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25.81%만이 신고한 데 그쳤으며, 이러한 연도별 사기범죄피해 신고 여부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 [표 7-1-1] 범죄피해 신고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강도	신고 (%)	34.11	39.57	39.74	49.10	0.566	
		미신고 (%)	65.89	60.43	60.26	50.90		
	폭행	신고 (%)	35.06	11.58	28.59	34.76	4.547	
		미신고 (%)	64.94	88.42	71.41	65.24		
	성폭력	신고 (%)	18.72	9.83	15.62	31.23	2.969	
		미신고 (%)	81.28	90.17	84.38	68.77		
	괴롭힘	신고 (%)	9.02	16.98	15.23	14.35	0.068	
		미신고 (%)	90.98	83.02	84.77	85.65		
전체	신고 (%)	31.79	16.26	27.44	32.60	5.303		
	미신고 (%)	68.21	83.74	72.56	67.40			
재산 범죄 피해	사기	신고 (%)	36.92	25.61	20.58	25.81	8.872*	
		미신고 (%)	63.08	74.39	79.42	74.19		
	절도	신고 (%)	22.37	27.68	26.07	20.12	4.211	
		미신고 (%)	77.63	72.32	73.93	79.88		
	손괴	신고 (%)	17.03	11.82	11.73	24.22	4.749	
		미신고 (%)	82.97	88.18	88.27	75.78		
	기타	신고 (%)	9.09	21.09	-	5.70	3.013	
		미신고 (%)	90.91	78.91	100.00	94.30		
	전체	신고 (%)	23.30	23.58	21.53	21.71	0.874	
		미신고 (%)	76.70	76.42	78.47	78.29		

\*p<0.05

## 2. 신고 및 미신고 이유

### 가. 신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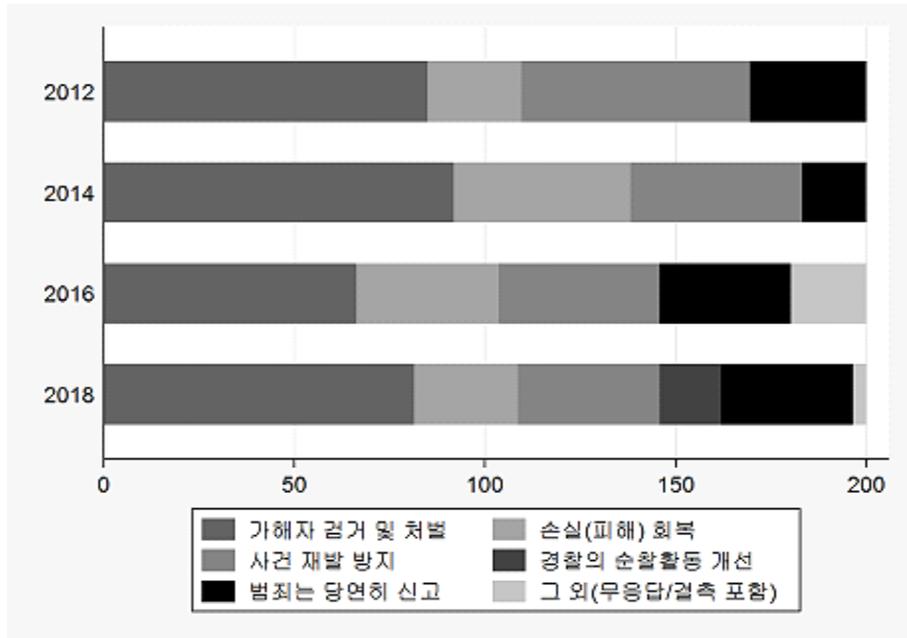
범죄피해를 신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1순위) 이유를 살펴보면, 경험한 범죄피해가 폭력범죄피해인지,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7-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18.27%),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15.67%)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11.55%에 그쳐, 개인 수준의 피해 회복을 목적하기보다는 자신 이외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공동체 차원의 맥락에서 폭력범죄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 [표 7-1-2] 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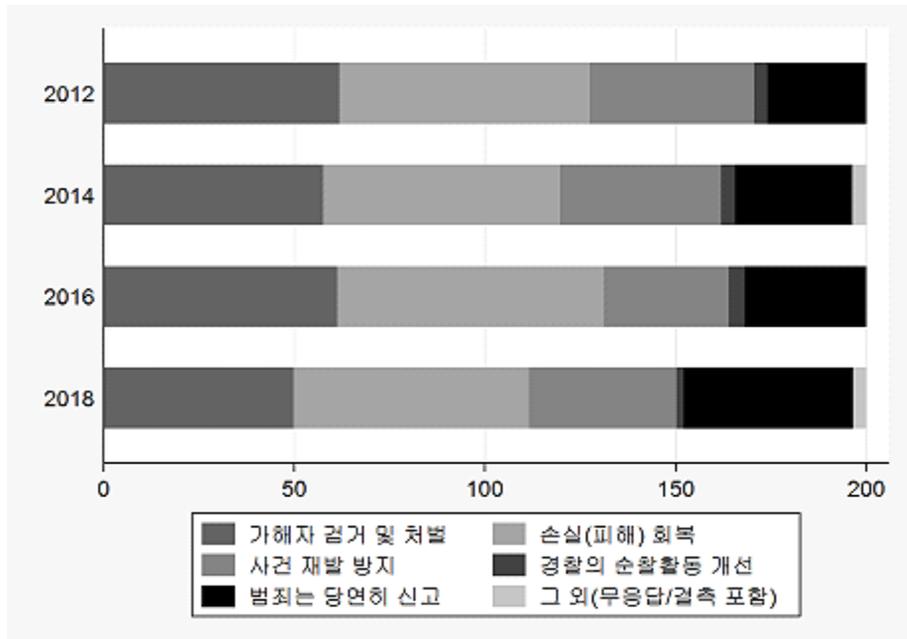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	50.80	91.70	32.80	44.81	23.661+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7.57	-	18.82	11.55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	14.13	-	32.52	18.27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	-	-	9.70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27.50	8.30	7.87	15.67	
	그 외의 이유(!) (%)	-	-	7.99	-	
재산 범죄 피해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	35.79	31.82	38.05	37.15	11.115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39.88	34.69	34.38	34.14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	15.97	16.97	17.65	15.51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1.31	0.75	-	-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7.05	14.41	9.92	13.20	
	그 외의 이유(!) (%)	-	1.35	-	-	

비고: + p<0.1;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그림 7-1-1]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 [그림 7-1-2]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폭력범죄피해와는 달리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검거·처벌에 못지 않게 손실(피해) 회복이 중요한 신고 이유로 고려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37.15%,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34.14%로,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하는 정도가 거의 대등하다.

[그림 7-1-1]과 [그림 7-1-2]는 각각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1, 2순위 이유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시계열에 따라 주된 범죄피해 신고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신고 이유상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신고는 줄어들고 가해자 검거·처벌을 바라는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이유에 있어서 시계열에 따라 유의한 정도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시계열에 따라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이유를 살펴봄에 있어 또 한 가지 발견되는 특징은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나. 미신고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력범죄피해자 10명 중 3명, 재산범죄피해자 10명 중 2명 정도만 범죄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7-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47.34%가, 재산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에 있어 시계열에 따른 큰 폭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데 비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시계열에 따른 변화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유형과 무관하게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의 유형이 무엇이든 피해자는 자신의 범죄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피해사실 신고에 앞서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자기검열'을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 [표 7-1-3]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51.80	35.52	39.18	47.34	50.998***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5.83	4.13	17.27	15.74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12.87	2.56	6.43	5.91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8.48	6.06	5.29	3.25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6.90	-	4.20	5.40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5.79	11.50	16.40	14.44	
	보복이 두려워서(!)	(%)	3.90	17.84	1.23	4.70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3.07	22.39	10.00	0.82	
	그 외의 이유(!)	(%)	1.36	-	-	2.41	
재산 범죄 피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50.84	43.22	37.84	54.28	53.445***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7.06	10.05	11.23	10.50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21.65	23.32	23.71	14.86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8.13	8.55	7.40	8.12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4.13	7.43	7.65	3.99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4.13	5.10	10.12	6.83	
	보복이 두려워서(!)	(%)	1.02	0.16	0.65	-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1.07	1.28	0.82	0.24	
	그 외의 이유(!)	(%)	1.97	0.89	0.59	1.17	

비고: \*\*\*p<0.001;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미신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인다는 점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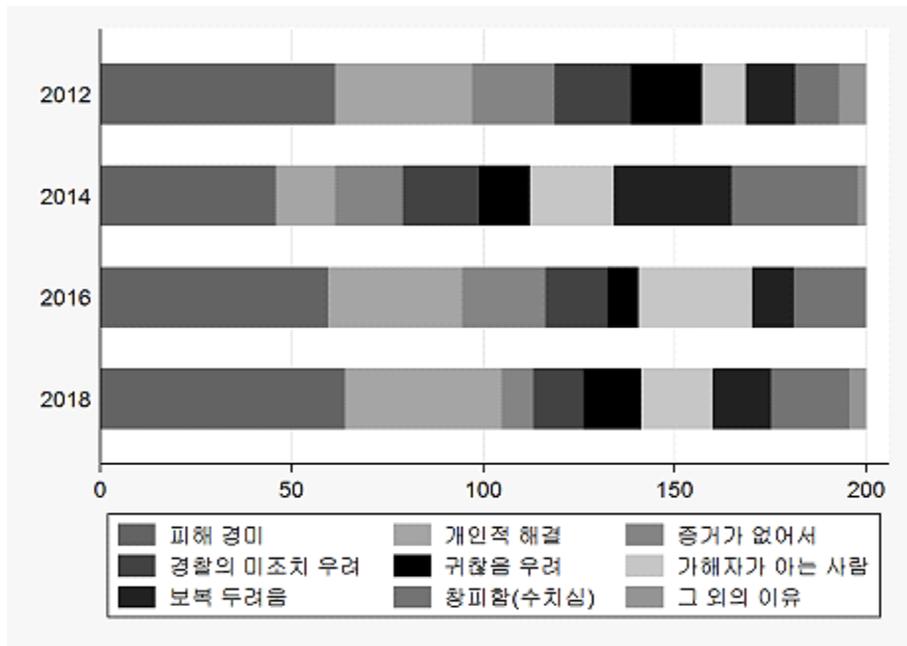
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8%에서 2018년 3.25%로,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90%에서 2018년 5.4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한편, 폭력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폭력범죄피해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 괴롭힘의 경우 가까운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피해 유형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성폭력, 괴롭힘 피해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채 이를 감내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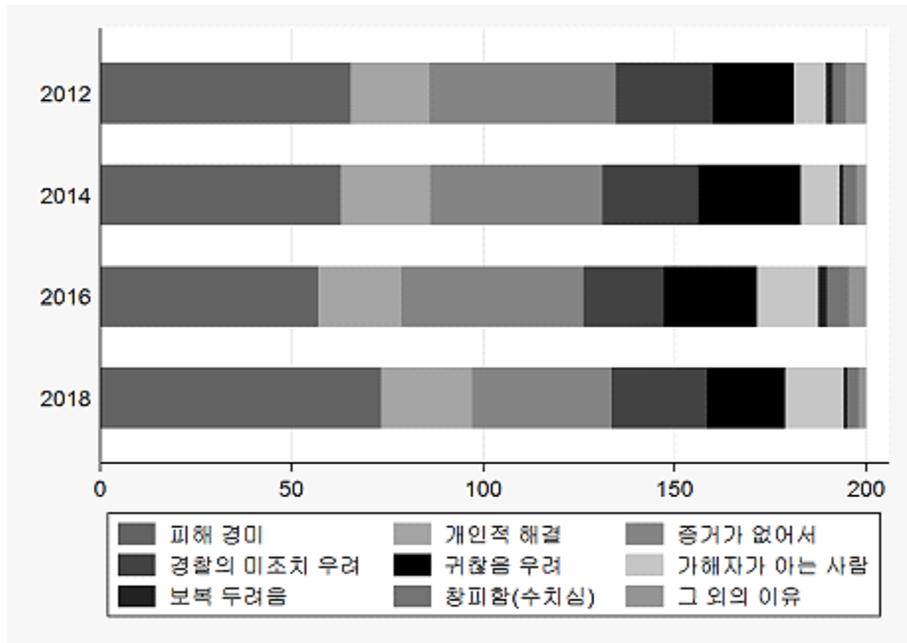
[그림 7-1-3]과 [그림 7-1-4]는 각각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데 중요하게 고려한 1, 2순위 이유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앞서 범죄피해 신고 이유에 대한 [그림 7-1-1] 및 [그림 7-1-2]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계열에 따라 변화 정도가 큰 데 비하여,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세부 이유별 응답 비율이 시계열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피해사실에 대한 창피함 또는 수치심은 재산범죄피해에서는 주된 미신고 이유로 나타나지 않으나,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이전 조사 연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에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0.82%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폭력범죄피해자들이 해당 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상술한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 [그림 7-1-3] 폭력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 [그림 7-1-4] 재산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 제2절 |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 1. 경찰 조치 상황

#### 가. 경찰 조치 여부

[표 7-2-1]은 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신고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92.85%,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84.99%였다.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에 있어서는 시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표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예	(%)	89.37	90.63	82.37	92.85	1.048
	아니오	(%)	10.63	9.37	17.63	7.1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예	(%)	83.59	84.89	90.26	84.99	2.064
	아니오	(%)	16.41	15.11	9.74	15.0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나. 경찰 조치 내용

경찰이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조치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sup>43)</sup> [표 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피

43) 2016년 보고서에서는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내용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계를 100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응답사례 전체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경찰조치 내용별로 절대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표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후 복수응답가능 문항에 대한 표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사례(경찰이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조치하였다

해 유형에 따라 경찰의 주된 조치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이 조치한 재산범죄 신고 중 약 1/3에 해당하는 33.27%에 대해서는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표 7-2-2]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내용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31.07	25.10	11.65	-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83.59	79.99	93.17	100.00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22.74	50.73	24.55	-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	21.58	30.73	6.83	-
재산 범죄 피해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30.78	31.11	34.37	33.27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49.64	52.14	60.79	52.91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24.42	13.01	21.59	6.51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	7.01	7.54	3.43	7.19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레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 경찰의 정보 제공

### 가. 신고 처리절차 관련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표 7-2-3]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당시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93.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66.63%로 2016년 77.33%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경찰의 조치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유

고 응답한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형은 경찰이 신고 이후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표 7-2-3]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경찰의 정보 제공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예	(%)	67.18	90.63	76.84	93.16	6.532+
	아니오	(%)	32.82	9.37	23.16	6.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예	(%)	59.84	60.58	77.33	66.63	8.555*
	아니오	(%)	40.16	39.42	22.67	33.3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5, + p<0.1

#### 나. 경찰이 제공한 정보 이해 정도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경찰로부터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경찰의 설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7-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후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다수는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5.55%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 연도에서는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8년의 경우 경험한 범죄피해가 폭력범죄피해인지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정보의 이해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상술한 것과 종합하여 추정해 보건대, 직전 조사연도 대비 경찰은 재산범죄피해 신고보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은 신고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신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신고 피해자들의 높은 이해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출동의 원칙이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향후 신고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매뉴얼화가 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 [표 7-2-4]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 관련 경찰이 제공한 정보 이해 정도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	34.63	22.28	19.07	54.81	12.450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	38.17	49.36	53.94	45.19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	16.17	28.36	19.48	-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8.71	-	7.52	-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2.31	-	-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	35.99	19.92	17.78	31.06	17.878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	36.99	41.84	56.97	50.59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	11.15	15.82	12.28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12.36	18.32	11.84	5.55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3.50	4.11	1.14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표 7-2-5]는 범죄피해 신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sup>44)</sup>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곧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경찰조치에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2.09%, 약간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26.82%로, 폭력범죄피해 신고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조치에

44) 사건조사표상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는 매우 만족했다/약간 만족했다/보통이다/약간 불만족했다/매우 불만족했다의 다섯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만족했다/보통이다/불만족했다의 세 가지 범주로 다시 구분한 가운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범주를 재구성하지 않고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2.80%에 그쳐 2012년 이래 가장 낮았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는 시계열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보다 그 만족 정도는 높지 않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경찰조치에 매우 만족하였다는 비율은 4.68%, 약간 만족하였다는 비율은 15.75%로, 재산범죄피해자 신고자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경찰조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5.15%(약간 불만족했다: 17.70%, 매우 불만족했다: 7.4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 [표 7-2-5]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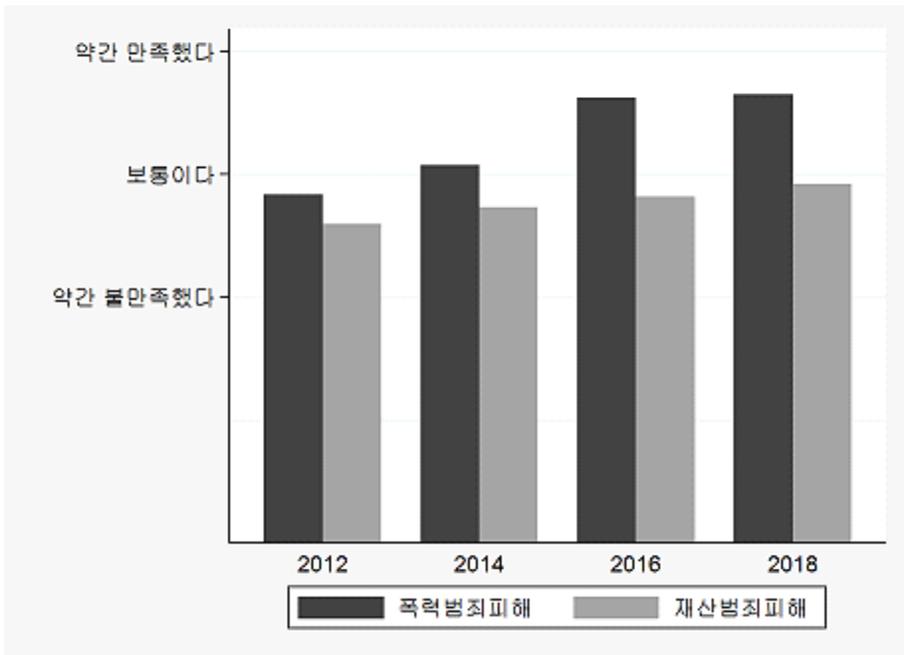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매우 만족했다	(%)	9.41	20.19	23.31	22.09	17.279
	약간 만족했다	(%)	19.36	25.79	27.16	26.82	
	보통이다	(%)	39.21	10.86	38.39	48.29	
	약간 불만족했다	(%)	9.29	27.78	11.15	-	
	매우 불만족했다	(%)	22.73	15.37	-	2.8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매우 만족했다	(%)	8.18	4.22	4.06	4.68	32.447***
	약간 만족했다	(%)	16.44	21.93	12.71	15.75	
	보통이다	(%)	28.67	35.36	55.95	54.42	
	약간 불만족했다	(%)	20.28	20.13	15.88	17.70	
	매우 불만족했다	(%)	26.43	18.36	11.40	7.4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 $p < 0.001$

[그림 7-2-1]은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불만족했다, 5: 매우 만족했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7-2-5]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범죄피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는 시계열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나,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이 더 높고, 만족도 평균값의 상승 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와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은 2012년 2.83, 2014년 3.08, 2016년 3.63, 2018년 3.65이며,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은 2.60, 2.74, 2016년 2.82, 2018년 2.93이다.

▶▶▶ [그림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평균값)



#### 4. 범인 검거 여부

[표 7-2-6]은 범죄피해를 신고한 후 범인이 검거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신고된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폭력범죄피해 사건 중 범인 모두를 검거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3.12%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61.13%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신고된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율이 낮은 점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신고된 재산범죄피해 사건 중 범인 모두를 검거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7.67%인 데 비해,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75.47%였다. 시계열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범인 검거율의 등락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재산범죄피해 범인 검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표 7-2-6] 범죄피해 신고 이후 범인 검거여부

구분			연도				$\chi^2$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모두 검거했다	(%)	58.11	40.43	52.18	23.12	23.353**
	일부를 검거했다	(%)	8.65	-	-	-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	18.83	57.01	11.15	61.13	
	모르겠다	(%)	14.42	2.56	36.68	15.7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모두 검거했다	(%)	13.36	11.52	17.24	7.67	7.151
	일부를 검거했다	(%)	2.31	1.56	0.96	1.59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	65.62	69.79	71.30	75.47	
	모르겠다	(%)	18.71	17.13	10.51	15.2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p<0.01

### 제3절 | 주요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 살펴본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피해 신고 및 미신고 이유,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에 있어서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고율 및 경찰조치 만족도를 보인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범인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전개된 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주요 배경이라고 추정된다.

## 1.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의 경우 2018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이 시계열 범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조사에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 보고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 분석)를 상기할 때, 피해자들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졌다고 보인다.

## 2.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니 자신의 피해는 신고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검거·처벌에 못지않게 손실(피해) 회복이 중요한 신고 이유로 고려되고 있는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피해자 스스로 손실(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산범죄피해는 경찰에 인지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 가운데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신고되어야 되는 범죄'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 정도의

심각성이라는 요인보다는 범죄피해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의의가 충분히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다. 즉,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92.85%,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84.99%였다.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이 조치한 재산범죄 신고 중 약 1/3에 해당하는 33.27%에 대해서는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93.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66.63%로 2016년 77.33%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상술한 것과 종합하여 추정해 보건대, 최근 경찰은 재산범죄피해 신고보다는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와 같은 경찰의 ‘차별적’ 조치는 경찰이 112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경중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규인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개정, 2010년 1월부터 112신고 대응코드(code) 분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sup>45)</sup> 현행 경찰의 112신고 대응코드

45) 경찰청,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09년 12월 30일 개정(<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32&nttId=9644&menuNo=200629#>, 2019년 11월 1일 최종 접속).

분류에 따르면 대다수의 재산범죄피해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등의 경우로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신고”인 ‘코드1’에 해당하기보다는 “경찰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코드1에 속하지 않는 경우, 코드1이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 출동”할 것이 권고되는 ‘코드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4.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은 신고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신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신고 피해자들의 높은 이해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출동의 원칙이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향후 신고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매뉴얼화가 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이는 곧 신고 후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다수는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5.55%로 나타나는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울러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이 더 높고, 만족도 평균값의 상승 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와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112신고 대응코드 분류와 범죄의 경중에 따른 차별적인 경찰조치는 한정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경찰조직 차원의 고유책이겠으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국 '내가 경험한 범죄피해가 경찰이 관심을 기울여줄 만큼 긴급하고 중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김민영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지역사회 수준, 가구수준, 개인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sup>46)</sup>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특성은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구수준에서 범죄피해와 관련된 가구특성은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가구소득, 가구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범죄피해 취약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고,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는 대중교통이용, 늦은 귀가, 만취 귀가, 외출 시 고급옷차림, 유명브랜드 옷차림, 자기통제로 구분하여 범죄피해 취약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중심으로 재산범죄(절도,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와 폭력범죄(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sup>47)</sup> 재산범죄 중 개인 대상 범죄인 절도 및 사기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중요하기에 추가로 상세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가구 대상 범죄인 주거침입범죄는 지역사회 특성 및 가구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46) 본 장의 제1절~제4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는 본문에 간략히 설명하였다. 단, SPSS 26 프로그램에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은 모두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47) 본 장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간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양자간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에 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범죄피해 취약성 관련 설문문항은 대부분 '작년(2018) 연말 기준' 혹은 '작년(2018)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문항은 조사연도(2019)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분석방법에 있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한 개인을 기준으로, 주거침입 범죄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8장과 다음 9장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적용된 표본설계방식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이 모집단에서 동일한 확률을 지닌 단순무작위추출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층화, 계통추출 등의 표본설계방식이 적용되어 표본추출에 있어 불균등 선택확률이 적용되었기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편향추정량을 얻고, 표본설계의 복잡성이 고려된 분산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이다(Scheaffer et al., 2006; 김영원 외 옮김, 2006: 382).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국을 17개시도와 세종특별시 및 도지역의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7개 층으로 구분하고,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집락)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이러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제1절 |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인 지역사회 특성은 기존 보고서와 동일하게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웃관계는 총 4개 문항을 기준으로 생성하였고, 이외 이웃관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은 각 3개 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문항과 문항별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요인 구성 문항은 아래 표 참조), 이웃관계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74점, 표준편차는 0.86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79로 높은 편이었다. 이웃참여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3.33점, 표준편차는 0.75점,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00이었다. 물리적 무질서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17점, 표준편차는 0.80점,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94이었다. 사회적 무질서 구성을 구성하는 문항의 평균은 2.17점, 표준편차는 0.75점,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81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

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을 구성하는 문항의 평균은 3.48 점, 표준편차는 0.70점,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03이었다.

▶▶▶ [표 8-1-1]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요인 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868	1	5	2.99	0.98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889	1	5	2.74	1.00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870	1	5	2.82	0.99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803	1	5	2.42	1.04
이웃관계 <span style="float: right;">Cronbach's <math>\alpha</math>= 0.879</span>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858	1	5	3.41	0.93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855	1	5	3.69	0.91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661	1	5	2.90	1.01
이웃참여 <span style="float: right;">Cronbach's <math>\alpha</math>=0.700</span>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0.834	1	5	2.25	0.96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0.876	1	5	2.25	0.99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0.814	1	5	2.02	0.91
물리적 무질서 <span style="float: right;">Cronbach's <math>\alpha</math>=0.794</span>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0.791	1	5	2.42	1.02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0.869	1	5	2.05	0.84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0.857	1	5	2.04	0.83
사회적 무질서 <span style="float: right;">Cronbach's <math>\alpha</math>=0.781</span>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0.793	1	5	3.35	0.84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0.881	1	5	3.68	0.82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0.867	1	5	3.42	0.82
경찰활동 <span style="float: right;">Cronbach's <math>\alpha</math>= 0.803</span>					

비고: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선택하였다. 여러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을 더 미변수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서는 평균이상이면 '강함'으로 평균미만이면 '약함'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서는 평균이상이면 '무질서'로 평균미만이면 '질서'로 구분하였다. 경찰활동에서는 평균이상이면 '효과적'으로 평균미만이면 '비효과적'으로 구분하였다.

### 1.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아래 [표 8-1-2]는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과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 각각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무질서 수준과 경찰활동이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과 이웃참여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각각 3.3%로 동일하여, 이웃관계와 이웃참여가 강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보다 조금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있어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각각 3.6%, 3.8%로, 상대적으로 무질서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3.7%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표 8-1-2]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χ <sup>2</sup>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3.3(0.26)	96.7(0.26)	100(0.00)	1.987
	강함	2.8(0.29)	97.2(0.29)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이웃참여	약함	3.3(0.23)	96.7(0.23)	100(0.00)	1.320
	강함	2.9(0.30)	97.1(0.30)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구분		재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물리적 무질서	질서	2.7(0.22)	97.3(0.22)	100(0.00)	5.489*
	무질서	3.6(0.33)	96.4(0.33)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2.5(0.20)	97.5(0.20)	100(0.00)	9.216**
	무질서	3.8(0.37)	96.2(0.3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3.7(0.33)	96.3(0.33)	100(0.00)	7.827**
	효과적	2.6(0.22)	97.4(0.2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 p<.001, \*\* p<.01, \* p<.05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 2.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아래 [표 8-1-3]은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 이웃참여, 경찰활동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경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0.7%, 0.8%로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혹은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폭력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0.6%로 이웃관계가 강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0.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0.6%로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0.4%보다 높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1-3]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χ <sup>2</sup>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0.6(0.13)	99.4(0.13)	100(0.00)	0.691
	강함	0.5(0.11)	99.5(0.1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이웃참여	약함	0.5(0.13)	99.5(0.13)	100(0.00)	0.000
	강함	0.5(0.11)	99.5(0.1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물리적 무질서	질서	0.4(0.10)	99.6(0.10)	100(0.00)	4.142*
	무질서	0.7(0.16)	99.3(0.1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0.3(0.08)	99.7(0.08)	100(0.00)	7.138**
	무질서	0.8(0.17)	99.2(0.17)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0.4(0.10)	99.6(0.10)	100(0.00)	1.541
	효과적	0.6(0.14)	99.4(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001, \*\* p<.01, \* p<.05, † p<.1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 3.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sup>48)</sup>

아래 [표 8-1-4]는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로, 주거침입범죄의 범죄대상인 ‘가구’를 단위로 한 분석결과이다.<sup>50)</sup> 교차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에 있어 취약성 요인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주거침입범죄

48) 가구대표가 아닌 가구원이 주거침입범죄피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가구범죄피해 기준 실가구수와 해당 가구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49) 주거침입범죄피해에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의 분석단위는 주거침입의 대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50) 2016년 기준 보고서에서는 거주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피해 경험 비율은 2.0%로 무질서가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의 1.1%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사회는 물리적 무질서에 있어서도 물리적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1.8%로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의 1.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1-4]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주거침입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1.5(0.25)	98.5(0.25)	100(0.00)	0.072
	강함	1.6(0.28)	98.4(0.2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이웃참여	약함	1.5(0.26)	98.5(0.26)	100(0.00)	0.136
	강함	1.6(0.28)	98.4(0.2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물리적 무질서	질서	1.3(0.24)	98.7(0.24)	100(0.00)	1.759
	무질서	1.8(0.30)	98.2(0.30)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1.1(0.23)	98.9(0.23)	100(0.00)	5.283*
	무질서	2.0(0.31)	98.0(0.31)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1.7(0.27)	98.3(0.27)	100(0.00)	0.321
	효과적	1.4(0.26)	98.6(0.26)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 p<.001, \*\* p<.01, \* p<.05, † p<.1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 제2절 | 가구의 특성과 범죄피해

가구의 특성은 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법수준, 집 비운 정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가구의 방법수준은 개별 가구에 활용되고 있는 범죄피해예방 수단<sup>51)</sup>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없음', '1-2개', '3-4개', '5-6개', '7-8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위한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표 8-2-1]은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가구소득수준, 가구의 방법수준, 집 비운 정도-과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가구의 방법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집을 비운 시간이 적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 [표 8-2-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0.32)	97.4(0.32)	100(0.00)	1.876
	아파트	3.0(0.25)	97.0(0.25)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3.5(0.50)	96.5(0.50)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sup>(1)</sup>	4.7(1.43)	95.3(1.43)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sup>(2)</sup>	5.6(1.58)	94.4(1.5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51) 가구의 방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은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경비원이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등 8개 문항이다. 설문조사 완료 이후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분		재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주거 형태	자기 집	3.0(0.23)	97.0(0.23)	100(0.00)	1.816
	전세(월세 없음)	2.5(0.38)	97.5(0.38)	100(0.00)	
	월세 <sup>53)</sup>	4.2(0.86)	95.8(0.86)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sup>!</sup>	4.6(1.8)	95.4(1.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3.2(0.66)	96.8(0.66)	100(0.00)	0.918
	100~200만 원 미만	2.0(0.43)	98.0(0.43)	100(0.00)	
	200~300만 원 미만	2.7(0.43)	97.3(0.43)	100(0.00)	
	300~400만 원 미만	3.4(0.47)	96.6(0.47)	100(0.00)	
	400~500만 원 미만	3.3(0.56)	96.7(0.56)	100(0.00)	
	500만 원 이상 <sup>54)</sup>	3.2(0.31)	96.8(0.31)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가구 방법 수준	없음 <sup>!</sup>	1.9(0.61)	98.1(0.61)	100(0.00)	1.904
	1-2개	2.6(0.37)	97.4(0.37)	100(0.00)	
	3-4개	2.8(0.29)	97.2(0.29)	100(0.00)	
	5-6개	3.7(0.43)	96.3(0.43)	100(0.00)	
	7-8개	3.0(0.45)	97.0(0.45)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sup>!</sup>	5.8(2.29)	94.2(2.29)	100(0.00)	1.906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3.5(0.33)	96.5(0.33)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3.2(0.37)	96.8(0.37)	100(0.00)	
	4시간 미만	2.8(0.34)	97.2(0.34)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2.3(0.47)	97.7(0.4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 $\geq 5$ )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52)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오피스텔' 항목을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나, 오피스텔을 별도 구분하면 기타 주택유형에 대한 응답자가 크게 낮아져, 2016년 기준 조사와 동일하게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3) 조사표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후자의 응답빈도가 낮아 모두 월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4) 조사표에는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추가 선택지가 있으나 응답자가 많지 않아 모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표 8-2-2]는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경험간 교차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집을 비운 정도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이외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문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특성에서 하루 중 집을 비운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1.8%로 나타나 다른 응답을 한 집단(0.1%~0.8%)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경험 비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폭력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집을 비운 정도 항목의 일부 응답(12시간 이상, 4시간미만, 거의 비우지 않았음)을 선택한 집단의 관측치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표 8-2-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0.3(0.10)	99.7(0.10)	100(0.00)	1.373
	아파트	0.5(0.13)	99.5(0.13)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0.9(0.24)	99.1(0.24)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0	100.0(0.00)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0.6(0.46)	99.4(0.4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주거 형태	자기 집	0.5(0.11)	99.5(0.11)	100(0.00)	1.238
	전세(!)	0.8(0.27)	99.2(0.27)	100(0.00)	
	월세(!)	0.3(0.12)	99.7(0.12)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1.2(1.18)	98.8(1.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0.4(0.34)	99.6(0.34)	100(0.00)	0.648
	100~200만 원 미만(!)	0.3(0.13)	99.7(0.13)	100(0.00)	
	200~300만 원 미만(!)	0.8(0.35)	99.2(0.35)	100(0.00)	
	300~400만 원 미만(!)	0.5(0.19)	99.5(0.19)	100(0.00)	
	400~500만 원 미만(!)	0.4(0.13)	99.6(0.13)	100(0.00)	
	500만 원 이상	0.7(0.18)	99.3(0.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구분		폭력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가구 방법 수준	없음	0	100.0(0.00)	100(0.00)	0.667
	1-2개(!)	0.4(0.13)	99.6(0.13)	100(0.00)	
	3-4개(!)	0.7(0.21)	99.3(0.21)	100(0.00)	
	5-6개	0.5(0.15)	99.5(0.15)	100(0.00)	
	7-8개(!)	0.5(0.18)	99.5(0.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1.8(1.17)	98.2(1.17)	100(0.00)	3.375*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0.6(0.15)	99.4(0.15)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0.8(0.20)	99.2(0.20)	100(0.00)	
	4시간 미만(!)	0.1(0.07)	99.9(0.07)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0.4(0.19)	99.6(0.19)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 < .05$ 

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표 8-2-3]에서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거침입범죄피해에 있어 가구 특성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단지 주택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이외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방법수준, 집 비운 정도 등의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집단에서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0.9%인 반면, 다른 단독주택(2.2%)이나 연립/다세대주택(2.2%), 비거주용 건물(2.4%), 기타(2.4%)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단, 비거주용 건물과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의 방법활동이 많을수록 주거침입범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유형 및 가구의 방법수준과 주거침입범죄피해 관계를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면서 가구의 방법수준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주거침입범죄피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는 출입을 관리하는 경비원과 건물의 출입카드와 개별 가구의 출입카드, CCTV 등과 같은 여러 방범 수단이 갖추어져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표 8-2-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주거침입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2.2(0.42)	97.8(0.42)	100(0.00)	3.171*
	아파트	0.9(0.21)	99.1(0.21)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2.2(0.42)	97.8(0.42)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4(2.20)	97.6(2.20)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4(1.47)	97.6(1.47)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주거 형태	자기 집	1.6(0.23)	98.4(0.23)	100(0.00)	0.157
	전세(월세 없음)(!)	1.4(0.41)	98.6(0.41)	100(0.00)	
	월세(!)	1.6(0.53)	98.4(0.53)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0.8(0.83)	99.2(0.83)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5(0.71)	97.5(0.71)	100(0.00)	0.802
	100~200만 원 미만(!)	1.2(0.44)	98.8(0.44)	100(0.00)	
	200~300만 원 미만(!)	1.2(0.37)	98.8(0.37)	100(0.00)	
	300~400만 원 미만	1.5(0.39)	98.5(0.39)	100(0.00)	
	400~500만 원 미만	1.5(0.45)	98.5(0.45)	100(0.00)	
	500만 원 이상	1.6(0.38)	98.4(0.3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가구 방법 수준	없음(!)	2.0(0.83)	98.0(0.83)	100(0.00)	1.097
	1-2개	1.5(0.37)	98.5(0.37)	100(0.00)	
	3-4개	1.6(0.33)	98.4(0.33)	100(0.00)	
	5-6개	1.8(0.35)	98.2(0.35)	100(0.00)	
	7-8개(!)	0.7(0.37)	99.3(0.37)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2.6(1.61)	97.4(1.61)	100(0.00)	0.985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5(0.30)	98.5(0.30)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2.0(0.38)	98.0(0.38)	100(0.00)	
	4시간 미만(!)	1.1(0.34)	98.9(0.34)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1.3(0.44)	98.7(0.44)	100(0.00)	
	합계				

\*\*\* p<.001, \*\* p<.01, \* p<.05, † p<.1

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제3절 |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재산범죄피해 중에서 대인절도(48.4%)와 사기범죄피해(31.8%)의 비중이 상당하고,<sup>55)</sup> 두 범죄유형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기에 각각을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표 8-3-1]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성별, 교육수준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up>56)</sup> 즉,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재산범죄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2.6%)보다 여성(3.6%)의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각각 3.4%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함) 집단과 중학교 졸업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인 각각 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4.0%)와 20대(3.8%)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았고 10대(2.0%)와 70대 이상(2.1%)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단, 10대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가 30%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

55) 전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56) 해당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직업을 제외하였는데, 범죄피해 경험자수가 많지 않아 교차분석시 여러 직업군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결과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사기범죄피해 경험과 직업간 교차분석에서는 총9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폭력범죄피해와 직업간 교차분석에서는 총9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었다.

이 2.9%로 가장 낮았고 미혼 집단(3.3%)이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3.4%)의 재산범죄 피해 경험 비율도 높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2.6(0.28)	97.4(0.28)	100(0.00)	6.405*
	여자	3.6(0.29)	96.4(0.29)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연령대	10대(!)	2.0(0.69)	98.0(0.69)	100(0.00)	1.806
	20대	3.8(0.79)	96.2(0.79)	100(0.00)	
	30대	4.0(0.49)	96.0(0.49)	100(0.00)	
	40대	3.1(0.40)	96.9(0.40)	100(0.00)	
	50대	2.8(0.34)	97.2(0.34)	100(0.00)	
	60대	2.9(0.44)	97.1(0.44)	100(0.00)	
	70대 이상	2.1(0.44)	97.9(0.4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혼인 상태	미혼	3.3(0.50)	96.7(0.50)	100(0.00)	0.469
	현재 배우자 있음	2.9(0.22)	97.1(0.22)	100(0.00)	
	사별이나 이혼	3.4(0.54)	96.6(0.5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교육 수준 <sup>57)</sup>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1.9(0.38)	98.1(0.38)	100(0.00)	3.193*
	중학교 졸업	1.9(0.47)	98.1(0.47)	100(0.00)	
	고등학교 졸업	3.4(0.36)	96.6(0.36)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3.4(0.34)	96.6(0.3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 p<.05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57)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교육수준 설문문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하게 '① 받지 않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2,3년제), ⑥대학교(4년제 이상), ⑦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졸업여부를 추가 설문하였다. 이에 교육수준 항목은 졸업을 기준으로 초중고 및 대학교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표 8-3-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대인절도범죄피해는 성별과 혼인상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대인절도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대인절도범죄피해를 살펴보면, 남성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은 1.2%이고 여성은 1.9%로, 남성보다 여성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른 대인절도범죄피해는, 미혼 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 비율은 2.2%이고,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은 1.6%로 나타났고,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은 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연령대를 기준으로 20대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이 2.4%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1.2%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이 1.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함)와 중학교 졸업 집단은 1.2%로 가장 낮았다(단, 중학교 졸업 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표 8-3-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대인절도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1.2(0.21)	98.8(0.21)	100(0.00)	4.071*
	여자	1.9(0.20)	98.1(0.20)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혼인 상태	미혼	2.2(0.39)	97.8(0.39)	100(0.00)	3.054†
	현재 배우자 있음	1.3(0.14)	98.7(0.14)	100(0.00)	
	사별이나 이혼	1.6(0.42)	98.4(0.42)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구분		대인절도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연령대	10대(!)	1.6(0.67)	98.4(0.67)	100(0.00)	1.196
	20대	2.4(0.57)	97.6(0.57)	100(0.00)	
	30대	1.6(0.33)	98.4(0.33)	100(0.00)	
	40대	1.3(0.27)	98.7(0.27)	100(0.00)	
	50대	1.2(0.21)	98.8(0.21)	100(0.00)	
	60대	1.6(0.35)	98.4(0.35)	100(0.00)	
	70대 이상	1.3(0.34)	98.7(0.34)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1.2(0.32)	98.8(0.32)	100(0.00)	1.306
	중학교 졸업(!)	1.2(0.37)	98.8(0.37)	100(0.00)	
	고등학교 졸업	1.9(0.28)	98.1(0.28)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1.5(0.19)	98.5(0.19)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 p<.05, † p<.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표 8-3-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로, 사기범죄피해 경험은 연령대와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사기범죄피해를 살펴보면,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10대(0.1%)와 20대(0.7%)를 제외하고, 3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단, 10대, 20대, 70대 이상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었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에서 사기범죄피해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수준과 사기범죄피해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구체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의 사기범죄피해 경험은 1.2%였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1.1%, 중학교 졸업 집단은 0.6%,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함) 집단은 0.4%로 나타났다(단, 중학교 졸업 집단 및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었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는 상이한 결과로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별 기준으로 여성(1.2%)이 남성(0.8%)보다 사기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대인절도범죄피해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표 8-3-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사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0.8(0.14)	99.2(0.14)	100(0.00)	2.324
	여자	1.2(0.16)	98.8(0.16)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연령대	10대(!)	0.1(0.11)	99.9(0.11)	100(0.00)	2.217*
	20대(!)	0.7(0.30)	99.3(0.30)	100(0.00)	
	30대	1.5(0.34)	98.5(0.34)	100(0.00)	
	40대	1.3(0.27)	98.7(0.27)	100(0.00)	
	50대	1.2(0.25)	98.8(0.25)	100(0.00)	
	60대	0.9(0.28)	99.1(0.28)	100(0.00)	
	70대 이상(!)	0.5(0.21)	99.5(0.21)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혼인 상태	미혼	0.7(0.19)	99.3(0.19)	100(0.00)	1.587
	현재 배우자 있음	1.1(0.14)	98.9(0.14)	100(0.00)	
	사별이나 이혼	1.1(0.28)	98.9(0.28)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0.4(0.18)	99.6(0.18)	100(0.00)	2.143 †
	중학교 졸업(!)	0.6(0.27)	99.4(0.27)	100(0.00)	
	고등학교 졸업	1.1(0.16)	98.9(0.16)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0.20)	98.8(0.20)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  $p < .05$ , †  $p < .1$

2: (!)는 유효 표본사레수(cell size  $\leq 5$ )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표 8-3-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및 혼인상태만이 폭력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양자 모두 그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p < 0.1$ ). 즉,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폭력범죄피해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0.7%로 남성의 0.4%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단, 남성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p < 0.1$ ).

또한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미혼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0.8%로 가장 높았고,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은 0.6%,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단, 미혼 및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p < 0.1$ ).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미혼 집단이 폭력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많지 않아 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분석에 한계가 있다.

▶▶ [표 8-3-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0.4(0.11)	99.6(0.11)	100(0.00)	3.768†
	여자	0.7(0.14)	99.3(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연령대	10대(!)	0.4(0.24)	99.6(0.24)	100(0.00)	1.187
	20대(!)	0.8(0.37)	99.2(0.37)	100(0.00)	
	30대	0.9(0.25)	99.1(0.25)	100(0.00)	
	40대(!)	0.5(0.21)	99.5(0.21)	100(0.00)	
	50대	0.5(0.15)	99.5(0.15)	100(0.00)	
	60대(!)	0.2(0.12)	99.8(0.12)	100(0.00)	
	70대 이상(!)	0.2(0.19)	99.8(0.19)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구분		폭력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혼인 상태	미혼(!)	0.8(0.26)	99.2(0.26)	100(0.00)	2.458 †
	현재 배우자 있음	0.4(0.08)	99.6(0.08)	100(0.00)	
	사별이나 이혼(!)	0.6(0.26)	99.4(0.2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0.2(0.11)	99.8(0.11)	100(0.00)	0.772
	중학교 졸업(!)	0.5(0.24)	99.5(0.24)	100(0.00)	
	고등학교 졸업	0.6(0.17)	99.4(0.17)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0.6(0.14)	99.4(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 < .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제4절 | 개인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생활양식은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 귀가,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명 브랜드 옷차림과 같은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은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 한 달 평균 집에 늦게 귀가(밤 10시 이후)하거나 만취하여 귀가하는 횟수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외 외출 시 고급옷차림(고급스런 옷이나 액세서리 착용 여부)과 유명 브랜드 옷차림 항목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유인 작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유인 큼'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의 생활양식 이외 자기통제를 구성하는 문항<sup>58)</sup>의 합계 평균은 2.35점, 표준편차는 0.53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626이었다. 합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상은 '높음'으로 평균미만은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58) 자기통제 변수는 다음의 '중중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쉽게 화를 낸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 한다', '장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다'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표 8-4-1]은 개인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자기통제 수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집단(유인 큼)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5.2%인 반면,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편인 집단(유인 작음)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2.9%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산범죄피해는 2.6%인 반면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은 3.6%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3.6%로 가장 높았고, 늦은 귀가에 있어서는 거의 매일 늦게 오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4.6%로 가장 높았다. 또한 만취 귀가에 있어서는 거의 매일(15.5%) 혹은 한 달에 하루(3.6%) 만취하여 귀가하는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단, 만취귀가의 일부 항목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며 특히 '거의 매일'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89%로 높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외 유명 브랜드 옷차림을 하는 편일수록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4-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대중 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2(0.32)	96.8(0.32)	100(0.00)	2.062
	일주일에 1-2일	2.6(0.35)	97.4(0.35)	100(0.00)	
	일주일에 3-4일	2.2(0.42)	97.8(0.42)	100(0.00)	
	일주일에 5일 이상	3.6(0.45)	96.4(0.45)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2.8(0.25)	97.2(0.25)	100(0.00)	1.781
	한 달에 하루	3.5(0.51)	96.5(0.51)	100(0.00)	
	보름에 하루	2.1(0.49)	97.9(0.49)	100(0.00)	
	일주일에 하루	2.8(0.52)	97.2(0.52)	100(0.00)	
	일주일에 2-3일	3.8(0.62)	96.2(0.62)	100(0.00)	
	거의 매일	4.6(1.12)	95.4(1.1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0(0.23)	97.0(0.23)	100(0.00)	1.609
	한 달에 하루	3.6(0.59)	96.4(0.59)	100(0.00)	
	보름에 하루	2.6(0.69)	97.4(0.69)	100(0.00)	
	일주일에 하루(!)	3.0(1.00)	97.0(1.00)	100(0.00)	
	일주일에 2-3일(!)	2.8(1.12)	97.2(1.12)	100(0.00)	
	거의 매일(!)	15.5(13.78)	84.5(13.7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인 작음	2.9(0.22)	97.1(0.22)	100(0.00)	4.115*
	보통	3.1(0.48)	96.9(0.48)	100(0.00)	
	유인 큼	5.2(0.87)	94.8(0.8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유명 브랜드 옷차림	유인 작음	3.0(0.24)	97.0(0.24)	100(0.00)	0.483
	보통	3.3(0.51)	96.7(0.51)	100(0.00)	
	유인 큼	3.6(0.62)	96.4(0.6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자기 통제	낮음	3.6(0.30)	96.4(0.30)	100(0.00)	8.000**
	높음	2.6(0.23)	97.4(0.23)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 p&lt;.01, \* p&lt;.05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lt;=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표 8-4-2]는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를 교차분석한 결과로, 폭력범죄피해는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 귀가와 같은 생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다만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적어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이 상당하기에 이에 주의해서 분석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0.9%인 반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집단은 0.3%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1$ ).

늦은 귀가의 경우, 한 달 평균 저녁 10시 이후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높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2.6%, '일주일에 하루'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0.8%였고,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0.3%였다. 단,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은 폭력범죄피해를 0.1% 경험하여 위와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늦은 귀가의 응답집단별 폭력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이었기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만취 귀가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달 평균 만취 귀가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았는데, '보름에 하루'를 기준으로 만취 귀가가 더 많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이나 '한 달에 하루'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보다 높았다. 다만 만취 귀가 역시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이었기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일주일에 2-3일 만취 귀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는 71.8%, 거의 매일 만취 귀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는 102.6%였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경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만취하여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재산범죄피해와 유사하게 외출 시 고급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 [표 8-4-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chi^2$
		있음	없음	계	
대중 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3(0.09)	99.7(0.09)	100(0.00)	2.275 †
	일주일에 1-2일(!)	0.5(0.24)	99.5(0.24)	100(0.00)	
	일주일에 3-4일(!)	0.4(0.19)	99.6(0.19)	100(0.00)	
	일주일에 5일 이상	0.9(0.21)	99.1(0.2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3(0.09)	99.7(0.09)	100(0.00)	12.025***
	한 달에 하루(!)	0.4(0.15)	99.6(0.15)	100(0.00)	
	보름에 하루(!)	0.4(0.21)	99.6(0.21)	100(0.00)	
	일주일에 하루(!)	0.8(0.25)	99.2(0.25)	100(0.00)	
	일주일에 2-3일(!)	0.1(0.05)	99.9(0.05)	100(0.00)	
	거의 매일(!)	2.6(0.96)	97.4(0.9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4(0.09)	99.6(0.09)	100(0.00)	3.898**
	한 달에 하루(!)	0.4(0.17)	99.6(0.17)	100(0.00)	
	보름에 하루(!)	0.9(0.52)	99.1(0.52)	100(0.00)	
	일주일에 하루(!)	0.9(0.47)	99.1(0.47)	100(0.00)	
	일주일에 2-3일(!)	3.1(2.21)	96.9(2.21)	100(0.00)	
	거의 매일(!)	1.0(1.02)	99.0(1.02)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인 작음	0.5(0.11)	99.5(0.11)	100(0.00)	0.418
	보통(!)	0.6(0.17)	99.4(0.17)	100(0.00)	
	유인 큼(!)	0.8(0.33)	99.2(0.33)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유명 브랜드 옷차림	유인 작음	0.5(0.11)	99.5(0.11)	100(0.00)	0.912
	보통(!)	0.7(0.18)	99.3(0.18)	100(0.00)	
	유인 큼(!)	0.5(0.25)	99.5(0.25)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자기 통제	낮음	0.6(0.12)	99.4(0.12)	100(0.00)	0.094
	높음	0.5(0.13)	99.5(0.13)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제5절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앞에서는 2019년도 조사의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간 관계를 검토하였고, 아래에서는 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sup>59)</sup>

### 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경찰의 범죄통제력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은 매년 감소하였고, 지역경찰이 범죄를 잘 통제할 것이라는 인식은 매년 증가하였다.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인식 역시 2019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3년-2015년-2017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지역사회의 환경이 아닌 주민 간 관계를 반영하는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 있어, 이웃관계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웃참여는 연도별로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등 주민 간 결속과 유대수준을 반영하는 이웃관계는 2017년도(2015년 평균 2.68점 → 2017년 평균 2.63점)를 제외하고 매년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위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이웃참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이웃관계,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은 모든 연도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웃참여는 2015년과 2017년, 물리적 무질서는 2017년도와 2019년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9) 제5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표 8-5-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이웃관계	2.50 (0.93)	2.68 (0.92)	2.63 (0.92)	2.74 (0.86)	168.38***
이웃참여	3.30 (0.78)	3.26 (0.79)	3.27 (0.78)	3.33 (0.75)	24.45***
물리적 무질서	2.50 (0.82)	2.27 (0.79)	2.20 (0.79)	2.17 (0.80)	473.36***
사회적 무질서	2.53 (0.82)	2.28 (0.75)	2.13 (0.73)	2.17 (0.75)	736.27***
경찰활동	3.16 (0.77)	3.39 (0.71)	3.44 (0.68)	3.48 (0.70)	539.45***

\*\*\*  $p < .001$ 

-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 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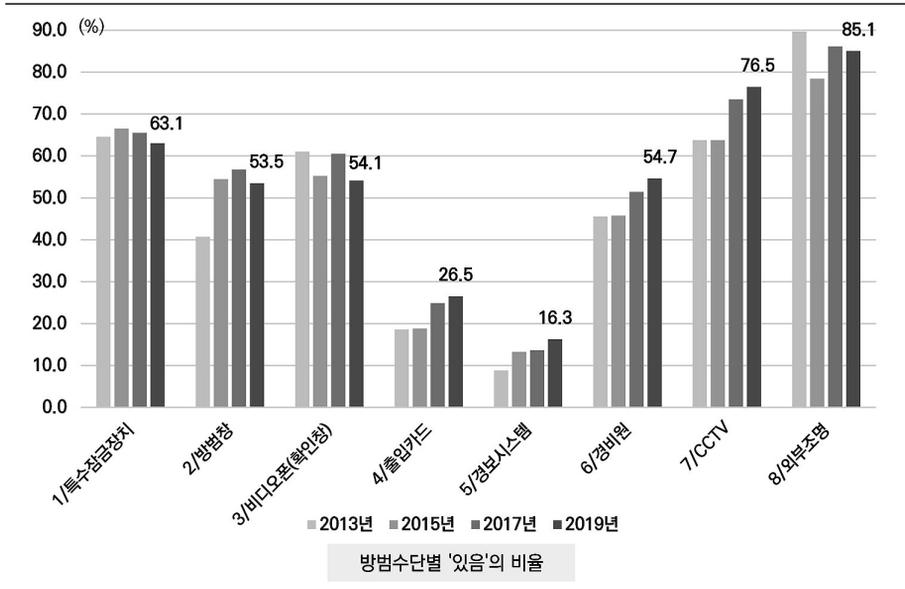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구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방범수준은 조사연도 동안 응답한 가구에서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확인구멍), 출입카드, 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 외부조명 등 총 8개의 방범수단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수단별로 살펴보면, 집주위 외부조명, 집 주위 CCTV, 특수잠금장치, 비디오폰(확인창), 방범창, 경비원 등이 있는 경우가 조사연도마다 40% 이상이었으며, 출입카드나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응답대상 중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출입카드나 경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방범수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확인창), 외부조명 등의 방범수단이 조금 감소한 반면, 이외 출입카드, 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 등의 방범수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8-5-1] 가구 방법수준의 조사연도별 비교



[표 8-5-2]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방법수준은 조사연도 동안 가구별 평균 4개의 방법수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그 수준이 조금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집을 비운 정도는 변화폭은 적지만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방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가구방법수준은 2013년과 2015년, 2017년과 2019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집을 비운 정도는 2013년과 2017년, 2015년과 2017년, 2017년과 2019년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표 8-5-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가구방범수준	3.93 (2.04)	3.96 (2.25)	4.32 (4.32)	4.30 (4.30)	63.95***
집을 비운 정도	2.80 (1.21)	2.83 (1.11)	2.74 (1.10)	2.81 (1.08)	8.28***
N	6,300	6,960	6,100	6,704	-

\*\*\* p&lt;.001

비교 1: 분석단위는 가구임

2: '방범수준'은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가구 수준에서 활용한 방범수단의 개수(0개~8개)를 의미함

3: '집을 비운 정도'는 '거의 비우지 않았음(=1)'부터 '12시간 이상(=5)'로 구분되어, 평균값이 높을수록 비운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 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제외한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생활양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5년 소폭 감소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2013년도와 유사한 이용수준에 도달하였다. 한 달 평균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가거나(늦은 귀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만취 귀가) 횟수는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였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유명브랜드 옷차림하는 편이라는 응답 역시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전체 평균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외출 시 고급옷차림 수준은 각 연도별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7년과 2019년, 늦은 귀가 수준은 2017년과 2019년, 만취 귀가 수준은 2013년과 2015년, 유명브랜드 옷차림 수준은 2015년과 2017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5-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및 t값
	2013	2015	2017	2019	
대중교통	2.78 (1.22)	2.59 (1.24)	2.68 (1.27)	2.71 (1.26)	58.94***
늦은 귀가	3.84 (1.93)	4.14 (1.71)	4.31 (1.70)	4.29 (1.73)	199.09***
만취 귀가	5.39 (1.18)	5.40 (1.04)	5.59 (0.89)	5.47 (1.03)	106.51***
외출 시 고급옷차림	2.04 (0.90)	2.21 (0.95)	2.26 (0.94)	2.10 (0.89)	161.15***
유명브랜드 옷차림	2.08 (0.93)	2.29 (1.01)	2.27 (1.00)	2.16 (0.94)	137.66***
자기통제 수준	-	-	2.33 (0.55)	2.37 (0.51)	5.80***

\*\*\* p<.001

비교: 1. '대중교통'은 '일주일에 5일이상(=1)'부터 '거의 또는 전혀 없음(=4)'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2. '늦은 귀가'와 '만취 귀가'는 한 달 평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1)'부터 '거의 또는 전혀 없음(=6)'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3.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유명브랜드 옷차림'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구분됨

4. '자기통제 수준'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의미임

## 제6절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 1. 2019년 조사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제8장에서는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관계를 간략히 분석하였고,60) 추가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0) 제8장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는 교차분석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 결과로서, 양자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제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에 있어 모두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가구 특성은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구 특성 중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가구의 방범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경향이 있었기에, 아파트와 같이 여러 방범수단이 갖추어져있고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침입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 재산범죄피해와 가구특성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sup>61)</sup>은 범죄유형마다 상이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중 대인절도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 중 사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

6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군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범죄피해 경험자가 수가 많지 않아 총9개의 직업군을 구분하여 교차분석 진행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에서 사기범죄피해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인절도범죄피해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넷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을 살펴 보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과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혹은 거의 매일 밤10시 이후에 귀가(늦은 귀가)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일 혹은 거의 매일 만취 귀가하는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up>62)</sup>

## 2.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다음으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감소하고 있고, 경찰의 범죄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평가만이 2019년도(2.17점)에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3년-2015년-2017년(2.13점)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앞서 물리적 무질서는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사회적 무질서는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에 있어 취약성 요인으로, 경찰활동은 재산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변화 추세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62) 다만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수가 적어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귀가 등의 항목에서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이 상당하기에 이에 주의해서 분석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환경이 아닌 주민 간 관계를 반영하는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 있어, 이웃관계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이웃참여는 연도별로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둘째,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구의 방법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가구에서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총 8개의 방법수단 중 평균 4개의 방법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연도별 변화는 없었다. 집을 비운 정도 역시 변화폭은 적지만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방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생활양식은 특별한 변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5년(2.59점) 소폭 감소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도(2.71점)에는 2013년도(2.78점)와 유사한 이용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김민영

## 제9장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으로서의 범죄가 얼마나 적고 많은 가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사 혹은 처벌을 기준으로 한 공식통계가 감소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람들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제9장에서는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sup>63)</sup> 먼저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동네(지역)’에 있어 사람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가구특성, 지역사회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sup>64)</sup> 제2절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유형별로 살펴보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가구특성,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을 소극적 활동과 적극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범죄예방활동의 영향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가구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3) 본 장의 제1절~제3절에서는 앞서 8장과 동일하게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SPSS 26 프로그램에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은 모두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64) 본 장에서 활용한 범죄피해경험, 이웃관계, 이웃참여,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경찰활동 등 등의 변수 생성내용은 보고서 제8장에 제시되어 있다.

## 제1절 |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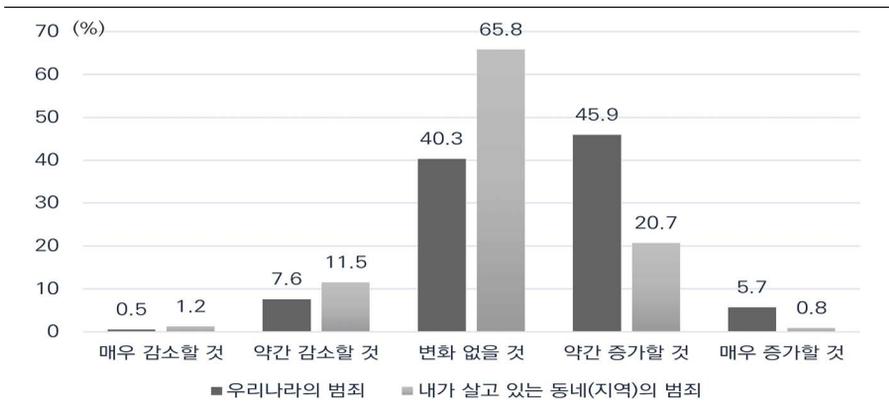
### 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2018년) 한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감소할 것 같습니다?”라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시 제시한 우리나라와 동네(지역)라는 응답자와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상이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매우 증가+약간 증가)이라는 응답은 51.6%,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0.3%, 감소할 것(약간 감소+매우 감소)이라는 응답은 8.1%으로, 응답자의 약 절반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동네(지역)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매우 증가+약간 증가)이라는 응답은 21.5%,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5.8%, 감소할 것(약간 감소+매우 감소)이라는 응답은 12.7%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동네의 범죄발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응답평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항의 평균은 3.49점으로 변화 없을 것(=3점)과 약간 증가할 것(=4점)의 사이인 반면, 응답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항의 평균은 2.14점으로 약간 감소할 것(=2점)과 변화 없을 것(=3점)의 사이로 응답하였다.

▶▶▶ [그림 9-1-1] 작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 [표 9-1-1] 작년(2018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문항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평균 (5점척도)
우리나라의 범죄	0.5% (0.1%)	7.6% (0.6%)	40.3% (1.1%)	45.9% (1.2%)	5.7% (0.6%)	3.49 (0.0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1.2% (0.2%)	11.5% (0.7%)	65.8% (1.1%)	20.7% (1.0%)	0.8% (0.2%)	2.14 (0.03)

## 2. 범죄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아래 [표 9-1-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동네의 범죄발생 인식에 대해서는 직업별 특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에 대해 남성(3.47점)보다는 여성(3.51점)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졸 및 대졸이상 집단이 초졸 이하 및 고졸 집단보다 증가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농림어업숙련종사자·전업주부·사무종사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 있어 직업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무종사자 및 무직/기타 집단의 평균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낮은 편이었다( $p < 0.1$ ).

▶▶ [표 9-1-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성별	남자	3.47 (0.02)	3.08 (0.02)
	여자	3.51 (0.02)	3.09 (0.02)
	t값	-2.537*	-0.290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연령대	10대	3.50 (0.05)	3.08 (0.04)
	20대	3.45 (0.03)	3.08 (0.02)
	30대	3.53 (0.03)	3.14 (0.03)
	40대	3.49 (0.03)	3.08 (0.02)
	50대	3.48 (0.03)	3.06 (0.02)
	60대	3.49 (0.03)	3.08 (0.02)
	70대 이상	3.47 (0.03)	3.08 (0.03)
	F값	1.036	1.052
혼인 상태	미혼	3.49 (0.03)	3.11 (0.02)
	현재 배우자 있음	3.49 (0.02)	3.08 (0.02)
	사별이나 이혼	3.47 (0.03)	3.05 (0.02)
	F값	0.292	1.692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3.46(0.03)	3.08(0.03)
	중학교 졸업	3.51(0.03)	3.08(0.03)
	고등학교 졸업	3.45(0.02)	3.06(0.02)
	대학교 졸업 이상	3.52(0.03)	3.10(0.02)
	F값	2.957*	1.229
직업 <sup>65)</sup>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4(0.05)	3.08(0.05)
	사무종사자	3.51(0.03)	3.12(0.03)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8(0.03)	3.08(0.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57(0.06)	3.02(0.04)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0(0.03)	3.02(0.03)
	단순노무종사자	3.36(0.06)	3.04(0.05)
	전업주부	3.56(0.02)	3.09(0.02)
	학생	3.45(0.04)	3.07(0.03)
	무직/기타	3.45(0.03)	3.11(0.03)
	F값	4.444***	1.739 †

\*\*\* p<.001, \*\* p<.01, \* p<.05, † p<.1

65) 직업 문항의 응답항목에는 '직업군인'이 별도로 있으나, 전체 응답자 기준 항목별 응답빈도를 고려하여,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경험은 재산범죄 혹은 폭력범죄에 대한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주변사람들의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범죄 관련 미디어를 자주 보거나 범죄 관련 이야기를 자주하는 등의 사항도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은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이다'라는 두 문항의 합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91점이고 표준화 편차는 0.89점,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19였다.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항목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평균이상은 '높음'으로 평균 미만은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9-1-3]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발생인식에 있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 [표 9-1-3]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 발생인식
직접 피해경험	있음	3.59(0.04)	3.19(0.04)
	없음	3.48(0.02)	3.08(0.02)
	t값	2.769**	3.090**
간접 피해경험	있음	3.57(0.05)	3.21(0.05)
	없었거나 모름	3.48(0.02)	3.08(0.02)
	t값	2.026*	2.850**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3.55(0.02)	3.12(0.02)
	낮음	3.39(0.02)	3.03(0.02)
	t값	6.287***	4.449***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2018년 한 해 동안 응답자 본인이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 관련 뉴스

등의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에 대한 높은 노출 수준을 범죄발생인식 증가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표 9-1-4]는 가구특성과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등 여러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표 9-1-4]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주택 유형	단독주택	3.54(0.03)	3.05(0.03)
	아파트	3.47(0.03)	3.09(0.02)
	연립/다세대 주택	3.46(0.04)	3.10(0.03)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3.57(0.13)	3.07(0.1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3.66(0.09)	3.22(0.07)
	F값	1.665	1.696
주거 형태	자기 집	3.50(0.02)	3.09(0.02)
	전세	3.52(0.04)	3.10(0.03)
	월세	3.38(0.05)	3.05(0.04)
	기타(관사 등)	3.45(0.07)	3.00(0.10)
	F값	2.039	0.666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3.45(0.04)	3.06(0.03)
	100~200만 원 미만	3.50(0.04)	3.06(0.03)
	200~300만 원 미만	3.44(0.03)	3.07(0.03)
	300~400만 원 미만	3.46(0.03)	3.07(0.02)
	400~500만 원 미만	3.50(0.03)	3.11(0.02)
	500만 원 이상	3.52(0.03)	3.09(0.02)
	F값	1.043	0.582

## 라.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인식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9-1-5]와 같다.

먼저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지역주민과의 이웃관계와 우리나라 범죄발생인식 간 통계적 유의미성은 낮은 편이었다( $p < 0.1$ ). 이러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 및 이웃참여 수준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는 일반적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과 범죄발생인식 간의 관계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지역사회 환경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모두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수준과 범죄발생인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9-1-5]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이웃관계	0.043 †	0.009
이웃참여	0.087**	-0.002
물리적 무질서	0.148***	0.172***
사회적 무질서	0.183***	0.219***
경찰활동	0.003	-0.027

\*\*\*  $p < .001$ , \*\*  $p < .01$ , †  $p < .1$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 제2절 | 범죄두려움 및 영향요인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별 응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두려움', 범죄피해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범죄 대상별 두려움', 구체적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두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두 문항 모두 두렵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반대 측면인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2.6%로, '밤에 혼자 집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9.8%로 나타나, 밤에 집이 아닌 외부 공간-특히 골목길-에 있는데 대한 범죄두려움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문항의 평균점수 역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2.14점인데 반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2.38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은 위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합계 평균은 2.26점, 표준화 편차는 1.01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79였다.

▶▶▶ [표 9-2-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9.6% (1.2%)	40.3% (1.1%)	17.5% (0.8%)	11.3% (0.6%)	1.3% (0.2%)	2.14 (0.03)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25.3% (1.1%)	34.5% (1.0%)	20.4% (0.8%)	16.4% (0.7%)	3.4% (0.4%)	2.38 (0.03)

두 번째로, 범죄피해 대상을 본인, 배우자(애인), 자녀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표 9-2-2]와 같다.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그런 편이다+매

우 그렇다)는 응답은 16.6%,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27.1%,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45.5%였다. 즉, 본인보다는 가족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가능한데, 나 자신의 범죄두려움의 평균은 2.25점, 배우자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2.60점,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3.08점으로, 전체 평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9-2-2]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30.3% (1.2%)	33.0% (0.9%)	20.2% (0.7%)	14.7% (0.7%)	1.9% (0.3%)	2.25 (0.03)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sup>1</sup>	22.9% (1.1%)	26.1% (0.9%)	24.0% (0.8%)	22.8% (1.0%)	4.3% (0.6%)	2.60 (0.04)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sup>2</sup>	15.7% (1.1%)	16.9% (0.8%)	21.9% (0.9%)	35.1% (1.1%)	10.4% (0.9%)	3.08 (0.04)

비고: 1. 배우자(애인) 없는 응답자(해당자 없음)는 전체 응답자의 28.0%였으며, 이들을 제외하고 배우자(애인)가 있는 응답자 72%를 기준으로 응답결과와 평균을 제시함

2. 자녀가 없는 응답자(해당자 없음)는 전체 응답자의 34.7%였으며, 이들을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75.3%를 기준으로 응답결과와 평균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구체적 두려움은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범죄 두려움을 구분한 이후, 전체 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문항 내용은 아래 [표 9-2-3] 참고).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을 상세히 살펴보면,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주거침입(11.7%) > 사기(9.9%) > 폭행(8.9%) > 성폭력(8.6%) > 절도(8.0%) > 강도(7.2%) > 괴롭힘(5.4%) > 손괴(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응답자가 범죄의 심각성이나 처벌의 중대성, 피해의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산범죄두려움은 절도, 사기, 손괴, 주거침입에 대해 범죄두려움을 측정한 각 문항의 합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재산범죄두려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평균은 2.09점, 표준화 편차는 0.79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는 0.885점이었다.

폭력범죄두러움은 강도, 폭행(구타),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 각 문항의 합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폭력범죄두러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평균은 2.04점, 표준화 편차는 0.80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는 0.870점이었다.

폭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라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 두려움은 위의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묻는 총 8개 문항을 모두 합계 평균하여 구성하였는데, 평균은 2.06점이고 표준화 편차는 0.77점이었으며, 문항구성의 신뢰도는 0.939점이었다.

▶▶▶ [표 9-2-3] 범죄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표준오차))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재산 범죄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5.1% (1.3%)	49.6% (1.2%)	17.2% (0.9%)	6.7% (0.5%)	1.3% (0.4%)	2.09 (0.03)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29.1% (1.3%)	41.9% (1.1%)	19.1% (0.8%)	8.2% (0.6%)	1.7% (0.4%)	2.11 (0.03)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할까 봐 두렵다	31.5% (1.3%)	45.0% (1.1%)	18.8% (1.0%)	4.4% (0.3%)	0.3% (0.1%)	1.97 (0.02)
폭력 범죄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26.4% (1.2%)	41.6% (1.1%)	20.3% (0.9%)	9.7% (0.6%)	2.0% (0.4%)	2.19 (0.03)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0.7% (1.3%)	44.9% (1.1%)	17.2% (0.9%)	5.9% (0.5%)	1.3% (0.3%)	2.02 (0.0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 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30.1% (1.3%)	42.1% (1.0%)	18.9% (0.8%)	7.5% (0.5%)	1.4% (0.3%)	2.08 (0.03)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29.6% (1.3%)	45.8% (1.2%)	19.2% (1.0%)	5.1% (0.4%)	0.3% (0.1%)	2.01 (0.02)
성 폭력 범죄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35.5% (1.2%)	38.1% (0.9%)	17.8% (0.7%)	7.2% (0.4%)	1.4% (0.3%)	2.01 (0.02)

##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재산범죄두려움 제외),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성폭력 두려움 제외)에서 범죄두려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경우도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교육수준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두려움에 대해서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간 두려움의 차이는 일반적 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0.68점),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0.27점).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폭력범죄두려움(30대 제외)과 성폭력 두려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미혼이나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하여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동거포함)보다 높은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사별이나 이혼(별거포함)으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성폭력 두려움이 낮은 것은, 사별 혹은 이혼한 집단의 연령이 높아 그 연령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 집단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 두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별이나 이혼(별거포함)한 집단은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두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폭

력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 두려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반적 두려움이 낮게 나타났고, 폭력범죄두려움은 중학교 졸업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재산·폭력 범죄두려움은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은 전업주부 집단에서, 성폭력 두려움은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군별 상이한 결과는 직업군에 따라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 상이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표 9-2-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성별	남자	1.92 (0.03)	1.90 (0.03)	1.96 (0.03)	1.89 (0.03)	1.70 (0.02)
	여자	2.61 (0.03)	2.22 (0.03)	2.23 (0.03)	2.18 (0.03)	2.32 (0.03)
	t값	-25.497***	-19.823***	-16.799***	-17.416***	-22.032***
연령대	10대	2.50 (0.06)	2.13 (0.05)	2.11 (0.05)	2.13 (0.05)	2.23 (0.07)
	20대	2.34 (0.04)	2.08 (0.03)	2.07 (0.03)	2.06 (0.04)	2.17 (0.04)
	30대	2.32 (0.04)	2.13 (0.04)	2.16 (0.04)	2.08 (0.04)	2.16 (0.04)
	40대	2.24 (0.04)	2.06 (0.03)	2.09 (0.03)	2.03 (0.03)	2.02 (0.04)
	50대	2.19 (0.04)	2.03 (0.03)	2.08 (0.03)	2.01 (0.03)	1.92 (0.03)
	60대	2.21 (0.04)	2.02 (0.04)	2.08 (0.04)	1.99 (0.04)	1.86 (0.04)
	70대 이상	2.14 (0.04)	1.98 (0.04)	2.05 (0.04)	1.98 (0.04)	1.73 (0.03)
	F값	6.450***	2.888**	1.348	2.128*	20.946***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현 인 상 태	미혼	2.33 (0.04)	2.10 (0.03)	2.09 (0.03)	2.08 (0.03)	2.16 (0.04)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2.22 (0.03)	2.04 (0.03)	2.08 (0.03)	2.01 (0.03)	1.97 (0.03)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2.34 (0.04)	2.09 (0.03)	2.16 (0.04)	2.06 (0.04)	1.91 (0.04)
	F값	8.001***	2.606 †	2.474 †	3.498*	18.934***
학 육 수 준	초졸 이하 (미취학 포함)	2.31 (0.04)	2.05 (0.04)	2.10 (0.04)	2.04 (0.04)	1.84 (0.04)
	중학교 졸업	2.28 (0.04)	2.01 (0.03)	2.04 (0.03)	1.99 (0.03)	1.95 (0.04)
	고등학교 졸업	2.27 (0.03)	2.06 (0.03)	2.09 (0.03)	2.04 (0.03)	2.01 (0.03)
	대학교 졸업 이상	2.24 (0.03)	2.08 (0.03)	2.11 (0.03)	2.04 (0.03)	2.07 (0.03)
	F값	0.758	1.156	1.223	0.846	8.003***
직 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1 (0.08)	2.03 (0.04)	2.05 (0.05)	2.01 (0.05)	1.98 (0.06)
	사무종사자	2.23 (0.04)	2.08 (0.04)	2.11 (0.04)	2.05 (0.04)	2.07 (0.04)
	서비스, 판매 종사자	2.32 (0.04)	2.12 (0.04)	2.16 (0.04)	2.09 (0.04)	2.05 (0.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3 (0.07)	1.95 (0.05)	2.01 (0.05)	1.93 (0.06)	1.82 (0.06)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9 (0.05)	1.94 (0.04)	1.99 (0.04)	1.91 (0.04)	1.81 (0.04)
	단순노무종사자	2.08 (0.06)	1.90 (0.06)	1.95 (0.06)	1.90 (0.06)	1.72 (0.05)
	전업주부	2.45 (0.04)	2.11 (0.03)	2.14 (0.03)	2.07 (0.03)	2.09 (0.03)
	학생	2.40 (0.05)	2.07 (0.04)	2.06 (0.04)	2.07 (0.05)	2.14 (0.05)
	무직/기타	2.04 (0.04)	1.96 (0.04)	2.00 (0.04)	1.96 (0.04)	1.78 (0.04)
	F값	17.136***	4.922***	4.025***	3.761***	12.692***

\*\*\* p&lt;.001, \*\* p&lt;.01, \* p&lt;.05, † p&lt;.1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5]는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두려움에 있어 높게 나타났고(0.39점, 0.39점), 폭력범죄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0.32점, 0.31점).

평소에 응답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신체 피해 혹은 재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간접적으로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간접 피해경험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에서 크게 나타났고(0.38점) 성폭력범죄두려움에서 낮게 나타났다(0.27점).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다만 성폭력 두려움은 통계적 유의성이  $p < 0.1$ 로 낮았다).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의 절대적 크기는 작은 편이었지만, 역시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크고(0.13점) 성폭력 두려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0.07점).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거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노출이 높은 집단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범죄 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크고 성폭력 두려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9-2-5]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직접 피해경험	있음	2.64 (0.07)	2.40 (0.05)	2.47 (0.05)	2.34 (0.06)	2.31 (0.07)
	없음	2.25 (0.03)	2.05 (0.03)	2.08 (0.03)	2.02 (0.03)	2.00 (0.02)
	t값	6.067***	7.617***	8.664***	6.066***	4.572***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간접 피해경험	있음	2.57 (0.08)	2.39 (0.06)	2.46 (0.05)	2.33 (0.06)	2.27 (0.06)
	없었거나 모름	2.25 (0.03)	2.05 (0.03)	2.08 (0.03)	2.02 (0.03)	2.00 (0.02)
	t값	4.454***	6.604***	7.519***	5.229***	4.437***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2.30 (0.03)	2.11 (0.03)	2.14 (0.03)	2.08 (0.03)	2.04 (0.03)
	낮음	2.20 (0.03)	1.99 (0.03)	2.01 (0.03)	1.97 (0.03)	1.97 (0.03)
	t값	2.78**	3.233**	3.605***	2.962**	1.859 †

\*\*\* p<.001, \*\* p<.01, \* p<.05, † p<.1

비고 1: 간접피해경험은 평소에 응답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신체 혹은 재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을 기준으로 있음과 없었거나 모름으로 구분함

#### 다. 가구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6]은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특성과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의 순서로 각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폭력 두려움 역시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집단에서 가장 높았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 순위는 아파트 > 비거주용 건물 등의 순위였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서 전세 > 자기 집 > 월세 > 기타(관사 등)의 순서로 각 주거점유형태를 지닌 집단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평균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각각 평균 2.28점이어서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 [표 9-2-6] 가구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주택 유형	단독주택	2.25 (0.05)	2.05 (0.04)	2.10 (0.04)	2.03 (0.04)	1.94 (0.04)
	아파트	2.20 (0.04)	2.03 (0.04)	2.05 (0.04)	2.00 (0.04)	1.99 (0.03)
	연립/다세대 주택	2.45 (0.06)	2.18 (0.05)	2.22 (0.05)	2.16 (0.05)	2.13 (0.05)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19 (0.10)	2.01 (0.11)	2.04 (0.13)	1.98 (0.11)	1.96 (0.1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06 (0.13)	1.78 (0.11)	1.80 (0.13)	1.69 (0.10)	1.94 (0.15)
	F값	4.715**	3.507**	3.258*	4.602**	2.585*
주거 점유 형태	자기 집	2.25 (0.03)	2.06 (0.03)	2.09 (0.03)	2.03 (0.03)	1.98 (0.03)
	전세	2.42 (0.05)	2.17 (0.05)	2.20 (0.05)	2.14 (0.05)	2.16 (0.05)
	월세	2.14 (0.06)	1.96 (0.05)	1.99 (0.05)	1.92 (0.05)	1.97 (0.06)
	기타(관사 등)	2.01 (0.10)	1.89 (0.08)	1.89 (0.08)	1.88 (0.08)	1.88 (0.07)
	F값	8.114***	5.032**	4.931**	4.495**	6.34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08 (0.05)	1.89 (0.05)	1.95 (0.05)	1.88 (0.05)	1.69 (0.04)
	100~200만 원 미만	2.25 (0.05)	2.04 (0.04)	2.10 (0.04)	2.01 (0.04)	1.92 (0.04)
	200~300만 원 미만	2.23 (0.04)	2.02 (0.03)	2.06 (0.03)	2.00 (0.03)	1.95 (0.03)
	300~400만 원 미만	2.28 (0.03)	2.07 (0.03)	2.10 (0.03)	2.04 (0.03)	2.05 (0.03)
	400~500만 원 미만	2.30 (0.04)	2.05 (0.04)	2.07 (0.04)	2.03 (0.04)	2.03 (0.04)
	500만 원 이상	2.28 (0.04)	2.12 (0.04)	2.14 (0.04)	2.09 (0.04)	2.08 (0.04)
	F값	3.189**	3.473**	2.671*	2.648*	11.857***

\*\*\* p<.001, \*\* p<.01, \* p<.05

### 라.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아래 [표 9-2-7]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웃관계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의 경우, 주민 간 결속과 유대가 강할수록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적 생각과는 상반된 이러한 결과는 이웃관계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와 이웃관계와 범죄두려움 간 관계에 대한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웃참여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으나, 이웃참여가 활발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 두려움이 낮아지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수준이 심각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환경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단, 재산범죄두려움은  $p<0.1$ ).

▶▶▶ [표 9-2-7]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 관계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이웃관계	0.040 †	0.077**	0.087**	0.078*	0.009
이웃참여	-0.023	0.005	0.025	-0.008	-0.030
물리적 무질서	0.322***	0.313***	0.308***	0.301***	0.224***
사회적 무질서	0.369***	0.420***	0.409***	0.401***	0.326***
경찰활동	-0.077***	-0.069*	-0.059 †	-0.070*	-0.069**

\*\*\*  $p<0.001$ , \*\*  $p<0.01$ , \*  $p<0.05$ , †  $p<0.1$

-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 제3절 | 범죄예방활동 및 영향요인

#### 1.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범죄발생추세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범죄에 대한 인식적 측면 이외에, 실제 행동 측면에서 사람들의 범죄예방활동은 어떠하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범죄예방활동은 크게 소극적 활동과 적극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문항은 [표 9-3-1] 참고).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그 구성 문항의 합계 평균은 2.54점, 표준화 편차는 0.80이었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07점이었다.<sup>66)</sup>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구성 문항의 합계 평균은 1.77점, 표준화편차는 0.66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643점이었다.

양자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다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9-3-1]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요인 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0.368	1	5	3.56	1.10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0.854	1	5	2.14	0.99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0.850	1	5	2.54	1.16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0.869	1	5	2.19	1.00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0.793	1	5	2.28	1.08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Cronbach's $\alpha$ = 0.807				
민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0.684	1	5	1.60	0.81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0.832	1	5	1.70	0.81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0.778	1	5	2.01	0.96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Cronbach's $\alpha$ = 0.643				

비고: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선택하였다.

66)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문항 중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368로 낮으나, 전체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신뢰도분석 결과와 기존 보고서의 분석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포함한 5개 문항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구성하였다.

##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9-3-2]와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연령집단에 있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동거 포함) 사별이나 이혼한(별거 포함) 집단이 미혼 집단에 비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집단에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초졸 이하(미취학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업군별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2.85점)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2.58점), 학생(2.54점)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기능원·기계조작및조립 종사자(2.28점)이었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농어업수련종사자의 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1.83점), 전업주부와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이 각각 1.81점으로 다음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1.66점)이었다.

▶▶▶ [표 9-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성별	남자	2.19 (0.02)	1.70(0.02)
	여자	2.89 (0.02)	1.84(0.02)
	t값	-30.263***	-9.486***
연령대	10대	2.60 (0.06)	1.70(0.05)
	20대	2.50 (0.03)	1.73(0.03)
	30대	2.57 (0.03)	1.76(0.04)
	40대	2.55 (0.03)	1.79(0.03)
	50대	2.51 (0.02)	1.79(0.02)
	60대	2.55 (0.03)	1.80(0.03)
	70대 이상	2.54 (0.04)	1.77(0.03)
	F값	1.642	1.774
혼인 상태	미혼	2.50 (0.03)	1.73(0.03)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2.54 (0.02)	1.79(0.02)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2.66 (0.03)	1.76(0.03)
	F값	9.359***	3.067*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2.64 (0.04)	1.79(0.03)
	중학교 졸업	2.56 (0.04)	1.73(0.03)
	고등학교 졸업	2.52 (0.02)	1.78(0.02)
	대학교 졸업 이상	2.53 (0.03)	1.77(0.03)
	F값	4.137**	1.1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0.05)	1.74(0.06)
	사무종사자	2.47 (0.03)	1.78(0.03)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8 (0.03)	1.81(0.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4 (0.06)	1.83(0.05)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8 (0.04)	1.72(0.04)
	단순노무종사자	2.35 (0.05)	1.66(0.04)
	전업주부	2.85 (0.03)	1.81(0.03)
	학생	2.54 (0.05)	1.72(0.04)
	무직/기타	2.39 (0.04)	1.72(0.03)
	F값	42.804***	3.175**

\*\*\* p<.001, \*\* p<.01, \* p<.05

## 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표 9-3-3]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단, 직접 피해경험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간 집단 차이는 제외).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간접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위와 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있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측정문항에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와 같은 외부로의 적극적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에 많이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밤에 자기 전에 문단속을 확실히 하고, 범죄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피하는 등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 [표 9-3-3]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직접 피해경험	있음	2.80 (0.05)	1.77(0.04)
	없음	2.53 (0.02)	1.77(0.02)
	t값	-5.161***	0.052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간접 피해경험	있음	2.71 (0.05)	1.66(0.05)
	없었거나 모름	2.53 (0.02)	1.77(0.02)
	t값	3.516***	-2.435*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2.60 (0.02)	1.79(0.02)
	낮음	2.45 (0.03)	1.74(0.03)
	t값	-5.162***	2.141*

\*\*\* p<.001, \*\* p<.01, \* p<.05

#### 다. 가구특성과 범죄예방활동

[표 9-3-4]에서는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과 범죄예방활동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기타(오피스텔·원룸 등)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서도 유사하게,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기타(오피스텔·원룸 등)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은, 전세이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월세로 거주하거나 기타(관사 등)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서 전세이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범죄두려움에 기반하여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과 범죄예방활동간 관계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낮았다(p<0.1).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다만, 월평균 가구소득

300~4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1.79점인 반면 400~500만 원 미만 집단은 1.76점으로, 해당 400~500만 원 미만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조금 낮아져 전체적 경향성과는 조금 달랐다).

▶▶▶ [표 9-3-4] 가구특성과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주택 유형	단독주택	2.51 (0.04)	1.83(0.03)
	아파트	2.54 (0.03)	1.73(0.03)
	연립/다세대 주택	2.62 (0.04)	1.83(0.04)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50 (0.09)	1.68(0.15)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24 (0.14)	1.54(0.12)
	F값	2.761**	2.645*
주거 점유 형태	자기 집	2.55 (0.02)	1.79(0.02)
	전세	2.63 (0.03)	1.80(0.04)
	월세	2.40 (0.05)	1.62(0.05)
	기타(관사 등)	2.23 (0.20)	1.63(0.08)
	F값	8.351***	4.842**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47 (0.05)	1.65(0.04)
	100~200만 원 미만	2.59 (0.04)	1.71(0.03)
	200~300만 원 미만	2.50 (0.03)	1.73(0.03)
	300~400만 원 미만	2.56 (0.03)	1.79(0.03)
	400~500만 원 미만	2.58 (0.03)	1.76(0.03)
	500만 원 이상	2.52 (0.03)	1.82(0.03)
F값	2.225†	3.177**	

\*\*\* p<.001, \*\* p<.01, \* p<.05, † p<.1

## 제4절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앞의 1절~3절에서는 2019년도 조사의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각각을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sup>67)</sup>

### 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sup>68)</sup>

아래 [그림 9-4-1]은 우리나라 및 동네(지역)를 기준으로, 작년(2018년)에 비해 앞으로 범죄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가를 '매우 감소할 것(=1점)'에서 '매우 증가할 것(5점)'라는 문항에 대해 '약간 증가할 것' 및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문항에 있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9년도에는 다시 상승하여 2015년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은 2015년에는 48.1%였고 2019년에는 51.6%로 3.5%p 더 증가한 상황이며,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은 2015년 22.5%였고 2019년에는 21.5%로 나타나, 2015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제3장에서 2018년 기준 전체 범죄피해발생률이 2016년 기준 대비 소폭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흐름으로, 향후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 역시 실제 범죄피해율의 증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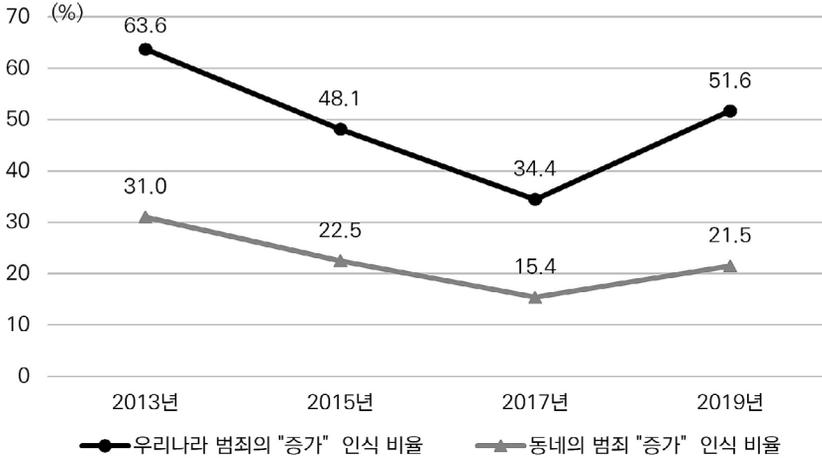
또한 매년 동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가 이렇듯 거주지와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을 구분하여 응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67) 제4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68)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및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조사는 2009년도 조사 및 2011년도 조사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가구원 표준화가중치가 구축된 2013년도 조사를 시작시점으로 연도별 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및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의 연도별 차이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사후검증(Bonferroni) 역시 모두 유의미하였다.

▶▶ [그림 9-4-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



▶▶ [표 9-4-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3.64 (0.85)	3.41 (0.76)	3.22 (0.72)	3.49 (0.74)	682.69***
동네의 범죄발생인식	3.17 (0.76)	3.06 (0.66)	2.97 (0.62)	3.08 (0.63)	198.61***

\*\*\* p<.001

## 2.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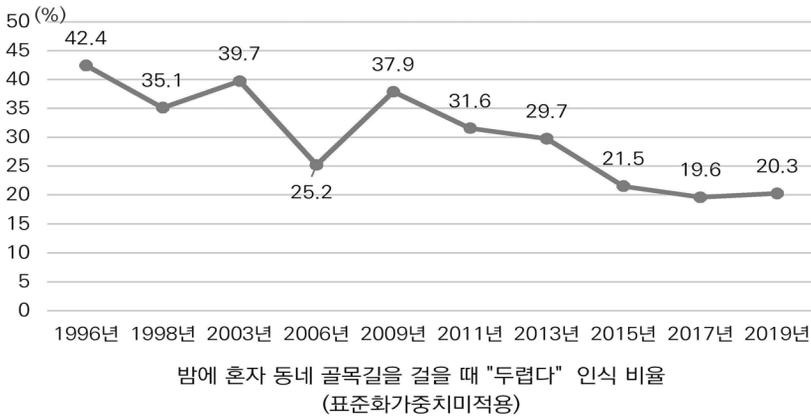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을 구성하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1996년부터 동일하게 조사된 문항으로, 몇 차례의 개

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비교 가능한 문항이다.

아래 [그림 9-4-2]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에 대해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6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구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6년에는 42.4%에 달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9년<sup>70)</sup>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 19.6%에서 2019년에는 20.3%로 조금 증가하였다(0.7%p증가).

▶▶▶ [그림 9-4-2] ‘밤에 길’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가중치 미적용)



비고: 1. 2006년까지의 조사는 제주도 제외 전국 약 2,000명의 표본 대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적 정확성을 확보한 조사결과가 제공되고 있음

다만 위의 연도별 비교는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조사결과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한 2013년-2019년 동안의 응답내용은 아래 [그림 9-4-3]과 같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2017년 20.7%에서 2019년 19.8%로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2017년 19.6%에서 2019년 20.3%로 일부 증가와는 상이한 변화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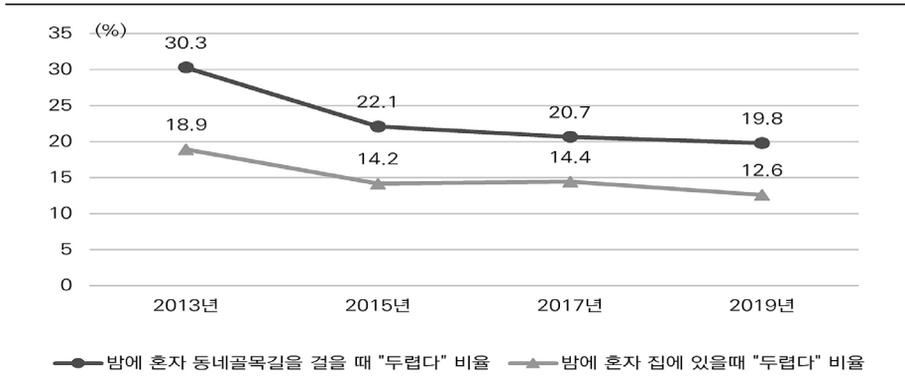
69) 1996년부터 2011년 동안의 조사에서는 표준화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아, 1996년부터의 시계열 비교에는 가중치 미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70) 2009년도 조사개편으로, 조사대상이 기존의 약 2,000명에서 만 명이상으로 확대되었다.

71) 표본조사에서는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또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 역시 2013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7년도에는 14.4%로 2015년의 14.2% 대비 0.2%p 증가하였다가 2019년 12.6%로 감소하였다.

▶▶ [그림 9-4-3] '밤에 길' 및 '밤에 집'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표 9-4-2]는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평균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및 두 문항의 합계 평균인 일반적 두려움 모두 2013년 이래 평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각 연도별 차이를 비교한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에서는 '밤에 혼자 집' 문항의 2013년도와 2015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9-4-2]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30 (1.14)	2.28 (1.01)	2.21 (1.02)	2.14 (1.01)	64.09***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2.65 (1.24)	2.50 (1.11)	2.43 (1.11)	2.38 (1.13)	134.96***
일반적 두려움	2.47 (1.12)	2.39 (1.00)	2.32 (1.01)	2.26 (1.01)	104.33***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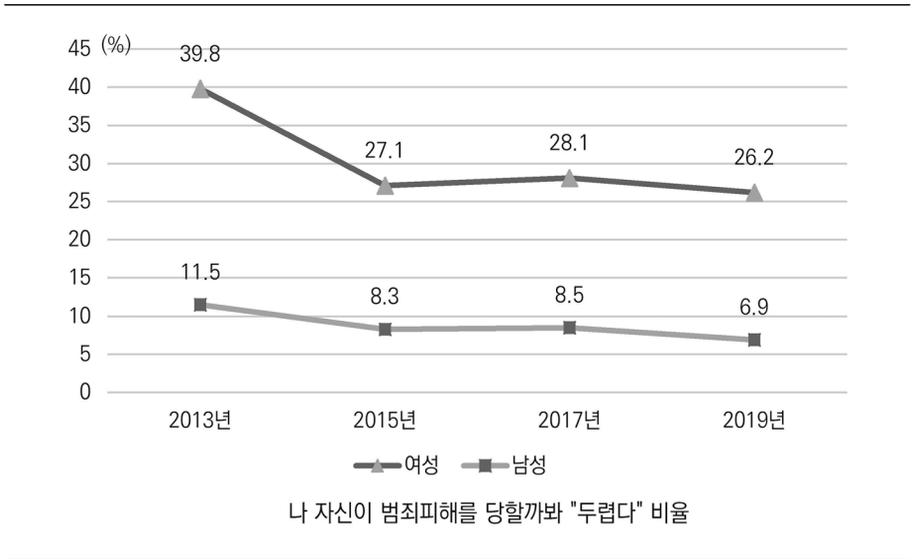
되기 때문에, 각 표본의 선택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비편향 추정량을 사용해야 한다(Scheaffer et al., 2006; 김영원 외 옮김, 2006: 382).

이에 장기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그림 9-4-2)와 비편향추정량인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그림 9-4-3)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범죄대상별 범죄두려움의 변화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2013년~2019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9-4-3) 참조). 대상별 두려움의 순위를 보면,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과 배우자 대상 범죄두려움이 매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아래 그림 9-4-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의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3년 대비 2015년에 조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의 범죄두려움에 비해 약 20%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경험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라는 인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9-4-4]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범죄대상별 두려움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2013년 대비 2015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도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본인 대상 두려움과 배우자 대상 두려움은 소폭 증가한 반면(0.02점),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은 조금더(0.12점)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모든 대상별 범죄두려움이 감소하였고, 이는 2013년 및 2015년 대비 감소한 수치였다.

범죄대상별 범죄두려움의 각 조사연도별 평균값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에서는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 및 배우자 대상 범죄두려움은 2015년과 2017년,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은 2015년도와 2019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9-4-3]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60 (1.14)	2.34 (1.08)	2.36 (1.08)	2.25 (1.09)	246.99***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sup>1</sup>	3.00 (1.12)	2.65 (1.15)	2.67 (1.12)	2.60 (1.19)	253.27***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sup>1</sup>	3.58 (1.12)	3.09 (1.20)	3.21 (1.13)	3.08 (1.25)	381.69***

\*\*\* p<.001

비고:1. 배우자(애인) 및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해당자 없음'을 제외한 평균임

마지막으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을 살펴보자. 아래 [표 9-4-4]에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평균을 제시하였다. 모든 범죄유형별 두려움은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두려움이 높은 순위에 있어서도 매년 동일하게 재산범죄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 성폭행 두려움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연도별 평균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에서는 평균이 2.01점으로 동일한 성폭행 두려움을 제외한 각 연도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표 9-4-4]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구체적 두려움	2.31 (0.84)	2.17 (0.78)	2.12 (0.78)	2.06 (0.77)	229.67***
재산범죄두려움	2.37 (0.86)	2.21 (0.80)	2.17 (0.81)	2.09 (0.79)	279.46***
폭력범죄두려움	2.26 (0.87)	2.15 (0.82)	2.10 (0.81)	2.04 (0.80)	170.05***
성폭행 두려움	2.18 (1.08)	2.07 (0.98)	2.01 (1.00)	2.01 (0.97)	86.92***

\*\*\* p<.001

###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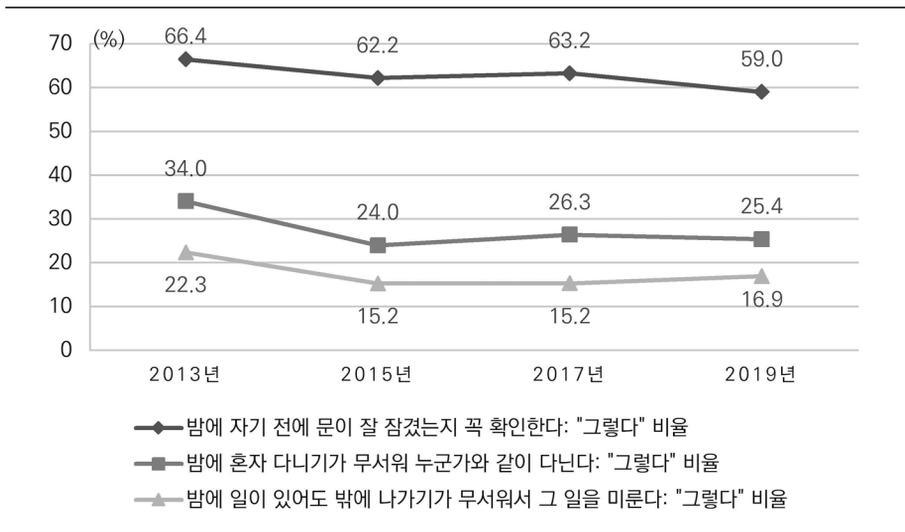
먼저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구성하는 각 문항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9-4-5]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밤을 기준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에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밤 시간대에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많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는 문항에서 매년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나, 2013년 66.4% 대비 2019년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9.0%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7%p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어 주요 범죄예방활동임을 알 수 있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문항 역시 위 문항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감소추세이나 2017년 소폭증가(26.3%) 후 2019년 감소(25.4%)라는 동일한 변화방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매년 약 24%라는 적지 않은 응답자가 밤에 범죄예방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 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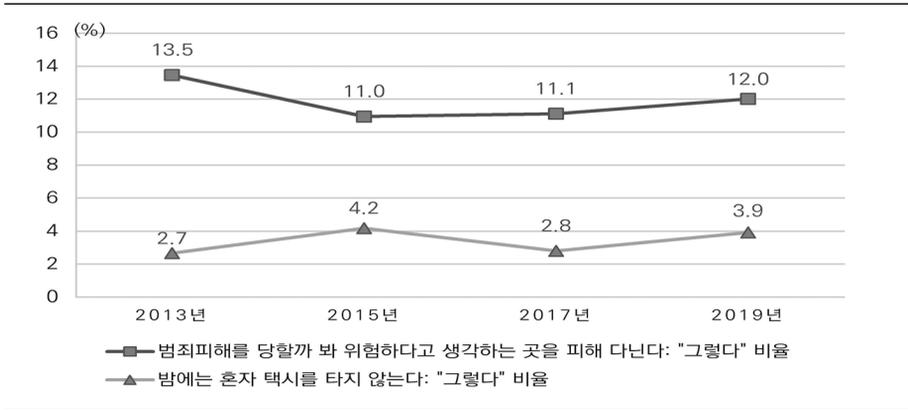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는 문항은 2013년 22.3%에서 2015년 15.2%로 감소된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근에 밤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지 않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이다.

▶▶ [그림 9-4-5]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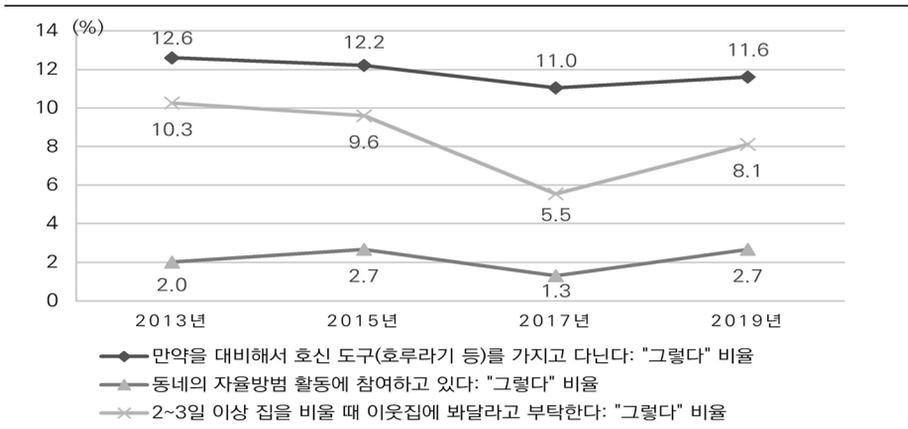
[그림 9-4-6]에서는, 이외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인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와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는 응답은 매년 약 11.0%~13.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응답은 증감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9-4-6]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2)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소극적 예방활동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보다 많은 활동이 필요한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9-4-7) 참고).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은 2013년 10.3%에서 2017년 5.5%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8.1%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항목이었다. 이외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와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항은 매년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그 변화폭이 크지는 않았다.

▶▶▶ [그림 9-4-7]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위 문항의 합계평균으로 구성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평균은 2013년(2.64점)부터 2017년(2.51점)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2.54점)에는 다시 2015년도(2.54점)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평균은 소폭이지만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고,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평균에 비해 평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9-4-5]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소극적 범죄예방	2.64 (0.85)	2.54 (0.78)	2.51 (0.80)	2.54 (0.81)	58.51***
적극적 범죄예방	1.64 (0.61)	1.80 (0.69)	1.65 (0.62)	1.77 (0.66)	219.88***

\*\*\*  $p < .001$

## 제5절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제9장에서는 2019년 조사에서 만14세 이상 응답자들이 범죄발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이며,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sup>72)</sup> 이후 개인 수준(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 경험, 미디어노출 수준), 가구 수준(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지역사회 수준(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여러 특성이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위의 인식과 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72) 제9장의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 것으로, 양자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2019년도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먼저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개인·가구·지역사회 수준의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2019년도에 조사된 범죄발생인식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증가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중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전업주부·사무종사자 직업을 지닌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는 사무종사자 및 무직/기타 직업을 지닌 집단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어와 소문에 대한 높은 노출 수준은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가구 수준의 여러 특성은 범죄발생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 범죄발생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8장에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실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가 강할수록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바, 향후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올해 조사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자. 유형별 범죄두려움의 응답특성을 각 문항별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문항(19.8%)에 대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12.6%)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서는 본인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서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주거침입 > 사기 > 폭행 > 성폭력 > 절도 > 강도 > 괴롭힘 > 손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범죄의 심각성이나 처벌의 중대성, 피해의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에 있어 개인 수준의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대부분의 유형별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성별에 있어 여성, 연령에 있어 10대가, 혼인상태에 있어 미혼 집단에서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업군에 있어 구체적·재산·폭력 범죄두려움은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은 전업주부 집단에서, 성폭력 두려움은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군별 상이한 결과는 직업군에 따라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 상이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은 성폭력범죄 두려움에 있어서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에 있어서는,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거나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주택유형이 연립/다세대 주택인 집단에서 그리고 주거점유 형태가 전세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대체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일반적 두려움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평균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앞서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과 동일하게,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제8장에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의 심각성과 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감소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이웃관계가 강할수록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일반적 생각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해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활동과 개인·가구·지역사회 수준의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지난 2017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다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최수형 외, 2017: 256).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있어 여성이, 혼인상태에 있어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이, 교육수준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직업군에 있어서는 전업주부 및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에서 대체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개인수준의 범죄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와의 관계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에 남성보다 여성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외 혼인상태에서 있어서는 미혼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나 범죄예방활동은 대체로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범죄피해경험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범죄예방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는 집단은 간접 피해경험이 없었거나 모르는 집단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외부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 수준의 특성과 범죄예방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주택유형에 있어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주거점유형태에 있어 전세이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다. 앞서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과 전세이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범죄두려움에 기반하여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첫째,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죄피해율에 있어, 2016년 대비 2018년 범죄피해율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와 동일하게 범죄발생인식이 연도별로 변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범죄발생인식 영향요인 중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사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발생인식의 관계는 기존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다(최수형 외, 2017: 254).

다만 이러한 범죄피해율의 증가와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의 상반된 변화 흐름이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범죄발생인식은 2013년-2015년-2017년 동안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금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한 반면, 범죄두려움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 흐름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범죄발생인식은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함께 언론에서 범죄 관련 뉴스를 얼마나 보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는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범죄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미디어·소문의 영향을 받지만, 범죄두려움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변화 흐름과 응답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특별한 변화 추세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소폭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2015년도의

활동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역시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다.

각 활동을 구성하는 구체적 문항에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밤'에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활동에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밤에 택시탑승 제외). 즉,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밤에 범죄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밤에 문단속, 밤에 누군가와 같이 다니기 등), 이로 인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호신 도구 지참, 자율방범 활동 참여 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제언

김민영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제언

### 제1절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sup>73)</sup>

#### 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 개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검토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활용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정책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한 「국가통계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바 있다(김성근, 2018).<sup>74)</sup>

이를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Google Scholar, SocINDEX 등의 자료원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조사' 혹은 '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2000년 이후 발간된 자료를 1차 수집하였다.<sup>75)</sup> 이후 수집된 자료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자료(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한정하고 단순히 언급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역시 제외하였

73) 본 절에서 참고한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는 참고문헌 뒷 부분에 'IV.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로 별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74) 해당 조사는 국가통계 활용도를 1차 활용(온라인상 제공 홈페이지의 접속건수, 제공건수), 2차 활용(정책적, 학술적, 언론 활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통계생산을 위한 기반(역량, 자원)도 함께 분석하였다.

75)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검색 종료함

다. 이때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로 단순비교표를 작성하여 연구한 사례도 포함하였다. 다만,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주된 주제로 하여, 개편과정 혹은 방법론적 의의 등을 논의한 연구는 수집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살펴보아 관련 자료를 추가 확인하였다.

▶▶▶ [표 10-1-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수집 기준

분류	대상자료	자료원	키워드
국내	학위논문,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S, 서울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li> <li>•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추가</li> </ul>	전국범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조사
해외	학위논문,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S, Google Scholar, SocINEDX 등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li> <li>•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추가</li> </ul>	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위와 같은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자료(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2000년도 이후 학술 연구 자료는 국내에서는 학술논문 78건, 연구보고서 3건, 학술대회자료 38건, 학위논문 15건을 수집하였고, 해외에서는 해외학술논문 7건, 해외학위논문은 2건을 수집하였다.<sup>76)</sup> 아래에서는 학술대회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주요 활용 내용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주로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는 종속변수 혹은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①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유무,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 등), ② 범죄피해 두려움(일반적 두려움,

76) 해당 목록은 앞서 설명한 수집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이며, 전국범죄피해조사 혹은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 등 조사의 정식명칭이 연구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수집과정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연구진이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검토하였으나, 연구진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한 학술연구가 있을 수도 있다.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 ③ 기타(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 방법론적 개선방안, 일상생활만족도 등)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범죄피해 경험과 그 영향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범죄피해 경험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연구는 가구범죄피해 대비 개인범죄피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가구 대비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경험 사례수가 더 많고 다양하여 구체적인 범죄피해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가구범죄피해 등 여러 범죄피해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조사연도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분석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범죄피해율의 변화를 장기간 시계열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박철현(2012) 연구에서는 7개 조사연도 자료의 범죄피해율을, 김두열·전수민(2014)의 연구에서는 8개 조사연도 자료의 범죄피해 추이, 범죄피해 신고율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범죄피해 사례수가 적어 분석사례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강지현, 2015; 박철현·구본희, 2018 등).

또한 범죄피해 이후 경찰신고를 하였는지, 경찰신고 결정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 [표 10-1-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구분1	구분2	구분3	저자(년도)
① 범죄 피해 경험 에 관한 연구	범죄 피해 경험	단년도 자료 분석	김성언(2010), 김준호·박현수·박성훈(2010), 김흥식·곽대훈(2016), 노성호(2010), 박성훈(2011; 2011 학위논문), 박성훈·김준호(2012), 안준영·최응렬(2018), 이유나·정대관(2014), 장안식(2014), 이재경(2017 학위논문), 황지태(2010), Choi, J.(2016), Choi, J., Yim, H., & Lee, D. R. (2019), Moon, B., Morash, M., Jeong, S., & Yoon, H. (2016), Moon, J.(2002), Paek, S., & Nalla, M. K. (2015), Park, S. (2015), Park, S., Tark, J., & Cho, Y. (2016)
		여러 조사연도 자료의 통합 분석	강지현(2016; 2017; 2018), 고가영(2018 학위논문), 김두열·전수민(2014), 김성언(2018), 김흥식·송영일·곽대훈(2017), 박성훈·이창진(2014), 박철현(2012), 최인섭·박순진·기광도(2002), 황지태(2009; 2009 학위논문)
	이후 경찰 신고	-	강지현(2015), 김두열·전수민(2014), 박성훈(2017), 박철현·구본희(2018), 서한별(2019 학위논문), 송윤아(2014), 최인섭·박순진·기광도(2002), 탁종연(2010a; 2010b).

다음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범죄피해 분야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은 실제 범죄피해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만큼 전국 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된 범죄피해 두려움 역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절반 이상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해당 문항이 기초조사표에서 조사되어 조사에 응한 모든 응답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분석 사례수가 충분하여 다양한 요인과 연결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유형별로 구분되는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을 여러 요인과 연결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외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본인과는 구분되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이타적 두려움(양승돈·오봉욱, 2016)이나 대리적 범죄피해 두려움(조상현, 2019)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녀의 범죄 두려움과 회피행동에 부모의 이타적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현수, 2018)도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전면 개편되기 이전에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가 드물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각 연도 조사 자료별로 최소 10개 이상의 활용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10-1-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구분	활용자료의 조사 시기	저자(연도)
② 범죄 피해 두려움 연구	2009년 개편 이전	김지선(2004), 이명우·황진아·박한호(2014), 황의갑(2009)
	2009년 조사 활용	민휘경(2013), 박순진(2012), 박윤환·장현석(2013), 박정선(2011), 박정선·이성식(2010), 이재영·유영재(2014), 장안식(2012 학위논문; 2012; 2015a)
	2011년 조사 활용	강상훈(2015 학위논문), 김성연(2013), 김소희(2016 학위논문), 김연수(2012), 박윤환·장현석(2013), 심희섭·김혜진(2017), 심희섭·최낙범(2018), 오봉욱(2016a), 이우나(2014), 장민경·심희섭(2018), 장안식·정혜원·박철현(2011), 최재용·임하늘·이윤호(2015), 최재용·한보영·이윤호(2014), 황의갑(2015)
	2013년 조사 활용	강지현(2019), 김연수(2016), 김지훈·이명우·Dahle, T.·박한호(2016), 송영남·이승우(2016a; 2016b), 박순진(2017), 박희정(2015 학위논문), 양승돈·오봉욱(2016), 오봉욱(2016b 학위논문), 오봉욱·조상윤(2016), 장안식(2015b)
	2015년 이후 조사 활용	강지현(2019), 김다은·박종승(2017), 김다은·이창한(2017), 김혜림(2018 학위논문), 박현수(2018), 송일호·곽대경(2018), 오봉욱(2017; 2018), 오봉욱·양승돈(2017), 오봉욱·최종복(2017), 장민경(2018 학위논문), 조상현·박외병(2017), 조상현(2019)

이외에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2002년도 ‘피해자학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해 개괄적 고찰(기광도, 2002), 표집에 대한 재검토(박순진, 2002),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박철현, 2002), 조사표 문항구성에 대한 검토(이순래, 2002) 등의 방법론 검토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박순진, 2003; 황지태, 2009; 2010 등),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강지현, 2016; Jang, H., & Hwang, E., 2014; Kwak, H., & McNeeley, S., 2017 등), 범죄발생추세 인식에 관한 연구(박순진, 2012),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연구(조영오, 2019) 등 전국범죄조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의견 검토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이 제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해보았다. 실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조사자료 활용 시 나타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필요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된 사항 중 대부분은 정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의 추가, 범죄피해 사례수의 부족, 패널 구축을 통한 종단분석 등이었고, 일부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 등의 사항이었다.

첫째,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존 이론의 검증이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개별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변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관심과 태도(박순진, 2012b),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등의 사회적 변인(장안식, 2012), 위험인식 측정을 위한 추가 문항(김연수, 2016: 85), 범죄피해인식 변인(심희섭·김혜진, 2017: 86) 등을 포함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연구의 한계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되는 장애

유무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 발생시기 등”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다(오봉옥, 2016: 127).

또한 범죄피해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피해이론의 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일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장안식, 2014: 220)의 필요성이 얘기되었고, 범죄피해 신고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법적 냉소주의를 나타내는 경찰신고도는 비교적 적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박철현·구본희, 2018: 134)도 논의되었다.

다만 이처럼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교한 분석을 위한 여러 변인의 부족이 얘기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을 서술하였고, 대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범죄피해의 분석에 있어 범죄피해의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인한 한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즉, 세부 범죄유형별로 심층분석하지 못하고 전체 범죄피해를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나,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와 강건성(robustness)에 한계(박철현·구본희, 2018)가 있는 등의 어려움이 얘기되었다. 예를 들어, 폭력 피해에 있어 성차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성언, 2010), 단일범죄피해자와 비교하여 다중범죄피해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노성호, 2010), 폭력과 절도 사건에서의 경찰신고에 관한 연구에서(강지현, 2015) 등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시점에 조사된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여, 범죄피해 사례수가 낮은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피해를 분석하는 연구(강지현, 2015; 박철현·구본희, 2018 등)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조사되는 범죄피해 사례수가 적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피해에 있어 시간적 순서와 영향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을 위해, 패널형태의 범죄피해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시간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송영남·이승우, 2016; 심희섭·김혜진, 2017: 86; 송일호·곽대경, 2018: 198 등), 그리고 “사람들이 왜 범죄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가능한 분석을 위해서(장안식, 2014: 220 등) 등의 사유로 패널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 이후 경찰신고 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경우, "피해신고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조사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분석의 내생성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었다(송윤아, 2014: 438-439).

즉,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현재의 전국범죄피해 조사가 횡단면 조사로 진행되어 범죄피해 이전과 이후의 변화 등 시간적 요인을 고려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넷째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다. 현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만14세 이상 인구의 범죄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나, 특정 집단의 범죄피해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특정 집단-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초점을 둔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은 각 인구집단이 지닌 취약성을 더 상세히 측정하고 그에 기인한 고유한 범죄피해를 심층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의 고유한 범죄피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인과는 상이한 조사문항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정기적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오봉옥, 2017: 136). 정기조사는 아니지만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이미 최근 2018년 비정례조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바 있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별도로 진행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송일호·곽대경, 2018).

다섯째,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 필요사항 이외에도,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범죄피해 사례수 부족은 '범죄' 혹은 '범죄피해'와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rare event)이기 때문에 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하여도 그에 비례하여 조사되는 범죄피해 사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체 범죄피해를 분석하더라도 "피해 경험자 수의 빈도가 전체 응답자 수 대비 적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최재용·한보영·이윤호, 2014: 153-154). 또한 “한 두 건만 나타나더라도 실태를 과대 반영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연구에 있어 근본적 한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김두얼·전수민, 2014).

이외에도 범죄피해조사는 성매매, 도박, 마약범죄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을 조사할 수 없고, 조직적 범죄 역시 조사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응답자의 범죄피해 보고에 있어 발생 가능한 여러 오류 등이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황지태, 2010: 85).

이와 같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고 몇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와 그에 따른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부분 역시 과거 개편 당시에도 언급되었던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제약사항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2절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아래에서는 금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수행 과정과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연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획 및 설계 부문에서 고려된 사항을 살펴보자. 다년간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은 조사대상의 연령기준(만14세 이상)과 가구원 전원 대상 조사라는 점, 조사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범죄피해유형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습피해경험 조사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으며(최수형, 2017: 305-309), 이러한 논의사항은 금년 조사에서도 모두 유효하였으며 향후 개선검토가 필요하다.

이중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의 하한 연령은 과거 전면개편시 “조사대상시점

에 가까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모든 가구 및 만14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면서, 조사내용의 이해도와 조사윤리를 고려하고 중학교2학년의 범죄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만14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유지되고 있다(김은경 외, 2009: 74).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지속하면서 가구 내 만14세 이상 청소년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청소년 집단의 범죄피해 특성이 성인과 상이하기에 동일한 조사표로 설문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구방문조사로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집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제5차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이후, 비정례조사로서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2학년인 만11세-만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외에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과거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바 있다(전영실 외, 2018: 13, 112).

그렇기에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 하한연령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중복범죄피해와는 구분되는 상습범죄피해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상습범죄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피해자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을 두고 있다(김은경 외, 2013: 52).

다만 올해 조사에서도 제5차 조사에서와 유사하게 상습범죄피해의 공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는데, 가구방문조사를 통한 상습범죄피해 조사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범죄피해에 있어 상습범죄피해가 지니는 의의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이의 측정과 활용 등 개선논의가 필요할 것이다(최수형 외, 2017: 309).

또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조사표에서는 특히 범죄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선별문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적 활용가능성과 응답자의 조사부담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기초조사표의 질문내용의 불명확성(문항 19번의 집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가구구성원 중 영업사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혼란스러워 하였음), 문항별 응답기준시점이 상이하여 응답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원 확인사항 중 거주지 환경 관련 문항은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나 지금까지 조사원이 응답하였기에 응답주체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향후 변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조사에서는 조사의 범죄피해 범위를 확장하고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특별주제를 조사하였고, 올해 제6차 조사에서는 보이스포싱 경험을 특별주제로 조사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체계와 방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에 향후에도 다양한 특별주제를 개발·조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문항 개발을 통하여 일부 주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조사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5차 조사에서는 범죄발생 장소(문항5번~6번), 피해물품(문항 19-2번, 문항 20번), 범죄피해 수법(문항 9번-13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다(최수형, 2017: 311). 금년도 조사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사과정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원의 문의가 있었으며, 이외 피해물품에 대한 중복 질문(문항 10번과 문항 19번, 문항19-2번과 문항19-5번), 병원치료 여부에 대한 중복 질문(문항 14번, 문항 14-1번)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다. 사건조사표의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하였으나 다음번 조사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조사 자료의 수집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보자. 조사 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가구방문을 통한 대면설문조사에서 응답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거나 응답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사원을 대면한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솔직히 보고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사건조사표 문항의 로직이 복잡하다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종이설문 이외 다른 조사도구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도구 효과를 분석한 최수형·탁종연(2015: 192-19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시 범죄유형별로 피해경험보고율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설문에 응한 이유 중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기에, 현재의 종이설문방식에서 온라인설문방식이나 태블릿설문방식으로의

전환, 혹은 여러 조사도구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 등은 여러 실험적 검토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죄피해와 같이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조사방식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지는 모드효과(mode effect)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응답부담경감,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등록센서스제도로 변경하면서 온라인설문방식을 도입하였고, 2020년부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조사방식, 면접조사에 태블릿, 전화, 종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자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서동진, 2019).<sup>77)</sup>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조사도구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에, 전국범죄피해조사 역시 이를 활용하여 조사방식의 적극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도구의 변경을 고려하는데 있어 조사과정자료(파라데이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라는 조사의 특성상, 설문조사 그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범죄피해경험이 있어서 혹은 범죄피해에 취약한 응답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사대상의 조사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 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과정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앞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빈번히 언급된 사항 중 하나가 종단자료 구성을 위한 패널조사의 필요성이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가 현재의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 방식이 아닌, 미국의 범죄피해조사와 유사한 패널(panel)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다. 패널조사로 진행되면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면접원에 대한 신뢰와 라포가 형성되어 범죄피해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널조사는 응답자 개개인을 제외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방문하여 조사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조사시기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 응답자와 접촉하여 조사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패널조사의 운영예산은 일반 횡단면

77) 서동진.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IT기반 전자조사(Paperless Census) 도입.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통계청. 104-126.

조사의 두세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도 그 유지비용이 계속 투입가능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조사패널을 기획하고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계속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구조건은 현재 격년으로 진행되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원으로서는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조사가 아닌 조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구축된 조사자료와의 시계열적 단절, 전면적 개편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여러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공개 확대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생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고, 조사자료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학술적·정책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자료의 공개범위는 최대한 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공표수준은 '전국'이며, 조사내용이 범죄피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응답자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식별 혹은 추정할 수 없도록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자료의 공개범위는 개인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응답을 회피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sup>78)</sup>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근에는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익명화(CVIA,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nonymization) 변환 절차”를 개인의 식

78) 예를 들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이스피싱 문항 검토를 위한 인지면접조사 과정에서도, 종이 설문방식은 추후 종이를 파쇄하면 삭제될 수 있지만, 온라인 혹은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응답한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응답자도 있었다.

별가능성을 제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이원석, 2019), 차등정보보호와 같이 자료의 생성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방안(Dwork, 2006; 이용희, 2019 재 인용)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범죄피해조사도 조사자료 생성 및 제공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사자료의 제공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의 내용 역시 자료이용자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통계 중심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는 조사된 범죄피해율과 범죄피해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이후,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추가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범죄발생 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등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있어 학술적·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개별 문항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주요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3차 전국범죄피해조사 이후 조사체계와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조사결과를 문항을 중심으로 시계열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변화사항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금년 보고서에는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다음번 조사 및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등에 있어 조사문항의 연도별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작업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다양한 사전 실험적 검토과정을 진행하여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수행되는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정례조사를 실시하면서 일정시점에 조사를 개편한 이후에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범죄피해율과 피해향상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최수형, 2015: 12).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법통계국의 주도 아래 범죄(피해)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몇 번의 개편작업으로 인해 상호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과거의 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 NCS)와 현재의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의 1973년부터 2014년

동안의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Moore et. al., 2019). 해당 작업은 과거의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작업은 사전적으로 과거 자료를 포함한 시계열적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국내문헌

- 김성근·윤건·정소윤·오세영·김상현. (2018). 국가통계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노성훈·황의갑.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최영신.(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조정희. (1990). 범죄피해 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2).
-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동진.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IT기반 전자조사(Paperless Census) 도입.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통계청. 104-126.
- 이용희. (2019). 통계적 비밀보호 방법과 국가통계기관의 역할. 제9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통계개발원. URL: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spn/1/3/index.board](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spn/1/3/index.board), 최종접속일: 2019.11.11.
- 이원석. (2019). 통계 목적 익명처리 및 익명결합. 제9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통계개발원. URL: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spn/1/3/index.board](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spn/1/3/index.board), 최종접속일: 2019.11.11.
- 장준오. (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유진·노성훈.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 (199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순진. (199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김지영·황지태·박희정. (201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조영오.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탁종연.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IV)-범죄피해조사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2. 국외문헌

- Dwork, C. (2006). Differential privacy. In 33rd International Colloquium on Automata, Languages and Programming, Part II (ICALP 2006), Springer, Venice, Italy, 1-12.
- Moore, A., Of, R. T. I., Berzofsky, M., & Banks, D. (2019).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Historical Trends Project, 1963-2014. RTI International.
- Scheaffer, Richard L., Mendenhall, William, Ott, R. Lyman. (2006). Elementary Survey Sampling, Thomson Learning.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 역, (2006).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교우사)
- Shook-Sa, Bonnie., Couzens, G. Lance, & Berzofsky, Marcus. (2015). User's Guide to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Direct Variance Estim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Justice.

## 3. 기타자료

- 경찰청,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09년 12월 30일 개정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32&nttId=9644&menuNo=200629#>, 2019년 11월 1일 최종 접속).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9년 8월 29일자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115&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115&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9년 10월 4일 최종 접속).

- 통계청. (2014).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지침서. URL:[http://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q\\_menu=5&q\\_sub=5](http://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q_menu=5&q_sub=5). 최종접속일:2019.11.11.
-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URL:<https://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 최종접속일:2019.11.11.

#### 4.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

##### 1) 국내문헌

###### (1) 국내학술지

- 강지현. (2015).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형사정책연구*, 26(2), 241-265.
- 강지현. (2016b).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8(5), 31-58.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 강지현. (2018). 개인범죄 반복피해의 영향요인과 피해후유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 3-32.
- 강지현. (2019).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2-54.
- 기광도. (2017). 범죄회피 및 방어행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25(2), 61-87.
- 김다운·박종승. (2017).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시큐리티연구*, 50, 339-366.
- 김다운·이창한. (2017). 여성 가구 형태별 범죄 두려움에 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3. (2), 5-32.
- 김두일·전수민. (2014). 한국의 범죄발생현황 분석. *경제발전연구*, 20(1), 25-72.
- 김성연. (2010a).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3), 103-134.
- 김성연. (2013).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 24(1), 393-426.

- 김성언. (2018). 범죄 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1), 55-80.
- 김연수. (2012). 전북지역 노인의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과학논총, 27(2), 57-85.
- 김연수. (2016).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1), 63-91.
- 김준호·박성훈·박현수.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 김지선. (2004).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12(1), 25-58.
- 김지훈·이명우, Thorvald Dahle, 박한호. (2016). 다층모형분석을 적용한 범죄 두려움의 성별에 따른 예측 변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4), 93-118.
- 김홍식·곽대훈. (2016).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연구. 과학수사학회지, 10(2), 139-145.
- 김홍식·송영일, 곽대훈. (2017). 일상생활양식의 변화와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거시적 접근. 한국범죄학, 11(2), 67-88.
- 노성호. (2010a).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형사정책연구, 21(3), 77-102.
- 민휘경. (2013). 사회통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연구, 3(2), 7-34.
- 박성훈. (2011a).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7-357.
- 박성훈. (2017).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과 범죄피해신고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19(4), 49-78.
- 박성훈·김준호. (2012).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259-293.
- 박성훈·이창진. (2014). 사회변동과 여성의 범죄피해율에 대한 이론적 연구, 1993-2005. 사회과학연구, 27(1), 127-419.
- 박순진. (2012a).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 233-265.
- 박순진. (2012b). 여성의 연령별 범죄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0(2), 187-209.
- 박순진. (2017). 범죄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12(2), 107-135.

- 박윤환·장현석. (2013). 지역 수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공식범죄 통계, 무질서, 집합적 효율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6), 59-88.
- 박정선. (2011).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75-96.
- 박정선·이성식. (2010a).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박철현. (2012b). KIC 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수정의 효과. 범죄와 비행, 3, 5-25.
- 박철현·구본희. (2018).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 Black VS. Feminist. 한국범죄학, 12(2), 121-137.
- 박현수. (2018). 부모의 이타적 두려움이 자녀의 범죄 두려움과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13(3), 139-167.
- 송영남·이승우. (2016a). 범죄두려움 설명모형의 영향력 검증. 교정복지연구, 43, 67-97.
- 송영남·이승우. (2016b).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한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 검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8, 177-206.
- 송윤아. (2014). 지역사회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5(4), 1-30.
- 송일호·곽대경. (2018). 노인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취약성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5), 181-204.
- 심희섭·김혜진. (2017). 자신 및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1), 63-94.
- 심희섭·최낙범. (2018). CCTV설치인식과 성별이 재산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7), 697-707.
- 안준영·최응렬. (2018). 구조적 요인과 선택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테러학회보, 11(1)장애인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77-97.
- 양승돈·오봉욱. (2016). 범죄피해에 대한 이타적 두려움: 배우자피해 두려움과 자녀피해 두려움의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9(3), 52-74.
- 오봉욱. (2016a). 장애인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2), 107-132.
- 오봉욱. (2017). 십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방안 연구.

- 교정복지연구, 50, 119-141.
- 오봉옥. (20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타적 범죄피해 두려움 비교 연구. 인문사회21, 9(5), 251-262.
- 오봉옥. (2019).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영향 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0(3), 1709-1719.
- 오봉옥·양승돈. (2017). 장애인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재산피해, 폭력피해, 성폭력피해 범죄두려움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10(1), 123-144.
- 오봉옥·조상윤. (2016). 치안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모색: 다층모형을 활용한 개인과 지역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6, 185-208.
- 오봉옥·최종복. (2017). 지역사회 통합과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7, 47-69.
- 이명우·황진아·박한호. (2014).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무질서 감소의 매개효과 측정. 한국경찰학회보, 16(3), 73-102.
- 이상훈·김순석. (2017).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193-222.
- 이순래·박철현. (2016). 범죄피해조사의 수정과 발전. 공공정책연구, 32(2), 155-174.
- 이유나. (201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주거침입 피해 및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셉테드학회지, 5(2), 93-115.
- 이유나·정대관. (2014). 주거침입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큐리티연구, 38, 137-161.
- 이재영·유영재. (2014).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70-202.
- 장민경·심희섭. (2018). 여성의 범죄두려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0), 703-712.
- 장안식. (2012b). 범죄피해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20(2), 87-119.
- 장안식. (2014). 단발성 범죄피해와 중복적 범죄피해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2(2), 201-224.
- 장안식. (2015a).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 분석. 피해자학연구, 23(2), 27-61.

- 장안식. (2015c). 지역의 불평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3), 37-68.
- 장안식·정혜원·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범죄 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22(3), 291-326.
- 조상현. (2019). 대리적 범죄피해두려움의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8(2), 251-262.
- 조상현·박외병. (2017).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관한 설명모델의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4), 209-244.
- 조영오. (2019). 자기통제와 기회요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33(2), 409-440.
- 최재용·이윤호·임하늘. (2015). 미디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경찰학연구, 15(3), 175-204.
- 최재용·한보영·이윤호. (2014). 연구논문 :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Mean-World View와 공명가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3), 133-162.
- 탁장한. (2016b).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5-30.
- 탁종연. (2010a).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3), 53-75.
- 황의갑. (2009). 도시지역과 읍, 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형사정책, 21(2), 295-323.
- 황의갑. (2015). 지역사회의 거시환경, 무질서, 범죄피해, 사회통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집합효율성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4(1), 271-294.
- 황지태. (2009).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279-303.
- 황지태. (2010a).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압수추정. 형사정책연구, 21(3), 7-51.

## (2) 학위논문

- 강상훈. (2015). 청소년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 일반 성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고가영. (2018). 1인 가구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보리. (2018).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소희. (2016).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혜림. (2018). 도시쇠퇴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성훈. (2011b).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진희. (201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희정. (2015).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한국인의 잠재 층.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한별. (2019).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오봉욱. (2016b). 취약집단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재경. (2017). 기회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장민경. (2018).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성폭력 그림자 가설의 검증: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장안식. (2012a).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맥락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탁장한. (2016a).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지태. (2010c).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3) 학술대회 자료

- James P. Lynch, Ph. D.. (2012).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개정과 그 효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3-78. 12월 17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강지현. (2015b).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83-99. 4월 24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 강지현. (2016c).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에 대한 연구”,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15-36. 12월 9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
- 고가영·이창배. (2017). “1인 가구 범죄피해 영향요인 연구”,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42-42. 12월 7일, 서울: 충신대학교.
- 곽대훈. (2016). “일상생활양식의 변화와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거시적 접근”,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11-12. 12월 9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
- 곽대훈·박지혜. (2015).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9-23. 4월 24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 구본희·박철현. (2017). “범죄피해의 신고결정 요인”,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41-41. 12월 7일, 서울: 충신대학교.
- 구본희·박철현. (2018). “성에 다른 범죄의 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42-42.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김성연. (2010b).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47-179.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김성연. (2012).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99-142. 12월 17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김성연. (2016). “범죄피해, 두려움,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 범죄 피해와 두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39-86. 12월 9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
- 김연수. (2015).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의 관계에 관한 위험해석모델의 재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59-81. 4월 24일,

-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 김연수. (2018). “심리적 거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석수준이론의 적용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49-73.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김은경.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개편 원칙과 특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7-34.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83-232.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김지선·주익현. (2015).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5-58. 4월 24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 노성호. (2010b).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17-145.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박민영·심희섭. (2017). “CPTED가 재산범죄두려움과 폭력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38-38. 12월 7일, 서울: 총신대학교.
- 박정선·이성식. (2010b).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33-260.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박철현. (2012a). “개정 범죄피해조사 양식은 얼마나 많은 범죄피해를 발굴했는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79-98. 12월 17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박철현. (2017). “최근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범죄피해율의 성차”,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29-34. 12월 7일, 서울: 총신대학교.
- 서한별·황의갑. (2018).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44-44.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손다래·박철현. (2018). “집합효율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43-43.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안재경·최이문. (2018).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39-39.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오도경·박철현. (2017). “성폭행의 그림자와 연령별 범죄의 두려움”,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40-40. 12월 7일, 서울: 충신대학교.
- 이완희. (2018). “지역사회의 집합효능감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5-15.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장민경·심희섭. (2017). “여성의 범죄 두려움: 성폭력 그림자 가설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37-37. 12월 7일, 서울: 충신대학교.
- 장안식. (2012c). “지역 이질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2012 후기 사회학대회, 45-63. 12월 21일, 서울: 경희대학교.
- 장안식. (2015b).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01-128.4월 24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 장안식. (2018). “한국사회의 불안: 범죄두려움의 사회적 맥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75-115.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장안식·정혜원·김준호. (2010).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차이”,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381-394. 12월 17일,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 정혜원·김준호·장안식. (2012). “성별을 고려한 범죄두려움의 차별적 효과: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63-181. 12월 17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최수형·강지현. (2018).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17-36. 12월 19일, 서울: 엘타워 루비홀.
- 탁종연. (2010b).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93-114.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홍명기. (2016). “사회적 취약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124-149. 12월 9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
- 홍창민. (2008).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계층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925-959. 12월 19일, 서울: 동국대학교.

- 황의갑. (2012). “수도권 읍면동별 지역사회특성이 범죄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전국범죄 피해조사 학술대회, 143-160. 12월 17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황지태. (2010b).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37-92. 8월 26일,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4) 연구보고서

- 강지현. (2016a). 『범죄유형별 반복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피해 후유증에 관한 연구』, NRF KRM.
- 최인섭·박순진·기광도. (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2-29.
- 박경래·김수동·최성락·이종한. (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18-01.

## 2) 국외문헌

- Choi, J. (2016). Examining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1993-2010: A comparative application of ecological theories of crime. Doctoral Degre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 Choi, J., Yim, H., & Lee, D. R. (2019). An examination of the shadow of sexual assault hypothesis among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1-20.
- Jang, H., & Hwang, E. (2014).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people: An expressive model versus an instrument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2(4), 306-323.
- Kwak, H., & McNeeley, S. (2017).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olicy*, 29(5), 599-612.
- Moon, B., Morash, M., Jeong, S., & Yoon, H. (2016). Gender differences in the

- routine activities associated with risks for larceny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0(11), 1327-1343.
- Moon, J. (2002). Victimization trend in Korea: A test of routine activity theory.  
Master's Degree.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State.
- Paek, S., & Nalla, M. K.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iving phishing  
attempt and identity theft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3(4), 626-642.
- Park, S. (2015). A study of over-dispersed household victimizations in South Korea: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analysis of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0(1), 63-78.
- Park, S., Tark, J., & Cho, Y. (2016). Victimization immunity and lifestyle: A  
comparative study of over-dispersed burglary victimizations in South  
Korea and U.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5, 44-58.



##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Kim, Min Young · Han, Min Kyung · Park, Hee Jung

### 1. Overview of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 A. Purpose

-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s implemented every other yea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xtent and nature of both reported and unreported crime victimization cases, vulnerability factors contributing to criminal victimization, and public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rime.
  - Designated as 'Approved Statistics No. 403001' by Statistics Agency Dept.,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STAT)

#### B. Scope of Survey

-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is basically a replication of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6. However, special topic questions have changed (road rage and aggressive driving victimization > voice phishing experience), and several questions and answer choices have been revised for clarification.
- The Survey includes basic questionnaire (household representative /member) and incident-based questionnaire.
  - Basic questionnaire: household composition, neighbor and neighborhood, routine activities and personal safety measures, personal background (length of residency, education, household monthly income, etc.), screening questions

- for crime victimization in the last year (2018), and special topic (voice phishing)
- Incident-based questionnaire: (crime incidents in 2018) incidents time and date, location, and mode of crime, physical injury, victim reaction, property loss, psychological damage, offender profile, and report to police and case status, etc.

### C. Sampling design and Survey methods

- Target population: All households within the region under administrative p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the survey and members of the family over the age of 14
- Survey Population: All households and members of the family over the age of 14, within general enumeration districts (1) and apartment enumeration districts (A) of the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Stratification and Sampling
  - Stratified sampling (enumeration district): The first stratification divided the nation into 8 cities and 9 provinces. Sejong City and 9 provinces were further divided into townships (eup) and municipalities (myeon, dong). The last step selected a total of 610 enumeration districts from those townships and municipalities.
  - Systematic sampling (11 households from each enumeration district)
- Weighting: design weight, nonresponse adjusted weight, poststratification weight
- Data Collection: door-to-door survey (either face-to-face interview or self-administered)
- Survey cycle: two years (odd number)
- Survey period: 5.30.2019 - 07.21.2019
- Sample size: 13,136 participants over the age of 14 from 6,704 households

## D. Release

- Analysis results from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are available in various formats such as a report, micro-data, statistics database, and info-graphic.
- Re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ww.kic.re.kr](http://www.kic.re.kr) > publication > report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 Micro-data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tatistics Portal(CCJS): [www.crimestats.or.kr](http://www.crimestats.or.kr)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homepage: <https://kossda.snu.ac.kr>
  - Census Bureau MDIS: [mdis.kostat.go.kr](http://mdis.kostat.go.kr)
- Statistics database
  - Census Bureau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www.kosis.kr](http://www.kosis.kr)
  - Census Bureau National Indicator System K-indicator: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 Main Findings from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 A. Time series analysis of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trend

- **[Increase in crime victimization rate due to a rise in violent victimization]**  
 There were 1,653,877 victims from 1,675,662 incidents among 45,553,126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in 2018. These figures a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in 2016 as population-based victimization rate records 3.63% and incident-based victimization rate records 3.68%.

The increase from 2016 to 2018 is mostly due to the rise in violent crimes. There were 1,408,004 victims (3.09%) from 1,417,708 (3.11%) incidents of property crime in 2018, which are similar to the rates in previous years. By contrast, there were 245,873 victims (0.54%) from 257,954 incidents (0.57%) of violent crimes, which records the highest rates since 2014.

- **[Increase in sexual assault and bullying victimization]** Aside from assault, three

types of interpersonal crimes including robbery, sexual assault and bullying, recorded an increase in incident rate and victimization rate. It is speculated that the victims feel less intimidated than before to report the victimization to authority.

## B. Voice phishing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comparison to 2008

- **[Differential experiences of voice phishing]** It is estimated that 8,309,002 people, which accounts for 18.24% of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45,553,126), reported that they received a call, text, or messenger message suspicious of voice phishing in 2018. Compared to 2008 when 27,697,328 people, which accounted for 71.67% of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38,647,220), reported to have received probable voice phishing calls, the amount of exposure to voice phishing has significantly declined. However, still many people are receiving voice phishing calls and messages.

While the entire population was exposed to the risk of voice phishing in 2008, particular subgroups of people who are in their 40s and 50s, married, office workers, service and sales, and home maker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t or higher than \$3,000 tend to be more vulnerable to voice phishing.

- **[Development in voice phishing victimization]** Compared to 2008, 2018 witnessed a noticeable increase in “agency-impersonation”, where the offender fraudulently represents financial institution or government office. Cases involving misrepresentation of bot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or prosecutors’ office account for 65.13% of all voice phishing incidents experienced by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in 2018.

- **[Escalation in voice phishing victimization rate]** Advancement in voice phishing schemes that highlights targeting vulnerable population and utilizing high-tech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sults in an increase in victimization rate. Of those who were exposed to voice phishing, property loss occurred for 0.17% in 2008 and 0.21% in 2018.

### C. Violent crimes and victimization

- **[Diversification of loca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While residential area or adjacent streets account for a quarter of all violent victimization, parking lot accounted for as much as 17.16% in 2018. Growing number of reports of harassment is reflective of 14.7% of victimization at public buildings, offices, and manufacturing factories, which was 6.56% in 2016. Meanwhile, the proportion of residence as a loca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substantially declined.
- **[Absence of third party intervention during violent victimization]** In 2018, 32.4% of all victims reported a presence of a third party at the scene of violent crime, 44.92% of these resulted in any form of damage to the third party, while the rest resulted in no damage. The finding suggests that a third party does not necessarily intervene in violent alterc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
- **[Positive self-assessment of reaction at the time of victimization]** Of all victims of violent crimes in 2018, 41.57% reported to have tried to protect themselves, while 58.43% reported to have not. Whether active or passive, those who reacted to the offender reported that their reaction contributed to deterring further victimization or limiting the amount of damage.
- **[Aggravation of psychological damage from violent victimization]** In 2018, 77.03% of victims of violent crime experienced frustratio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66.72% experienced fear from shock or anxiety attack. Insomnia, nightmare, and auditory hallucination were experienced by 44.47%.

while 32.12% experienced loneliness or feelings of isolation. Also, a great number of victims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more than one of those psychological symptoms.

#### D. Property crimes and victimization

- **[Post-event acknowledgement of property loss]** A great deal of victims of property crime could not pinpoint when the incident took place. The sum of responses including “sometime during the day but cannot tell exactly what time”, “some time during the night but cannot tell exactly what time”, and “not sure whether it was during night time or daytime” accounted for 36.18% in 2012, 38.81% in 2014, 41.97% in 2016, and 51.5% in 2018.
- **[Decline in loss recovery from fraud and theft]** As much as 89.63% of fraud victims, which translates to between eight and nine out of 10 fraud victims, reported that they could not recover any of the monetary loss in 2018. Concerning property loss from theft, those who had no recovery of loss accounted for 84.52% in 2012, 89.9% in 2014, 90.66% in 2016, and 92.39% in 2018, which recorded the highest rate of all time. In the meantime, complete recovery of loss from theft was reported by 1.37% of theft victims in 2018, while 1.1% reported a partial recovery. Nevertheless, loss recovery from vandalism that is subject to a partial monetary recovery of loss through insurance coverage shows a different trend compared to the declining loss recovery rate pertaining to fraud and theft.
- **[Profile of stolen properties: high portability and resale value]** Bicycle and its part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stolen properties in 2018. Their portion of the stolen properties has recently been inclining, while the portion of cash, cashier’s check, and gift cards continue to decline.

## E. Reporting of victimization to police and case status

- **[Increase in reporting of violent victimization]** Of all victims of violent crime in 2018, 32.6%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which is the highest reporting rate since 2012. Specifically, 49.1% of robbery victims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 **[Varying reporting rates across victimization types]** While 32.6% of victims of violent crime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only 21.71% of victims of property crime reported to the police. As for the reason of no reporting, 54.28% of property crime victims responded that it was because “loss was not substantial”.
-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to varying victimization types]** Police responses to reports of crime in terms of initial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var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victimization. Police responded to the scene following all reports of violent crimes in 2018. However, police responded to the scene for only 52.91% of property crime reports.
- **[Varying lev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across victimization types]** Active response by police to reports of violent crime resulted in overall increas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he proportion of responses for dis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o property victimiz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2012. However, it remain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nly 2.8% of victims of violent crime were unsatisfied with police response.

## F. Factors of vulnerability to crime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community environment]** Those who reported that social disorganization was a serious problem appear to have a higher chance of being a victim of property/violent/break-in crime than others. Also, those who reported that physical disorder was at a serious level showed a higher

rate of experiencing property and violent victimization than others who reported otherwise. Assessment of regional police services is confirmed to be a vulnerability factor of property victimization. Specifically, those who reported that police services are ineffective had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property victimization than others who reported otherwise. However, social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ny types of criminal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appear to have little significance as a vulnerability factor of criminal victimization. Among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those who left the house empty more than others had more experience of violent victimization. And those who live in apartment were more likely than other types to experience residential break-in. No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 wa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property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property victimization, females as opposed to males, and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 or a higher degree appear to have a higher chance of property victimization. Among the victims of property crime, theft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in female (gender), single (compared to married or divorced/widowed). Fraud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for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 or a higher degree and less likely for those in their 30s or older. This is reflective of growing amount of online fraud victimization. The fraud victimization rate was relatively low for the elderly population who has less accessibility to online medium such as Internet and smartphone. However, this line of research calls for future analysis.

Also, similar to theft victimization, males than females, and singles than married or divorced/widowed peopl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violent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outine activities and self control]** Property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for those who tends to put on luxurious line of clothing and those with low level of self-control. Regarding violent victimization, those who use public transportation more than five days a week, who return home after 10 pm either one or seven days on a weekly basis, and who return home heavily drunk about two or three days on a weekly basi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t. However, a caution should be taken as there wer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ases of violent victimization.
- **[Year-by-year comparison of vulnerability factors]** First, year-by-year comparison shows a steady decline in the amount of vulnerability factor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Residents believe that both physical and social disorganization have consistently shown a downward trend (except for s small increase in social disorganization level from 2017 to 2018). They also believe that police capacity for crime control has increased, while neighbor relations in a community has slightly improved. This line of findings could be considered a positive trend that diminishes the vulnerability to crime victimization. Next, findings pertaining to the household level show that any given household takes four of the eight safety and protective measures predefined in the survey. Last, findings from the individual level could not detect any discernible trend in vulnerability factors.

## G.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and preventive measures

- **[Perception of crime]** Similar to the past studies, an anticipation for an increase of nation-wide crimes was stronger than that for an increase of neighborhood crimes. In particular, as much as 51.6%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believe the nation will se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indicating a growing concern for public safety.

- **[Fear of crime]** Fear of crime was analyzed for “agree” and “strongly agree” responses in each question. Regarding general fear, more people were “afraid of walking on neighborhood streets at night” (19.8%) than were “afraid to be home alone at night” (12.6%). People were more fearful of their spouses or children being victimized than themselves falling a victim of crime. In particular, as much as 45.5% of respondents were worried that their children could be victims of crime someday. Also, responses of “agree” and “strongly agree” on fear across varying types of crimes was in descending order of being frightful from residential break-in as the mos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theft, robbery, stalking, and vandalism as the least.
- **[Crime preventive measures]** Same as the findings from the 2017 study, more people took active measures of crime prevention (1.77) than passive measures (2.54).
- **[major findings from year-by-year comparison]** ① There was congruency in annual trends between national victimization rate and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Perception of a future increase in crime rate escalated from 2017 to 2019, which coincides with the trend in national victimization rate that was covered in Chapter 3. Specifically, overall victimization rate (property and violent) slightly increased from 2016 to 2018, which is similar to the trend in the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The findings of increase in victimization rate and public belief in such an increase could contribute to pessimist view of the nation’s future such that it warrants a discussion on policy implication. ② There was a contrast in trends between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and public fear of crime.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shows a decline from 2013 to 2015 and to 2017, and regressed back to the level of 2015 in 2019. However, fear of crime has steadily been in decline. Since the two sets of questions are based on respondents’ perception rather than past incidents, a further analysis is in order. ③ Both passive and active crime preventive measures did not present

a noticeable trend across years. Nevertheless, more measures are taken at night when the chance of victimization is higher, which results in more occasions of passive than active measures against crime.

### 3. Utilization of Korean Crime Victim Survey and suggestions for advancement

#### A. Studies using Korean Crime Victim Survey

- **[Data collection method]** Review studies using Korean Crime Victim Survey since 2000 (scope of review was limited to quantitative analysis, while including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ere were 78 journal articles, 3 research reports, 38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15 thesis/dissertation in Korea. In overseas, there were 7 journal articles and 2 thesis/dissertations.
- **[Popular topic areas]** Review of the outcome variables or topics across the publications reveal that studies were mostly about crime victimization (experience, reaction to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general, by crime type, and by type of victim). Others included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confidence in police, methodological discussion, and quality of life.
- **[Suggestions from the publications]** Most studies offered suggestions such as adding more questions for more details and panel design for temporal order of variables. There was a concern for deficiency in the number of victimization cases. Some other studies suggested for the need to expand the survey population and improving upon the limitations in the survey methodology.

## B. Suggestions for advancement in Korean Crime Victim Survey

- Regarding the survey design and structu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raise the minimum age of respondents from 14 and above, while systematically conducting children and youth victimization survey on a more regular basis. Also, there is a call for improvement on measuring repeated victimization, as was suggested for the 5th Korean Crime Victim Survey (disclosure standards were not satisfied this time again), and improvement on survey questions. Concerning data collection method, tablet-based survey should be considered as a supplemental to paper-based survey, which requires a thorough scrutiny over the data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panel study for a nation-wide victimization survey, and it would require a great deal of efforts in securing budget and personnel. Last, pertaining to the sharing and application of the survey data, there are conflicting paradigms at this time as there is heightened sensitivity for personal privacy whereas there is also a trend in data-driven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Therefore, a careful review and development of counterplan will be in order.

## [부록 1]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영문)



Approval No.  
403001

The Census Act Title 32.(Faithful Response Duty), Title 33.(Respondent Confidentiality)  
Per Title 33 of the Census Act responses to the survey are protected by law and shall not be used other purposes than research. Your faithful and truthful answer to the questionnaire would be most appreciated.

Respondent ID(For surveyor)

--	--	--	--	--	--

Questionnaire ID(For GC team)

--	--	--	--	--	--

2018

## National Public Safety Survey

### [Basic Questionnaire for Household Representative]

#### Introduction

Gallup a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conduct the National Public Safety Survey. Per Title XI of Crime Victim/Witness Protection Law, the survey is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of safety in their daily life and experienc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cluding both reported and unreported incidents) by individuals and households. Your answers will be utilized to develop baseline information for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policies.

Your cooperation with truthful answers would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Any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survey is strictly protected under Article 33 of the Statistics Act, and will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 To be completed by Gallup.

Survey region ID					
Address ID					
Household ID					
Household Member ID					
Sex	① Male		② Female		
Date of Birth	① Gregorian Calendar		② Lunar Calendar		
			Year		Month
Survey Method	① Surveyor interview		② Self-administered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s for Basic Questionnaire for Household Representative ONL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Number of household members over the age of 14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Number of Basic Questionnaire	Number of incident Questionnaire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p>※ Agreemen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p> <p>This agreement is a form offered by the surveyor according to the privac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collected and us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shall not be shared with any third party in any form.</p> <p>Please sign below if you have read and agree to the ter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p>			
<p>§ Gallup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is survey.</p> <p>§ Gallup is the principal agent of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is survey. The personal information sha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collection and research.</p> <p>§ The documents and data collected during the survey will be discarded by an entrusted vendor contracted with Gallup.</p>			
Collected Information	Collection Purpose	Retention of Records	
Name, Contact information	Personal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One Year	Signature
Respondent's name	Contact Information		Verified
	① Home      ② Mobile      ③ Work  (            ) - (            ) - (            )		

### How to fill out this questionnaire

- ◆ Mark your answer(s) with ,  or write down your answers when applicable.
- ◆ Upon completion,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f directed to a different question by an arrow mark,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H Household Composition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household members currently living at your house using the choices provided in the box below.

Household Member No.	Relationship to the respondent [Box 1]	Sex <input type="radio"/> M <input type="radio"/> F	Birth Date and Year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Marital Status  <input type="radio"/> Never married <input type="radio"/> Married (including cohabitant) <input type="radio"/> Separated by death / Divorced (including separated)	Occupation [Box 2]	Employment Type [Box 3]	Disability Welfare (Registration) Card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For Foreigner	To be filled by surveyor
								Country of birth	Noninterview Reason code
1	<input checked="" type="radio"/> Respondent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2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3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4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5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6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7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8			(Gregorian Calendar / Lunar Calendar)						

[Box 1] Relationship to the respondent (Household Representative)		[Box 2] occupation	[Box 3] Employment Type
<input type="radio"/> Self <input type="radio"/> Child(ren) <input type="radio"/> Parent <input type="radio"/>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and their spouse <input type="radio"/> Grandparent <input type="radio"/> (Respondent's or spouse's) sibling and their spouse <input type="radio"/> Other	<input type="radio"/> Spouse <input type="radio"/> Son/daughter-in-law <input type="radio"/> Parent-in-law <input type="radio"/> Other	<input type="radio"/> Management or Professional Career <input type="radio"/> Administrative Assistance <input type="radio"/> Service and sales representative <input type="radio"/> Agriculture/fishery/forestry <input type="radio"/> Technical, machine operation/assembly <input type="radio"/> Day Laborer <input type="radio"/> Career Military	<input type="radio"/> Wage earner <input type="radio"/> Self-employed <input type="radio"/> Unpaid family worker
		<input type="radio"/> Homemaker <input type="radio"/> Student <input type="radio"/> Unemployed / Others (including Public Service Personnel)	<input type="radio"/> Not applicable (homemaker, student, unemployed, etc.)

### H. Household Composition

- Household: One person or a group of two or more persons sharing residence
- Household Representative: A member of a household who has good understanding of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household
- Household Member: A member of the household currently sharing residence. Any family member who currently does not live with the household is not a household member for the purpose of this questionnaire.
-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Household Representative first, followed by the other members in the order of the numbers assigned above based on the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 Representative.

**I** Neighborhood Environment

**1**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r neighborhood, as of the end of 2018?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The streets were dirty and littered with trash.	①	②	③	④	⑤
2) There were a lot of blind spots	①	②	③	④	⑤
3) There were a number of abandoned cars or blighted properties.	①	②	③	④	⑤
4) A large number of people violated simple traffic laws (jay walking, illegal parking, etc.)	①	②	③	④	⑤
5) There were many indecent teenagers roaming around the neighborhood in groups.	①	②	③	④	⑤
6) People were frequently seen arguing loudly or fighting.	①	②	③	④	⑤

**2**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r neighbors, as of the end of 2018?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My neighbors knew each other well.	①	②	③	④	⑤
2) I frequently talked about things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my neighbors.	①	②	③	④	⑤
3) My neighbors were willing to help each other.	①	②	③	④	⑤
4) My neighbors actively participated in events and meetings in the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⑤
5) My neighbors would not hesitate to offer help if a neighborhood kid is being harassed by kids from out of town.	①	②	③	④	⑤
6) My neighbors would report a crime to the police if they witness one.	①	②	③	④	⑤
7) My neighbors would volunteer as neighborhood watchers if it is necessary to prevent crime.	①	②	③	④	⑤

**3**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the police service in your neighborhood, as of the end of 2018?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They do a good job of patrolling.	①	②	③	④	⑤
2) If I report a crime, they would respond immediately.	①	②	③	④	⑤
3) If I report a crime, they would successfully catch the perpetrator.	①	②	③	④	⑤

**4** How do you think the crime rate will change in the future?

Statements	Significantly decrease	Slightly decrease	No change	Slightly increase	Significantly increase
1) National crime rate	①	②	③	④	⑤
2) Local crime rate	①	②	③	④	⑤

## II

## Daily Activities and Crime Prevention

5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feel unsafe when I'm home alone at night.	①	②	③	④	⑤
2) I feel unsafe when I walk on the streets at night in my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⑤

6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 If you have no spouse (partner) or children, please check "Not Applicable.")

Statements	Not applicable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am afraid that I might fall victim to a crime someday.	X	①	②	③	④	⑤
2) I am afraid that my spouse (partner) may fall victim to a crime someday.	①	①	②	③	④	⑤
3) I am afraid that my child(ren) may fall victim to a crime someday.	①	①	②	③	④	⑤

7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steal my money or property without my knowledge.	①	②	③	④	⑤
2)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take my money or property by force.	①	②	③	④	⑤
3)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assault and hurt me.	①	②	③	④	⑤
4)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take my property by fraud	①	②	③	④	⑤
5)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sexually harass or assault me.	①	②	③	④	⑤
6)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vandalize my property.	①	②	③	④	⑤
7)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break into my house.	①	②	③	④	⑤
8) I am afraid that someone might stalk me or harass me by phone.	①	②	③	④	⑤

8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have more risk of being a victim of crime than others.	①	②	③	④	⑤
2) If someone tries to assault me, I can defend myself.	①	②	③	④	⑤
3) If I fall victim to a crime, the damage would be more severe and longer-lasting for me than others.	①	②	③	④	⑤



15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r daily life.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often put on fancy clothes or luxury accessories when I go out.	①	②	③	④	⑤
2) I tend to buy merchandise by top of the line brands.	①	②	③	④	⑤
3) I often watch news or TV shows about crime.	①	②	③	④	⑤
4) I enjoy conversations with others about criminal cases.	①	②	③	④	⑤
5) I sometimes take a risk just for the fun of it.	①	②	③	④	⑤
6) I tend to avoid projects that I know will be difficult.	①	②	③	④	⑤
7) I lose my temper pretty easily.	①	②	③	④	⑤
8) I feel better when I am on the move than when I am sitting and thinking.	①	②	③	④	⑤
9) I am more concerned with what will happen to me in the short run than in the long run.	①	②	③	④	⑤
10) I am not very sympathetic to others when they are having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16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 I make sure all the doors are securely locked before going to bed.	①	②	③	④	⑤
2) I carry self-defense devices (whistles, etc.) for my safety.	①	②	③	④	⑤
3) I never walk alone at night, because I don't feel safe.	①	②	③	④	⑤
4) I stay away from unlit areas for my safety	①	②	③	④	⑤
5) I would rather not go out at night even if I need to take care of something outside.	①	②	③	④	⑤
6) I never take a taxi alone at night.	①	②	③	④	⑤
7) I volunteer as a neighborhood watcher in my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⑤
8) When I need to leave the house for a few days, I asked my neighbor to take care of my daily deliveries (newspaper, milk, etc.).	①	②	③	④	⑤

**III Personal background**

**17**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current neighborhood?

\_\_\_\_\_ years \_\_\_\_\_ months

---

**18** Have you ever moved in the last five years (between January 2014 and now)?

① Yes → \_\_\_\_\_ times      ② No

---

**19** Does any of your household members run a business at your current residence?

① Yes → Go to **19-1**      ② No → Go to **20**

**19-1** Is there a sign board for the business at the house?

① Yes      ② No

---

**20** Do you own or rent your residence?

① Own      ② Deposit without monthly rent (Jeonse)      ③ Deposit with monthly rent  
 ④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⑤ Rent for free(including government official residence etc.)

---

**21**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regular education?  
 (\* Passing a qualification exams would be equivalent to earning the degree/diploma.)

① No formal education ② Elementary school ③ Middle school ④ High school ⑤ College (less than 4 years) ⑥ University (4 years or more) ⑦ Graduate school or above	} → Go to <b>21-1</b>	<p><b>21-1</b></p> ① Graduated ② Attending ③ Coursework completed ④ Leave of absence ⑤ Dropped out
---	-----------------------	--

---

**22** What is the pretax income of your household in 2018? (\* Include all earnings from employment, business, passive income, and retirement funds, etc.)

① Less than 1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② 1 million - less than 2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③ 2 million - less than 3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④ 3 million - less than 4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⑤ 4 million - less than 5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⑥ 5 million - less than 6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⑦ 6 million - less than 7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⑦ 7 million - less than 10 million Korean Won per month  
 ⑧ 10 million Korean Won or higher per month

## IV Criminal victimization

\* Questions from 23 to 30 are about criminal victimization experienced in 2018. To help you recollect your experience, each question provides various examples of the techniques and places of crime. Please read the question and the examples and tell us what you or anyone in your household experienced in 2018.

**23** In 2018, have you ever suffered from property laws by frauds and swindles?

- Exa  
mpl  
es**
- 1) The perpetrator stole money, impersonating a post office employee, a telephone company employee, a bank employee, a credit card company employee, a tax official, an investigator, or a family member
  - 2) The perpetrator lured me into a fake bank webpage and stole my personal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obile number, account number, password, security card number.
  - 3) The perpetrator(s) borrowed money without the ability or intent to repay.
  - 4) I paid for a merchandise at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but did not receive it.
  - 5)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sold me a counterfeit product as if it were genuine.
  - 6)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sold me a merchandise with a false promise of a free purchase, discount, or prize.
  - 7)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grossly misrepresented the quantity of the merchandise or the service.
  - 8) Other property loss incurred by fraud (deception)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4** In 2018, have you ever had your property stolen or taken unlawfully, or nearly stolen or taken unlawfully?

- Exa  
mpl  
es**
- 1) Cash, check, store voucher, etc.
  - 2) Credit card, debit card, public transportation pass
  - 3) Wallet, purse, backpack, etc.
  - 4) Personal valuables (mobile phone, laptop, MP3, clothing, book, gaming console, etc.)
  - 5) Bicycle or bicycle parts
  - 6) Vehicle (car or motor bike)
  - 7) Auto parts (navigation system, tires, wheel cap, car audio, satellite radio, etc.)
  - 8) TV, DVD player, VCR, audio, and other home appliance
  - 9) Jewelry, pottery, artwork, furniture
  - 10) Others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5**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s anyone broken into or attempted to break into your house cutting through the security grill or lock or opening a window or a door in 2018?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6**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s anyone deliberately damaged or vandalized any of your or a family member's property in 2018?

(※ Note: for example, someone damaged my car or an item placed outside a window or just outside my house)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7**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ve you ever been assaulted, threatened, or robbed, or nearly assaulted, threatened, or robbed in 2018?

Exa  
mpl  
es

- 1) My house or nearby
- 2) A relative's, friend's, neighbor's house or nearby
- 3) Workplace or school
- 4) Market, shopping mall, restaurant, bank, etc.
- 5) Gym, theater, amusement park, mountain trail (walking trail), etc.
- 6) Subway (station), bus (stop), terminal, or other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 7) Street, parking lot, inside a car, or other places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8**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ve you ever been assaulted, threatened, or almost assaulted or threatened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in 2018?  
(\* excluding threat by phone.)

Exa  
mpl  
es

- 1) Knife, firearm, or the like
- 2) Baseball bat, scissors, frying pan, stick
- 3) Rock or bottle
- 4) Grabbing, punching, strangulation
- 5) Sexual violence (sexual molestation, sexual assault, sexual abuse)
- 6) Threatening face-to-face
- 7) Other assault or threat

① Yes → \_\_\_\_\_ times      ② No

**29**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the damage inflicted by acquaintances.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ve you ever been robbed, assaulted, threatened, or harassed, or nearly robbed, assaulted, threatened, or harassed by any one of the following in 2018?

Exa  
mpl  
es

- 1) Colleague or person attending the same school
- 2) Friend, boyfriend/girlfriend, or neighbor
- 3) Family or relative
- 4) Other acquaintance

① Yes → \_\_\_\_\_ times      ② No

**30** It is not easy to talk about an unwanted sexual contact you experienced.  
Aside from the incidents you have mentioned already, have you ever or almost experienced unwanted sexual contact by any one of the following in 2018?

Exa  
mpl  
es

- 1) Stranger
- 2) Bare acquaintance
- 3) Close acquaintance

① Yes → \_\_\_\_\_ times      ② No

## V Voice Phishing Victimization

**31** In 2018, have you ever received a phone call, text message, or email message that was suspicious of voice phishing?

① Yes → Go to **31-1**

**31-1** What type of fraudulent solicitation was it? (Choose all that apply)

- ① A matter of financial business (e.g., bank) → go to **31-2**
- ② Full or part time employment opportunity
- ③ Law enforcement (police, district attorney, financial regulatory agency, etc.)
- ④ Impersonating family
- ⑤ Impersonating friend
- ⑥ Internal revenue services (tax return, etc.)
- ⑦ Impersonating a post office or express delivery service employee
- ⑧ Mobile or Internet service interruption (overdue charges, etc.)
- ⑨ Mobile payment
- ⑩ Report of traffic accident or abduction of family member
- ⑪ Membership due for social network associations
- ⑫ other (Please specify : \_\_\_\_\_ )

→ go to **32**

② Do not know because I hung up/delete the message immediately. → go to **31-4**

③ No → Survey completed

**31-2** What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 did it fraudulently represent? (Choose all that apply)

- ① Primar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
- ② Secondar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redit union, post office, savings bank, etc.
- ③ Credit card
- ④ Insurance company
- ⑤ Stock traders
- ⑥ Financial loan
- ⑦ Other (Please specify : \_\_\_\_\_ )

**31-3** What was the false pretenses for money or private information request?

(Choose all that apply)

- ① Transaction fees for transfer to low interest rate loan or government-sponsored loan program
- ② Transaction fee for increasing credit line
- ③ Late fee for credit card payment
- ④ Electronic transfer of money to another account for security concerns
- ⑤ Other (Please specify : \_\_\_\_\_ )

▶▶ go to **32**

**31-4** What made you to immediately hang up or delete the text message when you suspected a voice phishing? (Choose all that apply)

- ① Alert from fraud detection application or program
- ② Dubious caller number
- ③ Other (Please specify : \_\_\_\_\_ )

**32** In 2018, how often in a month have you received a call suspicious of voice phishing?

① Almost every day                      ② Once a week                      ③ Once a month  
④ Once in three month                      ⑤ Almost none

**33** In 2018, to where did the voice phishing call come? (Choose all that apply)

① Home                                      ② Work                                      ③ Mobile  
④ Messenger app (KakaoTalk, etc.)                      ⑤ Other (Please specify : \_\_\_\_\_)

**34** In 2018, have you ever wire transferred money or shared your private information, without any doubt about voice phishing?

① Yes, I wire transferred money. → How many times? Approximately \_\_\_\_\_ times  
② Yes, I shared my private information. → How many times? Approximately \_\_\_\_\_ times  
③ Never

**35** In 2018, was there any financial loss incurred from voice phishing scam?

① Yes → How much? Approximately \_\_\_\_\_ ten thousand won → Survey completed  
② No → go to **35-1**

**35-1** What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avoiding any financial loss? (Choose one)

① Coverage from the press (caution for voice phishing)  
② Alert from acquaintances  
③ Doing a fact check with the alleged financial institution  
④ Alert from a banker  
⑤ Could not withdraw money due to the system interference  
⑥ Public warning statement on the ATM machine  
⑦ Other (Please specify : \_\_\_\_\_)

**Reward(gift) receipt**

I hereby confirm a receipt of reward (gift) for survey participation at the amount of 5,000 won.

2019. . . . Name \_\_\_\_\_(Sign)

♣ Thank you for your valuable time ♣

## VI Surveyor Checklist

\* This page and the following pages should be filled out by the surveyor.

1. Checklist						
Category	1. Crime Victimization Experience			2. Number of independent victimization (respective cases are believed to be unconnected)	3. Number of repeated victimizations (victimized more than 5 times by similar methods, but the victim cannot tell them apart)	4. Number of Case-based Questionnaires (only one questionnaire required for repeated victimizations)
23 : fraud	Ⓞ Nb	① Y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4 : property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5 : invasion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6 : damage	Ⓞ Nb	① Y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7 : place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8 : method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29 : acquaintance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30 : sexual assault	Ⓞ N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times	_____ questionnaires
<b>Total number of victimizations</b>	① Yes (attempted included) _____ times			<b>Total number of incident-based questionnaires</b>		_____ questionnaires

### 1. How to determine the number of crimes experienced

- ① Write down the number of crimes experienced from the relevant questions.
- ② In cases more than one items are checked in the checklist, verify whether they refer to the same crime experienced. For example, if a burglar broke into a house through a window and stole an item, three items on the checklist may have been checked. However, **these items constitute a single incident/case**
- ③ Add all numbers of crimes experienced, and write down the total in the total number of crimes experienced.
- ④ Compare the total number of crimes and the number of crimes the respondent remembers. If there is a discrepancy, review the questionnaire.

### 2. How to determine repeated victimization

- × Victimization is categorized as "repeated victimization" if the respondent was victimized more than 4 times by similar methods, but the victim cannot tell them apart, in which case only a single case questionnaire should be filled out for the incident that caused the most serious damage.
- ① If the respondent reports more than 4 incidents under a single question, verify whether the crimes were **committed using similar methods**.
  - ② If so, verify whether the crimes **can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 ③ The victimization is deemed to be a repeated victimization if the incidents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number of repeated victimizations should be written in the "number of repeated victimizations" section.

### 3. How to determine the number of case questionnaires

- ① If the respondent experienced crimes spanning over more than one questions, verify again whether a single crime was reported more than once. If they are not redundant, count all of them in determining the number of case questionnaires.
- ② If the respondent reports more than 4 incidents under a single question, fill out a single case questionnaire if they constitute a repeated victimization, but fill out a case questionnaire for each crime if they are individualized incidents.
- ③ Sum up the numbers of case questionnaires for each question, and write the sum in the "total number of case questionnaires" section.
- ④ Have the respondent verify the total number, and then **prepare the corresponding number of case questionnaires**.

2. Security Level of Surveyed Household and the Nearby Area			
Security Level	Yes	No	Do not know
1) Special locks, such as double locks or dead bolt lock are installed on doors and windows.	①	②	③
2) Security grills were installed on windows and doors.	①	②	③
3) The house has a video phone, or the entrance door has a peephole.	①	②	③
4) The house has an access card system.	①	②	③
5) The house is equipped with an anti-theft alarm system.	①	②	③
6) The house is guarded by security staff.	①	②	③
7) CCTV's and security cameras are located within a 20m radius around the house.	①	②	③
8) Outdoor security lights are located within a 20m radius around the house.	①	②	③
9) There is an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within a 100m radius of the house.	①	②	③
10) There is a redevelopment/construction project site within a 100m radius of the house.	①	②	③
11) There is an industrial complex (area with a large number of factories) within a 100m radius of the house.	①	②	③
12) There is a large-sized traditional market within a 100m radius of the house.	①	②	③

3. Type of Residence	
<p>① High-rise apartment</p> <p>② Studio apartment</p>	<p>&lt;If your answer is high-rise apartment / studio apartment&gt;</p> <p>1) Apartment complex size: _____ buildings in total</p> <p>2) which floor is your apartment?: _____ floor; Total number of floors: _____</p> <p>3) Type: ① staircase type ② corridor type</p>
<p>③ Single-family</p> <p>④ Duplex / multi-household house</p> <p>⑤ Rooms in a non-residential building (commercial building, factory, inn/hotel)</p> <p>⑥ Other ( )</p>	<p>① Ground level</p> <p>② (Semi) basement level</p> <p>③ Rooftop level</p>

Post survey record					
Surveyor	Name				
	I D				
Date of Survey	2019 (_____)Month (_____)Date				
Time of Survey	① Morning      ② Afternoon From (_____) to (_____)				
Content comprehension	① High	② Medium	③ Low		
Survey participation	① High	② Medium	③ Low		

[부록 2]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영문)



Approval No.  
403001

The Census Act Title 32.(Faithful Response Duty), Title 33.(Respondent Confidentiality)  
Per Title 33 of the Census Act responses to the survey are protected by law and shall not be used other purposes than research. Your faithful and truthful answer to the questionnaire would be most appreciated.

Respondent ID(For surveyor)

--	--	--	--	--	--

Questionnaire ID(For OC team)

--	--	--	--	--	--

2018

# National Public Safety Survey

## [Incident-based Questionnaire]

### Introduction

Gallup a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conduct the National Public Safety Survey. Per Title XI of Crime Victim/Witness Protection Law, the survey is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of safety in their daily life and experienc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cluding both reported and unreported incidents) by individuals and households. Your answers will be utilized to develop baseline information for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policies.

Your cooperation with truthful answers would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 Any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survey is strictly protected under Article 33 of the Statistics Act, and will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 To be completed by Gallup.

Survey region ID					
Address ID					
Household ID					
Household Member ID					
Sex	① Male		② Female		
Date of Birth	① Gregorian Calendar		② Lunar Calend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Survey Method	① Surveyor interview		② Self-administered		
Incident-based Questionnaire ID	Number		<input type="text"/>	of Total	
			<input type="text"/>		

### How to fill out this questionnaire

- ◆ Mark your answer(s) with ○, √ or write down your answers when applicable.
- ◆ Upon completion,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f directed to a different question by an arrow mark(→, ►►), please answer the follow-up question(s).

※ Please provide the corresponding question number from the Checklist section of the basic survey questionnaire (page 13 for the household representative, or page 11 for a household member)

Basic Survey  
Questionnaire

- 1) (     )th of the (     ) cases as indicated in Question No. (     ) of the basic survey questionnaire
- 2) If the crime involves repeated victimizations, what is the total count? ⇒ (     )times
- ※ If the crime involves victimization by fraud under Question No. 23 in the basic survey questionnaire, please start from No. 18.

## I Time and Place

1 Did the incident take place while you were living at your current residence?

- ① While I was living in the current house      ② Before moving into the current house

2 When did the crime take place?

Year: 2018, Month: \_\_\_\_\_

3 Approximately what time of day did the crime take place?

- ① Early morning (Between 3:00 and 5:59)    ② Morning (Between 6:00 and 8:59)    ③ Morning (Between 9:00 and 11:59)
- ④ Around noon (Between 12:00 and 14:59) ⑤ Afternoon (Between 15:00 and 17:59)    ⑥ Evening (Between 18:00 and 20:59)
- ⑦ Night (Between 21:00 and 23:59)      ⑧ Late night (Between 00:00 and 02:59)    ⑨ Day, not sure of specific time
- ⑩ Night, not sure of specific time      ⑪ Do not know whether day or night

4 Where did the crime take place?

- ① Your current Si/Gun/Gu
- ② Another Si/Gun/Gu ⇒ \_\_\_\_\_ Si/Do \_\_\_\_\_ Si/Gun/Gu

Area Code for Surveyor

--	--	--	--	--	--

- ③ Do not know → Go to **8**

**5** What was the profile of the location of the incident?

5-1 Place	5-2 Specific location
① Home	① My house      ② Perpetrator's house      ③ Another person's house
② Residential area (including streets with resident-only parking)	① Around a high-rise apartment complex ② Near a duplex home or a townhouse area ③ Around a single-family subdivision
③ School	① Classroom      ② Corridor-stairway-rooftop      ③ Bathroom-locker room ④ Library, gym, auditorium, snack bar, or other facility inside the school ⑤ Outside Playground ⑥ Mountain adjacent to the school, around the school walls ⑦ Other (Specify: _____)
④ Parking lot	① Commercial facility (department store, shopping mall, etc.) parking lot ② Public building (government building, bank) parking lot ③ Apartment-townhouse complex parking lot ④ Roadside paid parking lot or parking garage ⑤ Other (Specify: _____)
⑤ Densely-populated commercial area	① Commercial building including department store, market, or store ② Restaurant, bar, or night club, etc.      ③ Hotel, inn or public bathhouse ④ Theater, performance hall ⑤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r ATM booth) ⑥ Medical facility      ⑦ Other (Specify: _____)
⑥ Government building, Public office, manufacturing factory	① Government office      ② company office      ③ Place of worship ④ Factory, warehouse, or construction site      ⑤ Other (Specify: _____)
⑦ Outdoors, street,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y	① Amusement park, park, mountain trail, walking trail, empty lot, sports facility (excluding facilities at school) ② On the street (excluding streets near a residential area) ③ On public transportation (bus, train, subway, taxi, airplane, ship, etc.) ④ Bus stop or train/subway station
⑧ Other	① Other (Specify: _____)

**5-3** Was the place your place of work (or business)?  
 ① Yes      ② No

**II Modus Operandi**

**6** Did the crime take place at your house?  
 (※ include when the perpetrator(s) almost entered your house )

① Yes → Go to **6-1**  
 ② No → Go to **8**

**6-1** Did the perpetrator(s) live at your house, or enter your house with your permission?  
 ① Yes → Go to **8**      ② No → Go to **7**

**7** Did the perpetrator(s) come into your house (e.g., rooms, porch, yard, etc.)?

- ① Yes → Go to **7-1**  
 ② Attempted, but could not enter → Go to **7-2**

**7-1** How did the perpetrator(s) enter?

- ① I opened the door for the perpetrator(s)  
 ② Through an open window or door (I forgot to lock the door or window)  
 ③ The perpetrator(s) opened the lock with a key  
 ④ The perpetrator(s) broke the lock or the door  
 ⑤ The perpetrator(s) broke the window or the security grill  
 ⑥ Do not know how the perpetrator(s) came in      ⑦ Other (Specify: )

**7-2** Were you or any household member present at the house when the crime took place?

- ① Yes → Go to **7-3**      ② No → Go to **10**

**7-3** If so, who?

- ① Myself  → Go to **8**  
 ② Myself and household member(s)  → Go to **8**  
 ③ Household member(s) without me  → Go to **10**

**8** Did the perpetrator carry or use a weapon of any kind?

- ① Yes → Go to **8-1**  
 ② No  → Go to **9**  
 ③ Do not know  → Go to **9**

**8-1** What was the weapon?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Firearm (including gas gun, and replica)  
 ② Knives, scissors, ice pick, axe, scythe, etc.  
 ③ Glass bottle, rock, bat/club, etc.      ④ Plier, screw driver, rope, etc.  
 ⑤ Anesthetic drug, toxin      ⑥ Conducted electrical weapon (e.g., Taser)  
 ⑦ Pepper Spray      ⑧ Other (Specify: )

**8-2** Did the perpetrator(s) prepare the weapon in advance?

- ① Yes, the weapon was brought to the scene by the perpetrator  
 ② No, the weapon was already at the scene before the incident  
 ③ Do not know

**9** Did the perpetrator(s) physically attack you, such as kicking, punching, using a weapon or sexual assault?

① Yes → Go to **12**

② Did not physically attack, but threatened to do so → Go to **11**

③ There was neither any physical attack nor a threat → Go to **10**

**10** What took place during the course of the incident? Please check all that apply.

① Took something without my knowledge or permission

② Attempted or threatened to steal something

③ Spoke highly offensive words or verbally harassed

④ Committed or attempted unwanted sexual contact

⑤ Entered the house without permission, or attempted to

⑥ Entered the car without permission, or attempted to

⑦ Vandalized a property

⑧ Attempted or threatened to vandalize a property

⑨ Repeatedly sent obscene or offensive texts, images, e-mails, etc.

⑩ Vehemently stalked or spied

⑪ Shared private information of mine on the internet, or spread a slanderous or false rumor

⑫ Other (Specify : \_\_\_\_\_ )

▶▶ Go to **19**

**11** How did the perpetrator(s) threaten you? Please check all that apply.

① Verbally threatened to rape me

② Verbally threatened to kill me

③ Verbally threatened to assault me (excluding killing or rape)

④ Verbally threatened to sexually assault me (excluding rape)

⑤ Forced unwanted sexual contact

⑥ Made unwanted sexual contact, but not by force

⑦ Threatened by showing a weapon such as a knife

⑧ Discharged a firearm at me only to miss

⑨ Attempted to physically attack me with a weapon such as a knife

⑩ Attempted to physically attack me with a weapon other than a knife or sharp object

⑪ Threw an object toward me only to miss

⑫ Followed me or cornered me

⑬ Attempted to slap, punch, scratch, kick, strangle, push, or grab me.

⑭ Other (Specify: \_\_\_\_\_ )

▶▶ Go to **13**

12 How did the perpetrator(s) physically attack you?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Raped me
- ② Attempted to rape me
- ③ Sexually assaulted me (other than rape or attempted rape)
- ④ Shot me
- ⑤ Stabbed me with a weapon such as a knife
- ⑥ Attempted to physically attack me with a weapon such as a knife
- ⑦ Physically attacked me with a weapon other than a knife or sharp object
- ⑧ Attempted to physically attack me with a weapon other than a knife or sharp object
- ⑨ Slapped, punched, scratched, kicked, strangled, pushed, or grabbed me.
- ⑩ Other (Specify: \_\_\_\_\_ )

12-1 Before attacking or sexually assaulting you, did the perpetrator(s) threaten to harm you?

- ① Yes
- ② No

### III

#### Physical Injury

13 What type of physical injury did you sustain due to the crim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No physical injury → Go to 15
- ② Rape
- ③ Attempted rape
- ④ Sexual assault or sexual misconduct other than rape or attempted rape
- ⑤ Injury inflicted with a knife (or a sharp object such as scissors or ice pick)
- ⑥ Injury inflicted with a firearm (including a replica)
- ⑦ Broken or cracked bone (fracture)
- ⑧ Damaged organ
- ⑨ Passed out (unconscious)
- ⑩ Bruise, black eyes, or scratch
- ⑪ Other (Specify: \_\_\_\_\_ )

14 Where did you have the injury examined or treated?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Private or public clinic
  - ② General hospital, emergency center
  - ③ Received no treatment
  - ④ Received treatment at the site
  - ⑤ Home
  - ⑥ Infirmary at the school or office
  - ⑦ Other (Specify: \_\_\_\_\_ )
- Go to 14-1
- Go to 14-3

**14-1** Did you receive treatment at a hospital?  
 ① Yes → Go to **14-2**                      ② No → Go to **14-3**

---

**14-2** If so, were you hospitalized?  
 ① Yes → \_\_\_\_\_ days                      ② No

---

**14-3** How much did the treatment cost you?  
 (\* including prescription drugs and physical therapy)  
 \_\_\_\_\_ thousand Korean Won (\* Example: if you paid 30,000 Korean Won, write "30")

---

**14-4** Due to the injury, did you have to take a leave from school or work, or close your business or stop household chores temporarily?  
 ① Yes → \_\_\_\_\_ days                      ② No  
 (\* A period of less than 24 hours counts as one day)

---

**14-5** Did you receive any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s) for the injury?  
 ① Fully compensated                      ② Partially compensated ( \_\_\_\_\_ % of total)  
 ③ Demanded compensation, but did not receive any  
 ④ Demanded compensation, and waiting for the perpetrator(s)'s response  
 ⑤ Did not demand compensation

**IV** Victim' s Reaction

**15** Were you drunk at the time of the incident?

---

① Yes                                      ② No                                      ③ Do not know

**16** Was anyone present at the time of the incident, other than yourself and the perpetrator(s), exclud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

① Yes                                      → Go to **16-1**  
 ② No                                       → Go to **17**  
 ③ Do not know                       → Go to **17**

**16-1** Was anyone present at the time injured, threatened, or robbed?  
 ① Yes → how many? \_\_\_\_\_ persons                      ② No

**17** During the course of the incident, did you or the other person(s) present at the time attempt any form of self-defense?

① Yes → Go to **17-1**

② No → Go to **19**

**17-1** Specifically what did you or the other person(s) do for self-defens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① Fought back with a weapon or an object.

② Punched or kicked the perpetrator(s)

③ Screamed or threatened to call the police.

④ Attempted to reason with or persuade the perpetrator(s) to stop

⑤ Escaped or ran away, or attempted to

⑥ Asked police or security staff for help

⑦ Asked another person for help

⑧ Hid somewhere or dodged the perpetrator

⑨ Other (Specify: \_\_\_\_\_)

→ Go to **17-2**

→ Go to **17-3**

**17-2** Who was the first to attack or use a weapon?

① Myself

② Perpetrator

③ Another person

④ Do not know

**17-3** Were you or anyone present at the time physically injur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cident?

① Yes → Go to **17-4**

② No → Go to **17-5**

**17-4** Did your or the other person's reaction (such as self-defense) take place before or after sustaining an injury?

① Before sustaining injury

② After sustaining injury

③ At the same time as sustaining injury

④ Do not know

**17-5** How do you think your or the other person's reaction shifted the situation?

Please check all that apply.

① Helped with deterring more serious injury or damage.

② Helped with catching the perpetrator(s)

③ Helped me with escaping or running away

④ Made the situation worse, inflicting injury or damage on me

⑤ Made the situation worse, inflicting injury or damage on others

⑥ Made the perpetrator(s) more vicious and aggressive.

⑦ Do not know

⑧ Other (Specify: \_\_\_\_\_)

▶▶ Go to **19**

**V** Property Loss

**18**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the fraud/swindle and loss of property you experienced.

- 18-1** How did the crime take plac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to each incident.
- ① The perpetrator demanded money, impersonating a post office employee, a telephone company employee, a bank employee, a credit card company employee, a tax official, an investigator, or a family member
  - ② The perpetrator lured me into a fake bank webpage and stole my personal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obile number, account number, password, security card number.
  - ③ The perpetrator(s) borrowed money without the ability or intent to repay.
  - ④ I paid for a merchandise at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but did not receive it.
  - ⑤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sold me a counterfeit as if it were genuine.
  - ⑥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sold me a merchandise with a false promise of a free purchase, discount, or prize.
  - ⑦ A store (including an online store) grossly misrepresented the quantity of the merchandise or the service
  - ⑧ Others (specify: \_\_\_\_\_ )

- 18-2** How did the perpetrator(s) carry out the fraud?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False) advertisement on broadcast/newspaper
  - ② (False) advertisement on the street flier
  - ③ (False) advertisement over the phone
  - ④ Voice phishing
  - ⑤ Fake website
  - ⑥ Online store
  - ⑦ Forged public/private document
  - ⑧ Verbal persuasion
  - ⑨ Warranty by a third party or an expert
  - ⑩ Phony customers who conspired with the perpetrator(s)
  - ⑪ Other (Specify: \_\_\_\_\_ )

▶▶ Go to **19-6**

**19** Was any of your or your family member's properties stolen or taken?

- ① Yes → Go to **19-1**  
 ② Near miss  → Go to **20**  
 ③ No

**19-1**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realize that you lost your property?

- ① At the time of the incident    ② Within a day    ③ Within two or three days  
 ④ Within a week    ⑤ Within two weeks  
 ⑥ Within three or four weeks    ⑦ After a month

**19-2** What did you lose due to the crim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Bicycle or bicycle parts  → Go to **19-3**  
 ② Vehicle (car or motor bike)   
 ③ Cash, check, gift voucher, etc.  
 ④ Credit card, debit card, public bus/transit card  
 ⑤ Wallet, purse, backpack, etc.  
 ⑥ Personal valuables (mobile phone, laptop, MP3, clothing, book, gaming console, etc.) → Go to **19-4**  
 ⑦ Auto parts (navigation system, wheel cap, satellite radio, etc.)  
 ⑧ TV, DVD player, VCR, audio, and other home appliance  
 ⑨ Jewelry, pottery, artwork, furniture  
 ⑩ Other (Specify: \_\_\_\_\_ )

**19-3** If you lost your bicycle or vehicle, did you originally loan it to the perpetrator(s)?

- ① Yes    ② No

**19-4** Did the perpetrator(s) take the property from you via a direct physical contact (e.g. from your wallet, hand, or clothing)?

- ① Yes → Go to **19-5**    ② No → Go to **19-6**

**19-5** What did the perpetrator take, specifically?

( \_\_\_\_\_, \_\_\_\_\_, \_\_\_\_\_ )

Please write all applicable numbers from the items in **19-2**

**19-6**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how would you estimate the financial value of your stolen property?

- ① \_\_\_\_\_ thousand Korean Won (\* if you paid 30,000 Korean Won, write "30")  
 ② Do not know

- 19-7** Did you recover the stolen property or money?  
 (\* excluding paym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 ① Recovered in full
  - ② Recovered in part
  - ③ Did not recover any

- 19-8** Is there anyone, other than yourself or your family member, who suffered property loss due to the same incident?
- ① Yes → how many? \_\_\_\_\_ persons
  - ② Yes, but do not know how many.
  - ③ No
  - ④ Do not know

**20** Was any of your or a family member's properties vandalized?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Vehicle (or vehicle parts) → Go to **20-1**
- ② Window, lock, door
- ③ Garden (tree, shrubbery, fence)
- ④ Furniture, home appliances, and other household items
- ⑤ Clothing
- ⑥ Other (Specify: \_\_\_\_\_ ) → Go to **20-2**
- ⑦ No → Go to **21**

- 20-1** Did you report the incident to your insurance company?
- ① Yes
  - ② No

- 20-2**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how would you estimate the cost to repair the damaged (destroyed) item (if it is repairable) or purchase a new one (if it is not repairable)?
- ① \_\_\_\_\_ thousand Korean Won (\* Example: 1 is ten thousands Korean Won)
  - ② Do not know

- 20-3** Did you receive any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s) for the stolen/lost property ?
- ① Fully compensated
  - ② Partially compensated ( \_\_\_\_\_ % of total)
  - ③ Demanded compensation, but did not receive any
  - ④ Demanded compensation, and waiting for the perpetrator(s)'s response
  - ⑤ Did not demand compensation

- 20-4** Did you have the damaged (destroyed) item repaired or purchase a new one?
- ① Yes → How long did it take to repair the item or purchase a new one? \_\_\_\_\_ days.
  - ② No

## V Psychological Harm

21 Have you experienced any of the following mental disorder as a result of the crime?

Issues	Yes	No
1) Depression (helplessness, loss of confidence)	①	②
2) Feeling of isolation (loneliness, feeling that you're locked in)	①	②
3) Fear (panic attack, shock)	①	②
4) Insomnia, nightmare, auditory hallucination, headache	①	②
5) Difficulties with social life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①	②
6) Had to move to a different town (or a different school)	①	②
7) Suicidal thoughts	①	②
8) Attempted suicide	①	②
9) Other (Specify: _____ )	①	②

21-1 Due to mental disorder, did you have to take a leave from school or work, or close your business or stop household chores temporarily?

① Yes → how many days? \_\_\_\_\_ days      ② No

21-2 Have you had counseling or psychiatric services to treat the mental disorder (fear, anxiety, or suicidal thoughts, etc.)? If so, how long did it take, and how much did it cost?

① Yes →

1) Duration of counseling / treatment	2) Cost of counseling / treatment
_____ days	_____ thousand Korean Won

② No

22 How does the following statement reflect your emotion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Emotion	Significantly decreased	Somewhat decreased	No change	Somewhat increased	Significantly increased
1) Confidence that, if someone tries to assault me, I can defend myself.	①	②	③	④	⑤
2) Feeling that I am respected, and a valuable human being (self-esteem)	①	②	③	④	⑤
3) Trust towards others	①	②	③	④	⑤
4) Trust toward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①	②	③	④	⑤
5) Respect towar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aw	①	②	③	④	⑤



**23-7** What is your relationship to the perpetrator(s) in the case?

(※ If there were multiple perpetrators and any one of them is known to you, check both "Relative (including family)" and "Acquaintance other than relative")

<b>23-7-1</b> Relationship	<b>23-7-2</b> Specific relationship		
① Relative (including family)	① Husband/Wife ④ Brother/Sister	② (Grand) parent ⑤ Ex-husband/Ex-wife	③ (Grand) child ⑥ Other
② Acquaintance other than relative	⑦ Friend ⑩ Superior ⑬ Close neighbor	⑧ Boyfriend/Girlfriend (including ex) ⑨ Person attending the same school ⑫ Person in a business relationship	⑪ Co-worker
③ Complete stranger	⑭ Bare acquaintance		

## VII

### Police Services

**24** Did you report the incident to the police?

- ① Yes → Go to **24-1**  
 ② No → Go to **24-9**

**24-1** Please check the TWO most important reasons for reporting the crime.

1<sup>st</sup>       2<sup>nd</sup>

- ① To have the perpetrator(s) arrested and penalized for the crime  
 ② To recover the loss (damage)  
 ③ To prevent similar crimes from happening again  
 ④ To improve the police services  
 ⑤ Because I believe I have a duty to report crimes to the police  
 ⑥ Other (Specify: \_\_\_\_\_ )

**24-2** When you reported the crime, did the police take any action?

- ① Yes → Go to **24-3**  
 ② No → Go to **24-4**

**24-3** When you reported the crime, what actions did the police take?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① Verified the situation over the phone.  
 ② Came to the scene and verified the situation  
 ③ Actively investigated the case by collecting evidence, searching the area, etc.  
 ④ Solved the case.

24-4 Did the police provide you with any information on how your case will be processed?

- ① Yes → Go to 24-5
- ② No → Go to 24-6

24-5 Were you able to understand what the police explained about processing your case?

- ① Fully understood
- ② Understood most of it
- ③ Understood about half of it
- ④ Understood only some of it
- ⑤ Could not understand at all

24-6 After reporting the crime, were you satisfied with the police services?

- ① Very satisfied
- ② Somewhat satisfied
- ③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 ④ Somewhat dissatisfied
- ⑤ Very dissatisfied

24-7 Did the police arrest the perpetrator(s)?

- ① Arrested all of them
- ② Arrested some of them
- ③ Arrested none of them
- ④ Do not know

24-8 Did you have to take any time off your office work, household chores, or schoolwork after the crime, for the following reasons?

Reasons	Yes	No
1)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ctivities	① _____ days	②
2) Cooperation with the prosecutor's work	① _____ days	②
3) Coopera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s	① _____ days	②

▶▶ Go to 25

24-9 Please check the most and the second most important reasons for NOT reporting the crime.

1<sup>st</sup>       2<sup>nd</sup>

- ① The loss was negligible.
- ② I took care of the matter personally or by other means.
- ③ I had no evidence.
- ④ I thought the police would not take any action.
- ⑤ I thought the police would not be able to arrest the perpetrator(s) and would bother me instead.
- ⑥ I personally know the perpetrator(s).
- ⑦ I was afraid of retaliation.
- ⑧ I felt I would be ashamed if others find out about the crime

25 How likely do you do the following more after your victim experience than you used to?

Content	Not at all	Slightly	Moderately	Very	Extremely
1) I make sure all the doors are securely locked before going to bed.	①	②	③	④	⑤
2) I carry self-defense devices (whistles, etc.) for my safety.	①	②	③	④	⑤
3) I never walk alone at night, because I don't feel safe.	①	②	③	④	⑤
4) I stay away from unlit/unsafe areas for my safety.	①	②	③	④	⑤
5) I would rather not go out at night even if I need to take care of something outside.	①	②	③	④	⑤
6) I never take a taxi alone at night.	①	②	③	④	⑤
7) I volunteer as a neighborhood watcher in my neighborhood.	①	②	③	④	⑤
8) When I need to leave the house for a few days, I asked my neighbor to take care of my daily deliveries (newspaper, milk, etc.).	①	②	③	④	⑤

#### Reward(gift) receipt

I hereby confirm a receipt of reward (gift) for survey participation at the amount of 5,000 won.

2019. . . . Name \_\_\_\_\_(Sign)

♣ Thank you for taking your time to fill out this questionnaire. ♣

Post survey record					
<b>Surveyor</b>	<b>N a m e</b>				
	<b>I D</b>				
<b>Date of Survey</b>		2019 ( _____ )Month ( _____ )Date			
<b>Time of Survey</b>		① Morning      ② Afternoon  From ( _____ ) to ( _____ )			
<b>Content comprehension</b>		① High	② Medium	③ Low	
<b>Survey participation</b>		① High	② Medium	③ Low	

## [부록 3]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가구대표용)



승인 번호  
제 403001 호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상심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부 ID(조사원 작성)

--	--	--	--	--	--	--	--

조사표 ID(ocid 작성)

--	--	--	--	--	--	--	--

2018년 기준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기초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

### 인사 말씀

한국갤럽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 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담당자 한국갤럽 이상설 차장 02-3702-2619  
임문정 과장 02-3702-2684

▶ 이 표는 한국갤럽에서 기입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생년월	① 양력			② 음력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가구원 수 정보는 가구대표 응답자의 기초조사표만 기입해 주십시오.

총 가구원 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수	조사 완료 가구원 수	
		기초조사표 수	사건조사표 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b>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조사 검증)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확인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갤럽에 있습니다.</li> <li>▪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는 한국갤럽이며,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li> <li>▪ 본 조사로 수집된 문서는 한국갤럽의 폐기 위탁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li> </ul>			
수집 항목	수집 목적	폐기 시점	확인 서명
성명, 연락처	본인 확인 및 검증	조사완료 후 1년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검증
	① 집            ② 휴대폰            ③ 직장  (            ) - (            ) - (            )	

**조사표 쓰는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 (-)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H 가구 구성**

**H**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1]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직업 [보기2]	증사상 지위 [보기3]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 소지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외국인만 응답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사유 코드
2		(양 / 음) 년 월							
3		(양 / 음) 년 월							
4		(양 / 음) 년 월							
5		(양 / 음) 년 월							
6		(양 / 음) 년 월							
7		(양 / 음) 년 월							
8		(양 / 음) 년 월							

[보기1]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2] 직업	[보기3] 증사상 지위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중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⑧ 조부모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⑩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H. 가구 구성
- 가 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의 생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 가구원: 현재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므로,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구대표 응답자를 가장 먼저 적은 후,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조사표 쓰는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 (-)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H 가구 구성**

**H**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1]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직업 [보기2]	증사상 지위 [보기3]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 소지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외국인만 응답 출신 국가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사유 코드
2		(양 / 음) 년 월							
3		(양 / 음) 년 월							
4		(양 / 음) 년 월							
5		(양 / 음) 년 월							
6		(양 / 음) 년 월							
7		(양 / 음) 년 월							
8		(양 / 음) 년 월							

[보기1]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2] 직업	[보기3] 증사상 지위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중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⑧ 조부모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⑩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H. 가구 구성
- 가 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의 생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 가구원: 현재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므로,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가구대표 응답자를 가장 먼저 적은 후,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번호 순서대로 기입

## I 동네와 이웃 환경

### 1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 2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 3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 4 작년(2018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목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자 없음'에 표시해주시시오.)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강태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 ~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배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유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배경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18** 최근 5년 이내(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19** 가구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관사, 사택 등)

**21**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2, 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 → 응답 후 <b>21-1</b>	<p><b>21-1</b></p>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	----------------------	---

**22**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원 이상	

**Ⅳ**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과 함께 예시 내용을 읽고 관련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 |           |  |
|-----------|--|
| <b>예시</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li> <li>2)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li> <li>3) 누군가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값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li> <li>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li> <li>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li> <li>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li> <li>7)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li> <li>8)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li> </ol> |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4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  |
|-----------|--|
| <b>예시</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 수표, 상품권 등</li> <li>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li> <li>3) 지갑, 핸드백, 가방</li> <li>4)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li> <li>5) 자전거 혹은 그 부품품</li> <li>6)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li> <li>7)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li> <li>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li> <li>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li> <li>10) 그 외 다른 물건</li> </ol> |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        |                                   |
|--------|-----------------------------------|
| 예<br>시 | 1)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
|        |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
|        | 3) 직장이나 학교                        |
|        |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
|        |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
|        | 6)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
|        | 7)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
| 예<br>시 | 1) 칼, 흉과 같은 무기           |
|        | 2)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어팬, 막대기 |
|        | 3) 돌이나 병을 던짐             |
|        | 4)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
|        | 5)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
|        | 6) 귀하 앞에서 위협함            |
|        | 7)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으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        |                     |
|--------|---------------------|
| 예<br>시 | 1)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        | 2)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        | 3) 가족이나 친척          |
|        | 4)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        |             |
|--------|-------------|
| 예<br>시 | 1) 낯선 사람    |
|        | 2) 조금 아는 사람 |
|        | 3) 잘 아는 사람  |

① 있었다 → \_\_\_\_ 건      ② 없었다

V 보이스피싱 경험

31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31-1 번으로

31-1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 응답 후 31-2 번으로
- ②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 ③ 수사·감독기관 사칭(경찰, 검찰, 금감원 등)
- ④ 가족 사칭
- ⑤ 친구 사칭
- ⑥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 ⑦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 ⑧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통신비 연체)
- ⑨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 ⑩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 ⑪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 ⑫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32 번으로

②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응답 후 31-4 번으로

③ 없었다 → 조사종료

31-2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 ①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 ②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
- ③ 신용카드 회사
- ④ 보험회사
- ⑤ 증권회사
- ⑥ 캐피탈 회사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31-3 연락한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 ②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 ③ 신용카드 대금 연체
- ④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32 번으로

31-4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하여서
- ②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국제전화 등)
-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32**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④ 3개월에 한 번 정도                      ⑤ 거의 없음

**33**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자택전화                      ② 직장·영업장전화                      ③ 휴대폰  
 ④ 메신저(카카오톡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4**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①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_\_회  
 ②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_\_회  
 ③ 없다

**35**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①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만원 → 조사종료  
 ② 아니다 → 응답 후 **35-1** 번으로

**35-1**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사기 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  
 ②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  
 ③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④ 은행 창구 직원의 조언으로  
 ⑤ 지연인출제도로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서  
 ⑥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부착된 홍보용 안내문을 읽고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사례비(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본 조사에 참여하여 사례비(답례품)로 지급된 상품권(5천원)을 수령하였음

2019. . . . . 성명 \_\_\_\_\_ (서명)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VI 조사원 확인 사항

※ 이 페이지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적어 넣습니다.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1. 피해 경험 여부		2. 일반피해 수	3. 상습피해 수	4.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	번	속임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	번	물건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	번	침입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	번	손상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	번	장소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	번	방법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	번	지인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	번	성추행 관련	② 없었다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었다(대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부

### 1. 피해 경험 수 결정 방법

① 범죄피해 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 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② 점검 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 문항에 표시된 경우 같은 피해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같은 피해 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만 표시합니다.  
 ③ 문항별 피해 경험 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 경험 수에 적어 넣습니다.  
 ④ 총 피해 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 경험 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 2. 상습피해 여부 결정 방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① 문항별 피해 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다 씁니다.

### 3.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씁니다.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 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씁니다.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 수에 씁니다.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조 사 원	성 명				
	I D				
응 답	날 짜	2019년 ( )월 ( )일			
응 답	시 간	① 오전      ② 오후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조 사	이 해 도	① 상	② 중	③ 하	
조 사	협 조 도	① 상	② 중	③ 하	

## [부록 4]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가구대표용)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ID(조사원 직번호)

--	--	--	--	--	--

조사표 ID(가정 직번호)

--	--	--	--	--	--

2018년 기준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사건조사표]

## 인사 말씀

한국갤럽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담당자 한국갤럽 이상실 차장 02-3702-2619  
임문정 과장 02-3702-2684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에서 기입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생년월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사건조사표 번호	총			매	중
					번

**조사표 쓰는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쓰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 (→, ▶▶)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쓰십시오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3쪽, 가구원 11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 1) 관련 문항 ( )번의 사건조사표 ( )건 중 ( )번째 사건
  -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회
-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사건조사표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그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8년 \_\_\_\_월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 |                     |                    |                     |
|---------------------|--------------------|---------------------|
| ① 새벽( 03 ~ 06시 전 )  | ② 아침( 06 ~ 09시 전 ) | ③ 오전( 09 ~ 12시 전 )  |
| ④ 한낮( 12 ~ 15시 전 )  | ⑤ 오후( 15 ~ 18시 전 ) | ⑥ 저녁( 18 ~ 21시 전 )  |
| ⑦ 밤( 21 ~ 00시 전 )   | ⑧ 심야( 00 ~ 03시 전 ) |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
|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                     |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 ① 현재 사는 시군구
- ② 다른 시군구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조사원 기입용 코드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8** 번으로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거주자우선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 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II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

-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법창을 부수고
-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

**7-2**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① 나  → 응답 후 **8** 번으로
- ② 나와 가구원들  → 응답 후 **8** 번으로
-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10** 번으로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습니까?

- ① 그렇다 → 응답 후 **8-1** 번으로
- ② 아니다  → 응답 후 **9** 번으로
-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9** 번으로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 ⑤ 마취제, 독극물
- ⑥ 전기충격기
- ⑦ 스프레이
-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다
-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다
- ③ 모르겠다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했음
-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혔음
-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 ⑧ 재물을 파괴, 손상하겠다고 위협했음
-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토킹을 했음
-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_\_\_\_\_ )

▶▶ 응답 후 19 번으로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쌌
-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활꺠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13 번으로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_\_\_\_\_ 일      ② 아니요

---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_\_\_\_\_ 만원  
 (\* 예: 3천원이면 0.3만원)

---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② 없었다  
 (\*단, 24시간 미만이면 1일)

---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_\_\_\_\_ %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IV**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17** 번으로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명      ② 없었다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1**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 } → 응답 후 **17-2** 번으로
- } → 응답 후 **17-3** 번으로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나
- ② 가해자
-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 ④ 모르겠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4**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17-5** 번으로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 ④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 ⑦ 모르겠음
- ⑧ 그 외의 영향 (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19** 번으로

## V

## 재산 피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_\_\_\_\_ )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③ 전화(허위)광고
- ④ 보이스 피싱
-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⑧ 그럴듯한 말솜씨
-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19-6 번으로

**19** 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9-1** 번으로
- ② 피해당할 뻔했음 } → 응답 후 **20** 번으로
- ③ 아니요

**19-1**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① 피해 발생 당시                      ② 1일 이내                      ③ 2 ~ 3일 이내
- ④ 1주 이내                              ⑤ 2주 이내                      ⑥ 3 ~ 4주 이내
- ⑦ 1개월 이후에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 → 응답 후 **19-3** 번으로
-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⑤ 지갑, 핸드백, 가방
-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 응답 후 **19-4** 번으로
-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⑩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

**19-3** 자전거나 차량 피해를 당했다면, 귀하가 직접 가해자에게 자전거나 차량을 사용하라고 넘겨준 것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4**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와 직접 접촉하여(예를 들어, 귀하의 지갑, 손, 옷 등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까?

- ① 그렇다 → 응답 후 **19-5** 번으로                      ② 아니다 → 응답 후 **19-6** 번으로

**19-5**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_\_\_\_\_, \_\_\_\_\_, \_\_\_\_\_ )

**19-2** 번의 예시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19-6**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 가격이나 돈은 얼마입니까?

- ① \_\_\_\_\_ 만원 (※ 예: 물품의 현시가 기준 3천원이면 0.3만원)
- ② 모르겠다

**19-7** 그 사건에서 피해 입은 물건이나 돈을 되찾았습니까?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① 모두 되찾았다
- ② 일부 되찾았다
- ③ 전혀 되찾지 못했다

**19-8** 그 사건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 이외에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_\_\_\_\_명
- ②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다
- ③ 없었다
- ④ 모르겠다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차량(및 부품) → 응답 후 **20-1** 번으로
-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 ④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
- ⑤ 의류
-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_\_\_\_\_ )
- ⑦ 없음 → 응답 후 **21** 번으로

→ 응답 후 **20-2**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 ① \_\_\_\_\_ 만원
- ② 모르겠다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 ① 전부 받았다
-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 %)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⑤ 요구하지 않았다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_\_\_\_\_ 일
- ② 아니다

**V**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 일	_____ 만원

② 없었다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7-1 관계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④ 형제·자매	② (조)부모 ⑤ 전남편·전처	③ (손)자녀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⑩ 직장 동료 ⑬ 잘 아는 이웃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⑪ 직장 상사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⑨ 학교 선후배 ⑫ 거래하던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 V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24-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기 위하여
-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⑤ 범죄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_\_\_\_\_ )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24-3**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24-4** 번으로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24-5** 번으로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6** 번으로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

**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 응답 후 **25** 번으로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 해결해서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⑦ 보복이 두려워서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_\_\_\_\_ )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배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례비(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본 조사의 참여하여 사례비(답례품)로 지급된 상품권(5천원)을 수령하였음

2019. . . . . 성명 \_\_\_\_\_ (서명)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조사 후 기록표

조 사 원	성 명					
	I D					
응 답 날 짜	2019년 ( )월 ( )일					
응 답 시 간	① 오전      ② 오후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조 사 이 해 도	① 상                  ② 중                  ③ 하					
조 사 협 조 도	① 상                  ② 중                  ③ 하					

[부록 5]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조 사 지 침 서

2019.5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ontents

목차

I. 조사개요 .....	1
II. 현장조사 .....	7
1. 조사원의 기본자세 .....	9
2. 현장조사 요령 .....	11
3. 조사 관련 기본 개념 이해 .....	17
4. 현장조사 기본 절차 .....	21
5. 현장조사 .....	22
III. 조사표 작성 요령 .....	29
1. 기본 점검사항 .....	31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	32
3. 사건조사표 .....	72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105
1. 기본 점검사항 .....	107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	107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	109
□ 부록 .....	111

1



조사개요

Survey Overview

##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수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을 파악하여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
-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근거
  - 통계법 제 18조에 의거한 승인통계(일반통계, 승인번호 : 제 403001호)
  - 통계법 제 32조, 33조, 34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제11조에 근거하여 조사 실시

####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연혁

- 1991년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 1994년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민간기관)
- 1997년 : 제2차 『199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1999년 : 제3차 『199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3년 : 제4차 『2002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6년 : 제5차 『2005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9년 :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승인 통계 지정(제40301호, 2009.08.19.)
- 2011년 :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통계청)
- 2013년 : 2012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통계청)
  - 조사명칭 변경
- 2015년 : 2014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밀워드브라운미니어리서치)
- 2017년 :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칸타피블릭)
- 2019년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실시(한국갤럽조사연구소)

4. 조사기간

- 조사 실시 기간 : 2019년 5월 30일 ~ 7월 14일 (46일간)
- 조사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2년

6.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610개 조사구, 조사구당 11가구)

## 7.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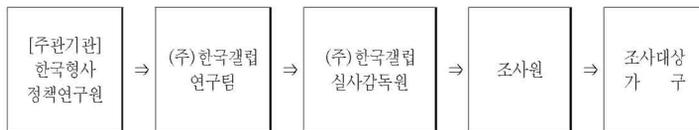
- 조사표 구성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와 가구원 구분), 사건조사표
- 기초조사표 항목
  -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1년간 겪은 피해경험, 특별주제(보이스피싱)
- 사건조사표 항목
  -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및 반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범죄피해 후 반응

##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함
- 단,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조사」 방법을 병행
  -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할 경우 면접원은 옆에서 응답 능력,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9. 조사체계

- 조사인력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원 채용
- 조사체계



2



현장 조사

Field Survey

## 제2장. 현장 조사

## 1. 조사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 준비물

- 조사원은 아래 용품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함



## 조사관련 용품

1 가구명부	2 조사표	3 조사지침서
4 조사 안내 홍보자료	5 조사구 요도	6 답례품
7 조사원증	8 필기도구	9 가방
10 안전용품		

## 나. 조사원의 마음가짐

- 조사원은 한국형사정 책연구원과 한국갤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함

## 다. 조사원의 태도와 의무

- 조사원은 이 조사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즉, 조사원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반드시 슈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과 상의한 후 기입해야 함
-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과와 신뢰도, 타당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함

 조사원 기본 자세

- 조사원은 가구를 방문하면 가구원에게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하여 경계심을 없애야 함. 조사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때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특히, 가구를 방문할 때는 조사 협조공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사요령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하여야 함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로 기입해서는 안 됨
- 또한, 조사원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됨
- 조사원은 완성된 조사표를 소속 지점의 실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조사 상 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지시를 받음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 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현장조사 요령

## 가. 기본 사항

## ○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조사원증, 조사표, 답례품, 필기도구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함
- ※ 가구 명부, 조사표는 가구단위로 통합 관리 중요

## ○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가구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함
- 조사업무 수행 중에는 항상 조사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함

## ○ 가능한 응답자가 회망하는 시간에 조사

-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구방문 시간대를 정하며,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함
- 조사구에 상가지역이 있으면 혼잡한 시간은 피해서 방문함
- 아파트, 연립 등의 조사 시에는 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함

## ○ 조사 시 협조공문 제시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히고, 조사대상 가구에 본 조사의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언어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하며,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가급적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도록 함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하며, 조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하지 않음
-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이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응답자가 말을 할 때 면접원이 눈썹을 올리는 행위나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도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조사원은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조사진행 중 조사원의 질문 또는 질문과 질문을 연결하는 말이나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면접원의 말 한마디도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따라서 조사원은 응답자의 응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됨(응답에 동의 또는 비동의 금지, 응답자가 인자해 보인다면가 하는 등의 응답자의 성격에 대한 언급 금지)

○ 설문지 내용 그대로 읽어주기

- 질문은 써진 그대로 읽어주어야 함. 모든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거쳐서 구성되었으므로 질문을 읽어줄 때 어떠한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됨. 조사원 임의로 질문의 내용이나 어휘 변경은 금함

○ 응답 거부 시 설득 시도

-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이때, 무엇보다도 조사원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어떤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침착하고 겸손해야 함
- 최선을 다해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거부를 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일단 물러나야 하며 실사담당자 및 연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

#### ○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조사 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조사대상자를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직장이나 학업 등 여러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상자를 가구 내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전 연락 후 직장이나 커피숍 등 집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표 유치를 통한 조사가 가능함 (특히 30대 이하 젊은 취업자)
- 조사표 유치가 필요한 경우, 응답자 착오가 없도록 항목별 작성방법·유의사항이 정리된 응답자 자기기입요령서와 비밀보호용 회수 봉투를 함께 유치하며, 회수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기타 특이사항에 대비하여 응답자에게 반드시 연락처 제공 필요  
(리플렛에 조사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후 현장 배포)

#### ○ 조사 완료 시 주의 사항

-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응답자가 다소 망설이면서 답변했거나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함
- 조사가 완료되면 응답자에게 정중하게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림
- 또한, 준비된 답례품을 반드시 지급함

#### 나. 가구 방문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 ☞ 전국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이미 신고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이 외에도 사소한 범죄 또는 미신고로 묻혀버린 범죄유형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범죄의 발생률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승인통계로 한국형시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합니다.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 지금 바쁘셔서 면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 ☞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합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 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책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없다면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 결국 조사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통계법 제32조)

- 개인 사생활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 조사된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응답자 이외에는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 통계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등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 다. 조사원 안전수칙

- 통계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
  - 안전용품 준비, 조사구 확인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확인 포함), 비상연락처 확보, 본인의 일정 공유(방문위험지역 사전 파악),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착용
- 안전사고 예방
  -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
  - 개 물림 사고에 주의
  - 교통사고에 주의
  -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가구는 가능한 밝을 때 방문한다
    - 부득이 야간 조사 시 동행자와 함께 수행한다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되돌아간다
    - 항상 안전용품(호신용 경보기, 손전등 등)을 휴대하여 위험시 활용한다
- 가구 방문 시의 안전 수칙
  - 조사원증 제시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공동주택 조사 시 관리인에게 미리 알림
  - 위험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조사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조사원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상해사고에 대비
- 사고나 부상 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슈퍼바이저에게 연락
- 긴급상황 시 연락처
  - 범죄신고 : 112
  - 긴급제난·구급차 : 119
  - 응급 의료상담 : 1339
  - 전국 경찰서 안내 : 1566-0112
  - 한국갤럽 hotline : 02-3702-2684

## 3. 조사관련 기본 개념 이해

## 가. 조사구

- 조사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단위 또는 지역을 행정 읍·면·동별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 또는 면적에 근사하게 구획한 구역 단위

## ※ 조사구의 종류

## ○ 아파트 조사구 (A)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가구 수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 보통 조사구 (1)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살고 있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가구 수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조사구 번호는 총 11자리로 구성

- 조사구 번호의 예

1	2	1	2	3	1	2	1	2	3	-	A 또는 1
사도 코드		사군구 코드			동읍면 코드		조사구 일련번호				조사구 특성

- 조사구 특성은 아파트의 경우 「A」, 보통은 「1」로 표기

## 나. 조사구 요도

-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도상에 설정한 조사구 경계, 지형 지물과 그 명칭, 거처번호 등을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한 약식지도

다. 거처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부르는 말로서,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의미

유 형		내 용
주택	일반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660m <sup>2</sup> 이하인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
	영업겸용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에 해당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 <sup>2</sup>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름
주택 이외의 거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 -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
	오피스텔	-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편자집, 비닐하우스	-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 거처번호는 3자리로 되어있고, 거처마다 1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시작

## 라.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

## ※ 혼동하기 쉬운 가구의 개념

## ○ 주민등록 상 세대

주민등록 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다름

## ○ 가족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가구 유형

유형	내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 격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1인 가구	적 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부 적 격

- 가구번호는 3자리로 되어있고, 가구마다 1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시작

마.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친척, 친구, 가사도우미, 종업원 등)
- 본 조사 적격 가구원
  -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만 14세 이상인 가구원 (양력 2005년 1월 이전, 음력 2004년 12월 이전 출생자)
- 본 조사에서는 적격 가구원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4. 현장조사 기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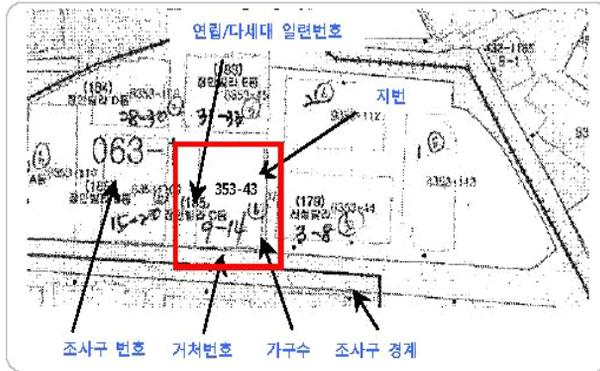
조사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필요 자료
조사구 확인 및 준비	- 조사구 요도 및 가구 명부 확인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대상 지역 변동 확인 · 재개발 지역 : 실사담당자에게 연락 후 대체 조사구 수령 여부 결정 · 조사구 대체 시 대체 조사구 수령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		
표본 가구 접촉	- 가구 명부 내 본표본 확인 · 동/반장, 관리소장 협조 요청 및 문의 · <b>최소 4회 방문(요일, 시간대 분산) 준수</b>	· 가구 명부
↓		
조사 대상자 선정	- 가구 내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원 현황표 작성 · 적격 조사 가구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표
↓		
조사 진행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안내 후 조사 진행 · 가구원 부재 등으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재방문을 통한 진행 시도 · 방문 차수별 가구 명부 작성 · 답례품 제공	· 조사표 · 가구 명부 · 답례품 · 리플렛
↓		
	※ 진행하지 못한 차수 : 미완료 사유 작성	
결과물 송부	- 실사 본부에 결과물 송부 - 가구 명부 (모바일 기기 활용하여 접촉기록 작성) - 완료 조사표 ※ 조사표는 반드시 가구단위로 묶어 제출	· 완료 조사표



## 2) 조사구 요도 정보 읽기

- 조사구는 행정 읍면동의 경계 내에 평균 60가구가 포함되도록 분할 또는 통합하여 설정한 조사지역 단위
- 조사구 요도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구분

< 63번 조사구 353-43번지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 >



기호	명칭	기호 해석
	조사구 경계	63번 조사구의 경계
063-1	조사구 번호	63번 조사구의 1번째 요도
353-43	지번	번지수
(185)	연립/다세대 일련번호	185번 다세대 주택
9-14	거처번호	185번 다세대 주택 내에는 9번부터 14번 까지 가구가 살고 있음
6	가구수	185번 다세대 주택에 총 6개 가구가 있음

- 조사구 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조사구 요도의 경계 및 가구수, 거처번호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해당 조사구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변동이 심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실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대체 조사구 수경 여부 결정

3) 가구 명부 확인

- 가구 명부는 다음과 같이 가구와 가구 방문 관련 사항 기록 부분으로 구성
- 가구 명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처번호와 가구번호이며, 이는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와 동일하므로 해당 주소지의 가구에 관한 정보 파악

< 2019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

NO.	세입	조사구 유형번호 (가구유형)	조사구 구분	표본 구분	가거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주소										1차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도로명	건물번호 명	공동주택명	동	호수	방문일시	방문 결과			
00001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1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7-21번지	한신로	741-21						할	일	시
00002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2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7-21번지	한신로	741-21						할	일	시
00003	11080780181	1	본조사구	본표본	002	003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1						할	일	시
00004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4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3						할	일	시
00005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5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3						할	일	시
00006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6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00007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7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00008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8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4) 표본 가구 접촉

- 본 표본 확인
  - 조사되어야 할 가구는 가구 명부 내 '표본 구분' 셀에 '본 표본' 이라고 표시
  - 표본 가구 방문은 반드시 4회 방문(1일 1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4회 중 1회 이상 주말 방문 필요

< 2019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_본표본 예시 >

NO.	세입	조사구 유형번호 (가구유형)	조사구 구분	표본 구분	가거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주소										1차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도로명	건물번호 명	공동주택명	동	호수	방문일시	방문 결과			
00001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1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7-21번지	한신로	741-21						할	일	시
00002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1	002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7-21번지	한신로	741-21						할	일	시
00003	11080780181	1	본조사구	본표본	002	003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1						할	일	시
00004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4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3						할	일	시
00005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3	005	서울	강북구	경희동	167-2번지	경일로4길	63						할	일	시
00006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6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00007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7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00008	11080780181	1	본조사구		004	008	서울	강북구	경희동	306-56번지	경일로4길	67						할	일	시

## ○ 표본 가구 접촉

- 가구 접촉 시 홍보 리플렛과 공문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함
- 예비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역시, 4회 방문(1일 1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4회 중 1회 이상 주말 방문 필요
- 단, 시간대와 요일을 달리하여 방문

1회	2회	3회	4회	비고	적격 여부
6월 1일 토요일 11시	6월 1일 토요일 13시	6월 1일 토요일 15시	6월 1일 토요일 17시	동일 일자 4회 방문	×
6월 1일 토요일 14시	6월 2일 일요일 14시	6월 3일 월요일 15시	6월 4일 화요일 15시	동일 시간대 4회 방문	×
6월 1일 토요일 14시	6월 2일 일요일 15시	6월 3일 월요일 10시	6월 4일 화요일 17시	시간대, 요일 변경	○

- 강력 거절, 빈 집, 적격 응답자 없음 등의 사유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실사 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지침에 따라 진행(대체 또는 추가 접촉)
- 회차별로 '방문기록' 을 빠짐없이 작성

5) 가구명부의 방문기록 작성

- 가구 명부를 작성해 대체 여부, 대체 사유 등을 파악하고 임의대체를 방지함과 동시에 회차별 표본 성공률 및 결과 파악
- '방문기록' 부분은 회차별로 방문 일시와 방문 결과 코드를 정확하게 기입

구분	코드	상세 내용
조사진행	1	부분 조사 가구원 중 일부만 조사를 진행하고, 재방문 하여 추가 조사진행을 약속함
	2	유치 가구 접촉 후 유치조사를 시행하고, 재방문 하여 수거하기로 약속함
	3	재방문 약속 가구 접촉 후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재방문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함
	4	일시 부재 방문 시 가구원 전원 부재, 재방문 예정임
조사완료	5	조사 성공 해당 가구의 조사를 완료함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6	응답 불응 가구대표 응답자를 만나 설득했음에도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사정, 바쁨, 조사불신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부함
	7	장기 부재 조사기간 중 4회 이상 찾아갔으나 여행, 출장, 교육,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움
	8	응답 곤란 장애, 고령,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 불가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9	빈집 이사, 폐가, 계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확인함
	10	기타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 조사대상가구가 없는 경우

- 4차 방문 후 '최종 결과' 체크
- 총 방문 횟수와 방문 기록 기입 개수가 동일
- 가구 명부는 조사원 참고용이며, 권택 결과는 휴대폰 앱에 반드시 입력

< 가구 명부\_휴대폰 입력 화면 >

## 6) 조사 진행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대상자 조사 진행 : 가구원 명부 기록표를 통해 선정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조사 대상자가 가구 내 부재중일 경우 다음 방문 약속을 잡아 조사
- 직장이나 학업 등 여러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상자 본인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사표를 가구에 유치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토록 하거나 사전 연락 후 직장이나 커피숍 등 집 외부에서 조사 진행 가능
- 유치조사 시 주의 사항
  - 응답자 착오가 없도록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이 정리된 응답자 자기기입 요령서를 함께 유치하며, 회수일은 반드시 준수
  - 문의사항 대비 조사원 연락처 반드시 제공
  - 조사표 회수 시, 현장에서 응답자의 기입 누락과 착오 사항을 반드시 확인
  - 특히, 타 가구원이 대리 작성하는 사례는 없도록 주의

## 7) 표본대체

- 응답 불응
  - 사유: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불화, 실직, 부부이혼 등), 바쁘거나 귀찮음, 조사 불신 등의 이유
  - 통·이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 장기 부재
  - 사유: 조사기간 중 여행, 출장, 교육, 병원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으로 가구원 모두를 못 만나는 경우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4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장기 부재로 처리
- 응답 곤란
  - 사유 : 장애, 고령,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대상 가구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만 살고 있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응답 곤란으로 처리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함
- 단, 언어문체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의 사유코드를 '2. 대리 응답' 으로 기재함
  - ☞ 남편이 한국인,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대리응답 가능
- 빈집
  - 사유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사유 : 만 14세 미만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어린이집, 놀이방, 교회 등), 집단시설(기도원, 요양소, 기숙사, 관사 등) 등으로 조사대상가구가 아닌 경우
- 표본대체 절차
  - 본 표본을 기준으로 아래 예비 표본부터 순차적 접촉

3



조사표 작성 요령

## 제3장. 조사표 작성 요령

### 1. 기본 점검사항

#### 가. 전체 조사표 구성

- 전체 조사표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분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지용(녹색)' 과 '가구원용(연두색)' 으로 구분된다.
  - 가구원용은 가구와 관련된 문항이 삭제된 형태의 조사표로 가구원 개인에 관한 문항만 조사한다.
- (※ 가구와 관련된 문항은 13번, 17번~20번, 22번)
- 사건조사표(청색)는 가구대표 응답자 및 가구원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조사표 내용 구성

##### 1) 기초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H. 가구 구성                      | I. 동네와 이웃 환경      |
| II. 일상생활 및 범죄 예방 활동           | III. 배경 문항        |
| IV.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V. 특별주제(보이스피싱 경험) |
| VI. 조사원 확인 사항                 |                   |

##### 2) 사건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II. 범행수법          |
| III. 신체 피해      | IV. 피해자의 대응       |
| V. 재산 피해        | VI. 정신적 피해        |
| VII. 가해자의 특성    | VIII.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

## 3) 조사표 작성 개요

- 기초조사표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로 구성된 것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만 14세 기준(양력 **2005년** 1월 이전, 음력 **2004년** 12월 이전 출생)

##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크리닝 질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 항상 응답자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재확인시켜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2018. 1. 1.~ 12. 31.)** 경험한 범죄피해만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 8회에 걸친 스크리닝 질문들은 특정 범죄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 **2018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피해사건 총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에서 피해경험이 회상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뒤이은 스크리닝 문항에서 다시 피해건수도 잡히지 않도록(“**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응답한 문항의 번호를 직접 제시한다. 가령, 문항 **26**번이라면 응답자에게 앞의 문항 **24**번과 **25**번에서 있다고 하신 피해 경험 말고 또 다른 범죄 피해경험에 대한 것임을 설명한다.
  - ✓ 스크리닝 문항에 대한 예시내용을 응답자가 주의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시를 모두 듣고 난 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23**번, **26**번 문항 제외)
  -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23**번~**30**번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원이 직접 ‘VI. 조사원 확인 사항’을 작성한다.
  - ✓ 자기기입식으로 수집된 기초조사표의 경우 해당 가구원에게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범죄피해 경험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 ✓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조사표 뿐 아니라 사건조사표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는 반드시 1:1로 진행하여 다른 가구구성원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VI. 조사원 확인 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 ‘확인 사항’ 은 스크리닝 문항( 23 번~ 30 번) 별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 ✓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 [3단계] 를 거쳐, 각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 조사원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해 가면서 전체 피해경험 총 수를 정리하여 기입한다.

## [1단계] : 피해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1. 점검항목’ 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1건으로만**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 [2단계] :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도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 [3단계] :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이고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이지만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5건 이상)면서 각 사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와 개별피해가 있을 경우, 개별사건피해 수와 사건조사표는 같고 상습피해는 사건조사표 1부만 작성한다.
-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에 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 끝난 뒤, 개별 응답자가 보고한 범죄피해경험 사건 수만큼, 각 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바로 진행한다.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을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만일, 응답자가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기초조사표'의 작성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생년월	① 양력		② 음력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 **조사표 표지**
  -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는 '가구 명부' 에서 대상 가구의 조사구 번호(4자리) 및 거처 번호(3자리), 가구 번호(3자리)를 찾아 기입함
  - 가구원번호는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가구 대표는 01)
  - 성별과 실제 생년월은 H. 가구 구성의 성별/실제 생년월과 동일해야 함
-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편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총 가구원 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수	조사 완료 가구원 수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 ◆ **총 가구원 수**
  - H. 가구 구성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입한다
- ◆ **만 14세 이상 가구원 수**
  - 전체 가구원 중, 만 14세 이상(조사 대상) 가구원 수를 기입한다
- ◆ **조사 완료 가구원 수**
  - 기초조사표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기초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녹색+연두색 조사표)
  - 사건조사표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청색 조사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p> <p>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조사 검증)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확인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갤럽에 있습니다.</li> <li>▪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는 한국갤럽이며,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li> <li>▪ 본 조사로 수집된 문서는 한국갤럽의 폐기 위탁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li> </ul>			
수집 항목	수집 목적	폐기 시점	확인 서명
성명, 연락처	본인 확인 및 검증	조사완료 후 1년	

응답자(가구 대표)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검증
	① 집    ② 휴대폰    ③ 직장 (     ) - (     ) - (     )	

- |               |   |
|---------------|---|
| ◆ 정보 수집/이용 동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정보가 보호되고, 조사 완료 후 폐기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li> </ul>                      |
| ◆ 응답자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한 연락처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li> </ul> |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H** 가구 구성

**H**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1]	성별 ① 남 ② 여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보기2]	총사상 지위	장애인 복지카드 (노동능력 소지여부)	외국인만 공립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보기3] ① 있음 ② 없음	출신 국가	사유 코드	
1	① 가구대표 응답자 본인		(양 / 음)년 월						
2			(양 / 음)년 월						
3			(양 / 음)년 월						
4			(양 / 음)년 월						
5			(양 / 음)년 월						
6			(양 / 음)년 월						
7			(양 / 음)년 월						
8			(양 / 음)년 월						

[보기1]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2] 직업	[보기3] 총사상 지위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⑧ 조부모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⑩ 기타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술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무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 조사 시점 현재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H 가구 구성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 ▶ 가구 :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대표응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 (가구원)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li> <li>※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 없음</li> </ul> </li> <li>●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가구원.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b>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군인(단, 영의거주 군인은 제외)</li> <li>●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li> <li>●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li> <li>●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자</li> <li>● 군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제외</li> </ul>
◆ 가구원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은 가구대표응답자이며, 2번부터는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다.</li> <li>●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표지에 활용된다.</li> </ul>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가구원별로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보기항목에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대표응답자일 경우에는 ① 가구대표응답자에 해당</li> <li>☞ '⑩ 기타' 에는 ①~⑨항 이외의 관계가 있으면 기재</li> </ul> </li> </ul>
◆ 성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성별에 표시하여 조사한다.</li> </ul>
◆ 실제 생년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확히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년(4자리) · 월(2자리)과 양력 / 음력을 구분하여 기입</li> </ul> </li> </ul>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준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li> <li>- 현재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li> <li>- 사별이나 이혼 :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 포함)</li> </ul> </li> </ul>
◆ 직업 관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대표응답자와 가구원의 직업을 “직업 관련 등 보기” 항목에서 선택하여 기입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 소규모기업의 경영자 등</li> <li>-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직업(각 분야 학자 및 연구(보조)원,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li> </ul> </li> <li>② 사무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일반 사무원·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등</li> </ul> </li> <li>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음식·조리·미용 등 각종 대인서비스·영업직·매장판매직·방문통신판매원</li> <li>-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등·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li> </ul> </li> <li>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li> <li>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제조원</li> <li>-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운전원 등</li> </ul> </li> <li>⑥ 단순 노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관리 및 경비, 건물 청소, 배달,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등 단순 노무</li> </ul> </li> <li>⑦ 직업군인</li> <li>⑧ 전업주부</li> <li>⑨ 학생</li> <li>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li> </ol> </li> </ul>

<p>◆ 종사상 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해당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li> </ul> </li> <li>②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li> <li>-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li> <li>-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 등의 자유직업인도 포함</li> </ul> </li> <li>③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경우</li> </ul> </li> <li>④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li> </ul> </li> </ul> </li> </ul>																																
<p>◆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 유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가 없는 사람은 2번으로 체크한다.</li> </ul> </li> </ul>																																
<p>◆ 출신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이 <b>외국인인 경우에만</b> 출신국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국적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li> </ul> <p>&lt;아시아권&gt;</p> <table border="1" data-bbox="473 1226 973 1362"> <tr> <td>1. 중국</td> <td>2. 한국계중국인</td> <td>3. 일본</td> <td>4. 우즈베키스탄</td> </tr> <tr> <td>5. 몽골</td> <td>6. 베트남</td> <td>7. 필리핀</td> <td>8. 타이</td> </tr> <tr> <td>9. 타이완</td> <td>10. 인도네시아</td> <td>11. 방글라데시</td> <td>12. 스리랑카</td> </tr> <tr> <td>13. 파키스탄</td> <td>14. 네팔</td> <td>15. 캄보디아</td> <td>16. 미얀마</td> </tr> <tr> <td>17. 인도</td> <td></td> <td></td> <td></td> </tr> </table> <p>&lt;북미권&gt;</p> <table border="1" data-bbox="473 1400 973 1439"> <tr> <td>18. 미국</td> <td>19. 캐나다</td> <td></td> <td></td> </tr> </table> <p>&lt;유럽권&gt;</p> <table border="1" data-bbox="473 1477 973 1516"> <tr> <td>20. 영국</td> <td>21. 독일</td> <td>22. 러시아</td> <td></td> </tr> </table> <p>&lt;기타&gt;</p> <table border="1" data-bbox="473 1555 973 1584"> <tr> <td>23. 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18. 미국	19. 캐나다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23. 기타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18. 미국	19. 캐나다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23. 기타																																	

- 조사원이 조사 완료 후 가구원의 조사 최종 상태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기입

◆ 사유코드

응답 상태	코드	사 유
조사완료	1	해당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사건 있는 경우)를 모두 완료
대리응답	2	언어 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을 대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 등이 조사에 대리 응답함 ※ 낮은 귀가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은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응답 불응	3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을 4회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4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조사기간 동안 여행, 출장,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집에 들이지 않아 조사를 못 함
응답 곤란	5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조사 대상 아님	9	만 14세 미만 가구원

## I 동네와 이웃 환경

## 1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콘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 2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 3 작년(2018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주위 환경</li> <li>◆ 동네 사람들</li> <li>◆ 경찰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경찰활동 등에 관한 질문이다.</li> <li>• <b>동네란</b>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 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li> <li>• <b>경찰활동이란</b>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말한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연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li> </ul>

4 직년(2018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감소할 것 같습니다?					
항목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의 증가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 같은지, 감소할 것 같은지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조사한다.</li> <li>• 조사시점 이후의 범죄발생 증감률을 판단할 때, 직년(2018년) 한해와 비교하여 답하도록 한다.</li> </ul>
--	---

##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 상황별 두려움

- 일상생활 중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자 없음'에 표시해주세요.)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X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⑥	①	②	③	④	⑤

### ◆ 이타적 두려움

-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애인)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⑥ 해당자 없음'으로 조사한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끌어다이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유형별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 취약성 인식

-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방어능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파악하려는 문항이다.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9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 지인의  
범죄피해

- 응답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재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10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 포함, 단, 택시는 제외)을 이용했습니까?

-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

- 응답자가 평소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늦은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늦게 귀가한 경우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종종 개미살이 위험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장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대상으로서 매력성

- 응답자가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복장이나 액세서리 또는 유명 브랜드제품(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 ◆ 범죄관련정보에 노출정도

- 응답자가 평소 범죄관련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범죄 사건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 ◆ 자기통제수준 (5-10)

- 응답자의 자기통제수준과 관련된 문항이다.

## &lt;유의사항&gt;

- 남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시계, 안경, 신발 등을 포함시킨다.
- 질문 5의 “위험한 일”이란 자신 혹은 다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적인 처벌을 초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속, 과음(폭음), 도박, 무분별한 성관세(예: 하룻밤 즐기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포함) 등을 포함한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다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배달란(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예방 안전 조치 여부
  -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III 배경 문항

####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 ◆ 거주기간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유의사항>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간주한다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조사한다.

####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8** 최근 5년 이내(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 주택 소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대표응답자의 주택소유(점유) 형태를 물어보고 조사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집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li> <li>전세 :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이자 없이 맡기고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li> <li>보증금 있는 월세 : 집주인에게 임차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li> <li>보증금 없는 월세 : 집주인에게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li> <li>무상주택(조사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 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경우)과 <b>관사, 사택</b>(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 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이 해당</li> </ul> </li> </ul>

**21**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li> <li>② 초등학교</li> <li>③ 중학교</li> <li>④ 고등학교</li> <li>⑤ 대학교(2, 3년제)</li> <li>⑥ 대학교(4년제 이상)</li> <li>⑦ 대학원 이상</li> </ul>	→	응답 후 <b>21-1</b>
---	---	------------------

**21-1**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 최종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물어보고 조사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 학력을 최종적으로 수료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 질문한다</li> </ul>

##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22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선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 |                      |                        |
|----------------------|------------------------|
| ① 월평균 100만원 미만       | ② 월평균 100 ~ 200만원 미만   |
| ③ 월평균 200 ~ 300만원 미만 | ④ 월평균 300 ~ 400만원 미만   |
| ⑤ 월평균 400 ~ 500만원 미만 | ⑥ 월평균 500 ~ 600만원 미만   |
| ⑦ 월평균 600 ~ 700만원 미만 | ⑧ 월평균 700 ~ 1,000만원 미만 |
| ⑨ 월평균 1,000만원 이상     |                        |

## ◆ 월평균 소득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가구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체크하여 조사한다.

## &lt;유의사항&gt;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선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N**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문항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과 함께 예시 내용을 읽고 관련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크리닝 질문  
<공통 유의사항>

- 문항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스크리닝 질문으로 사건조사표를 기입하기 위한 사전확인 문항이고, 문항 31번 문항부터 35-1번 문항까지는 피상에 대한 특별주제 문항들이다. 문항 31번 문항부터 35-1번까지는 기초조사표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더라도,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문항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은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응답자의 피해경험을 상기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시내용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예시내용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 대한 범죄피해경험만으로 한정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서는 반드시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23번(속임관련) 문항 및 26번(손상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스크리닝 질문(24,25,27~30번)을 듣고 난 후 만일 '㉔ 없었다' 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할 뻔 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피해경험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여덟 개의 스크리닝 문항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뒤이은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 된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각 스크리닝 문항응답에서 '㉑ 있었다' 고 할 경우, 앞서 이미 언급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범죄피해 횟수로 카운트해야 한다.
-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23**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1)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2)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3)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7)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8)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속임 관련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이나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조사원은 어떻게 속임(사기)을 당할 수 있는지 각각의 예시를 정확히 읽어주면서 하나의 예시마다 피해경험 여부를 바로 확인하도록 한다.
  - \* 예시1번의 내용은 피싱(phishing)의 경험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여 돈을 빼가는 등의 피해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는 제외됨.
  - \* 예시2번의 내용은 파밍(pharming)의 경험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거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돈을 빼가는 등의 피해
  - \* 예시3번의 실제 사례 :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주겠다고 이웃들을 속인 사례(TV조선, 2019.01.17.), 돈을 투자하면 얼마도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사례(뉴스1, 2019.04.16)
  - \* 예시4번부터 예시7번까지는 온라인뿐 아니라 길거리 상점 등의 오프라인에서의 피해 사실도 포함됨을 알려줘야 함
  - \* 예시7번까지 피해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예시내용이외의 또 다른 속임의 피해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가령, 스미싱(smishing)과 같이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 '민원접수' 등의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함.
    - ☞ 주요 질의사항 가운데 사기(속임) 해당 질문 검토
-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 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피해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이때 당할 뻔한 경우(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24**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시**

- 1)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3) 지갑, 핸드백, 가방
- 4)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5) 자전거 혹은 그 부품품
- 6)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7)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 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10)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물건 관련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돈이나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으로 2가지 유형의 피해경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2가지의 피해 경험 모두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미수까지 포함하여 도난피해 경험이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 ☞ 도난경험에는 **응답자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거나** 응답자가 누군가와와의 대면 상황에서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 조사원이 예시를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예시된 물품 이외에도 없어졌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 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한 번이라도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 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사건(미수사건 포함)을 회상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물어보고 기입한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결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침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li> <li>•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당할 뻔 했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li> <li>•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b>"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b> 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li> <li>•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 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조사표의 지시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앞의 문항 -번,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인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가령, 문항 24번과 문항 25번 문항의 경우에서 범죄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문항 24번에서 응답하신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확인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집계한다.</li> <li>☞ <b>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li> </ul> </li> <li>• 응답자가 주거침입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b>사건발생 당시 응답자가 그 집의 소유주나 세입자였는지를 확인</b>한다. 만약,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그 발생장소가 본인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면(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경험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사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포함한다.</li> <li>•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b>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b> 재차 확인해야 한다.</li> </ul>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손상 관련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 응답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누군가에 의한 물품손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이 때 손상을 당한 횟한 경우(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 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집계한다.
- 응답자가 물품손상피해를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의 소유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닐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1)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 2)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 3) 직장이나 학교
- 4)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 5)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동산로(산책로) 등
- 6)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 7)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장소 관련

- 작년(2018) 한 해 동안, 돈이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누군가로부터의 위협이나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은 다양한 장소의 예시들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이외의 재산 및 신체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 도난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폭행 피해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 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까지 포함하여)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장소별 범죄피해 실제 사례 >

- 사례 1: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걸취함 (연합뉴스, 2019.04.29.)
- 사례 2: 한 남성이 공용화장실에 숨어 수 개월간 화장실 이용 여성들을 불법촬영함(KBS뉴스, 2019.04.12)
- 사례 3: 전국 전봉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행인에게 접근해 지갑을 소매치기함 (세종의소리, 2019.04.10.)
- 사례 4: 60대 여성 택시 기사를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폭향한 뒤 도주함 (조선일보, 2019.02.19.)



<유의사항>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 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인사건인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 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다라도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의 무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피해 상황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또한 해당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피해경험이 생겼나도록 해야 한다.**
    - 예시 ④ : 몸을 붙잡거나 목을 조르는 것 뿐 아니라 팔, 다리, 머리등의 신체부위를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등의 관련 된 예를 포함하여 전달한다.
    - 예시 ⑤ : 강요된 혹은 원치 않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심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의 피해경험으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빈번하게 발생함.
    - 예시 ⑥ : 대면 상황에서 흉기로 찔려 죽이겠다는 등의 신변 협박이나 몸뚱이를 빼앗기 위해 위협하는 등의 피해
- < 실제 사례 모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기로 사용된 경우 >**

사례 1: 회사사리에서 말다툼 후 직장동료에게 술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매일경제, 2019.04.20.)

사례 2: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지팡이를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시민을 폭행(뉴시스, 2019.04.18.)

사례 3: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이마를 젓가락으로 내리찍음 (뉴스1, 2019.04.26.)

사례 4: 노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경로당에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어머니 등 4인에게 화상을 입힌 사례(KBS뉴스, 2019.04.27)
- 응답자에게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 라는 내용을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만일 응답자가 위협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 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겪고 받은 것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키고 응답하도록 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 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으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1)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2)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3) 가족이나 친척
- 4)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지인 관련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시를 통해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이 없어졌거나 빼앗기는 등의 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 등 이미 언급된 범죄유형들과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심리적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성적 농담 등의 포함).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 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변사람들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도난 당했거나 폭행, 위협 혹은 괴롭힘을 당한 직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

사례 1: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남성의 집 안방에 불을 지른 사례(제주신보, 2019.04.09.)  
 사례 2: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 제자의 남동생, 교향진구를 선생님이 강제로 추행한 사례(문화일보, 2019.04.29.)

- 여기에서는 직장 내 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육(훈육)목적의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b>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b>” 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28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li> <li>•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 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 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li> <li>•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 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li> </ul>
---------------------	--

**30** 강제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시	1) 낯선 사람 2) 조금 아는 사람 3) 잘 아는 사람
--------	---------------------------------------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p>◆ 성추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li> <li>• 이 문항의 경우 28, 29 번 문항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해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함으로써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li> <li>•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관련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 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에게 누구나 강요된 혹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신체의 일부들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함께 공감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li> </ul>

<유의사항>

-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28, 29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 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29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② 없었다’ 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 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V

## 보이스피싱 경험

31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31-1 번으로

31-1 어떤 수법이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 응답 후 31-2 번으로
- ②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 ③ 수사·감독기관 사칭(경찰, 검찰, 금감원 등)
- ④ 가족 사칭
- ⑤ 친구 사칭
- ⑥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 ⑦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 ⑧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통신비 연체)
- ⑨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 ⑩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 ⑪ 동창회비, 중친회비 등 납부
- ⑫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

→ 응답 후  
32 번으로

②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응답 후 31-4 번으로

③ 없었다 → 조사종료

## ◆ 피싱 경험

- 작년(2018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받아본 경험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한다면 '① 있었다' 를 선택 후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한다, '①금융기관 사칭' 응답이 있는 경우, 31-2 로 이동하고, 없는 경우에는 32 문항으로 이동한다
-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②번' 선택 후 31-4 문항으로 넘어간다
- 피싱 경험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31-2**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 ①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 ②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
- ③ 신용카드 회사
- ④ 보험회사
- ⑤ 증권회사
- ⑥ 캐피탈 회사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1-3** 연락한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 ②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 ③ 신용카드 대금 연체
- ④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응답 후 **32** 번으로

**31-4**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하여서
- ②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국제전화 등)
- ③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피싱 사칭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을 사칭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사칭했는지 모두 선택하게 한다</li> <li>- 제1금융권은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 (예: KB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지방에 거점을 두는 지방은행 (예: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특별 법규 적용을 받아 특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은행(예: KDB산업은행 등) 등을 가리킨다.</li> <li>- 캐피탈 회사는 여신(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가리킨다.</li> </ul>
◆ 송금 내지 금융 정보 요구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떠한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 했는지 모두 선택한다</li> <li>- 대환대출은 대출의 최종 연장기한까지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발생한 연체금을 다른 유사한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것을 가리킨다.</li> <li>- 안전계좌는 예금주가 개설한 예금에 대해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제한한 것을 가리킨다.</li> </ul>
◆ 보이스피싱 거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보기 중,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끊거나 삭제한 이유를 모두 선택한다.</li> </ul>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32**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④ 3개월에 한 번 정도      ⑤ 거의 없음

◆ **보이스피싱 경험 횟수** • 작년(2018년) 동안 한 달 평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횟수를 선택한다.

**33**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자택전화      ② 직장 영업장전화      ③ 휴대폰  
 ④ 메신저(카카오톡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보이스피싱 수신 경로** • 제시된 보기 중, 보이스피싱을 받은 연락수단을 모두 선택한다.

**34**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①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_\_ 회  
 ②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_\_ 회  
 ③ 없다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 여부**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실제 송금하였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면, 몇 번이나 알려주었는지를 기입한다.

**35**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①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만원 → 조사종료

② 아니다 → 응답 후 **35-1** 번으로

**35-1**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사기 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

②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

③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④ 은행 창구 직원의 조언으로

⑤ 지연인출제도로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서

⑥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부착된 홍보용 안내문을 읽고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보이스피싱 재산 피해 여부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묻고,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금액을 만원 단위로 기입한다. 이후 조사를 종료한다.
- 재산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35-1** 문항으로 이동한다

◆ 보이스피싱 재산 피해 미발생 이유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한다.
- 지연인출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 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 VI 조사원 확인 사항

※ 이 페이지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적어 넣습니다.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1. 피해 경험 여부		2. 일반피해 수	3. 상습피해 수	4.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	번	숙입 관련	① 없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	번	물건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	번	침입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	번	손상 관련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	번	장소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	번	방법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	번	지인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	번	성추행 관련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부

- 조사원은 기초조사표의 응답이 모두 끝난 경우, 피해경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작성한다. 만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을 한 경우 해당 응답자에게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 대해 별도의 면접과정을 거쳐 응답을 확인해야 한다.
- 본 체크리스트는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 23번~30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체크리스트는 아래의 3 단계를 거쳐,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 조사원 체크사항

#### [1단계]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 조사원  
체크사항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 실제 사례 >

사례 1: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례 (매일경제, 2019.04.14.)

사례 2: 외제차를 몰고 아파트 방문객을 가장하여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10여 차례 탈어온 사례(연합뉴스, 2019.04.17.)

사례 3: 정신질환자 안 씨가 수차례 주변 이웃들에게 난동 및 위협을 가해온 사례(이투데이, 2019.04.17.)

-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 피해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이고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이지만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만일 23번~30번 문항의 내용 중 피해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조사원 기입사항과 응답자 인력처를 기재하여 해당 조사표를 완성한다.
- 이어서 기초조사표의 첫 부분의 가구구성원 중 만14세 이상 대상자의 다음 가구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모두 종료되면 완료 조사표를 정리한다.
  - ✓ 확인사항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수만큼 적고 「사건조사표」를 바로 진행한다.
  - ✓ 특정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사건조사표」에서 특정 범죄피해 관련 설문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조사표」에서 모든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라고 하더라도 「사건조사표」에서 재산피해 관련 설문문항만을 선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모든 「사건조사표」 문항에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 주요 질의 내용에서 '상습 범죄피해' 해당 내용 검토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 수준

항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①	②	③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①	②	③
3) 비디오폰이나 현관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①	②	③
4) 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①	②	③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6) 경비원이 있다	①	②	③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①	②	③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①	②	③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이 있다	①	②	③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①	②	③

◆ 가구 및 주변의 방법수준

- 주변의 방법수준을 파악하여 체크한다. 잘 알지 못할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완성한다.

3. 주택의 유형

<p>① 아파트</p> <p>② 오피스텔</p>		<p>&lt;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gt;</p> <p>1) 단지 규모: 총 ___동</p> <p>2) 층수: ___층 중 ___층</p> <p>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p>
<p>③ 단독주택</p> <p>④ 연립주택/ 다세대주택</p> <p>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p> <p>⑥ 기타 ( )</p>		<p>① 지상</p> <p>② (반)지하</p> <p>③ 옥상(옥탑)</p>

◆주택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 또는 기타로 분류한다.</li> </ul>
①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li> </ul>
②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과 주거를 겸한 복합주택</li> </ul>
■ 아파트/ 오피스텔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규모는 총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입함.</li> <li>• 응답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 층수와 살고 있는 해당 층수를 기입(라인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층수물 기제) - (예시) 아파트 1개 동에 13층, 15층이 있는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체 15층 중 3층)</li> <li>•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선택하여 기입함.</li> </ul>
③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li> <li>• 종류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li> </ul>
④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 내지 '다세대 주택' 으로 허가받은 주택</li> </ul>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주거부분이 주택의 요건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영업 겸용 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작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임</li> </ul>
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기타 주택 유형을 괄호 안에 기입함.</li> </ul>
■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의 층고에 따라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옥상(옥탑) 중 하나를 선택함.</li> </ul>

## 3. 사건조사표

##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1)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기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등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사건발생 일시와 장소/범행수법/신체 피해/피해자의 대응/재산 피해/정신적 피해/가해자의 특성/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 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3)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후에는 타 기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 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생년월	① 양력		② 음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사건조사표 번호	총 <input type="text"/> 매 중 <input type="text"/> 번			

◆ 조사표 표지

-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는 '가구 명부' 에서 대상 가구의 조사구 번호(4자리) 및 거처 번호(3자리), 가구 번호(3자리)를 찾아 기입함
- 가구원번호는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가구 대표는 01)
- 성별과 실제 생년월은 H. 가구 구성의 성별/실제 생년월과 동일해야 함
- 해당 가구원의 전체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외, 몇 번째 사건조사표 인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관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3쪽, 가구원 11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1) 관련 문항 ( )번의 사건조사표 ( )건 중 ( )번째 사건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 )회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사건조사표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p>◆ 점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사항의 '1.점검항목' 에 작성한 범죄피해경험의 관련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한다.</li> <li>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는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각 사건을 별도의 「사건조사표」 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만일, 조사원 점검항목에서 속임 관련 피해가 3회 있었고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일 경우,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총 수는 3개이고, 본 피해사건이 총 3개 가운데 몇 번째인지 기입하면 된다.</li> <li>만일 관련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정,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점검항목' 을 보고 그 총 피해횟수를 기록한다.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범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li> <li>상습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1건만 작성한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검항목은 기초조사표의 VI. 조사원 확인 사항의 1.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만일, 응답자가 사건조사표의 응답을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항목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미리 기입해 주도록 한다.</li> <li>만일, 관련 문항이 23번 문항일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은 18번 문항(재산피해)부터 작성하도록 지도한다.</li> </ul>

##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그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 **동일 주소지 여부**      • 본 사건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집(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현재는 조사기준일(2019. 5. 30.) 시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8년 \_\_\_\_월

◆ **사건 발생 시기**      •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한 월을 적고 필요하다면 달력을 보여주거나 당시의 큰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응답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응답자가 정확한 월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휴일이나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때를 얘기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사건을 경험한 월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건 발생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상습피해인 경우, 가장 심한 피해발생 시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 ① 새벽( 03 ~ 06시 )      ② 아침( 06 ~ 09시 )      ③ 오전( 09 ~ 12시 )  
 ④ 한낮( 12 ~ 15시 )      ⑤ 오후( 15 ~ 18시 )      ⑥ 저녁( 18 ~ 21시 )  
 ⑦ 밤( 21 ~ 00시 )      ⑧ 심야( 00 ~ 03시 )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 사건 발생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시간부터 시간 전까지임. 가령, 새벽은 03시부터 06시 전까지이며 아침은 06시부터 09시 전까지를 의미한다.</li> <li>• 낮인지 밤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이나 '㉡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음' 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령, 응답자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 '㉢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을 선택하도록 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사기인 경우 범죄피해 시간을 불품 금액을 결제한 시간, 즉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li> </ul>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현재 사는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조사원 기입용 코드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8 번으로

◆ 사건 발생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다른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물어보고 조사한다.</li> <li>• 만일, 사건발생지역이 다른 시군구인데, 시군구는 모르고 읍면동만 알고 있을 경우 빈 여백에 읍면동을 기재한다.</li> <li>• 만일, 피해지역을 잘 모를 경우, '㉠ 모르겠음' 을 선택하고 8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li> <li>• 조사원 기입용 코드는 조사표 회수 후, 응답자가 기입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아래 칸에 기입하도록 한다.</li> <li>* 행정구역분류코드 기입 시 부록에 수록된 행정구역코드를 참고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사건이 시작된 곳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곳이 다르다면 <b>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답</b>하도록 한다.</li> <li>• 만일, 인터넷을 통한 범죄피해의 경우, 인터넷을 접속·사용한 지역으로 기록한다.</li> </ul>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 우선 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계단·육상                      ③ 화장실 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사건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 7개 대분류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난 후 구체적 장소를 체크한다.
- 만일 제시된 7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⑧ 그 외의 장소’ 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어느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 ‘⑧ 그 외의 장소’ 를 선택한 후 ‘모르겠다’ 고 기입한다
- 5-3 번 문항에서 본 사건발생장소가 응답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소인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7개 대분류 장소를 응답자에게 알려줄 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 의 경우에는 ‘②주택가 및 이면도나 그 인접한도로’ 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 그 외의 장소로 기입하였으나 7개 대분류 장소에 포함될 경우 기타를 삭제하고 각 해당내용으로 체크한다.

## II

##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_\_\_\_\_ )

7-2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① 나    □ → 응답 후 8 번으로  
 ② 나와 가구원들                            □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 응답 후 10 번으로

## ◆ 주거침입 여부

- 6번과 7번 문항은 모두 본 사건이 주거침입과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 먼저 본 사건이 응답자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다.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경우,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뒤이어 6-1번 문항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동의하에 들어온 경우라면,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응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다. 만일 가해자가 실제로 들어왔다면, 7-1번 문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 항목에서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 그 외의 경우'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다.
- 만일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을 경우엔 7-2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7-2번 문항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나 응답자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7-3번 문항에서 선택한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10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습니까?

① 그렇다 → 응답 후 **8-1** 번으로

② 아니다      ] → 응답 후 **9** 번으로

③ 모르겠다    ]

---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④ 펜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⑤ 마취제, 독극물                  ⑥ 전기충격기  
⑦ 스프레이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

---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이니까?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다  
③ 모르겠다

◆ **총기 사용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8-1** 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8-2** 번 문항에서 그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체크한다.
- 만일,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잘 모름 경우, **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유의사항>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본 사건 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라도 '① 그렇다' 로 응답한다.
- 가해자가 들고 있었거나 사용한 무기의 유형은 **모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가해자가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온 무기와 현장의 것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다' 를 선택하도록 함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 위협·폭행이나 성폭행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을 가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본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실제 어떠한 신체적인 공격(성폭행 포함)을 경험하였다면, **12**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실제 신체적인 공격은 안했지만, 말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면 **11**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본 사건에서 아무런 신체적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라면, 뒤이어 **10**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유의사항>

- 보기 항목 ②번의 경우는 신체 공격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이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했음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혔음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 손상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_\_\_\_\_ )

▶▶ 응답 후 **19** 번으로

<p>◆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사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li> <li>• 여기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 재산에 대상으로 한 범죄(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 등), (2)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범죄(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위협), 지속적 괴롭힘 또는 스토킹) 및 (3) 원치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주로 해당된다.</li> <li>•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㉔ 그 외의 일'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li> <li>• 응답 후에는 <b>19번 문항으로 이동한다.</b></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건에서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를 표시하도록 한다.</li> <li>•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배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 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li> <li>• 보기항목 ㉓번의 경우에는 대면상황에서의 말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괴롭힘도 포함되며 성적 농담도 포함될 수 있다.</li> </ul>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쌌
-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핥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13번** 번으로



- ◆ 신체공격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시도한 행위가 해당된다.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가해자가 신체적 공격을 한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㉔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항목에서 선택 후, **12-1**번 문항에서 신체 공격을 가하기 전에 가해자가 신체위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응답받는다.
  - 응답 후에는 **13**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 III 신체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 → 응답 후 **15**번으로
- ② 강간
- ③ 강간미수
- ④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 ⑤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⑥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 ⑦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⑧ 장기 손상
- ⑨ 기절할(의식 불명)
- ⑩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활귀거나 긁힘
- ⑪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

- ◆ 신체피해내용
-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경험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에 응답하면 ②~⑪은 응답하지 않고 **15**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㉔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 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b>14-1</b> 번으로       → 응답 후 <b>14-3</b> 번으로
--	--

◆ 신체피해의 치료 여부

- **13** 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했다면, 그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⑦ 그 외의 곳'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①번, ②번 응답이 있는 경우 **14-1** 문항으로 이동하여 치료 여부 및 입원 여부를 묻고, 이외(③~⑦번 응답자)는 **14-3** 번으로 이동한다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① 예 → \_\_\_\_\_ 일      ② 아니요

◆ 입원 및 치료여부

- **14-1** 번 문항에서는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 받았다면 **14-2** 번 문항에서 입원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14-3**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14-2** 번 문항에서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 여부를 묻고, 입원을 했다면 며칠 했는지 질문하여 기입한다.
-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N**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 음주 여부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가볍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를 하였다고 표시한다.
- <유의사항>
  -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의 음주상태 판단기준 역시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최대한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17** 번으로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명                      ② 없었다

- ◆ 동반피해 여부
  -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16-1**번 문항을 조사하고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거나 모르겠으면, **17**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6-1**번 문항은 사건이 발생당시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 사건에서 응답자와 더불어 다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강도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있다면 '① 있었다' 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대략의 숫자를 적는다.



<p>◆ 피해자 방어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어행동이나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li> <li>• 만일,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면, 17-1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1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li> </ul>
<p>◆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li> <li>• 본 사건 당시 응답자 및 함께 있던 사람이 했던 방어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li> <li>•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⑨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li> <li>• 만일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대응행동 가운데 '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②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하였다면, 17-2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조사한다. 그 외의 대응행동(③~⑧)이 있었던 경우는 17-3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li> <li>• ① 또는 ②번에 응답하고, ③~⑧번에도 응답할 경우 17-2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li> </ul>
<p>◆ 신체공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2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li> </ul>
<p>◆ 신체피해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3 번 문항은 실제로 대응과정에서 응답자 혹은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피해(상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li> <li>• 본 사건에서 신체피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7-4 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만일 피해(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7-5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li> </ul>
<p>◆ 방어행동과 신체피해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4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 자신 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상해 피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한다.</li> </ul>
<p>◆ 방어행동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5 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응행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이 진행될 당시 방어행동이나 대응행동에는 가령,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거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격투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는 17-1 번 문항을 참고하도록 한다.</li> </ul>

## V 재산 피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우체국, 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_\_\_\_\_ )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방송 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③ 전화(허위)광고
- ④ 보이스 피싱
-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⑧ 그럴듯한 말솜씨
-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⑩ 법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_\_\_\_\_ )

▶▶ 응답 후 19-6 번으로









◆ 파손(손상)된 물품의 현금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 번 문항은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li> </ul> </li> </ul>
◆ 파손(손괴)에 피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물품의 파손(손괴)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상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li> </ul>
◆ 파손(손괴) 피해물품의 수리나 대체여부 및 시간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 번 문항은 수리 및 대체(새로 구입)여부와 여기에 걸린 시간을 파악한다.</li> </ul>

**V**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간헐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_____ )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 일	_____ 만 원

② 없었다

◆ 정신적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번 문항은 본 사건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응답한다. 만일 보기 문항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9) 그 외의 고통'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li> </ul>
◆ 심리상담이나 신경정신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번 문항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의 중지, 일상생활의 중단 등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만일 있었다면, 그 시간손실이 대략 며칠쯤으로 추산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li> <li>● 21-2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 등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만일 있었다면, 그 상담 및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소요된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 및 치료 중에 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대략적 치료비까지 합하여 기입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피피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소나 신경정신과에 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즉,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간 경험은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li> <li>●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다.</li> </ul>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전과 비교하여 활동, 감정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한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해당 사건조사표의 내용을 중심(기준)으로, 본 피해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현재 어떠한지 응답하도록 유의한다.</li> </ul>

**Ⅶ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23-1**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 ④ 경찰이 알려줘서
-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개인(들) → 응답 후 **23-3** 번으로
- ② 기업이나 상점 □ → 응답 후 **24** 번으로
- ③ 공공기관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남녀 모두
- ④ 모르겠다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2세 미만(아동)
- ② 10대 중반
- ③ 10대 후반
- ④ 20대
- ⑤ 30대
- ⑥ 40대
- ⑦ 50대
- ⑧ 60대 이상
-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모르겠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b>23-7-1</b> 관계	<b>23-7-2</b>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 아내    ② (조)부모    ③ (손)자녀 ④ 형제 자매    ⑤ 전남편 전처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⑨ 학교 선후배 ⑩ 직장 동료    ⑪ 직장 상사    ⑫ 거래하던 사람 ⑬ 잘 아는 이웃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 가해자 인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번 문항은 응답자에게 본 사건의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일 안다면, 23-1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가해자 인지방법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모른다면, '㉔ 아니요' 를 선택하고, 다음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li> </ul>
◆ 가해자 인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1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인지방법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㉕ 그 외의 경우' 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li> </ul>
◆ 가해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다.</li> <li>● 만일, 가해자가 '㉑ 개인(들)' 이라면 23-3 번 문항으로 계속 진행하여 응답하고, 가해자가 '㉒ 기업이나 상점' , 혹은 '㉓ 공공기관' 인 경우 2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나 상점 -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단위의 기업이나 상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점포인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유명회사인 줄 모르고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li> <li>✓ 공공기관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청(시청, 군청,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철도공사,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 예금창령 사신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i> </ul>
◆ 가해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3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것이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발생 당시 있었던 사람의 수를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li> </ul>
◆ 가해자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4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다.</li> </ul>

<p>◆ 가해자 연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5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li> </ul>
<p>◆ 가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6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응답했다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li> </ul>
<p>◆ 가해자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그 사건 가해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li> <li>• 먼저 23-7-1 번 문항에서 관계분류를 선택하고 난 후, 23-7-2 번 문항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li> </ul>
<p>&lt;유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포함)' 이거나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에 누구인지 <b>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b> 응답하도록 한다.</li> </ul>



<p><b>24-6</b>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p>
<p><b>24-7</b>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p>

<p>◆ 경찰신고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번 문항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li> <li>• 만일, 본 사건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4-1 번부터 24-8 번까지 응답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은 지역 내 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항경찰, 순찰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체포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li> <li>• 응답자가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에게 신고하는 등 신고 과정이 공식적인 신고절차가 아니었다면 '② 신고하지 않았다' 에 표시해야 한다.</li> </ul>
<p>◆ 경찰신고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 번 문항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5 가지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의 이유를 각각 기입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⑥ 그 외의 이유' 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li> <li>• 응답자가 사건 당시 신고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장소나 시간, 가해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li> <li>• 조사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li> </ul>
<p>◆ 경찰조치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2 번 문항은 응답자가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li> </ul>
<p>◆ 경찰조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3 번 문항은 응답자가 경찰신고 후,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을 묻는 것이다.</li> </ul>

◆ 경찰사건처리 절차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4 번 문항은 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응답자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li> <li>● 응답자가 경찰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24-5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경우 24-6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li> </ul>
◆ 사건처리설명 이해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5 번 문항은 경찰로부터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 계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경찰의 설명 과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li> </ul>
◆ 경찰조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6 번 문항에서 경찰신고 후, 응답자가 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li> </ul>
◆ 범인검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실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li> </ul>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 응답 후 25 번으로

---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⑦ 보복이 두려워서
-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_\_\_\_\_ )

- ◆ **사법활동 협조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24-8 번 문항은 본 사건 경찰신고 후, 조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건의 사법처리로 인하여 응답자가 학업, 직장업무, 가사업무에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 경찰, 검찰, 법원 관련 활동 각각에 대해 그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간 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략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입하도록 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조사한다.
  - 응답 후 25 번으로 이동한다.
- ◆ **경찰 미신고 이유**
  - 24-9 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보기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⑨ 그 외의 이유' 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2b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다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박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피해 이후 조치나 행동**
  -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범죄피해 이전보다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4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제4장.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1. 기본 점검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한 가지 보기만 선택하는 것인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내용이 수정된 경우,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해당 보기에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 가. 「기초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는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재한다.
  - 응답자의 성별과 실제 생년월이 H. 가구구성의 기입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가구 전체 조사표의 총 부수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부수의 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적힌 부수대로 조사표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 누락 확인
  -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에 기재된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II. 가구 구성에 기재된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수와 회수된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다면 H. 가구 구성의 '조사원이 기입합니다(사유코드)'란에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가구대표응답자와 관계가 '배우자'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또는 사별 및 이혼'으로 기재된 경우와 직업관련 등에 '전업주부'로 기재한 사람이 종사상 지위에 '임금 근로자'로 기재된 경우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 수정한다.)
-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는 체크 사항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와 조사된 사건조사표 수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문수준은 가구 방문 시 주변을 세심히 살펴서 작성하고, 모를 경우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에 기재한다.
- 주택의 유형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나. 「사건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와 성별, 실제 생년월이 응답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가구원별로 1부터 순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 예시 : A와 B가 사는 가구에 A는 2건의 범죄피해가 있었고, B는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 기재해야 하며, B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 기재한다.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 가. 조사표 편철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가구원 순서대로 '기초조사표' (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순), '사건조사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 가구명부상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조사표를 응답한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뒤에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정리한 조사표의 수가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에 기재된 조사표의 수와 일치하는지 세어본다.
-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빠른 조사표가 위로 오도록 정리하여, 조사구별로 11가구씩 편철한다.
  - 편철할 가구의 조사구 번호를 확인하고 조사지역과 행정구역분류코드, 조사구 번호를 조사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입한다.
  - 가구별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부수를 참고하여, 해당 조사구에서 회수된 조사표의 총부수와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각각의 총 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기입한 수대로 조사표가 빠짐없이 회수되었는지 재확인 한다.
  - 해당 실사 사무소 명을 기입하고,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 나. 조사표와 가구명부 제출

-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 순서대로 처음 11가구를 조사하지 못하고, 대체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에 가구별로 해당 사유(불응, 불능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한다.
- 가구명부와 함께 편철한 조사표를 수퍼마이저에게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공문발송,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조사원 설문지, 답례품 잔량 등
- 조사표 제출 후 종합 검증 과정 중 질의 시 성실히 응답한다.



용어 해설

A Glossary

부록

## 용어 해설

### 1. 색인 목록

색인명	의미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가구의 생활 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가구원)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는 사람. ☞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해당됨.
가정폭력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틀 의미. 흔히 물리적 폭력, 육설, 방임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로 나타나며, 가정폭력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을 의미.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됨.
경찰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동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괴롭힘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해행위로서, 피해사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색인명	의미
구타	물리적 혹은 상해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서, 때리거나 치는 행위
근로소득	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금 등
동네	<b>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b> :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 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
만취	<b>만취상태</b> 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무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처음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범죄	<b>국가의 형사법령(법규)을 위반한 행위.</b> (유의어) 범법, 위법행위, 범행(범죄행위) ☞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절도)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모욕)로부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경제범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범위는 매우 넓음 ☞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모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임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건으로 함
사업소득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에서 생기는 소득. 총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색인명	의미
상습피해	상습피해란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일반적인 성적 만족, 지극, 흥분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며, 강간(強姦)을 원곡하게 이르는 말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상	일반적으로 재료의 모든 특성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흔히 손괴와 유의어로 사용 1.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2.병이 들거나 다침 3.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스토킹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험한 물건	사람 신체에 대한 가해력을 가진 기구
위협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협박과 동의어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 2. 주요 질의 사례

## 1. 조사대상 가구인지 여부

Q1. 조사대상 가구가 사찰(절)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니까?

◇ 사찰(절)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입니다.

Q2. 대상가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 영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Q3.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A가 한 곳의 전세가 나가게 되면서 2곳 모두에서 A가 생활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조사대상인 경우 대체를 해야 하는지요?

◇ 두 가구 중 응답사가 주로 거주하는 집을 조사하고, 나머지 한 가구는 다른 집으로 대체해서 조사합니다.

Q4. 외국인도 조사하나요?

◇ 외국인도 조사해야 합니다. 단, 가족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권란으로 처리하고, 가구대체 요령에 따라 다른 기구로 대체합니다.

Q5.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람이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장기 부재(코드: 7)로 처리하고, 폐가 등 빈집이면 빈집(코드: 9)으로 처리합니다.

Q6. 빈집, 공장, 응답불응인 경우 대체해도 되나요?

◇ 빈집, 공장 : 사람이 숙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응답불응 : 몇 번을 방문하여도 못해주겠다고 화들 내고 불응함

⇒ 두 경우 모두 다음 가구로 대체합니다.

- Q7. 중증치매이신 분, 정신지체 장애자, 정신질환자들은 조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렵고 스스로의 상황판단이 잘 안되므로 대리응답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조사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구원의 경우 기초조사표 1 번~22 번의 인식 항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해경험 여부는 보호사(가구 대표 응답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있는 경우 사건조사표도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구성의 사유코드에 대리응답(코드: 2)으로 기입합니다.
- Q8. 재개발로 인해서 1 번 가구부터 11 번 가구까지 허물고 현재 건물 신축중인 경우 대체사유 빈집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 재개발로 집이 없어지고 신축 중이므로 빈집(코드: 9) 처리하면 됩니다.
- Q9. 작년부터 10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 안 된 1인 가구원인 경우 대상가구에 해당 되는지요?
- ◇ 대상가구에 해당하며,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Q10. 주소지에 아예 건물이 없는 경우 가구집중코드를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폐가도 아니고 아예 주소오류)
- ◇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의 기타(코드: 10)로 처리하면 됩니다.
- Q11. 우리집은 범죄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집이 왜 선정된 것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 ◇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피해경험을 물어보는 조사로서 범죄피해가 없으면 없다고 응답하시면 되며, OO님 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 선정이 되어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합니다.
- Q12. 주소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가축 농장인데 조사 대상인가요?
- ◇ 가축 농장에서 해당 가구원이 먹고 자고 하면 가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입니다.
- Q13. 혼자 사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는데 조사 내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 응답자가 장기 부재(코드: 7)인 경우로 가구명부 방문기록에 표시하고 가구를 대체합니다.
- Q14. 응답자 이름 및 생년월, 연락처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Q15. 가구주만 대표로해서 가구상황을 확인하면 되는데 왜 다른 가구원까지 설문문 받고 이름 및 연락처를 받아 가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 본 조사는 가구대상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가구원 개인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가구 내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모두가 조사대상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기입은 조사입력의 오류사항 점검을 위한 확인용에 불과합니다.
Q16. 조사구 주소가 불분명하고 거주민의 입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조사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조사구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구 대체가 가능합니다.
Q17. 신축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경우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경우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조사구에서 11부를 다 못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 조사구를 대체해야 하는지?
◇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협조가 어려울 경우 실사사무실 및 본사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Q18. 가구원 중에 상근예비역이 있는데 조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상근예비역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조사 대상입니다.
Q19. 가족은 아닌데 한국인과 같이 사는 외국인은 조사 대상인가요?
◇ 같이 먹고 자는 가구원일 경우 조사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 2. 가구구성표 작성

Q1. 조사표의 가구구성에서 부분만 살고 있는데 한명이 일시 출장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H. 가구구성 항목에서 두 명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조사해야 하는지?
◇ 기초 조사표 H. 가구구성 항목에 두 명 모두 기입하지만, 출장 중인 가구원은 기초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고, 사유코드에 일시 부재(코드: 4)로 기입합니다.
Q2. 기초조사표의 H. 가구구성 항목에 개인 이름은 조사하지 않나요?
◇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만 정확히 기재합니다.
Q3. 2018년에는 일을 했으나, 조사시점 현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항목의 직업항목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 조사표 H 항목은 조사시점 현재 상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직업 관련 항목은 무직,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Q4.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대표 응답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 만 14세 이상인 가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구대표 응답자로 정합니다.
Q5.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직업은 학생으로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Q6. 타지에서 공부하다 주말에만 오는 자식도 조사하나요?
◇ 주 거처가 타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7. 스님이나 목사님은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재단에 소속 되어 있어 임금근로자로 처리합니다. ◇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역시 임금근로자로 처리합니다.
Q8. H.가구구성원에서 2007년 10월생 구성원을 조사해 왔는데 시스템에 입력하나요?
◇ 당연히 이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므로 가구구성표에는 조사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만 14세 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3. 기초조사표 배경문항 작성

Q1.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검시 제질문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응답자에게 기재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응답자 설명란에 가구구성표의 관계를 참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대표 응답자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으로 작성하되, 전화번호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응답자가 강력하게 거부하면 조사표에 대한 응답만 실행합니다.
Q2. 자녀가 주는 용돈, 생활비 및 연금도 소득에 해당 되나요?
◇ 사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생활비는 이전소득이며,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표 22번 문항 가구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3.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소득은 부인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나요?
◇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인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Q4. 17번 문항에서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수차례 이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보고 18번 ㉔경험없음으로 조사하는게 맞는지요?

◇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해당 동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전체 거주 기간을 응답하면 되고 18번 문항에서 이사 횟수는 조사해야 합니다.

Q5. 아파트에 회사직원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구대표응답사 22번 문항에 소득부분에 직원 2명 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 가구 소득이므로, 타인과 살 경우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 4. 기초조사표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작성

Q1. 기초조사표 6번 문항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하는 건가요?

◇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응답하셔야 합니다.

Q2. 장애나 고령,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장애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사대상 기구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언어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리응답이 가능하다면 사유코드에 대리응답(코드: 2)이라고 기입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 5. 조사대상 범죄피해인지 여부

Q1. 범죄피해란 무엇이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응답사가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범죄피해사건으로 봅니다.
- ◇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 등입니다.

Q2. 본인 부주의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된 경우와, 잃어버린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범죄피해에 해당 됩니까?

- ◇ 단순한 분실의 경우는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금액피해가 있었다면,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 됩니다.

Q3. 시골집에서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 둔 빈병, 비닐, 깡통 등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허락없이 누군가 몰래 가져간 것이므로 범죄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4. 자택이 아닌 식당,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됩니까?
◇ 만일 해당 식당이나 가게에서 주기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며 피해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Q5. 10세 아이의 자전거를 도둑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사건 장소가 집이면 가구침입사건이므로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조사하고, 집밖이면 만 14세 미만인 가구원이 도둑맞은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6. 경운기를 도둑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응답자가 도둑맞은 경운기는 조사하나, 대리점의 도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7. 도박하다가 속임을 당한 경우 조사하나요?
◇ 도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8.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의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도난으로 조사하나요?
◇ 법률상 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9. 이메일로 위협한 경우도 조사하나요?
◇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10.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난도 조사하나요?
◇ 편의점의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조사하지 않으나, 편의점 점원이나 고객이 개인물건(지갑 등)을 빼앗긴 경우는 조사합니다.
Q11.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비운 사이 책상위의 책을 잃어버렸다면?
◇ 응답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도난 사건으로 봅니다.
Q12. 직장동료들이랑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다음날 고가의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동료 중 한 명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면?
◇ 응답자가 동료가 훔쳐갔다고 확신한다면 도난사건으로 조사합니다.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Q13. 극장에서 가족옷을 빈자리에 놔두었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쳐다보니 훔치려던 사람이 일어나 극장을 나간 경우 조사하나요?	◇ 미수에 그친 도난 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14.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간 피해가 수십 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사업체의 물건이 도둑맞으면 조사대상 범죄 피해가 아닙니다.
Q15. 골목에서 바바리맨을 만났을 경우도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나요?	◇ 성적인 접촉이나 시도없이 신체만 보여주는 것 등의,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음란한 행위도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할 뻔 한 범죄피해로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16. 아파드에서 흥간 소음도 범죄 피해에 해당되나요?	◇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으면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나 단순히 흥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사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7. 오토바이를 도로에 잠시 놓고 볼 일 보러 간 사이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20일 후에 다시 찾은 경우 도난으로 보나요?	◇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조사표를 기입해야 합니다.
Q18. 사업장에서 지나가던 술 취한 취객이 들어와 폭행당할 뻔한 적이 있는 경우 사건 조사표 작성하나요?	◇ 사업장에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폭행당할 뻔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Q19.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겨서 결제까지 했는데 부도가 나서 결제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일부러 속여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20. 통장에서 5개월 정도 본인도 모르게 출금이 된 것을 나중에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 나중에 찾은 경우 사건으로 보나요?	◇ 본인 통장으로 돈이 다시 입금 되었다 해도 범죄피해 사건으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p>Q21.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서 할머니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놀라 도망간 경우는?</p>
<p>◇ 가구침입해서 할머니를 위협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사건조사표 1건을 작성하고 할아버지는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는 가구 대상 범죄피해로 동일한 가구 내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은 피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응답자 한 명이 응답하도록 합니다.</p> <p>◇ 할머니 사건조사표 작성 시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p>
<p>Q22. 부부가 자고 있는 새벽에 창문을 깨고 도둑이 들어와 각각 송곳으로 위협한 경우 몇 개의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p>
<p>◇ 가구침입을 해서 부부 중 한사람만 위협하고 헤를 입혔으면 사건조사표를 1건 작성하지만, 부부가 각각 위협의 피해를 당했다면 부부가 각각 사건조사표를 1부씩 작성합니다.</p>
<p>Q23. 기초조사표 작성 시 범죄피해 경험은 있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사건조사표는 해당 범죄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써 향후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쓰이는 자료이므로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득하도록 합니다.</p>
<p>Q24. 할머니의 통장이 대표통장으로 사용중이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지만 실질적인 금전피해는 없었다고 하면 사건조사 작성해야 되는지?</p>
<p>◇ 금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p>
<p>Q25. 주택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옆을 긁고 가서 전적이 20만 원 정도 나와 일단 수리는 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피해인가요?</p>
<p>◇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로 사건조사표 작성 대상입니다.</p>
<p>Q26. 대학생 2명이 거주를 하는데 2명이 자전거 1대를 같이 타고 있는데 2018년에 한번 잃어버리고 찾고 또 잃어버린 것으로 총 두 번 잃어버린 경우는 한사람한테만 사건조사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명한테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p>
<p>◇ 가구에서 같이 쓰는 재산을 도둑맞은 경우로 두 명 중 더 기억이 나는 가구원에게 해당 사건의 사건조사표를 받으면 되고 시기가 다르므로 2건을 받아야 합니다.</p>
<p>Q27. 친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친구에게 돈을 입금하게 한 사기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p>
<p>◇ 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28. 협박 문자 및 메신저, 메일 등으로 위협한 경우도 범죄피해에 해당되는지?</p>
<p>◇ 전화나, 이메일로만 협박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대면했을 때 협박을 한 경우는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p>

##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Q29. 집에 도둑이 들었을 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구원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상해한 경우도 피해에 해당되나요?	◇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1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0.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아(임금체불) 노동부에 몇 번 신고했어도 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피해에 해당되나요?	◇ 임금체불은 사기죄에 속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1. 신분증을 도난당했는데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개통이 되어 요금이 청구된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되나요?	◇ 범죄피해에 해당됩니다.
Q32.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피해에 해당되나요?	◇ 집주인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 범죄피해가 아닙니다.
Q33. 식당과 주거 공간이 붙어있는 집인데, 주거공간에서 식당을 통해 도둑이 들었을 경우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 주거공간이 붙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가구가 맞으며, 도난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Q34. 응답자가 작년에 출산 후 부모님 집에서 1개월간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들은 경우인데 범죄 피해가 맞는지?	◇ 본인의 집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Q35. 300만원 송금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송금되었음. 은행을 통해 수신자 알았고 주변사람들을 통해 수신자 번호를 알게 되어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그런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돌려주지 않고 연락 안 받는 경우, 사기피해인가요?	◇ 현행 법률상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속임(사기)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6.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

Q1.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사가 아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의 범죄피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2. 아버지(가구대표 응답자)와 아들이 동일한 가구침입 절도 사건을 응답하면?
◇ 가구대표 응답자인 아버지의 피해사건만 조사합니다. 만일 아들이 사건피해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아들이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구 대상 절도인 경우는 동일한 범죄피해에 대한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Q3.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범죄피해 경험이 기억나면?
◇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Q4. 응답사가 기초조사표의 폭행과 도난에 각각 응답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시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으면?
◇ 기초조사표를 수정하고 사건조사표를 한 건만 작성합니다.
Q5. 가구대표 응답자 차량과 배우자 차량이 파손 되었을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지,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 동일 시점 및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였다면 1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각 사건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합니다.
Q6. 주거침입이 3건 있었는데 1건은 범인과 마주쳤고, 2건은 침입할 뻔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5번 문항에 3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 사건별로 3개 작성합니다.
Q7. 두 형제가 길거리를 가다 강도에게 위협당했다면 몇 개의 사건인가요?
◇ 두 형제 각각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7. 사기(속임)

Q1. 인터넷에 경품을 준다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했는데 경품은 안 오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만 걸려오는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재산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본 조사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갯두를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기타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가족끼리 돈을 갠겠다고 빌려간 후 갠지 않았을때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
◇ 가족관계에서도 애초에 돈을 갠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속임(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4. 이는 사람이 보험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만 가로채고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속임(사기)에 해당됩니까?
◇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상점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5.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는데 과도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에 해당 됩니까?
◇ 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 후 반품 처리 했다면 사기인가요?
◇ 반품 요청하여 반품 또는 환불 처리 등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 홈쇼핑에서 명확히 1kg이라고 명시 후 500g만 배송하고 환불 등을 거부했다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 화면상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기가 아닙니다.
Q7.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보낸 경우 재산상의 피해로 보나요?
◇ 본 조사 대상의 범죄피해에는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8. 상습 범죄피해

Q1. 소량의 농작물을 여러 차례 도둑 맞았는데,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 기초조사표 24번 문항 ㉔그 외의 물건에 표시하고, 도둑맞은 피해횟수를 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건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수는 1개만 작성합니다.
Q2. 직장동료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5번 당했는데 상습피해로 보나요?
◇ 5번 각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나, 구별할 수 없다면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는 1부만 작성합니다.
Q3. 학교 근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반복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상습피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심각했던 범죄피해 1건을 사건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만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했더라도, 각각의 범죄피해사건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며, 그 피해사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4. 같은 주차장에서 5건의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4건은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의 물건을 훔쳐갔고, 1번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상습피해로 보는지?
◇ 같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상습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9.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Q1. 한 가구원이 여러 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순서는?
◇ 기초조사표의 관련문항 순서로 작성하되, 관련문항이 동일한 경우 범죄피해 일시가 제일 빠른 사건부터 조사합니다.
Q2. 도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 단순 폭력사건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범인검거 여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기초조사표 27번 또는 28번에 응답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건조사표 24-7번 범인 검거에는 “모두 검거하였다”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4. 드라이버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위험한 물건(사건조사표 8 번)으로 보나요?
◇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Q5. 부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란 무엇인가요?
◇ 힘을 사용(밀거나 잡음)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포옹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Q6. 가해자의 공격으로 안경이 깨져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보나요?
◇ 안경 구입도 의료비로 봅니다.
Q7. 무언가를 훔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는?
◇ 예를 들어 '재킷을 달라. 안 그러면 벗겨 가겠다' 고 하든가,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는 것을 훔치겠다고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8. 수리공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9.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Q10.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현금을 승객에게 도난당한 경우 사건 발생장소는?
◇ 교통시설 내부이면서, 택시기사의 직장으로 봅니다.(사건조사표 5 번)
Q11. 아파트 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훔쳐 간 경우 발생장소를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 발생장소를 우리집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파트 단지주변으로 파악해서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12. 차량을 손상시키고 도주한 사건일 경우 가해자를 알 수 없기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요구하지 않았다>에 체크했습니다. 상황 상 맞지 않는 답변인지요?
◇ 가해자를 몰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았다'로 조사합니다.

연구총서 19-B-01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발행 | 2019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http://www.kic.re.kr)

정가 | 15,000원

인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9908-37-9 9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